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696-01

OECD 농업분야 논의동향분석 및 대응전략수립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림 수 산 식 품 부

© 2010-51 | 2010. 12.

OECD 농업분야 논의동향분석 및 대응전략수립

송주호, 김창길, 정호근, 이명기, 권대흠, 문한필, 한석호, 김홍상,
조규담, 조우림, 임정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송주호	연구위원	총괄
김창길	연구위원	농업과 환경 합동작업반
정호근	부연구위원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이명기	부연구위원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권대흠	부연구위원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농업과 무역합동작업반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농업과 무역합동작업반
한석호	부연구위원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김홍상	연구위원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조규담	초빙연구위원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조우림	초청연구원	자료 정리
임정민	연구원	자료 정리

머 리 말

OECD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 농업과 무역합동작업반, 농업과 환경합동작업반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농업분야의 논의는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견해 차이로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OECD 농업분야 회의는 1년에 최소 10번 이상 빈번하게 회의가 개최되며 대상의제가 매우 넓고 학술적인 분석이 많아 공무원들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OECD에서 제기된 의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의제별로 전문가를 회의에 동행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OECD 논의 대응이 정책과제로 수행되어 우리 연구원이 총괄하여 의제에 대응하였다. OECD의 논의 및 발표자료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학술지보다 풍부한 내용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품경제, 농촌경제, 환경문제, 그리고 비관세조치 등 많은 분야에서 OECD는 전세계 학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이 연구가 OECD에서 논의된 내용의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2년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농업정책 개혁의 바탕이 되고 있고 다자무역협상에서도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농업정책과 OECD의 논의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 그리고 수산위원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 그리고 수산위원회에서의 2010년도 논의 의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2010. 2. 25(목) ~ 26(금)간 OECD 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을 주제로 한 2010 OECD 농업각료회의가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되었음. 향후 20년간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의 합치가 있었으며,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합의된 정책원칙을 식량안보, 기후변화적응, 녹색성장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하여 농식품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새로이 작성된 각료선언문은 향후 OECD의 정책분석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각료선언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분야 OECD 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위원회 제 154차 회의(2010년 6월 1~2일)에서는 2011~2012년 사업과 예산계획(PWB: Program of Work and Budget)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 2011~2012년 사업계획안은 사무국 제안내용을 기초로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 조정, 일부사업 삭제 및 추가를 통해 승인됨.
- 농업위원회 제 155차 회의(2010년 12월 1~2일)에 앞서 OECD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식량안보정책포럼을 개최함. 또한 프랑스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향후 G20의 주요이슈로 소개하였음.
 - OECD 모든 위원회의 수평적 협력사업으로 진행중인 ‘식량안보, 녹색성장, 물 관리, 무역과 고용, 여성(gender) 등에 대한 경과보고 및 농업위 차원에서의 수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또한, 2011~2012 사업예산계획 보고, 산하작업반 활동결과 보고, OECD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농업지식정보시스템(AKS) 회의 준비, 작업반간 업무 재조정(농정시장작업반과 농업과무역합동작업반), 2011년도 회의일정 등이 논의됨.
- 제 51차 APM(2010. 5월 17~20일)회의에서는 OECD-FAO 농업전망(2009-2018), 2010 회원국 농업정책 모니터 및 평가, 회원국과 신흥국 농정에 관한 2011 보고서 제안, 미국, EU, 터키의 농정개혁 평가, 농업상품시장의 구조적 변화, 농가위험관리, 정책평가모형(PEM, Policy Evaluation Model),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OECD 5차 네트워크, 농업혁신과 경쟁력, 농업과 개발, 개도국 농정 설계 등 13개 의제가 논의되었음.
 - 각 국은 2010 회원국 농정평가(At a glance)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연구보고서에 대한 토론 시 유럽과 미국의 직접지불금 정책차이에 기인한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함. 한국 대표단은 한국농정평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제기하였으며 사무국은 이를 수용한 문안을 제시함.
 - 금번회의 논의 주제 중 “각국의 위험관리 정책” 및 “외국 민간자본의 개

도국 농지에 대한 투자”, “R&D의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관련 연구는 관련 국내 정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 제 52차 APM (2010. 11월 15~17일)회의에서는 “OECD국가와 신흥개도국의 실질 농업지지 변화”,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미국 농업정책개혁평가”, “캐나다 PSE(생산자 지지 추정치) 대상품목 확대”, “농업분야 민간자본 투자” 등의 보고서를 논의하여 대부분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실질 농업지지 변화” 보고서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석결과(생산증가가 크고 지지는 제한적으로 감소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 수입국 공조모임이 스위스가 주최하고 한국, 일본, 노르웨이, EC가 참여하여 개최되었음.(11월 15일). 오는 12월 Global Forum 이후에는 일본이 주최, 내년 3월 APM회의 동안에는 한국의 주최로 공조모임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스위스의 발제로 Item3(2011년 OECD 농업정책점검 보고서), Item7(정책수행의 장기추세), Item9(실질 농업지지 변화), Item17(개도국 농정선택), Item18(녹색성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제 63차 농업-무역협동작업반 회의(2010. 5. 21)에서는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비관세 조치의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연구(치즈, 새우, 화훼)수정보고서, 비관세 조치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추가 연구계획서, 농식품분야 미래 시나리오 분석(연구계획서), 가공농산물 무역변화 양상 등 4개 의제를 논의하였음
- 제 64차 농업-무역협동작업반 회의 (2010. 11월 18일)에서는 가공농산물 무역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보고서와 지역무역협정에서 농산물 관련 협정을 분석한 보고서가 각각 승인되었으며, 향후 비관세조치(NTM) 작업을 위한

제안, 농식품 분야 장기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워크숍 보고서, 환율과 환율 변동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5개의 주된 의제를 논의하였음.

- 제 30차 농업-환경정책 합동작업반 회의 (2010. 6. 28 ~ 30)에서는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및 관련분야 연구동향, 수자원과 농업, 농업용수 수질, 기후변화와 농업 등이 논의되었음.
 - 최근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및 관련분야 연구동향에 관해 헝가리, 스페인, 멕시코, 영국,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합동작업반의 핵심이슈로 2008년부터 심층적으로 다루어온 수자원과 농업 분야에서는 호주의 머레이달링 유역의 물관리제도, 농업과 물정책간의 일관성, 수자원관리 의사결정 등의 문서가 발표되고 논의됨.
 - 농업용수의 수질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농업이 양식에 미치는 영향, 물 오염자부담원칙, 수질거래권 등을 다룬 문서가 발표됨.
 - 기후변화와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회계,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농업과 녹색성장의 이슈를 다룬 문서가 발표되고 논의됨.
- 제 31차 농업-환경합동작업반 회의(2010. 12. 6 ~12. 8)에서는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 식품과 농업분야 녹색성장, 기후변화 및 농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 졌음.
 -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등의 최근 농업환경정책 동향에 관한 발표가 있었음.
 - 2011년 6월 발표할 예정인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인 식품과 농업 분야 녹색성장(초안보고서)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짐.
 - 기후변화 및 농업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관련 농민 행태와 관리기법 보고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작물보험과 농가 인센티브관련 작업계획서,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복원력 구축-OECD와 FAO간 협력 구축 등이 논의되었음.

- 물과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에 있어 수질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컨설턴트 보고서) 등을 논의함.
 - OECD 농업환경지표 업데이트 작업(2009년 또는 2010년 기준)이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사무국에서 설문조사표를 발송될 예정인바, 양분수지표와 농장관리지표 등은 미리 지표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분야 연구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과 KREI가 공동으로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회의(워크숍)를 2011년 4월 6일~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OECD 수산위원회는 1961년 OECD 설립과 동시에 분과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연 2회 개최되고 주요 기능은 회원국간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3년마다 새로운 사업안을 선정 및 연구하여 그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함
- 2008년 이후 최근 수산위원회에서는 어업구조조정의 효과적 이행, 수산정책 개혁동향, 수산업의 세계화, 어선입항과 항구서비스, 어업과 양식업 인증제, 수산자원회복의 경제, 기후변화와 수산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고, 그 밖에 수산업동향보고서, 노르웨이의 개도국 지원사업, 수산업에 대한 화석연료보조의 국제적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우리나라는 OECD 수산위원회의 제102차(2008) 회의부터 부의장국으로 의장단에 직접 참여하면서 동 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제102차 회의부터 수행해 온 부의장국의 역할은 매년 선거를 통해 재선되면서 제108차('11) 회의까지 유지하게 됨.
- 최근의 OECD 논의는 점차 글로벌화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OECD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 정부와 연구원의 OECD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매년 계속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가 필요함.

ABSTRACT

A Study on the Agenda for 2010 Agricultural related meetings in
OECD

OECD Committee for Agriculture (CoAg) and the subsidiary bodies (Agricultural Policy and Markets Working parties,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rade,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held meetings regularly at least 9 times a year. Committee for Agriculture, JWPAT and JWPAE meet twice a year respectively and APM three times.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discussed at the sessions of 154th and 155th of Coag, 51st and 52nd sessions of APM, 63rd and 64th session of JWPAT, 30th and 31st session of JWPAE held in 2010.

In 2010, Agricultural Ministerial Meeting was held in OECD to identify the issues for next 20 years and agreed that food security, trade and climate changes needs special consideration for the sustainable agriculture. The last Ministerial Meeting was held in 1988.

At the 154th and 155th OECD Committee for Agriculture,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main agendas of 2010-2012 Program of Work and Budget. Global relation strategy to enlarge the engagement with non-members in the future were discussed. Committee discussed how to reallocate the work between APM and JWPAT but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APM agendas cover very broad ranges including outlook, PSE, risk management, food value chain, price volatility, policy evaluation of member countries, agriculture and development etc.

JWPAT held twice and each meeting was one day session due to the long stalled Doha negotiation. Economic analysis of Non-tariff measures, Trade pattern of processed food,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were the main issues discussed in 2010.

JWPAT covers environment related agricultural policies including water

quality, climate changes, green growth strategy, etc. It also monitors the recent environment related agricultural policy development in member countries selectively.

Each agenda discussed at the OECD is leading the global policy issues in agriculture and could be applied in the policy field usefully. Therefor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disseminate the results of the declassified OECD papers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in domestic.

Researchers: SONG, Joo-Ho, Chang-gil Kim, Ho-guen Chung, Han-pil Moon,
Dae-hum Kwon, Kyu-Dam Cho, Woo-rim Cho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내용 2
- 3. 연구방법 5
- 4. 국내외 연구동향 6
- 5.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제2장 OECD 개황

- 1. OECD 개요 9
- 2. 농업위원회 12

제3장 농업각료회의 논의 내용 및 대응

- 1. 25회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회의 16
- 2.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18

제4장 농업위원회 회의 논의 내용 및 대응

- 1. 제 154차 농업위원회 회의 29
- 2. 제 155차 농업위원회 회의 37

제5장 농업정책과 시장 작업반 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 1. 제 51차 APM 회의 53
- 2. 제 52차 APM 회의 84

제6장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 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1. 제 63차 회의 125
2. 제 64차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 회의 136

제7장 농업과 환경 합동작업반 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1. 제 30차 농업과 환경 합동작업반 회의 148
2. 제 31차 농업과 환경 합동작업반 회의 164

제8장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 및 대응

1.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 [제101차('08.4) - 106차('10.10)] 244
2. 수산위원회 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응 287

제9장 요약 및 대응방안 293**참고 문헌 311****부록(별책)**

1. 25회 지속가능성장 회의 의제별 세부 검토 내역
2.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3. 농업위원회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4. 농업정책과 시장 작업반 회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5. 농업과 무역합동작업반 회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6. 농업과 환경합동작업반 회의 의제별 세부검토내역
7.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별 의제목록(2000~2009)

표 차 례

제2장

표 2- 1. OECD 회원국 확대 추이	10
------------------------------	----

제5장

표 5- 1. Exchange rate , PPP/exchange rate ratio and inflation rates in OECD countries between 1986 and 2009	96
--	----

제7장

표 7- 1. 작물재배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187
표 7- 2. 농가수준과 사회전체 수준 적응전략	192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 1. 농업위원회 조직 구성	15
----------------------------	----

제7장

그림 7- 1. 보전농업 채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184
그림 7- 2. 계획된 행동이론	186
그림 7- 3. 인센티브와 비(非) 인센티브	188
그림 7- 4. 탄소가격과 한계감축비용	189
그림 7- 5. 환경적 문제들 사이의 기후변화 우선순위	191
그림 7- 6. 기대수입에 따른 상대적인 불일치 확률밀도함수와 위험계층	199
그림 7- 7. 기온상승에 따른 작목 전환 체계	206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2년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농업정책 개혁의 바탕이 되고 있고 다자무역협상에서도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농업정책과 OECD의 논의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OECD 사무국이 회원국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농정검토를 1998년과 2008년에 받은 바 있음.
 -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 그리고 수산위원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음
- 그러나 OECD 농업위원회의 논의내용이 국내 농업정책에 반영되거나 논의

내용이 충분히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정책에 반영하고 논의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나아가서 OECD 농업위원회의 주요 논의가 적극적인 주장을 펴는 호주, 미국 등 수출국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선하고 OECD의 작업 결과물에 다양한 농업여건을 가진 국가들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도록 일본, EU 등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OECD 농업위 논의 내용을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철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의제에 대해 충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와 대응이 우리 농업정책의 품질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가장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연구내용

- 이 연구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에서의 2010년도 논의 의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함. 또한 2010년 2월에 개최된 농업각료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결과도 검토함.

2.1. 2010 농업위 주요 의제 검토

- 2010 농업각료회의
- 신규회원국 가입
- 농업 및 농촌발전에 관한 정책포럼

○ 녹색성장전략

2010년 OECD 농업분야 주요 회의일정

순번	일자	회의
1	02월 25~26일	농업 각료 회의
2	05월 17~19일	제51차 농정 및 시장작업반
3	05월 20~21일	제63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4	05월 25~27일	제154차 농업위원회
5	06월 28~30일	제30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6	11월 15~17일	제52차 농정 및 시장작업반
7	11월 18~19일	제64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8	11월 29~30일	농업 글로벌 포럼
9	12월 01~02일	제155차 농업위원회
10	12월 06~08일	제31차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2.2. 2010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 주요 의제 검토

-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 상품시장의 구조조정
- 주요국가 농정개혁
- 농가단위 분석을 통한 지원과 소득의 배분
- PSE 구성요소 분석
- 농업정책이 농촌복지에 미치는 영향
- 농업인위험관리방안
-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
- 농업외 환경변화에 따른 농산업의 중장기 대응방안

2.3.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주요 의제 검토

- 농업/무역 합동작업반회의 63차(5월 20-21), 64차(11월 18-19) 의제 검토
- 비관세조치(NTM), 가축질병의 경제적 효과, 지역주의의 시장효과 등

2.4.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주요의제 검토

- 최근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과 성과평가
- 농업환경정책프로그램의 인벤토리
- 농업환경지표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온난화 적응 방안
- 농업분야의 탄소수지 분석
- 수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농업
- 환경친화적 농지이용관리
- 농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 주제발표
- 농업환경정책위 JWP 부의장으로 의제선정 등 관련업무 수행

2.5. 수산위 주요 의제 논의 동향 파악

- 수산자원 회복방안
- 쿼타배정을 중심으로 한 수산정책 개혁
- 어업 및 내수면 어업 허가제도
- 기후 및 생태계 변화가 수산에 미치는 영향

3. 연구방법

3.1. 작업반 의제분석

- 농업위 산하 3개 작업반의 주요 의제의 내용, 논의진행상황 파악
- 농업위, 작업반회의에서 의제별 대응방안 마련
 - 농경연내 관련 분야 연구자 위주로 검토하되, 부족시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 의뢰
- 수산위 최근 논의동향 정리(수산위 부의장인 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에게 원고 의뢰)

3.2. 정책담당자와 워크숍

- OECD의 논의 내용과 우리의 정책을 비교
- OECD 회원국의 새로운 농업정책 파악 및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 검토

3.3. OECD 주요 회의 참석

- 회의 참석 및 대응을 통해 우리 입장 개진

4.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OECD는 정책 분석 및 권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정책, 통상정책, 새로운 이슈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회원국에 정책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며 정책개선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8년과 2008년에 평가를 한바 있음(송주호 등, 2007)
- 매년 회원국들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계산하여 각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있으며 직접지불제, 농가소득안전망 등 소득정책, 식품안전, 지리적 표시제 등도 분석하고 있음.
- 국내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지지정책, 국경조치를 통한 농업보호정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 하에 직접지불제 또는 사회안전망,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수 경제적 분석에 비경제적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자원 문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도 지속가능한 농업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
- 이처럼 OECD의 논의 내용은 앞으로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내용이 국내에 충분히 전파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내용분석이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선행연구로는 윤호섭(1998)이 OECD 농업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으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

여 권오상 등(2000)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 송양훈 등(2005)의 우리나라 PSE 산출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 연구, 안병일 등(2008)의 OECD PSE의 효과적 측정 방안 연구, 임송수 등(2002)이 외국의 농업환경정책 수단을 소개하고 김창길 등(2006)이 농업환경지표 개발 등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환경지표를 계산하고 환경지표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이 있음

- 한편, 송주호 등(2007)은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체계 구축과 한국농정평가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송주호 등(2008)은 2008년도의 OECD 농업위원회와 시장작업반 회의의 논의 의제를 검토한 바 있음.
-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OECD 농업위 논의 내용 중 한 분야를 다룬 것들이며 방대한 논의내용에 비해 국내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5.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1. 기대효과

- OECD의 논의내용은 기본적으로 연구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주요 국가들의 농정현안을 다루고 있고, 최종 결과는 각국의 정치경제적인 입장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논의내용은 국내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상등에서 유럽국가,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입장에 치우쳐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이 어려운 국가, 수입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전체 논의 방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향후 다자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 등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음.

5.2. 활용방안

- OECD의 각종 회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여 국내정책 입안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 우리 정책에 참고가 될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새로운 정책 동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국내 연구 수행
- 직불제,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외국 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행착오 최소화로 행정비용 및 예산 절감

제 2 장

OECD 개황

1. OECD 개요

1.1. 연 혁

- 1948년 유럽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경제원조정책인 “마샬플랜”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Organization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로 탄생하여, 1961년 경제협력체로 확대되었음.
- 1994년 이후 구사회주의 국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회원국, 아시아권 등으로 확대 추세임. 회원국 확대를 위해 1997년 비회원국협력위원회(CCN) 및 1998년 비회원국협력센터(CCNM)를 설치함.
 -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 한국 및 슬로바키아 등 6개국 신규 가입
 - 회원국 가입기준 : 유사성(Like-mindedness), 활동성(Significant player), 상호이익(Mutual benefit), 보편적 관심(Global considerations)
- 2010년 8월 현재 회원국은 총32개로 한국은 1996년 12월 29번째로 가입함.

표 2-1. OECD 회원국 확대 추이

연도	회원국
1961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1962년	이탈리아
1964년	일본
1969년	핀란드
1971년	오스트레일리아
1973년	뉴질랜드
1994년	멕시코
1995년	체코
1996년	헝가리, 폴란드, 한국
2000년	슬로바키아
2010년	칠레, 슬로베니아

주: 2010년 5월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의 가입절차도 완료되었고, 러시아의 가입절차도 조만간 완료될 예정

- 정책부문별 전문위원회(총23개)가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과제를 수행하는 약200여 개의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 운영.
 - 담당부문의 세계동향 및 회원국 동향 분석
 -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주요 주제에 관한 정책 대화 실시
 - OECD는 평균 연 3,000일의 회의(일평균 10~15회) 개최: 600여명의 각국 상주대표의 연 4만명의 각국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

1.2. 특징

- 무역 확대와 시장기능 활성화에 의한 세계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협의체로서 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준수되며 각국의 주요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침.
-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무역 이슈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WTO협상 과정에 반영됨.
- 회원국 정책담당자들간의 정책 대화에 의한 정책 협의, 학문적·실증적·전문적 분석에 의한 결론 도출, 동료 압력에 의한 정책개선 유도함.
- 의사결정방식은 30개 회원국의 합의(consensus)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임. 개별회원국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으나,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으로 인해 명분없는 입장 유지는 곤란함.

1.3. 조직 구성

- 이사회(Council)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당 1명과 EC 대표가 참석함. 대표부 대사급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1년에 한번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어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고 위임사항을 결정하여 OECD 사무국에 전달함.
- 위원회(Committee)는 경제, 무역, 과학, 고용, 교육, 금융시장 등 특정 정책 분야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조직으로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함.
 - 위원회, 작업반(Working Group), 전문가 그룹회의 등 약 200개가 운용 중임.
 - 연간 4만 명 정도의 정부 관료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함.
 - OLIS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논의와 정보 교류가 이루어짐.
- OECD 사무국(Secretariat)은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총 2,000명 정도의 직원

(이 가운데 경제, 과학, 법률 등 전문가는 700명 정도)이 연구와 분석을 수행함.

- 사무국 산하에 Center(조세정책·행정, 경영·SME·지역개발, 개발, 유럽교통장관회의·교통연구), Directorate(개발협력, 교육, 고용·노동·사회 문제, 환경, 금융·기업 문제, 무역·농업, 공공관리·지형개발, 과학·기술·산업, 통계), Department(경제)와, 성(gender), 국제선물제도, 국제에너지청, 법률, OECD Forum, 핵에너지청, 개발 정책연대, 사헬(Sahel)·서부아프리카 클럽 등이 구성되어 있음.

2. 농업위원회

2.1. 농업위원회 구성

- 회원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국농업정책에 대한 검토·농산물 수급전망 및 대처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설립됨.
- 농업위원회는 1961년 창설된 초기 OECD 위원회 중 하나임. 농업위원회는 농업정책시장작업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APM) 이라는 하나의 하부기관을 가지고 있음. APM은 관련사항을 농업위원회에 직접 보고함.
- 운영개요: 매년 2~3회 회의개최, 주로 각 회원국 농업부의 국·과장들이 회의참석
- 농업위원회에는 32개 OECD 전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음. 옵서버(observer)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임. 현재 농업위원회는 러시아의 농정평가를 진행 중임.
- 비회원국으로서 농업위 활동참가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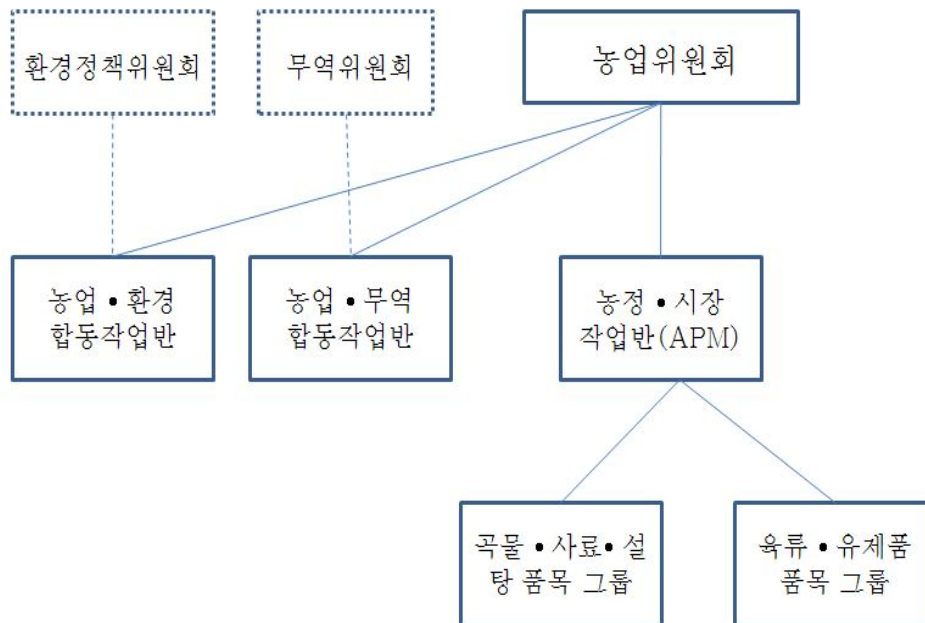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하고, 1995년부터 농업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1996년 12월 OECD가입에 따라 정회원국으로 참석함.

2.2. 농업위원회 조직

- 농업위원회는 산하에 농업정책 및 시장(APM:Agricultural Policy and Market)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두 개의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JWP)의 모체인데 농업-무역합동작업반은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와,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은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 EPOC)와도 연계되어 있음.
- 농업무역합동작업반은 1962년에 설립되어 농산물 시장 및 무역정책 모니터링, 농산물 무역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있음.
- 농업환경정책합동작업반 1993년에 설립되어 농업과 환경간의 상호관계 분석, 농업환경지표 개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이 부의장국으로 활동(2004-2007년 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가 부의장 역임)
-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은 1987년 설립되어 농업정책 점검평가, 농업정책 목적달성수단 및 분석기법 개발 등을 담당함. APM 회의는 농업정책 및 농업시장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발간 여부를 결정하는 OECD 농업위원회의 핵심 산하기구임.
- 농업위 산하에 곡물·사료·설탕 품목그룹(Group on Cereals, Animal Feeds and Sugar)은 1980년에, 육류·유제품 품목그룹(Group on Meat and Dairy Products)은 1987년에 창설됨. 이들 품목 그룹은 "품목시장그룹(Group on Commodity Market)"으로 통합하기로 2008년 11월 제 151차 농업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

- 곡물사료설탕그룹은 물, 사료, 설탕에 대한 중·단기 수급전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토의함. 육류 낙농품그룹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중·단기 수급전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토의함.
- 농업 코드와 스킴(Code and Schemes)은 농업용트랙터 표준 Code, 종자인증, 과채류표준, 산림재생산 통제 스킴 등이 있으며, 한국은 트랙터코드에 가입해 활동함.
- 농업위원회 사무국은 2006년 무역국(Directorate for Trade)과 식량농업수산물국(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을 통합한 무역농업국(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TAD)에 설치되어 있음.
- 무역농업국 산하에 농업 관련 4개과(농업정책·무역 및 조정, 농업정책 및 환경, 무역 및 시장, 비회원국 농업정책), 농업기술관련 협력연구프로그램, 수산관련 1개과 총 60여명으로 구성
- 농업위원회는 1962년 OECD 최초로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총 11번의 각료회의를 진행했음. 지난 1998년 각료회의 이후 12년만인 2010년에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
- 농업위원회 회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4명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선출됨. 다음 해의 의장은 그 전 해에 미리 선출하고 있음.

그림 2-1. 농업위원회 조직 구성



2.3. 농업위원회의 성격

- 농업위원회는 농업정책, 농업무역, 농업환경 등 산하작업반 활동에 대한 기본적 결정을 내리는 상위기구로서, 연2회 회의를 통해 OECD 농업분야의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함.
- 회원국의 농업 및 식량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와 농산물 수급전망 및 대처방안을 강구함.
- 또한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의 배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다자간 무역 체계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통합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제 3 장

농업각료회의 논의 내용 및 대응

1. 25회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회의

- 2010. 2. 24(수) OECD 본부에서는 농업각료회의에 앞서 “축산업과 기후정책: 육류 감소 또는 탄소 감소?”를 주제로 25회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었음
 - 우리나라 참석자: 수석대표 이창범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관, 김영수 사무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부연구위원 등.

1.1. 주요 내용

- 금번 회의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의 필요성,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인사들이 육류 소비를 줄이

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식량안보와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였음.

- 회의 참석자들은 식량안보 및 환경문제(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축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장관련, 생산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관련 정책들,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들, 정책 입안자, 생산자, 소비자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참석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필요하며, 탄소발자국, 탄소 가격(탄소세 등), 배출권 거래제 등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국제적 논의와 협력, 합의가 중요하다고 동의하였음.
- 의장은 회의를 정리하며 축산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체인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또한 다음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의 측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2. 평가

- 금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축산업이 직면한 이슈와 기후변화에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논의하였음. 이번 회의는 정책 수단의 채택 또는 배제 여부를 논의 또는 합의하는 자리గా 아니고 앞으로 필요하거나 실행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해 그 효과와 집행상의 어려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음.
 - 향후에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

점들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에서도 축산업이 농업부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임.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경우 축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금번 OECD 논의는 우리나라 축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번 논의에서 제기된 정책들에 대한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축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와 노력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은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최신 논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 2010. 2. 25(목) ~ 26(금)간 OECD 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을 주제로 한 2010 OECD 농업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
 - 우리나라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유병린 농업통상정책관(수석대표)외 서은수 서기관, 김종필 사무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부연구위원,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

2.1. 주요 내용

-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되어, 30개 OECD 회원국 및 10개 비회원국 농업각료와 고위정책결정자 및 WTO, FA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향후 20년간 농업과 식품분야가 당면하게 될 기회와 과제에 대

- 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음.
-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의 합치가 있었으며,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각료들은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합치하였으며 생산·생산성 제고,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교육훈련, 시장발전 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각료들은 무역이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며, 규칙에 기반하는 다자 무역 시스템이 그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였음.
 - 각료들은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음.
 - 금번 2010 OECD 농업 각료회의에서는 전 세계 인구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인식하에 식량안보,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식품분야의 정책원칙(Policy Principal for Food and Agriculture)』 과 『OECD 활동의 지침(Ministerial Guidance to OECD)』 으로 구성된 각료선언문(COMMUNIQUE)을 채택하였음.
 - 각료선언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5년 이전에 OECD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함

2.2. 평가

-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합의된 정책원칙을 식량안보, 기후변화적응, 녹색성장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하여 국가와 OECD가 공동으로 농식

품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새로이 작성된 각료선언문은 향후 OECD의 정책분석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각료선언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분야 OECD 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3. 세부내용

2.3.1. 각료회의 진행방식

- 각료회의는 2010.2.25(목)~26(금) 양일간 오스트리아의 Nikolaus Berlakovich 장관과 뉴질랜드의 David Carter 장관의 공동사회로 진행됨.
- 1일차(2.25) 회의는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과 공동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각국 농업각료들의 인식과 대응을 발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됨.
 - Working Dinner를 통해 FAO, WTO, IPCC 등 국제기구 초청자들의 발언과 각료들의 질의를 통해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 주요 도전에 대해 토의
- 2일차(2.26) 회의는 “세계 농식품 시스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국가와 OECD의 역할”에 관한 5개 세부그룹별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

2.3.2. 개회사

- OECD 사무총장(Angel Gurría)
 - 농업을 포함한 식품체인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야하는가를 OECD 국가들의 대표가 12년 만에 함께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경제위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식량안보, 가격변동성, 자원 희소성 등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혁신과 무역을 강조

○ 공동의장

- Nikolaus Berlakovich(오스트리아 농업장관) : 세계가 직면한 농업 분야의 세 가지 주요 이슈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가격변동을 지적하고 식량분배,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
- David Carter(뉴질랜드 농업장관) : 최근의 기후변화, 물 부족 등 농업의 위기와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술개발 및 혁신과 함께 시장개방이 핵심이며, 이는 20년 전 뉴질랜드 농업개혁을 통해 입증되었음.

2.3.3.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기회와 과제(opportunities and challenges) 토의 주요 내용

가. 주요국 발언내용

- 호주 : 식량안보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식품생산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나 이 두 가지 목표달성이 어려운 과제를 언급. 대응책으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에 대한 투자 증대, 개도국에 대한 농업 기술의 이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강조
- 미국 : 식량안보와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이며 빈곤해결을 위해 생산성 증가, 식량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시장신호에 반응하도록 무역시스템 개선을 언급
- 캐나다 : 식량문제 해결, 농가소득 증대 등 현재 직면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역장벽제거, WTO/DDA 협상과 FTA 협상을 적극 활용 계획
- 유럽국가
 - 프랑스 : 세 가지 도전과제로서 식량안보, 자원 환경 문제, 식량 수급균형

을 제시하고 특히, 식량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개입을 강조

- 스위스 :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을 언급.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생태시스템 보전, 자연경관 유지 등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덴마크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동의 노력과 OECD의 역할을 강조. 녹색성장 전략 수립은 OECD의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
- 스페인 : 식량불안에 대응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와 과학 기술 발전 그리고 제도 및 과정의 개선, 농업교육 훈련을 포함하는 혁신을 강조
- 스웨덴 : 식량부족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산화탄소 및 축산폐수 감축, 위험관리를 위한 지식축적, 올바른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강조
- 벨기에 : 인구 증가, 자연 자원 희소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주요 축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 유지를 언급
- 영국 : 식품수요 증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원 보존 등을 주요 이슈로서 지적하고 시장기능 활성화, 기술개발 등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필요성을 강조
- 그리스 :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적 발전을 위한 기회제공을 위해 녹색성장을 강조. 특히, 기후변화는 농업 및 식품체인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강화 필요
- 슬로베니아 : 식량공급 증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민간과 공공부분의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및 협력과 기술 혁신 강조
- EC :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안보,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주요 도전과제로 지적. 대응책으로서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 민간과 공공부문간 협력강화 등을 언급

- 노르웨이 : 농식품 시스템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별 농업 생산의 다양성 유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고려 필요
- 일본 : 농산물 생산성 증가 장애요인으로서 기후 변화, 물 부족 등을 언급하고 대응책으로서 식량안보, 선진국의 개도국(아프리카 등)에 자금과 기술지원을 통한 쌀 생산 증대 등 농업 개발과 지원 시스템 구축,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
- 남미국가
 - 칠레 :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감소와 식품안전 위협 등 광범위하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인식. 식품안정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개방이 필수적임을 언급
 - 브라질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역 확대와 자율적인 시장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바이오에탄올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대 도모
 - 아르헨티나 : 빈곤 및 영양 결핍과 같은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혁신, 물 과 토양 등 희소한 자연 자원의 보전, 생산성의 증대,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 확대가 중요함을 언급

나. 한국 대표 발언 요지

-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3가지 이슈로서 1)안전하고 충분한 식량공급 2) 농업분야 R&D 투자 확대 3) 지역개발을 통한 농업과 비농업,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
 - 농업의 일차적 기능이 충분하고 안전한 식량공급임을 강조하고,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소개
 -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공존(Co-existence of various types of agriculture)하는 것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개념이 다자무역 체계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도·농간 발전격차의 경험을 토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과 농촌개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농간 균형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2.3.4. 업무 만찬

-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농식품 시스템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하여 FAO, WTO, IPCC,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초청자들의 발표를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 됨.
 - Hafez Ghanem (FAO 부총장) : 전 세계적으로 10억 이상의 영양부족인 사람들이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살고 있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국의 취약한 농업생산체계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음. 취약한 지역에서 식량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제 및 세계 교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 Pascal Lamy(WTO 사무총장):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공급을 위해 무역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세계 식량공급이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토록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제교역 시스템 필요성을 언급하고 DDA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론이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국제교역을 강화하는데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Jean Pascal van Ypersele(IPCC 부총장): 이산화탄소 배출증가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농업생산성 및 식량불안을 지적. 특히 기후변화는 개도국 농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배출 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와 국내외 농업 연구협력 강화를 언급
 -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 빈곤 감소와 자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비료, 농약 등)을 통한 농업혁신과 효율적인 기술 및 노하우 전달체계를 강조. 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

티브 지원과 지적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언급. GMO는 소비자로부터 신뢰확보가 우선 과제임.

2.3.5. 세계 농식품시스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국가와 OECD의 역할(그룹별 토론)

○ A그룹(토론 주제 : 미국/한국 등 9개국)

-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탄소시장 형성 등 국제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고 국가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중요. 또한 국제교역,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중요한 요소이나 무역왜곡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OECD 역할은 가격변동성 연구, 개도국 지원, 생산비 분석, 농가위험 관리 등에 비중을 두어야 함.

○ 한국 대표 발언내용

- 식량안보는 최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예에서 보듯 무역으로만 확보될 수 없고 적절한 국내생산이 함께 해야 하며,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해결책으로서 다양한 농업방식 유지의 중요성이 다자간 협상에 반영되어야 함.
-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얇은 시장(Thin market)의 경우 생산량 변화가 적더라도 국제 가격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가격변동성의 원인 분석에 있어 품목별 생산 및 시장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함을 강조

○ B그룹(토론 주제 : 칠레/오스트리아 등 8개국)

-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연구 기술개발과 소비자 역할이 중요함. 또한 시장보호를 경계하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실행을 언급. OECD의 역할로서 연구, 혁신, 기술이전, 위험관리 등을 강조

- C그룹(토론 주제 : 남아공/아르헨티나 등 9개국)
 - 식량안보는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생산성과 무역이 중요한 관심사이고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OECD의 역할은 문제분석, 정책선택, 과학적 분석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D그룹(토론 주제 : 아일랜드/핀란드 등 9개국)
 -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가격변동성을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기술이전, 투자(물적, 인적)가 중요하고 농업이 가지는 공적 이미지(public image)를 개선해야함. OECD의 역할은 경제회복에 있어 농업의 역할이나 푸드 체인, 위험관리 등에 초점을 두어야함.
- E그룹(토론 주제 : 스위스/호주 등 8개국)
 - 식량안보를 위해 생산성 증가, 경쟁력 있는 농지선택, 시장 개방,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등이 중요. OECD의 역할은 녹색성장, 가격변동성 대응, 농가 위험관리, 바이오 연료연구, 개도국에 대한 투자 지원 등에 초점

2.3.6. 업무 오찬 (공동의장 요약 및 각료선언문 채택)

- 금번회의에서 논의된 세계 각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유용하고 실천적인 대응방안들을 정리한 의장보고서(chair's summary)와 각료 선언문을 채택함.
- 의장보고서 주요 내용
 - 식량안보 :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강구에 의견 합치. 생산과 생산성 향상이 농업시스템의 모든 범위에서 증가될 필요. 개도국에서 인프라, 교육훈련, 시장발전 등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투자가 필요
 - 무역 : 농식품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 개방되고 투명한 시장으로의 접근

은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중요하고 "얇은 시장(thin markets)이 농산품 국제가격의 급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무역증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필수적임.

- 기후변화 : 식량 공급에 부정적 영향(특히 개도국)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자원제약 : 물, 토지 등 자연자원 제약은 농업이 식품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특히 물 부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임.
- 혁신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을 만드는데 기술개발과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는 민간부문과 함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고 기술의 자유로운 유입이 가능하도록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함.
- 규제와 새로운 기술 : 국가들 간에 규제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주목. GM 기술은 일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자원압력의 상황에서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가격 변동성 :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인 투기의 영향 정도와 해결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표출되었으며, 향후 가격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인과 농가의 위험 관리 전략이 더욱 시급
- 시장지배력 : 시장지배력 차이로 인해 농업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에 관심이 표출됨. OECD가 투명성 증가와 시장기능의 제고를 위한 대안을 분석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 적정한 규제의 골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 : 노르웨이,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언급. 뉴질랜드, 호주 등은 다원적 기능을 다루는 정책이 생산과 투자결정 또는 무역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촉구
- 바이오 연료 : 식량 가격에 대한 영향, 희소한 농업 자원에 대한 경쟁, 온실가스의 감축가능성, 바이오매스 생산의 전망과 기회 등이 토의됨. 유

용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나 견해의 차이도 분명히 상존함.

- 농업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 장관들은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 식품 품질, 동물 복지, 환경적 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의 증가와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라벨링의 중요성이 언급됨
 - 음식물 쓰레기 : 음식쓰레기가 식량 손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과 식품 구매자에 대한 교육, 소비자 가격 변경, 음식 쓰레기 활용 등과 같은 정책이 식품 공급 증가 압력 완화와 환경 개선 등의 편익을 발생시킬 것임을 인식. 개도국에서는 부적당한 처리, 운송, 마케팅 인프라로 인한 손실제거가 식량 안보 성과를 개선할 것임
- 각료 선언문
- 각료 회의 준비 과정에서 회원국 간 사전에 실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각료 차원에서 확인하고 거의 그대로 채택함.
 - 다만 OECD 활동을 위한 각료 지침(Ministerial Guidance to OECD) 중 (vi) 항 안에서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to insure transparency and efficient functioning of markets)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함.

제 4 장

농업위원회 회의 논의 내용 및 대응

1. 제 154차 농업위원회 회의

1.1. 회의 개요

- 일자: 6월 1일(화) - 2일(수)
- 참석자: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의제명	관련 문서 번호
154차 농업위원회 의제 채택	[TAD/CA/A(2010)1]
153차 농업위원회 요약본 채택	[TAD/CA/M(2009)2] [TAD/CA/M(2009)2/ANN]
2011-2012년 사업과 예산 계획 : Part I 계획	[TAD/CA(2010)2]
사업과 예산 계획 Part II : 코드와 스킴	[TAD/CA(2010)4]
사업과 예산 계획 Part II : 협동연구프로그램	[TAD/CA(2010)5]
커뮤니케이션 활동	[TAD/CA(2010)6]
농업에 관한 글로벌 포럼 계획	구두 보고됨

2010-2019 농업전망 및 미래의 쟁점들	구두 보고됨
작업반 활동 보고	구두 보고됨
제68차 OECD 과실· 채소류 스킴 총회 종합 보고서 부록	[TAD/CA(2010)3]

1.2. 주요 의제별 내용, 검토 의견 및 논의 내역

1.2.1. 2011~2012 사업과 예산계획(Program of Work and Budget)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사무국 제안 설명

- 사무국은 예산 1%를 삭감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며, 전기 위원회 논의내용 및 장관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핵심사업(예산비중 88%)과 선택사업(예산비중 32%)로 하여 제안함.

○ 2011-12년도 작업 및 예산 초안에 제안된 핵심(core) 연구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임. 따라서 제안된 핵심 연구계획들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됨.

- 먼저 동 초안은 2010년 농업각료회의에서 강조된 세계적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생산성향상과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및 낭비의 감축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이슈들을 제안된 core 연구주제들에 잘 반영하고 있음.
- 분석의 대상국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는 국제 식품 및 농업 체계에서 신흥경제국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최근의 농산물가격급등에 따른 식량문제의 피해가 OECD 회원국을 넘어선 저소득 식량수

입국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추세를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하려는 농업위원회의 노력은 높이 살만함.

- 마지막으로 분석의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특히 각국의 농업정책 평가방법과 세계농업의 전망모형, NTM 분석체계, 그리고 위험관리와 생산성향상에서의 농가단위분석 등에 대한 분석방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노력은 매우 주목할 만함.
- 2011-12년도 작업 및 예산 초안에 제안된 선택(choice) 주제들 중에서 일부를 탈락시켜야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임.
 - 식품 및 농업 정책 분야의 연구에서는 1.2.6.국제식품공급체인(global food supply chain)상에서의 분석을 위한 network형성을 제안하면서 각종 국제식품체인상의 경쟁이슈들의 분석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농가단위분석 네트워크의 경험축적을 통한 농가단위분석의 심화와 함께, 분석의 대상을 농가단위(farm gate)를 넘어서 유통과정과 소비자에 대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향후 보다 폭넓은 농업 및 식품 정책의 연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음.
 - 농업, 무역 및 개발(Agriculture, Trade and Development) 분야의 연구에서는 2.2.2에서 5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서의 농업부문의 체결내용과 이에 따른 경쟁력변화에 대한 분석이 계획되어 있음. 이러한 연구는 그동안의 농업위원회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반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R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함. 또한 2.3.4.에서 각국의 발전단계에 따른 개도국의 영세농(smallholders)의 차별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음. 이는 그동안 비교우위론의 차원에서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었던 개도국의 영세농의 역할을 빈곤퇴치와 식량안전(food security)측면에서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을 수 있음.
 - 농업의 지속가능성분야의 연구에서는 선택 연구(choice) 주제로서 3.1.4.

에서는 녹색성장 연구차원에서 OECD이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장기전망과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워크숍이 2011년에 계획되어 있음. 이는 전 세계적인 식량수요증가에 세계 농업생산이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지의 생산능력의 문제(1.2.2.)와 함께 그러한 농업생산능력의 증대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함. 이는 농업생산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3.1.2.)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3개 분야별로 기대결과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데, 사실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강하게 주장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지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OECD의 고유업무(전망, 각국 농업정책 검토, PSE, PEM 등)에 중점을 두고
 -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주요국의 비관세 조치 분석, 식량안보 등)을 우선시하고
 - 우리나라가 OECD에 자발적인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함.

나. 개회발언

- 의장(Mr. Gerrit Meester, 네덜란드)은 금년 농업장관회의가 성공적이었으며, 회원국들의 상호협력과 사전준비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회원국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함
- 무역농업국장(Mr. Ken Ash)은 금번 농업장관회의 준비과정에서 회원국 간 견해차이가 있었으나, 자문단그룹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평가하고 장관회의결과가 금번 사업계획안 제안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
 - 또한, 경제위기의 영향을 고려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G20의 요구사항(화석연료보조금 연

- 구)에 시기적절하게(timely, relevantly) 잘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무역농업국장의 개회발언에 대해 일본은 농업장관회의에서 분과별 토론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나, 오찬세션 부터는 실질적인 토론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화석연료보조금 연구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요소이며, 농업위원회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프랑스도 같은 의견을 제시)
 - 사무국은 OECD 화석연료보조금 연구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알리는 노력을 보다 늘리겠으나, 연구논의가 농업위원회 차원의 승인(permission)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

다. 논의 내역

- 제1차 토론시 주요 발언내용 : 사업예산안 구조전반에 대해 토론
 - 일본 : 핵심사업에 88% 예산이 배정되어 실질적으로 12%만 선택가능하다는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또한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작업단위 85배정, 전체작업단위 452)
 - ※ 대부분의 국가들도 핵심사업 88% 예산배정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제기
 - 뉴질랜드 : 녹색성장과 식량안보분야 사업을 강조, 향후 DDA 타결에 대비하여 관련분석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을 요구
 - 미국 :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농업전망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무역관련분야 사업예산 증액을 요구(뉴질랜드에 동의)
 - 스페인 : 리스크관리, 비관세조치(NTM)에 대한 사업을 강조
 - 프랑스 :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예산의 증액(전기 대비 50%)에 대해 사무국에 적절한 해명을 요청, 시장 투명성 분석 및 가격변동성 이슈를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호주 :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예산안에 동의하며, 예산액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 미국, 덴마크, 독일 등도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사업이 OECD의 비교우위가 있는 핵심사업이라는 입장을 표명
- EC : 타분야와의 수평적 협력사업이 중요하나, 농업분야는 지속가능성 및 녹색성장분야에서 참여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 사업계획안에 농업환경지표사업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일본도 동일한 의견)
- 네덜란드 :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내용이 부족하며,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를 효율화하여 남는 자원을 새로운 이슈에 배정하자고 제안(멕시코도 유사한 의견)
- 1차 조정의견에 대한 사무국의 답변 :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계획안을 재차 제안하겠음.
- 제2차 토론내용 : 선택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론
 - 영국 : 가축분야 리스크 관리사업을 선호(스페인, EC도 동일한 의견)
 - 프랑스 : 식품체인분석, 수출제한조치사업 선호
 - 스페인 : 가축분야 리스크관리사업, 정책타켓팅, 수출제한조치사업 선호
 - 네덜란드 : 식품체인분석, 농업환경성과사업 선호(포르투갈도 동의)
 - 뉴질랜드 : 육류와 낙농품 수요, 수출제한조치사업 선호
 - 미국 : 수출제한조치사업, 식량안보사업 선호
 - 사무국 답변 :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계획안을 6.2일 제안하겠음.
- 제3차 토론 : 사무국 수정제안내용을 토론, 수정제안에 동의
 - 무역농업국장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안을 재작성하였으며, 사업계획안에 1개 사업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또한,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인도네시아 농업정책리뷰”에 대해 자발적 기여금이 확보된다면 1개 사업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제안
 - EC는 수정제안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반대의견 보다는 일부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설명을 요청
 -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사업의 예산비중이 확대된 것에 대해 프랑스 · 스위스 등에서 재차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며, 무역농업국장은 예산비중은 전기와 동일하며 전기 예산이 실제로 낮게 계상되어 있었다는

점을 해명

- DDA 타결에 대비한 관련분석 예산 필요성에 대해 사무국은 상황발생 시점에서 사업예산이 융통성 있게 확보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 “리스크관리(가축분야)”, “소규모 농가의 리스크관리”, “정책타켓팅” 중 어느 사업을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사무국의 의견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리스크관리”를 추가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 농업정책리뷰에 대해 무역농업국장이 대외관계강화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Part I 사업예산에 일부 포함하여 추진함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함.
- 의장은 이에 사업예산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함.

1.2.2. 기타사항

가. 글로벌 농업포럼 계획 및 OECD 50주년 기념 준비: 보고 및 토론

- 사무국은 금년도 포럼을 오는 11월 29~30일 개최할 계획이며, 주제는 “식량 안보, 빈곤 경감 및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검토 중임을 보고
 - 아프리카 지역을 주된 관심지역으로 하여 가격안정화 · 식량보조 · 정부 지출과 국제기구 지원 등의 유형을 분석하겠으며, 이러한 보조가 정책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관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
 - 우선 “베트남, 가나, 에티오피아” 3개국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할 예정임
- 사무국은 OECD 50주년 기념을 위해 농업지식시스템 (Agriculture Knowledge System)회의, 인사이트(insight) 책자발간, 특별 워크숍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
-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 뉴질랜드 : 50주년 기념 준비사업간에 중복을 피해야 함(호주도 동일한 의견)
 - 네덜란드 : 금년 글로벌 농업포럼과 50주년 기념 준비를 연계시킬 필요
 - 미국 : OECD의 가치를 제시하는 데에 준비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함

나. 기타

- Part II 프로그램인 “Codes and Schemes”, “협력연구프로그램(CRP)”사업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었음.
- “농업전망 2010~2019”는 오는 6월 15일 로마에서 FAO와 공동으로 발표될 예정임.
- 산하작업반들의 활동현황 보고가 있었음.

1.3. 회의결과 시사점

- 농업위원회 2011~2012년 사업계획안은 사무국 제안내용을 기초로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 조정, 일부사업 삭제 및 추가를 통해 승인됨.
 - 사업안 중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녹색성장과 농업, 기후변화와 농업, 수출제한조치 등은 포함되었으나, 리스크관리(가축분야)는 제외됨.
 - ※ 영국 · 스페인 · EC 등도 리스크관리(가축분야)를 선호함을 표명하였으나, “소규모 농가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선호가 더 많았음.
 - 위원회의 대외관계강화차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농업정책리뷰사업이 추가됨.
 - 한편, Part II 프로그램인 “Codes and Schemes”, “협력연구프로그램(CRP)”사업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었음.
- 글로벌 농업포럼을 오는 11월 29~30일 “식량안보, 빈곤 경감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자는 사무국의 제안이 수용되었음.
- 금번 위원회는 2011~2012년 사업계획안을 결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으며, 사무국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2차례 조정을 거쳐 결정되었음.
 - 사무국은 핵심사업(core) 예산비중을 88%로 하고, 기타 선택사업(choice) 예산비중을 32%로 하여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사무국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일부 사업을 소폭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

특징임.

- 금년 11월 글로벌 농업포럼은 농업위원회의 수평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정인 OECD 50주년에 대한 농업위원회의 기여방안을 모색하는데에 의미를 둘 것으로 전망됨.

2. 제 155차 농업위원회 회의

2.1. 회의 개요

- 일자: 12월 1일(화) ~ 2일(수)
- 참석자 : 농림수산물부 최수아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박사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의제명	관련 문서 번호
세계식량안보 정책포럼	
Adoption of the Agenda	[TAD/CA/A(2010)2]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154th Session	[TAD/CA/M(2010)1]
Director's Statement	
위원회 수평적 협력사업 경과보고	
2011-2012 사업예산계획 보고	
프랑스의 G20 의장국 수입관련 : 정보제공	
농업위원회 대외관계 강화 전략 : 비공개로 진행됨	[TAD/CA(2010)14]
2011년 농업위원회와 부속작업반의 읍저버 특별 초청	[TAD/CA(2010)15]
농업위원회와 산하작업반간의 업무분장 조정안 토론	[TAD/CA(2010)16]
2011년 회의 계획	[TAD/CA/RD(2010)2]

Reports from subsidiary bodies - 상품시장그룹 - 농업환경공동작업반	[TAD/CA/RD(2010)3] [TAD/CA/RD(2010)4]
Part II programmes reporting - Codes and schemes	[TAD/CA/RD(2010)5]
협동연구 프로그램	[TAD/CA/RD(2010)7]
OECD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논의	
농업지식정보시스템(AKS) 회의	[TAD/CA/RD(2010)6]
2011년 농업위원회 의장단 선출	

2.2. 의제별 내용, 검토의견 및 논의 내역

2.2.1. 세계식량안보 정책포럼 (Policy Forum on Global Food Security - 50th Anniversary Event)

가. 주요 내용

- OECD 50주년을 맞이하여 농업위는 FAO와 회원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식량안보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였음(10:00~13:00).
 - 5명의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회원국 대표들과의 토론, 사무국의 의견 개진 순서로 진행됨.
- Hafez Ghanem (Assistant Director General, FAO)
 - 식량안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가 함께 정책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① 생산성증대를 위한 농업부문의 투자확대와 ②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는 것임.
 - 개도국의 경우 농업부문의 투자는 대부분이 농민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으로 정부재정, FDI 순으로 구성됨.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개도국)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는 향후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임.

-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은 농가소득,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정부와 국제기구는 농산물 재고, 농산물 무역, 선물시장, 위험관리(농업 보험 포함), 사회안전망 등의 사안에서 적극적인 정책공조를 모색하여야 함.
- Ambassador Patricia M. Haslach (Deputy Co-ordinator for Feed the Future, US)
 - 빈곤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정책공조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R&D, 인프라 투자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은 40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농업생산성 향상, 지역개발, 농관련산업 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음. 개도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농업부문에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민간투자의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모색해야함.
- Yamashita Masayuki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Affairs, MAFF, 일본)
 - 식량안보 관련 2010년 APEC 정상회의 (Niigata 10월 16~17) 결과 소개.
 - 두 가지 중요 논의사항은 ①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②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임.
 - 농업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국들은 R&D 및 인프라 증진,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농업부문 긴급사태에 대비한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 농촌지역개발과 식량안보강화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정보공유,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정보·정책 공동대응 등을 합의하였음.
 - 무역활성화와 시장투자과 관련해서는 농업부문 투자지원, DDA협상 지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공조 등을 합의함.
 - 식량안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현재 식량자급률이 40%인 일본은 2020년까지 50%로 증가시킬 계획임.

○ Derek Flynn (Deputy Director at UK Foresight, UK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 발표주제 : Global Future of Food and Farming
- 문제제기 : "How can a future global population of 9 billion people all be fed healthily and sustainably?" : 수요, 생산 및 공급, 환경 관련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2050년 식품시스템을 전망함.
- 5가지 직면과제 : ① 수요와 지속가능한 생산의 균형 ② 미래의 변동성 대비 ③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생산량 증대 ④ 기아 근절 ⑤ 생물다양성과 생태시스템 보전
- 세계 식품시스템 분석(각국의 수요 및 생산, 가공, 유통의 변화)은 식품분야의 불확실성과 국제적인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식품시스템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수요 및 생산, 가공, 유통의 변화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상호작용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사할 수 있음.
- 미래 직면과제들에 적합한 새로운 과학적 성과나 정책적 수단을 고려해야 함.

○ Robert Day (Director, International Fisheries Policy, Fisheries and Oceans, Canada)

- 수산과 식량안보위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수산분야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① 국제적인 거버넌스, 규정, 정책 등에 있어 공조가 필요하며, ② 수산업 관리 강화(법적 기반 마련, 과학적 진전)와 ③ 양식업의 발전, ④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특히 수산분야 인프라 개선은 25%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음.

나. 논의 내역

○ 회원국 발언요지

- 뉴질랜드는 식량안보의 개선을 위한 국제무역의 역할, 개도국, 선진국, 국제기구의 차별적인 역할을 규명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함을 지적함.

- 한국은 지난 9월 경주에서 열린 FAO아태지역총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던 국제 식량부족 문제와 빈곤해소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소개함.
 - 핀란드는 수산분야 인프라 개선이 이 분야의 효율적인 식량수급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같은 맥락에서 수산분야의 Food Chain 구축 또한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언급함.
 - 캐나다는 금융위기나 농산물가격폭등이 없었던 2006년에도 기아, 빈곤 문제는 여전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식량위기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대응이 구별되어야 함을 지적함.
 - 스위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며, 이를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프랑스는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목하고, 가격변동성에 대비한 국제적, 지역적 대처방안이 구별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발표자 응답 및 사무국 발언요지
- 올해(2010)의 생산량 감소는 2008년처럼 내년(2011)에 농산물가격급등을 불러올 소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구매력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생산량 증대와, 농산물 교역의 역할이 중요함.
 - 식량안보 문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 빈곤감소 등을 포함한 보다 일반적인 문제이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선진국, 개도국 정부의 공조가 필요함. 개도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농가수준의 민간투자의 확대가 중요함.
 - 세계 식량안보는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어 있고 농업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문제임. 따라서 생산성 증가를 통한 식량증산, 무역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술개발 및 혁신, 자원의 재생가능한 관리방식, 농촌 개발을 통

한 빈곤해소 등의 다양한 정책의 혼합적인 실행이 요구됨.

- OECD는 식량안보를 모든 산하위원회에 공통되는 최우선 의제로 삼아 다루도록 하였으며, 전략적 개발목표 작업반(DEVGOALS WG)이 선도 프로젝트로 시행하고 있음.

2.2.2. 위원회 수평적협력사업 경과보고(Update on Horizontal Initiatives)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사무국은 OECD 모든 위원회의 공통적인 주요 안건으로 식량안보, 녹색성장, 물 관리, 무역과 고용, 여성(gender) 등이 선정되었음을 보고함.
 - 무역과 노동의 경우 G20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짐(2007년 6월 토론토 G20부터 논의 시작, 2010년 11월 서울 G20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 무역자유화와 일자리감소, 고용 없는 성장 등의 이슈와 관계됨.
- 사무국은 내년도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 1)에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 파트의 검토가 12/6~8일 개최되는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이루어지며, 이 회의에서 개정되는 초안에 대해 회원국의 요구대로 위원회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약속함.

나. 논의 내용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녹색성장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유통, 소비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 측면만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함.
- 회원국들은 농업에서 어떤 부분이 여성(gender)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고용이나 농업경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였음.

2.2.3. 2011-2012 사업예산계획 보고 (Update on the OECD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for 2011-12)

- 사무국은 지난 농업위 회의 이후 진전된 작업예산계획(PWB)을 보고함.(12월 16일까지 이사회에서 채택 예정)
- 일부 회원국들(프랑스, 일본, 뉴질랜드)은 향후 농업위에서 PWB에 관한 논의 시에는 전년도 예산안 및 당해년 예산계획안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함(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강조함).

2.2.4. 프랑스의 G20 의장국 수입관련 정보제공: France's Presidency of the G20

- 프랑스 대표는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G20의 주요 의제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농업분야와 관련된 의제인 농산물 가격변동성(가격전이 포함)의 주요 논점에 대해 설명함.
 - 농산품, 특히 곡물 가격의 급변동(2008년)은 세계 식량안보 문제와 직결되며, 개도국의 농촌개발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과도 연계되는 이슈임.
 -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인 정책공조 또는 역할분담(국제기구, 선진국, 개도국, 수출국, 수입국 등), 둘째, 시장의 투명성 확보(국제·지역 곡물시장, 농산품 수급·교역·재고 등의 통계 구축), 셋째, 금융시장(선물시장 포함)의 활성화(규제 정비 포함)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 위원회는 프랑스의 G20 관련 계획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 협조를 기대함.
 - 일부 회원국은 G20 의제인 농산물 가격변동성과 관련하여 농업위가 별도로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를 문의함.

2.2.5. 농업위원회 대외관계 강화 전략 (Global Relations Strategy for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 이사회는 5개 신흥경제국(EE5: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과 관계강화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지침서[C(2010)100/REV2]를 승인했음. 이 지침서는 산하 위원회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계전략에 이러한 이사회 의 우선 목표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재검토하기를 주문함. 이에 대응하여 이 보고서는 농업위가 EE5 및 ASEAN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이나 사업들을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함.
- 사무국은 EE5, 읍저버, 회원국 지위의 차이(권한, 의무, 가입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함. 회원국들은 연계강화전략과 관련한 사무국, 위원회, 산하작업반, 대표단 등 각각의 역할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위의 관심사항과 이들 국가들(EE5, 읍저버)의 관심사항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 회원국들은 연계강화 관련 연구(작업)들이 대상 국가들이 아닌 회원국의 선택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제안에는 EE5나 읍저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 부족해 보인다는 견해임(프랑스).
 - 네델란드는 향후 식량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미미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캐나다는 보고서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함.
 - 회원국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참여, 남아공의 높은 참여 의지, 중국의 선별적인 참여, 인도네시아의 본격적인 참여 예정(2011년), 인도의 참여의지 부족, 나머지 ASEAN 국가들의 연계미흡 등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들과 연계의 정도를 농업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책 토론과 농정검토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를 보임(미국).

- 향후 연계강화 관련 행동계획(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OECD 그리고 농업위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에게 그동안 어느 정도로 다양한 참여기회를 줬으며, 이들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필요함(미국).
- 사무국은 남아공이 농업무역합동작업반에 공식 옵저버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위 외에도 무역위의 별도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회원국 대표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함.

2.2.6. 2011년 농업위원회 및 부속작업반에의 옵저버 특별 초청

-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를 초청하는 것은 아시아권의 참여 비중확대를 위해 좋은 기회로서 적극 환영할 필요가 있음.
- 농업과 무역 사무국은 2011년도 농업위원회와 부속작업반회의에 어떤 옵저버 나라들을 특별초청 할지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원회는 이 제안을 승인하였으며, 이 안은 외부관계위원회(External Relations Committee)로 제출될 예정임.

2.2.7. 농업위 산하 작업반간 업무 변경에 관한 제안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작업반 의제의 조정(재배치)의 주된 목적은 회의일정을 조정하여 대표단의 충분한 의제검토를 보장하고 사무국의 과중한 업무집중을 완화하는 것임.
 - 이번 제안은 APM 회의에서 다루던 3.2.2.1 비목인 시장과 정책의 중기 전망(Outlook, AgLink Cosimo, 농산품시장의 구조적변화로 구성)과 3.2.2.3 비목의 농업과 개발(글로벌식량안보, GFA, MAFAP, 영세농 위협 등으로 구성)의 대부분 의제를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회의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임.

나. 논의 내역

- 대다수 회원국들은 작업반간 의제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의 길이, 제출시기, 검토 단계, 작업반에서 다룰 보고서의 성격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EC,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 보고서는 25 page 이내의 분량이 적합하며, 프리젠테이션 또는 요약(summary) 내용을 대표단들이 검토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EC).
 - 심포지엄이나 포럼에 발표된 보고서를 APM에서 다시 의제화하여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부적절함(미국).
 - 농업위원회의 PWB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산출 분야의 경우, 농업위에서 일부 작업반 의제를 검토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 있음(뉴질랜드).
 - 농업위 소관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 의제들(예를 들어 Outlook)을 JWPAT로 이관하는 방안
 - 농업위 대표단 코너(Delegation Corner)에서 서면의견 교환을 활성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고서의 검토 단계를 줄이는 방안과, 보고서의 진행상황에 따라 APM과 JWPAT의 교환가능성을 부여하는 방안 제시(US, 덴마크)
 - 많은 회원국들은 중기 전망, 농산물시장의 구조변화, 식량안보 관련 의제들은 APM이 계속 소관(통제)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제들이기 때문에, ‘농업과 개발’ 관련 의제들만 APM에서 JWPAT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지함(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소관 의제(개발 관련 의제 제외)의 변경 대신 APM 일정의 확대(1년에 4번)를 제안함.
- 남아공은 현재 JWPAT에서 공식 옵저버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반 의제의 재조정, 특히 남아공과 관련된 ‘농업과 개발’ 의제의 JWPAT로의 이관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아르헨티나는 APM 의제들이 분리되는 것에 반대하며,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모든 보고서에는 스페인어 번역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 스위스, 뉴질랜드, 한국은 작업반간 의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APM과 JWPAT이 연달아 열릴 경우, 본래의 재조정 취지가 무의미해지므로, 회의 일정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을 지적함.
 - 특히 우리나라는 작업반간 업무 재조정 등은 작업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재고나 회원국 입장 반영차이가 아니라 OECD 사무국 업무 안배 필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의견을 피력한 것임.
 - 우리나라는 동일 대표단이 서로 다른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현실에서 회의와 회의(APM, JWPAT) 사이의 기간이 짧을 경우 그 사이에 본국과 파리를 두 번 왕복 비행을 하며 대응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원만한 회의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뉴질랜드도 동일한 의견 피력).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내년(2011)에는 작업반간 의제의 재조정을 하지 않되, 다음 회의에서 수정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함.

2.2.8. 상품시장 그룹

- 상품시장그룹은 주요 임무가 OECD-FAO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농업전망인데, FAO에서는 상품시장그룹회의가 가끔 로마에서도 개최(격년제로 교차 개최 포함)되도록 요청함. 위원회는 2011년 일정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에 로마에서 상품시장그룹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사무국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구.
- 상품시장그룹회의는 농산물시장에 대한 중단기 전망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회의 개최장소는 파리가 로마보다 더 편한 측면은 있지만 FAO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로마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반대할 필요는 없음. 하지만 부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로마에서 개최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농업전망 보고서에 수산부문이 새로운 장으로 추가되며, FAO 수산국에서

초안을 준비하고, 상품시장그룹회의(4월 4~5), 수산위원회(4월말)에서 검토된 다음, 5월 APM에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2.2.9. Part II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 Codes and Schemes

- 우리나라는 트랙터에 관한 코드에만 참여하고 있음.
- Codes and Schemes 4개 프로그램의 2010년도 활동내역과 2011년 계획에 대하여 농업위에 보고함
- 회원국(프랑스, EC)들은 Codes and Schemes 관련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 사무국에 문의하였으며, 사무국은 Codes and Schemes 예산은 참여국(비회원국이 전체 참여국가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공통으로 부담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그룹에서 자체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임을 설명함. (농업위에는 이사회에 앞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임)

2.2.10. 협동연구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를 위한 생물자원 관리

- 농업위에 2010년의 CRP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2011년에 CRP에 지원 신청을 한 연구제목과 국제회의 등을 소개함. 2010년 12월 3일에 개최되는 CRP의 Governing Body에서 자연자원(물 관리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2011년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참여를 돌려함. 연구신청 자격은 회원국에만 부여됨.
- 각국에서는 CRP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신청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 아쉬움. 특별한 의견 없으며 다른 나라의 관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2.2.11. 농업지식체계(AKS)회의 준비사항 업데이트

- 회원국들은 회의 구조, 주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하기로 함(발표자와 참석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 포함).
- 개별 국가별 농업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경험 및 정보공유 의지 표명(미국,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보다 실용적이며 대중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함.
- 2000년 농업지식체계 컨퍼런스의 경우 1회성 이벤트로 평가됨. 이번 회의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관련 연구가 지속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반과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참여를 요청함.
- 농업지식체계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의제별 적당한 발표자가 있을때 참여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2.12.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의장보고

- 농업환경공동위원회 의장(Mr. Frode Lyssandtrae, 노르웨이)이 2010년도 공동작업반의 성과와 주요 발간정보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함.
-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mitigation)보다는 적응(adaption) 관련 정책을 지지·추구하는 입장이며(JWP 의견 문의),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관련 기술의 이전과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 질의함.
 - 이에 대해 JWP 의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정책은 최적은 영농방식, 효율적인 농업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되며, 적응정책과 함께 JWP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국제적인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주제임. 또

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비슷하지만 이를 포함하는 보다 보편적인 개념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2.2.13. 2011년 농업위원회 의장단 선출

- 스페인과 스위스 대표가 차기 농업위 의장단 선출을 위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간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내년에 뉴질랜드와 미국이 농업위의 공동의장을 맡고,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가 부의장을 맡는 초안을 12월 1일 회의에서 제시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공동의장 체제는 주요 사안에 있어 의견조율이 어렵고, 농업위의 위상약화를 가져오며,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하루 뒤 이번 농업위 회기 내에 회원국들의 의견을 다시 조율하여 단일의장을 추대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의견수렴이 됨.
- 그 결과 12월 2일 회의에서 미국의 Gregg Young 대표가 차기의장으로, 뉴질랜드(Neil Fraser), 프랑스(Guilhem Brun), 일본(Hironobu Naka), 오스트리아(Hedwig Wogerbauer) 대표들이 부의장단으로 선출됨.

2.2.14. OECD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논의

- 6월 20~21일 농업위원회 이후 22~23일 이틀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대표단이 OECD 50주년 기념식을 후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함.
- 6월 22일에는 프랑스 대표가 제안한 PWB의 주제와 관련된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국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식품체인 또는 위험관리, 식품안전 및 건강, 기후변화 등의 주제 선정과 파리 근교의 농장(농기업) 또는 협동조합 방문 등에 관한 상세한 일정을 프랑스 대표가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합의함. 사무국은 관련 정보를 Delegation Corner에 제공하기로 함.

- 6월 23일 오전에는 OECD 본부에서 2009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Elinor Ostrom 교수(미 애리조나주립대)의 초청강연이 예정됨.

2.3. 회의 결과 시사점

- OECD 50주년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식량안보정책포럼을 개최하였는바 세계 식량안보는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어 있고 농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 빈곤경감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문제임. 따라서 생산성 증가를 통한 식량증산, 무역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술개발 및 혁신, 자원의 재생가능한 관리방식, 농촌 개발을 통한 빈곤해소 등의 다양한 정책의 혼합적인 실행이 요구됨.
- 프랑스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향후 G20의 주요이슈로 소개하였음.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농산물 가격변동성 및 식량안보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농업위원회의 대외관계 강화전략과 관련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의 경우 산하작업반의 다양한 활동에 공식(또는 비공식) 읍저버 형태이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반면, 인도의 참여의지 부족, 중국의 관심사항 위주의 선별적 참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부족 등은 향후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식량안보’가 농업위원회의 핵심이슈로 논의되는 가운데, 차기 G20의 주요 의제인 ‘농산물 가격변동성’과도 밀접한 관련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앞으로 진행될 국제식량안보 논의를 수입국으로서 잘 활용하는 동시에 수출국의 시장개방(무역자유화)의 근거로 역이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0년도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1년에 2008년도의 농

산물 가격급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국내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작업반간 업무 재조정(농정시장작업반과 농업과무역합동작업반), 2011년도 회의일정 등의 논의에서는 이전대상 의제의 선정에 있어 이견이 존재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의제 분량 감축, 의제검토과정의 효율화, 회의일정에 있어 참여국 편의반영과 같은 실용적인 요구사항들이 제기되었음.
 - 다음 농업위 회의에 사무국은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 전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제 5 장

농업정책과 시장 작업반 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1. 제 51차 APM 회의

1.1. 회의 개요

- 일자: 5월 17일(월)-20일(목)
-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조재호 과장, 박경희 사무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박사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의제명	관련 문서 번호
51차 APM 의제 채택	[TAD/TC/CA/APM/WP/A(2010)1]
50차 APM의 요약본 채택	[TAD/CA/APM/WP/M(2009)3]
OECD-FAO 농업 전망 2009-2018	[TAD/CA/APM/WP(2010)1] [TAD/CA/APM/WP(2010)2] [TAD/CA/APM/WP(2010)2/ANN1]
OECD 국가의 농업 정책	[TAD/CA/APM/WP(2010)3]

OECD 국가와 신흥국가의 농업정책 2011 보고에 대한 제안	[TAD/CA/APM/WP(2010)7]
미국의 농업 정책 개혁 평가	[TAD/CA/APM/WP(2009)22/REV1]
터키의 농업 정책 개혁 평가: 중간 보고	[TAD/CA/APM/WP(2010)1]
EU의 농업 정책 개혁 평가	[TAD/CA/APM/WP/RD(2010)2]
농산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	[TAD/CA/APM/WP(2010)8]
농업의 위험 관리	[TAD/CA/APM/WP/RD(2010)3]
정책 수행의 장기 경향	[TAD/CA/APM/WP(2010)19]
농가 수준 분석을 위한 OECD 네트워크 5차 회의 보고	[TAD/CA/APM/WP/RD(2010)4]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결정요소 - 연구 및 개 발의 역할	[TAD/CA/APM/WP(2010)20]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베트남과 에티오피아 사례 분석 결과 보고	[TAD/CA/APM/WP(2010)22] [TAD/CA/APM/WP(2010)23]
개발도상국가들의 농업 정책 설계: 중간 보고	구두 보고됨

1.2. 의제별 내용, 검토의견 및 논의 내역¹

1.2.1 OECD-FAO 농업전망 2010-2019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세계 농업전망의 내용은 거시경제환경과 에너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세계 농업부문의 공급측면에서의 반응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라 크게

¹ 각 주제별 의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달라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올해의 향후 10년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임. 이는 2009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회복과 농업생산수준의 회복 추세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음.

- 세계 농업부문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특히 최근의 급격한 거시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동 보고서는 OECD와 FAO의 향후 10년간의 세계 농업부문의 전망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음. 반면에 올해의 전망은 아직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와 폭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들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내년에 수행될 농업전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다 주의 깊게 분석되어야 할 것임.
 -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해소문제와 함께, 실업률이 높은 OECD국들에서 향후 민간(특히 소비)부문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는 향후 OECD나라들의 거시경제환경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시경제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농산물 수요전망에 매우 중요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전망이 요구됨.
 - 또한 개도국의 빠른 경기회복과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의 회복이라는 낙관적 가정 역시 이후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임. 특히 개도국의 경기회복 속도와 도시화에 따른 개도국의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는 주의 깊게 분석되어야 함.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의 파급효과 역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어짐.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무역협정의 변화추세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중요함.
 -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평가는 향후 10년간 지속적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기본 가정에 중요한 기반임. 경기회복에 대한 앞서의 지적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변화는 매우 많은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함.
 - 동 보고서는 2016년 경에 lignocellulosic biomass를 이용한 제 2세대 바이오연료가 도입될 것으로 보았음. 향후 제 2세대 기술의 상용화 정도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고 지속적인 분석이 요구됨.

나. 논의 내역

- 미국, 독일 등은 2세대 바이오에너지가 2016년부터 상용화된다는 기본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전망분석의 기초 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
- 사무국은 회원국들에게 OECD에서 사용하는 기본가정(거시경제, 관세율, 정부정책 등)을 바탕으로 세계농업의 추세를 하였고 때문에 분석상 한계가 있음을 명시한다는 전제하에 동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
 - 회원국은 보고서 공개에 동의

1.2.2 OECD 회원국 농업정책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보고서는 초반에 2월에 있었던 농업각료회의에 발표된 선언문 (Communiqué)을 비중 있게 소개함. 주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생산, 국제무역, 제고유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등과 같은 통합된 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이 필수적임.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기술과 혁신의 전파를 위해 개방된 시장이 중요하며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따라서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기후 변화는 농업부분에 있어 도전임과 동시에 기회임.
- 이는 우리나라 농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님.
 - 식품(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서 국내생산, 국제무역, 비축, 그리고 특히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함. 이는 국가 차원의 식품(식량)안보와 함께 개개인이 식품(식량)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반영함.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보조 및 영양공급사업(사업명: 영양플러스사업)이 실시 중인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확대 및 국내농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이 OECD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만큼 우리나라 농업분야 역시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 관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내의 녹색성장 관련문헌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이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3대 축인 환경, 경제, 사회적 발전에서 사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OECD 선언문이 사회적 발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그리고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역시 사회적 발전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환경과 관련해서는 녹색성장 정책이 탄소배출 및 기후변화 대응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환경 보전 및 이용 개선이 농업·농촌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자원 및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함.
 - 한편,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서술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일정정도의 보호주의 성향의 정책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식량)안보의 측면에서 쌀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파급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보호주의적 성향의 정책도 일정부분 요구됨.
 - 농업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업생산부문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특히 연구개발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녹색성장의 핵심이 녹색기술의 개발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은 매우 중요함.
- 금번 선언문은 향후 OECD회원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와 관련 언급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사점 및 대응 사항이 있음.
 - Chapter 2에서 %PSE, 시장 왜곡적인 지지정책의 비중, NPC, NAC, %CSE, SCT 등은 감소하고, 가장 시장 비 왜곡적인 지지정책의 비중, GSSE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업지지정책이 점차 시장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OECD의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임을 언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지지 수준을 보이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부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PSE와 관련하여 동보고서는 PSE 데이터베이스의 한국관련 PSE 지표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내용은 없음.
 - 그러나, 2009년도 M & E 보고서에 비해 한국의 2007년 및 2008년의 PSE 지표가 현저하게 달라진 것에 대해 일반 독자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작년 10월 APM에서 우리나라의 쇠고기에 대한 MPS 계산방식을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한 방식에서 관세를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승인되어, 2009년 보고서에는 쇠고기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MPS를 계산하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음. 이러한 점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지 OECD 사무국 파견관과 논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 새로운 쇠고기 MPS 계산 방식은 2001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본 보고서에 수록된 1986~88년 MPS(쇠고기 MPS)는 어떠한 방식을 적용했는지 사무국에 문의해 보는 것도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 2009년 M&E보고서에 비해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아 1986~88년 기간에 대해서도 쇠고기 MPS를 조정할 것으로 보임.

나. 논의 내역

- EU의 축산물 및 한국 쇠고기 MPS 측정방법의 변화가 현장에서 문서로 소개됨
 - 한국의 쇠고기는 2001년 자료부터 수입관세방법으로 측정되면서 PSE 수치가 상당히 개선됨
- 요약본 및 제1장(농업지지와 정책발전) 중 각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를 한 가지씩 기술한 부분에 대하여 노르웨이, 스위스, EU 등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등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평가 내용중 불만사항에 대하여 문장 수정 내지 보완을 요청
 - 미국은 OECD 농업각료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농업과 기후변화 협상 정리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EU는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
- 한국은 한국의 농업정책 개혁노력이 제3장 국가별 농정개요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요청문안을 서면으로 제출함
 - * 서면제출내용 : 한국은 농업보조금을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키로 이해관계인과 합의하였으며 맞춤형 비료 공급 등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도입중
- 사무국은 이견이 많았던 단락의 삭제 등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회의 마지막 날 수정보고서를 배포하였으며 회원국은 이에 대해 공개를 승인함
 - * 사무국은 한국 서면의견을 반영한 수정문안을 제시함

1.2.3 미국의 농정개혁 평가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OECD 회원국에 대한 국가별 평가는 10년 정도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미국 농정평가는 2009년도에 3차

례 논의되어 이미 많은 내용들이 보완되어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은 찾기 어려움.

- 미국에 대한 정책권고는 1998년 OECD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정책 판단기준인 명료성, 목표성, 맞춤형, 융통성, 형평성의 차원에서 각각 관련정책의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서 2008년의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정책권고와 유사함.
- 미국이 2008년 농업법에서 종전의 가격에 대한 보장을 가격과 생산량을 동시에 고려한 평균작물수입선택제도(ACRE, 일종의 소득보전 정책)를 도입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방향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앞으로 미국의 ACRE 제도의 참여율, 지급실적 등을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음.
-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은 아직도 국제가격의 등락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크게 변동될 여지가 있음.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에서 보조금을 대폭감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AMS를 5년동안 60%를 감축하여야 하는데,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면 AMS 한도에 걸리게 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면화보조금은 일부 최빈개도국의 이해와 상충되는데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적으므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음.

나. 논의 내역

- 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의 발언내용을 반영하여 사무국에서 미국 농정개혁 평가 수정안을 제안함. 동 보고서는 2008년에 개정된 미국 농업법을 위주로 하되, 1985년 농업법 이후의 미국의 농정개혁의 성과를 다룸.
- 미국은 사무국 보고서 내용 중 식량원조, 원산지표시, 평균작물수입 선택제도(ACRE), 면화, 바이오연료 등에 대한 서술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동보고서 공개를 11월 작업반회의시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
- EU는 미국의 농촌개발정책이 유럽의 농촌개발정책과 차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설탕, 낙농, 에너지 정책 분석내용에 이견이 있다고 언급. 특히 2008

- 신농업법 성격 규명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
-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의 원산지표시제(COOL) 도입 목적에 의문을 제기
- 사무국은 6월까지 미국 등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아 수정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작업반회의에서 공개를 추진키로 함

1.2.4. 터키의 농업 정책 개혁 평가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터키는 경제성장 잠재력, 농업발전 등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까지 터키의 농업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터키의 농업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우리나라는 가까운 장래에 터키와 FTA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터키가 맺은 기존 FTA의 내용, 농업부문 양허 등을 파악하고 터키의 농업정책, 무역제도, 동식물검역제도, 원산지 표시, 기술장벽 등에 관해서 충분히 연구할 필요

나. 논의 내역

- 사무국은 2001년 농업개혁이행계획(ARIP)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정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근의 정책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 목차를 제안
- 회원국들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음

1.2.5. EU회원국의 농정개혁 평가: 사전보고서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금번 자료는 사전보고서로서 3장과 4장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짧은 설명만 있고 아직 정책제안이 들어갈 결론 부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요

- 변 회의에서는 주로 2장(농업보호수준과 방식)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 필요시 지난 3월에 있었던 전문가 토의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세부주문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듬.
 - PSE %PSE 등 다양한 측정도구가 이용되어 EU의 정책개혁과 이에 따른 보호수준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는 보고서임.

나. 논의 내역

- 사무국은 EU농정개혁 평가보고서에 수록될 내용중 EU 농업현황 및 농정개혁의 역사에 관한 1,2장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하고 앞으로 모델을 이용한 시나리오분석과 농정개혁평가 및 권고내용을 작업할 것임을 설명
- 네덜란드는 직접지불의 비연계수준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책분석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민감도 분석을 추가할 것을 요구.
- 미국은 공동농업정책이 농촌개발관련 지불의 일부분이 PSE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농촌개발 관련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이 WTO원칙에 비추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사무국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 보고서에 반영하고 연구를 진행 하여 하반기 작업반에서 보고서 공개를 추진키로 함

1.2.6. 투기와 재정 자금 활동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2006년~2008년의 급작스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많은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갑작스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과 함께 투기자본의 유입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index fund의 유입이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음.(index fund와 투기자본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in-

dex fund가 최근 많이 선물시장에 유입된 것은 사실임). 따라서 각국이 선물시장에 투자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정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결론이지만 여러 가지 분석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른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도 참조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선물시장에 아직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요한 정책적 참고가 될 수 있음. 특히 선물시장과 관련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이와 관련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정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함.

나. 논의 내역

- 외부전문가가 선물시장 인덱스 펀드가 농산물 가격상승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분석하였음
- 스웨덴,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일부국가는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 불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 결론을 지지
- 일본은 index 펀드 거래약정기간 문제 등 분석대상과 연구방법상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EU는 선물시장 거래펀드 중 인덱스 펀드와 스왑거래만을 분석하여 연구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
- 사무국은 회원국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작성하되, OECD 사무국장 책임하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함
- * 사무국은 회원국 간 첨예하게 이견이 있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고 회원국의 발언을 감안하되 사무국장 책임하에 공개하는 차선책을 선택

1.2.7. 식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전환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본 보고서는 전환 및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식품 공급 체인의 변화가 부의 증대 측면과 함께 후생 및 분배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농식품 시스템의 변화, 특히 식품 공급 체인의 주요 부문인 가공과 소매 부문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기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식품 공급 체인 또한 최근 20년간 전통적 유통시스템에서 신유통시스템으로 빠르게 변화하였음. 신유통시스템이 전통적 유통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과거에는 산지의 농산물이 주로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었으나 최근에 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대형화, 집중화가 급속히 진행된 결과 산지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간의 거래가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임.
- 본 보고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소매 부문을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인의 변화가 생산부문의 생산성, 소득, 부의 분배, 농업 부문 고용구조, 성평등, 농업인의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영향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미비했음.
 - 특히 본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소매 부문의 집중화, 규모화로 시장 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계약 및 수직 협력 과정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생함. 그 예로 PB(Private Brand) 상품강요, 저가납품강요, 판촉비·물류비 전가, 입점료(slotting fee) 부과 등이 있음.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견제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예를 들어 미국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

나. 논의 내역

- 프랑스는 소매부분에 대한 투자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요청
 - 독일은 증거자료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소매부분의 집중화와 거대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
- 브라질은 결론을 지지하지만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s)에 대한 연구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사무국은 민간 표준(Private standards)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이루어졌으며 동 보고서의 주제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사례 찾기가 어려움을 언급하고 회원국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1.2.8. 토지 시장 개발: 농지와 농업 기반구조에의 개인 부문 투자

- 이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류는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하여 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다는 점, 세계적 식량 사정 등을 보아 농지 및 농업 인프라에 대한 사적 자본 투자는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고 있음. 그런데 이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자인 HighQuest Partners의 제한된 자료와 인식의 한계가 드러남.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는 있으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동남 아시아에서의 중국, 걸프지역(중동지역)국가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은 한계를 지님.
- 또한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 최근 신식민지주의의 재현 논란 등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인 측면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논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장래 투자 추세와 투지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사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

음.

- 전반적으로 농지 및 농업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최근 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많음. 다만 외국인 투자의 리스크는 각 나라에 존재하는 지역 특유의 제도, 관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서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1.2.9. 개발 도상국가 농업에의 해외 투자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보고서가 투자유치국의 발전 측면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이 더 부각된 한계가 있었지만, 이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도국 농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실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협력, 국격 제고 등이 주요 국정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이 보고서의 논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많음. 우리의 식량 안보 기반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투자 대상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투자대상국가의 법, 제도 정비 등에도 단기적 이익의 측면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안정적 발전이란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국제적 규범 마련 작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또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중국, 걸프지역 국가들의 경쟁적 참여 등을 고려하여 해외 개발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보고서의 내용에서처럼 토지확보 등 직접적 투자 방법만이 아니라 합작 투자, 계약 농장 창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내역

-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외국인 투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식량안보나 농민 및 정부입장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 미치는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
- 또한 외국인 농업투자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EU는 투자해당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투자자와 해당정부(지역)간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
 - 프랑스는 현재 외국농업에 투자하는 국가의 투자사유, 투자대상국, 자산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입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므로 누구를 위한 행동강령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미국은 FAO가 제시하는 투자원칙으로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은 ‘code’ 용어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voluntary)인 투자 촉진과는 상호 모순됨을 언급
 - 해외농업투자원칙이 마련되더라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표명
 - 사무국은 FAO보고서는 OECD 요청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 수정권한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외부 전문가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아 수정 보고서를 작성키로 함

1.2.10. 농산물가격변동이 개도국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개도국의 경우 가구당 경작면적이 작아 자급자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판매보다 구매 증가액이 더 많아 오�히려 궁핍해진다는 논리를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소득계층별로도 나누어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위(5계층)와 상관없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점은 의외라 할 수 있음.

- 2007/8년도에 전 세계적인 농산물의 가격폭등이 있었더라도 품목별로는 가격의 상승시기와 상승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각국의 주요 생산품목 혹은 소비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가격상승이 농촌가구의 후생에 미치는 분배적 영향은 국가별로 또 품목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의미 있음.
- 대부분의 농촌가구의 순판매비율(net benefit ratio)이 0보다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농촌가구의 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며, 사실 여기에서 분석한 품목(쌀, 밀, 사료작물, 서류, 유지작물 등)은 쌀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대응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논의 내역

- 보고서는 최근의 곡물가격 급등이 개도국의 농촌지역 주민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의 농산물가격 전망이 이들 나라에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분석
- 캐나다는 농산물 가격의 계절별 변동성이 고려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독일은 분석된 9개 국가 외에 중국, 인도에 대한 추가 분석과 연구에 활용한 국가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함
 - 프랑스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가격전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사무국은 캐나다가 언급한 농산물 가격의 계절적 변동성 반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모델링의 한계로 고려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기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기로 함

1.2.11. 국제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신흥경제국의 정책 대응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동 보고서의 목적은 최근의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한 주요 신흥경제국의 단기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것들의 국내시장과 무역흐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동 보고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우 심도있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동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는 과거의 신흥경제국의 정책적 대응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에 발생되어질 상황에서의 정책적 선택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 국한됨.
-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향후에 다시 가격급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 임. 이러한 점에서 각 정책방안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전반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이는 동 보고서의 범위에서 벗어남. 동보고서의 목적이 정책의 영향분석에 국한 된다는 점에서 각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이후에 다른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수행되기를 바람.
- 제 1장 5절 왜 각국은 다르게 반응하였는가?(Why do governments respond differently?)는 1장 2절 다음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제1장 5절은 각국의 다양한 정책반응의 유형, 시점, 폭이 각국의 소득수준, 소비자 지출에서 식료품의 비중, GDP와 고용에서의 농업의 비중, 재정적 여력 (fiscal capacity) 등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적 선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현재의 위치(제1장 5절)는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전체 보고서의 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경정보로서 보고서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같음.

나. 논의 내역

- 외부전문가 보고서는 최근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한 주요 신흥경제국의 단기적 정책대응을 분류하고 국내시장과 무역흐름에 미친 영향을 분석
 - 각국의 단기 정책들은 크게 식품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일반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정책, 소비자 및 생산자 보조 정책 등 4가지로 분류.
- EU는 Aglink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프랑스는 재정적 비용 외에 사회적 비용, 정부정책 등 다른 요인도 검토해야 함을 지적함
- 일본은 각국이 다른 정책반응을 한 이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독일은 가격전이, 국제 식량재고량의 영향 등을 추가 연구할 것을 요청함
- 사무국은 동 보고서의 민감성과 회원국들간 입장차이를 감안 사무총장 책임하에 보고서를 공개키로 함

1.2.12. 미래의 상품가격상승에 대한 신흥경제국의 정책대안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보고서는 2007/08년의 상황과 비슷한 농산물 가격급등현상이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였을 경우, 주요 신흥경제국들에서의 특정 대응정책들이 시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개도국의 정책조치로서 국경조치(border measure), 소비자 보조(consumer subsidy), 그리고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과 같은 세 가지 정책대응들의 시장과 납세자에 대한 국내적 영향과 아울러 다른 신흥경제국들을 포함한 국제시장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됨

나. 논의 내역

- 일본은 국제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별 단기효과 분석을 요구하고 국가별 대응보다는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함.
- 프랑스는 대상국가 선정시 북아프리카가 제외되었음을 지적하고 3가지 조치에 대한 개별적 분석보다 종합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
- 미국은 보고서에 분석방법의 한계를 적시할 것과 비축정책의 시장에 대한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사무국은 사무총장 명의로 보고서를 공개키로 하고 향후과제로서 국가 간 정책대응의 관계를 다룰 계획을 발표함

1.2.12. 위험 및 위험관리전략 정책의 농가단위 분석: 국가별 분석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이 보고서는 분석대상인 7개국의 농가단위 자료의 통계분석을 통해 각국이 처한 위험환경을 잘 설명하고 있고 농가차원에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그에 맞는 전략은 국가전체 차원에서의 위험 요인과 전략과는 차별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농가단위 위험관리 전략 수립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농가 및 시장의 위험관리 전략과 정부의 위험관리 정책간의 상호 연계성 및 충돌가능성을 시뮬레이션 모형 분석으로 제시하여, 농가와 시장차원에서 위험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관리부문에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인프라조성 및 관리체계 정비가 선결과제임. 따라서 각국의 농업발전 및 위험관리 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농가 및 시장지향성 위험관리 수단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
 - 농업경영 위험은 일반 기업 경영의 위험보다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한 가격 및 수량 위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으며, 관련시장

에서 위험관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각국의 농업발전 및 위험관리 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정부의 개입 및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임.

나. 논의 내역

- 보고서는 개별 농가가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7개국(호주, 스페인,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의 농가단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특히, 영국과 호주 대상으로 확률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하여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이 농가소득 분포, 농가 후생 및 영농 위험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함.
- 한국은 농가의 영농형태, 경영규모, 경영자의 능력 등 각 농가유형에 맞는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프랑스는 농가 생산다각화 지표 선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캐나다는 소득 이외에도 효율성을 후생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회원국은 공개를 승인함.

1.2.13.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 호주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호주는 가뭄 등 기후 및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특성으로 인해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함
 - 농가/지역 사회, 시장, 정부에서 다양한 위험 관리 수단이 실행되고 있음.
- 농가는 농가 단위의 위험 관리 전략을 스스로 실행하고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서 농가를 지원한다는 위험 관리 전략의 기본 원칙을 우리나라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정부와 농가간에는 위험과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이는 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위험 관리 정책 실시는 농가의 자체적인 위험 관리 전략 실행을 저해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심화시킴.
 - 따라서 농가의 자발적 위험 관리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 위험 관리 정책의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가물 정책의 EC 발동 메커니즘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적절한 위험 관리 비용 분담은 중요함.
- 가축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차별화하는 바이오 안전성 파트너십 배분(Bio-security partnership arrangement)은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내역

- 호주는 연구의 초점을 정책제안 파트 부분 둘 것을 주문하였으며, 프랑스는 호주의 가물대책이 중요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호주의 경우 토양습도 유지가 중요하며 향후 가물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언급함

1.2.14.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 뉴질랜드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농업선진국인 뉴질랜드의 농업위험관리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농업 위험관리 정책에 시사하는 바 있음.
- 뉴질랜드의 위험관리제도와 경험 등을 벤치마킹하여 농업 위험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뉴질랜드의 농업 위험관리의 큰 특징은 농가 및 시장의 위험관리 수단의 비중이 크며,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 위험 관리 등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도 농업위험관리에서 작물보험, 수직통합,

계약생산, 유통협약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 지향성이 낮은 편으로 지속적인 시장관리수단의 확대 필요

- 뉴질랜드와 같이 아직 농가의 위험관리 대응역량 및 위험관리 시장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위험관리 방안을 지향하되, 단계적인 시장 지향적 관리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위험관리부문에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전까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지향성 위험관리 수단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내역

- 뉴질랜드는 연구방향을 다른 국가와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캐나다는 농가소득 측정이 제대로 된 것이지 의문을 제기
 - 사무국은 농가소득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 등 보완을 추진키로 함

1.2.15. 위험관리에 대한 주제 검토: 스페인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스페인의 농업위험관리제도, 특히 농업보험은 우리나라 농업 위험관리제도에 시사 하는바가 큼.
 - 우리나라도 지수보험, 수입보험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농업환경 및 시장 위험관리시스템 수준이 다르므로, 새로운 유형의 보험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 무사고 계속가입 농가 등에 대해 정부의 보험료 추가지원, 환급금 제도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필요

나. 논의 내역

- 스페인은 자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언급하고, 프랑스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사무국은 추가적인 자료 확보 등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을 추진하기로 함

1.2.16. 외생적 위험과 가격 변동성의 총계모형 분석: 연구제안서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우리나라 차원에서 농식품 가격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모형 이용가능

나. 논의 내역

- 사무국은 농식품 가격변화는 농식품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충격과 조정의 다른 요인과 관련되어 있어, 가격변동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부분 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연별 가격변동성의 원인을 수량적으로 제시하고자 연구제안서 제시
- 한국은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성 분석은 거시경제변수를 외생변수로 사용하는 현재의 부분균형모형인 Aglink 모형으로는 분석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OECD가 제시한 분석방법론 중 확률적 예측방법 역시 통계적 해석 측면에서 완벽하지 못함을 지적함.
- 독일과 미국은 가격단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프랑스는 AGLINK의 동적모형에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사무국은 Aglink의 가격단위는 연간단위이나, 사전분석 등에서는 월별단위

가 활용될 것이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키로 함.

- 또한 한국에서 제기한 부분균형모형의 한계를 각주 등을 통해 명시할 것을 언급

1.2.17. 정책 수행의 장기 경향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OECD PEM 모형 분석 중 두 개의 지수(Iso-farm income, Iso-production index)의 기울기가 과거시간에 따라 상의한지를 테스트하는 분석이 있었음. 이 분석에서 분석대상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우리농업 정책의 문제점이 평가됨. 즉, 그동안의 한국 시장가격보조정책이 생산자의 소득이전효과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임. 따라서 이에 대한 정밀검토가 요구됨.
- 또한, 유럽과 스위스의 농업정책변화와 방향을 참고하여 couple payment에서 decouple payment 등으로 농정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함. 또한 유럽의 CAP 정책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 논의 내역

- OECD는 정책 효율성 평가를 위해 PSE 이외 명목지원계수(NAC), 명목보호계수(NPC)를 개발하였으나, 생산, 무역, 농가소득에 대한 정책효과를 분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번에 새로이 OECD의 관세 상당치 접근법(tariff-equivalent approach)을 제안함.
 - 기존 OECD 지표들과 비교 하였을 때 정부정책효과의 측정방법을 보다 개선했음을 언급
- 회원국들은 새로 개발된 3개의 지표가 기존 지표와 차별성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보고서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한국은 새로 개발된 지표들도 PSE방법과 같이 국제가격과 환율 등 거시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PEM모형의 가정(국제거래상품의 동질성)은 최근 원산지표시제 등으로 소비자가 이질적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모형설정에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함.
- 미국, 캐나다는 오직 EU, 스위스의 평가결과만이 긍정적으로 도출되는 등 신지표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
- 아르헨티나는 동 지표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
- 사무국에서는 신지표의 경우 국가 간 비교가 보다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모델이 갖는 한계도 있음을 강조하고 보고서 내용을 쉽게 서술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신지표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언급
 - 또한 동 지표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회원국의 자료제공 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한국 농정평가시 한국정부와 농경연이 보여준 협력을 좋은 사례로 언급

1.2.18. 농가 단위 분석을 위한 OECD 네트워크 5차 회의 보고서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농가단위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향후 작업에 참여 필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생산성과 경쟁력, 농가의 소득구조, 농가 지원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경우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됨
- 우리나라도 농가의 기본통계 농가경제에 관한 통계 등이 있으므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음

나. 논의 내역

- 사무국은 5차 회의에서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에서 24명이 참석하여 캐나다와 토스카니 지방의 농가지원 분포에 관한 연구 결과와 생

- 산성 향상에 관한 네트워크의 기여방안 등을 논의하였음을 구두보고 함
- 사무국은 동 네트워크와 APM의 합동세미나를 제안하고 농가단위 네트워크 6차 회의가 파리에서 9.9-10 개최예정임을 설명

12.19. R&D가 농업혁신 및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농업부문에서 연구기술 개발과 생산성 증가의 상호관계를 규명한 문헌연구로서 이 분야에서의 개념 정리와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함.
- 민감한 사안을 다룬 보고서는 아님. 정책에 대한 평가, 특정국가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정책을 제안 하는 등의 내용은 없음.
-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연구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의 요지임.

나. 논의 내역

- EU는 국가별 비교분석 등 심층연구가 부족하고 정책적 평가가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프랑스는 일부 결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
- 일본은 BCR 계산시 주별 이자율이 상이한 점, 품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아 외부전문가에게 전달할 예정임을 설명

12.20. 농업·농식품분야 경쟁력, 생산성, 효율성: 문헌고찰을 통한 정의, 측정방식, 연구결과 분석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R&D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됨. 농업생산보다는 가공, 유통, 식품 쪽이 훨씬 더 이질적이므로 가공, 유통, 식품에 대한 공공투자가 보다 큰 효

과(생산성, 효율성, 경쟁력 향상)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의 확산효과(spillover), 우선순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함.

- 국가 간 경쟁력 비교를 한 연구결과들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음. 측정방식, 자료, 측정지표 등에 따라 비교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임.나. 논의 내역

나. 논의 내역

- 한국은 공적 R&D투자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요인임을 강조한 본 보고서에서 자본이 무역 경쟁력의 비교열위요인이라는 연구논문(Peterson & Valluru(2000)) 삭제 요구.
 - 단락 142 “제조분야는 너무 이질적이어서 공적투자가 성공적이기 어려움”의 내용을 “가공, 식품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는 공공성, 확산가능성을 고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으로 바꿀 것을 제안.
 - 현장전문가 수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의 이유를 데이터 부정확으로 들고 있는 Hall & Scobie(2006)의 삭제 요구.
- 미국은 경쟁력 개념에 대한 전문가 인용내용이 너무 길고 경쟁력지표에 대한 상세한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
 - 프랑스는 농업생산과 농식품 가공의 경쟁력 지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연계성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표를 추가할 것을 요구
- 일본은 소비자 선호가 국가마다 다르고 경쟁력 총합지표 작성은 변수의 가중치 설정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 사무국은 한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장을 삭제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외부전문가에게 전달하고 향후 연구작업시 반영하겠다고 언급

1.2.21.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베트남 사례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본 보고서는 개도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에 농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분석한 사례보고임. 베트남과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 무역, 농지제도, 유통개혁 등 농정변화와 바람직한 농정방향 등을 제시
- 베트남은 앞으로 우리와 교역이 활발해지고 지금도 농산물 교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가임. 따라서 베트남의 농업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통상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고 농업부문에 앞으로 개발협력사업이 늘어날 것인바 베트남도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가 중의 하나이므로 베트남과 농업부문 개발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농업기술이전, 농촌마을개발, 전문가 연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나. 논의 내역

- 베트남 보고서에 대하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이 관심을 보임
 - 서론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과 정치적, 사회적 특성에 관한 충분한 기술필요
 - ‘도이모이’개혁의 긍정적 영향 및 농업과 비농업분야간의 관계 등을 추가분석요구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도네시아와 가나에 대한 보고서를 11월 작업반에 제출할 계획을 설명

1.2.22.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완화를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에티오피아 사례 분석

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중요한 국가로 앞으로 개발협력 등을 통해 관계를 키워나가야 할 국가임. 특히 농업협력이 중요함.
- 이 보고서를 통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우리의 기술, 재원을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연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농업기술이전, 농촌마을개발, 전문가 연수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나. 논의 내역

- 에티오피아 보고서에 대하여 회원국들인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음

1.2.23. 기타 논의 사항

가. 개도국 농정설계

- 말라위, 가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을 대상으로 한 농정설계보고서가 11월 작업반에서 제출될 예정

나. OECD 지역 세미나

- 1.19-20(미국), 5.10-11(폴란드), 5.11-12(일본, 농업전망전문가 대상) 지역 세미나 결과를 소개
- 9월(독일, 농경제 및 사회학자대상) 및 11월(장소미정, 위험관리주제) 지역 세미나를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

다.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녹색성장과 농업보조금)

- 사무국은 녹색성장전략 중간 보고서 내용 중 농업보조금과 녹색성장 관계를 소개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소개하고 내년 전략부분을 포함한 통합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나 보고서 구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농업 등 분야별 작업보다는 총괄적인 보고서가 될 것임을 언급
-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농업보조금내용이 녹색성장의 장애요인 파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보다 중립적인 내용이 되도록 6월 농업위원회에서 동 내용을 논의하기를 희망
 - 사무국은 회원국의 우려사항을 녹색성장 보고서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나 동 보고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항이며 이사회에 보고되는 모든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언급

라. 기타

- 개편된 ‘대표단 코너’ 소개 및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하고, ‘농업용수의 지속 가능한 관리(한국, 일본 등 10개국)’에 대한 책자발간 소개

1.3 회의 결과의 시사점

- 이번 농업정책작업반 회의에서는 OECD-FAO 농업전망(2009-2018), 2010 회원국 농업정책 모니터 및 평가, 회원국과 신흥국 농정에 관한 2011 보고서 제안, 미국, EU, 터키의 농정개혁 평가, 농업상품시장의 구조적 변화, 농가위험관리, 정책평가모형(PEM, Policy Evaluation Model) 관련보고,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OECD 5차 네트워크 보고, 농업혁신과 경쟁력, 농업과 개발, 개도국 농정 설계 등 13개 의제가 논의되었음.
 - 특히 2008년 세계 농산물가격의 상승 및 급격한 변동을 바탕으로 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를 야기하는 원인과 영향의 정도, 가격변동이 계층별로

- 후생에 미치는 영향, 가격급변에 대한 개도국들의 정책 대안의 효과분석 등 8건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음
- 각 국은 2010 회원국 농정평가(At a glance)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연구보고서에 대한 토론 시 유럽과 미국의 직접지불금 정책 차이에 기인한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함.
 - 한국 대표단은 한국농정평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제기하였으며 사무국은 이를 수용한 문안을 제시함
 - 2008년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문제와 관련한 외부전문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입국가 간 의견이 충돌함
 - 특히 투기자본(선물시장)이 농산물 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국제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신흥 경제국의 정책대응, 미래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한 신흥경제국 정책대안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책임하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
 - 농장 및 농업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적절한 규범을 설정하되 해외 투자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됨
 - OECD 사무국이 신규 개발 중인 정책평가지표(유사관세상당치 등)에 대해서는 지표개발의 실효성 등에 대해 많은 국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임
 - 금변회의 논의 주제 중 “각국의 위협관리 정책” 및 “외국 민간자본의 개도국 농지에 대한 투자”, “R&D의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관련 연구는 관련 국내 정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관심이 필요함
 - 특히 냉해피해,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농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농업보험제도, 호주, 뉴질랜드의 차단방역정책은 정책수립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개도국에 대한 해외농업투자 원칙 수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FAO, WFP 등 식량기구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OECD 투자위

- 원회에서 작성중인 “책임있는 농업투자” 보고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6.1-6.2. 개최예정인 농업위원회에서는 차기 작업과제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인바, 사무국의 제안 검토와 우리의 관심사항이 반영된 추가 작업과제에 대해 사전 준비작업이 면밀히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녹색성장과 농업보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입장을 정리하여 회의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제 52차 APM 회의

2.1. 회의 개요

- 일자: 2010년 11월 15일(월)~17일(수)
-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최수아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박사, 문한필 박사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의제명	관련 문서 번호
2011년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의 농업정책 보고서에 대한 제안	[TAD/CA/APM/WP(2010)24]
미국의 농정개혁 평가	[TAD/CA/APM/WP(2009)22/REV3]
터키의 농정개혁 평가	[TAD/CA/APM/WP(2010)25]
EU 농정개혁 평가	[TAD/CA/APM/WP(2010)26]
정책 실행의 장기적 추세	[TAD/CA/APM/WP(2010)19/REV1]
PSE개선: PSE 산출시 품목확대	[TAD/CA/APM/WP/RD(2010)6]
OECD 국가와 신흥국가의 실질 농업보조 변화	[TAD/CA/APM/WP(2010)27]
OECD 워크샵: 농업에서의 위험 관리	[TAD/CA/APM/WP(2010)28]

: 효과적인 정책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호주	[TAD/CA/ APM/WP(2010)15/REV1]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뉴질랜드	[TAD/CA/ APM/WP(2010)16/REV1]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스페인	[TAD/CA/ APM/WP(2010)17/REV1]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캐나다	[TAD/CA/ APM/WP(2010)29]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네덜란드	[TAD/CA/ APM/WP(2010)30]
외생적 위험과 가격 변동성의 총계모형 분석 : 중간보고서	[TAD/CA/ APM/WP(2010)31]
농업전망 Update	[TAD/CA/ APM/WP(2010)32]
농산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 a)가격 변동성 변화	[TAD/CA/ APM/WP(2010)33]
밀 가격 변동성	[TAD/CA/ APM/WP(2010)34]
농업의 민간 금융 부문 투자	[TAD/CA/ APM/WP(2010)35]
상품가격안정을 위한 국제상품협약들의 평가	[TAD/CA/ APM/WP(2010)36]
식품 체인 분석을 위한 제안	[TAD/CA/ APM/WP(2010)37]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OECD네트워크 6차 모임 보고	[TAd/CA/ APM/WP/RD(2010)7]
OECD 국가들의 보조금과 소득 분포	[TAD/CA/ APM/WP(2010)38]
지속개발 및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연구 : 인도네시아 , 가나 사례연구	[TAD/CA/ APM/WP(2010)39] [TAD/CA/ APM/WP(2010)40]
개발도상국의 농업정책 선택	[TAD/CA/ APM/WP(2010)41] [TAD/CA/ APM/WP(2010)42] [TAD/CA/ APM/WP(2010)43]
2007-2008 식량위기와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농산물시장 안정화정책	[TAD/CA/ APM/WP(2010)44] [TAD/CA/ APM/WP(2010)45]
녹색성장과 농업	[TAD/CA/ APM/WP(2010)46]

2.2. 의제별 주요 내용, 검토의견 및 논의 내역

2.2.1. 2011년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의 농업정책 보고서에 대한 제안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이 M&E 보고서는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서 2011년에는 신흥경제국에 관한 내용도 함께 묶어 발간한다는 것으로서, 특히 OECD 회원국과 신흥경제국의 다양한 차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좋은 시도라고 생각됨.

나. 논의 결과

- 서면의견 수렴후 2011년 3월 APM에서 초안 제출하기로 함
- 사무국은 기존 결정사항에 따라 신흥개도국을 포함하고(다만, 인도는 미포함 됨), 신흥개도국 포함에 따라 농업지지 측정수단인 PSE 분류방식을 현행 7개 구분에서 3개로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함. 또한 보고서의 명칭으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을 제안
- PSE 분류방식의 단순화에 대해 EC,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등은 구분상의 불명확성(least coupled와 decoupled 구분 등에서 사실왜곡 요인)과 용어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면, 미국은 단순화할 경우의 향후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또한, 인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EC와 독일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네덜란드는 국가별 보고서 주요항목에 “식품안전, 농업환경정책”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국가별 주요 발언내용
 - EC: 기존의 7가지 PSE 분류항목을 세 가지로 단순화하였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음. least coupled는 decoupled를 포함할 수 있어서 사무국

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화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할 수 있게됨. 따라서 least coupled와 decoupled를 구분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구. 특히 ③ Least coupled forms of support(E+F)는 비연계소득지지(decoupled income support)를 포함하고 있는데, EC는 비연계보조가 최소연계(least coupled)라는 명칭으로 명명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3번째 항목의 이름을 'decoupled forms of support'로 변경해야만 함. 또한 ① Most coupled forms of support는 <그림1>의 주에서 자발적인 제약(voluntary constraints)을 제외한 가변생산요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6page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Most coupled(최고연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약의 자의성의 유무를 떠나 제약 자체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또한 무역수지 계산시 WTO처럼 수산(fish)을 빼고 농산물만 따로 고려하는 것을 제안함.

- 미국: ② Partially coupled 와 ① Most coupled forms of support 구분 기준이나 용어선택(terminology)이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not mutually exclusive). 새로운 분류방식을 별도의 Chapter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될 것인지. 만약 계속 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 관리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시.
- 노르웨이: 오해의 여지가 작은 기존 PSE 분류방식 선호. 'distorting'이라는 용어는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선행된 다음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류항목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함.
- 캐나다 : OECD가 보고서에 제안한 세 가지 분류방식보다 특정 투입재, 생산물 연계 직불과 이외의 것처럼 두 항목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임(coupled vs decoupled로 분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그림2>에서 PSE 외에 TES를 추가 제시하는 것은 중복된 정보제공이므로 불필요함. <표3>의 생태적 직접지불(Ecological payment)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기에는 국가마다 해당보조의 사용(정도) 여부

가 다를 수 있고 <표2>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당하지 않음.

- 프랑스: 기존의 PSE 7개 항목 구분 선호, <표1>과 <표2>가 일관되지 못함. 불변가격(constant price)을 이용한 PSE 계산을 제안.
 - 네덜란드: 국별 보고서(Annex 1)에 식품안전(Food security)과 농업환경 정책(Agri- environmental policy)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호주: 국가별 농업현황에 농가수(number of farms) 포함하는 것에 반대. 호주는 농가수가 상대적으로 작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규모 등의 특징)이 없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일본: 용어의 민감성, WTO와의 일치 등의 측면에서 PSE 분류에 대한 EC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공감. 기존의 PSE 7개 구분방식을 선호함. 네덜란드의 국별 보고서에 식량안보 항목의 추가 제안을 지지함.
- 사무국은 M&E 보고서에 식량안보 내용을 담는 방법을 고려하기로 함. 또한 <그림1>은 3개의 구분방식(독자들의 이해 편리 목적)으로 가되, 회원국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명칭을 바꾸기로 함. 별도로 의제 토의 다음 날 캐나다의 제안대로 PSE를 2개 항목으로 구분한 그림을 제시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결과 PSE를 기존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 물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서면의견을 받기로 함.
- 사무국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토대로 서면승인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회의(2011년 3월)에 초안을 보고하겠으며, 인도정부에 참여협조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함.
- PSE 분류방식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대표단코너를 통해 확인 필요

2.2.2. 미국의 농정개혁 평가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미국의 2008 농업법이 DDA 협상에서 논의된 보조금 감축방향과 무관하게

제정된 데 대해 많은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OECD가 미국 농정을 평가하는데 대해 회원국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임.

- 보고서는 미국의 2008 Farm Bill이 별로 시장지향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특히 설탕과 낙농부분은 품목연관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지원이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미국의 농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음.
- 3차 수정안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상당히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이 보고서의 공개를 승인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EC도 미국의 대응여부를 보아가며 전체적인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아직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임.
- 농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농정기조에 대해 우리나라가 특별히 비판할 내용은 없지만 COOL 제도는 우리도 도입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관심사항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의 논의되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난번 회의 이후 이 보고서에 대해 특별히 수정사항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도 별도의 언급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논의 결과

- 전기 회의에 이어 재차 논의되어 공개 승인됨
- 낙농보조 사유 및 급식프로그램 제한사항 등에 대한 추가설명 요구(프랑스), 미국 원산지표시제(COOL)의 일부 표현 수정요구(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됨.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됨.
 - 프랑스 : 낙농보조, 국가급식프로그램 관련 추가 설명 필요 발언, 급식관련 제한(요구)사항(낙농농가 보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됨), 낙농보조의 이유 등을 그 내용으로 지적함.
 - 멕시코, 캐나다: 두 나라는 COOL에서 WTO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지 COOL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관련된 문구 수정을 요구(para439). 미국은 이 문구의 수정보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음.

2.2.3. 터키의 농정개혁 평가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사이에 자리 잡은 지정학적 여건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의 아랍국가들과의 돈독한 우호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향후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대상국임.
 - 지리적으로 인접한 데다 값싼 노동력이 풍부해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농산품을 포함하여 생산품의 50% 이상이 유럽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음.
 - 최근의 경제성장과 EU가입을 준비하는 제도적, 정책적인 노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이 될 수 있음.
- 터키는 2001년부터 농정개혁을 추진하면서 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의 조율에 초점을 두어 왔음. 따라서 과거 시장가격지지나 수출보조, 그리고 생산과 직접 연계된 보조정책들을 축소·폐지하고 농가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직접지불제로 대체하였음.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직접지불제는 다시 생산과 연계된 보조로 개편되기 시작하고 2009년에는 결국 폐지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시장지향적인 정책수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복고적인 정책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음(품목 특정적 부족불지급, 축산생산보조 투입재 직불, 생산품 품질에 따른 특혜대출 등).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불가결했던 이유나 상황, 또는 터키농업의 특수성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보임.
-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관련 환경 및 자원관리에 투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을 EU나 국제개발기구들의 원조나 기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및 자원관리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 농업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임.
- 영세자영농 위주의 생산구조 낮은 생산성, 높은 문맹율의 농업노동 등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 터키는 순수출국임. 보고서에서는

EU와의 지리적인 인접성 외에 터키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담보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미흡함. 농산물의 경우 당분간 터키는 구매력이 있는 유럽시장에 초점을 두고 인접한 중동과 중앙아시아와의 교역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판단됨.

- DDA협상의 주요 협상쟁점에 관하여 터키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점진적 시장개방, 특별품목 지정,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지지 등)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4.3의 ‘지역협정’ 항목에서 터키가 체결한 기존 FTA나 유럽과의 관세동맹 등에서 적용되는 주요 농산물의 관세수준이나 수입쿼터 등의 농업부문의 양허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미흡함. 아울러 동식물검역제도, 원산지 표시 등의 비관세무역조치(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
- 터키의 TSE(PSE)에 대한 분석 중에 우리나라와의 TSE(PSE) 수준과의 간접적인 비교가 OECD가 발표한 통계치를 근거로 3개의 그림(Graph 5.3, 5.5, 5.7)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은 필요하지 않음.

나. 논의 결과

- 서면의견 수렴후 2011년 3월 APM에서 초안 제출하기로 함
- 한국, 캐나다: 최근의 농정의 변화(직접지불폐지, 2009)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특성(전반적인 경제, 농업분야)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을 지적. 향후 작성될 6장의 ‘정책평가 및 권고’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2.2.4. EU 농정개혁 평가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EU 일련의 CAP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보고서임. 계속적으로

전체보조수준을 줄이고 생산과 연계된 정책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함.

- 미국 농정평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APM회의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발언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임. 본 보고서의 결과가 EU가 모범적으로 시장왜곡적인 보조 비율을 줄였다는 것이어서 이 결과를 근거로 개혁과정이 상대적으로 더딘 회원국들에 대한 압력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됨.

나. 논의 결과

- 서면의견 수렴후 2011년 3월 APM에서 수정안 제출하기로 함
- 국가별 주요 발언내용
 - 한국: 단일단가 직불이 소득재분배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para9)을 지적하고 관련문구의 삭제를 제안. Agenda2000에 대한 Shannon index 설명을 '생산 비연계는 전문화를 증가시킴'에서 '생산연계는 전문화를 감소시킴'으로 바꿀 것을 제안함.
 - 캐나다: decoupling(진행중)와 decoupled(완료)의 구별된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의함. 자급률이 EU의 주요한 정책목표인 것처럼 서술된 점을 지적.
 - 미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CAP와 연계하여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보고서 내용이 품목 중에서 낙농과 설탕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지적.
 - EC,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Capitalization of land' 문제를 언급함. 토지에 대한 보조가 농지여부 불문하고 지급될 경우 토지소유주, 농민, 임대농민 등에 대한 정책효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지적(unintended transfer vs intended transfer 구분 필요).
 - 스페인: 보험체계, 위험관리 부분의 내용 보완 요구
 - 아일랜드: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소득지지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로 다루어져야 할 지표(targeting indicator)에 대한 내용보완을 요구

- 컨설팅보고서를 본보고서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EC, 그리고 사무국의 이견이 두드러짐. 캐나다는 컨설팅연구를 수행하여 그 내용을 본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재인용하는 것은 정책효과 분석에 임의적인 가정이나 의도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함을 지적하며 또한 다른 국가의 농정평가보고서와 다른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에 우려를 표명함. 반면에 사무국과 EC는 이러한 보고서의 구성은 기존의 미국, 한국, 일본농정평가 보고서 등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관련연구를 인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임.

2.2.5. 정책 실행의 장기적 추세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OECD PEM 모형 분석 중 두 개의 지수(Iso-farm income, Iso-production index)의 기울기가 과거시간에 따라 상의한지를 테스트하는 분석이 있었음. 이 분석에서 분석대상국 중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우리농업정책의 문제점이 평가됨. 즉, 그동안의 한국 시장가격보조정책이 생산자의 소득이전효과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임. 따라서 이에 대한 정밀검토가 요구됨.
- 또한, 유럽과 스위스의 농업정책변화와 방향을 참고하여 coupled payment에서 decouple payment 등으로 농정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함. 또한 유럽의 CAP 정책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나. 논의 결과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서면으로 합의가 안 될 경우 2011년 3월 APM에서 수정안 제출
- 국가별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PSE 이외에 새로운 지표들을 적용한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로서 전기 회의에 이어 재논의 됨.

- 새로운 지표를 적용한 결과, 정책 효율성에서 EU는 높고, 한국, 일본,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 EC는 정책수단들을 새로운 지표로 환산·평가하는 세부방법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서 공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당한 문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 복잡한 이슈이므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검토하자는 입장을 제시함.
- 일본도 새로 실험적으로 시도되는 보조측정도구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그 설명도 아직 부족함(개념의 명확화 필요)을 이유로 공개를 연기하고 전문가모임에서 별도로 보고서 내용을 토의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대해 사무국은 국가간 비교가 쉽다는 새로운 지표의 특징을 설명하고, 보고서 내용은 신지표를 적용한 측정된 결과라는 점 등을 강조함.
 - 우선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논란이 지속되면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2.2.6. PSE개선: PSE 산출시 품목확대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캐나다의 경우 우유의 MPS가 지나치게 높아 MPS 계산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는데, 품목추가로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발생하므로 환영할 만한 일임.
 - 품목별 생산액 비중이 1% 미만인 품목(Dry beans)를 Dry Peas, Lentils와 같이 3 품목을 pulses로 통합한 것은 참고할 만함.
 - Flax는 비중이 0.83%인데도 신규품목으로 추가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만 구태여 우리는 반대할 필요는 없으며, 나중에 필요한 경우 선례로서 이용할 만한 사항임.
 - 신규 품목의 MPS를 0으로 계산한 이유(지지정책이 없고, 수출이 많으며, 관세가 매우 낮은 수준)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적으며, 우리나라가

신규품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품목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승인되어 2011년부터 적용 예정
- 캐나다의 MPS 대상품목을 현재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는 제안이며, 그 결과에 따라 MPS 산출치가 약 6% 감소하게 됨. 이에 대해 EC,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대상품목의 확대·축소 여부에 따라 PSE 산출치가 변경되는 산출 방식상의 민감성 및 약점을 강조함.
- 사무국은 MPS 대상품목을 약 70% 이상 반영하는 것이 기준이며 수치의 정확성을 조정할 결과라는 점을 설명함. 캐나다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국 PSE 지표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증대되었다고 평하고, MPS 변화와 관련하여 MPS가 6% 감소하더라도 MPS가 PSE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MPS 6% 감소는 전체 PSE 대비 1% 내외의 변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연설명함.
-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54%로 일본,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70%에 못 미침, MPS 품목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임(후보품목의 선정을 위한 MPS 민감성 분석 등 시행), 일본과 터키의 MPS 품목에 비추어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액 비중에 비추어볼 때 사과, 배, 딸기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이들 품목의 국제-국내가격 차이가 큰 것이 문제임. EC는 과일과 야채가 국가별로 동질적이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PSE 계산에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상황은 어떤지 질문하여 향후 EC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과일부분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음.

2.2.7. OECD 국가와 신흥국가의 실질 농업보조 변화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PSE 계산에서 시장가격지지(국내·국제가격차)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쌀(생산 및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여 unit SCT, PSE에서 SCT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이러한 구조는 PSE를 명목으로 계산하거나 실질로 계산하여도 변하지 않음.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실질PSE를 계산할 때 기준환율, 기준국가, 기준년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절대값이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결과도 절대값을 이용한 국가간 비교는 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인 변화율을 가지고 국가별 농업지지수준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 <표 5-1>에는 실질PSE를 계산하는데 이용된 환율, 구매력평가환율, 물가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미환율이 증가하였으며, 구매력평가지수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70%가 증가하였음, 물가상승률은 터키, 멕시코,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1. Exchange rate (USD 1 = national currency [NC] ...), PPP/exchange rate ratio and inflation rates in OECD countries between 1986 and 2009

	1986	1995	2001	2008	2009	1986	1995	2001	2008	2009	1986	2009
	Exchange rate: USD 1 = NC ...					PPP/exchange rate ratio					GDP price index (100 in 1986)	
Australia	1.50	1.35	1.94	1.20	1.28	0.80	0.98	0.69	1.24	1.14	100	220
Canada	1.39	1.37	1.55	1.07	1.14	0.88	0.89	0.79	1.15	1.04	100	170
Switzerland	1.80	1.18	1.69	1.08	1.09	1.13	1.68	1.09	1.52	1.50	100	144
EURO	1.02	0.76	1.12	0.68	0.72	0.79	1.14	0.78	1.21	1.13	100	178
Iceland	41	65	98	88	124	0.91	1.13	0.91	1.42	1.08	100	509
Japan	0.17	0.094	0.121	0.103	0.094	1.21	1.86	1.23	1.13	1.23	100	96
Korea	0.88	0.77	1.29	1.10	1.27	0.52	0.90	0.59	0.69	0.61	100	271
Mexico	0.64	6.42	9.34	11.15	13.50	0.33	0.46	0.68	0.70	0.61	100	7377
Norway	7.39	6.34	8.99	5.65	6.29	1.22	1.45	1.02	1.61	1.38	100	238
NewZealand	1.92	1.52	2.38	1.43	1.60	0.69	0.96	0.62	1.10	0.99	100	197
Turkey	0.0007	0.05	1.23	1.30	1.55	0.45	0.54	0.35	0.74	0.65	100	595 003
US	1	1	1	1	1	1	1	1	1	1	100	174

Source: OECD, author's calculations.

- 그림 3.14에 나타나듯이 한국의 통화는 1986~1988년도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으며, 분석기간 동안 (대미)환율과 구매력평가지수가 수렴하지 않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2007~2009년에는 더욱더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우리나라 통화의 (OECD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쌀을 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상품구성과 함께 실질국제가격(border price)의 증가로 작용하였음.
 - 또한 쌀의 국제가격은 분석기간 동안 40%를 증가하였으며 이는 80%가 증가한 우유가격 다음의 가장 큰 증가를 보인 품목에 해당됨.
 -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국제가격의 증가(분석기간 동안 40% 증가, 그림 3.15 참조)는 실질PSE를 계산하는데 유리함.
 - 실질 국내가격(producer prices including payments) 또한 분석기간 동안 13%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국내·국제가격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또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량(output volume)은 분석기간동안 소폭으로 증가하였음(연평균 0.18%). 이는 일본의 -0.64%, 스위스의 0.03% 다음으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2007~2009 실질PSE는 1986~1988대비 13%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39%, 스위스 47%, 아일랜드 49%, 노르웨이 51%(기존 %PSE 비교시 우리나라 50%에 높거나 비슷한 국가들)등에 비해 농업지지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서면의견 수렴 후 사무국 책임 하에 공개(TAD Working paper 시리즈 형태로 발간 예정)
- 명목 화폐기준으로 산출되는 PSE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GDP디플레이터와 구매력평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PSE”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임(컨설턴트 작성 및 발표)

-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 PSE”가 대폭 감소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감소율이 낮았음. 터키와 멕시코는 오히려 증가함.
- 한국은 “농산품 생산량 증가가 컸고 실질 PSE 감소폭이 적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GDP디플레이터 및 환율의 적용시점에 따라 시기별로 변동폭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함.
- 멕시코도 환율을 산출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기준년도의 물가폭등과 경제불안정을 감안하여 기준년도의 변경가능성을 문의함
- 일본은 생산량 증가와 농업지지수준의 증가를 연계시키는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청함.
- 노르웨이 등은 본 보고서의 농정점검 및 평가에 활용여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미국과 영국은 불어버전의 보고서만 먼저 공개되고, 영어버전의 늦은 업데이트로 인해 검토시간이 불충분하였던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 컨설턴트(Mr.Jean-Pierre Butault, 프랑스 농업연구소)는 OECD 방법론에 근거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기준년도 선택에 따라 산출치가 변화하나 변화경향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멕시코와 한국에 대해서는 산출치를 재검토(check)하겠다고 답변함.
 - 현재 서면의견은 사무국에 제출(11월 29일까지)되었으며 사무국은 재검토 중임을 통지하였음. 추후 컨설턴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나라 관련 분석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함. 사무국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무역농업국 작업문서(TAD Working paper)로 공개할 예정임.

2.2.8. OECD 워크숍: 농업에서의 위험 관리: 효과적인 정책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농업관련 위험에 대한 각국의 정책 경험 및 연구 결과가 공유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도 농업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농가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워크숍 참여를 통해 다른 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5개국 사례분석 보고서를 논의하여 공개를 승인하였으며, 관련 워크숍(2010.11.22~23) 의제가 소개됨.
- 2009년 2월 scoping paper에서 농업위험관리 프로젝트를 3개(국가별 사례연구, 농가단위 분석, aggregate model)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을 정함. 이번 회의내용을 토대로 내년 3월에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제출할 계획임

2.2.9.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 호주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호주의 위험관리정책의 현황, 이슈,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음. 호주의 사례는 농업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농가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됨.
- 호주는 가뭄 등 기후 및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특성으로 인해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함
 - 농가/지역 사회, 시장, 정부에서 다양한 위험 관리 수단이 실행되고 있음.
- 농가는 농가 단위의 위험 관리 전략을 스스로 실행하고 정부는 예외적 상황에서 농가를 지원한다는 위험 관리 전략의 기본 원칙을 우리나라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본 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정부와 농가간에는 위협과 관련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이는 도덕적 해이 또는 역선택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위협 관리 정책 실시는 농가의 자체적인 위협 관리 전략 실행을 저해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심화시킴.
 - 따라서 농가의 자발적 위협 관리 전략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 위협 관리 정책의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가물 정책의 EC 발동 메카니즘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간의 적절한 위협 관리 비용 분담은 중요함.
- 가축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비용 분담 비율을 차별화하는 바이오 안전성 파트너십 배분(Bio-security partnership arrangement)은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사례연구로서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위협관리 정책수단들이 분석됨.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의 사례보고서는 5월 APM 회의 것의 수정본임.
 - 호주보고서의 경우 해당국 대표의 감사 발언 이후 사무국은 예정대로 공개를 결정함.

2.2.10. 위협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 뉴질랜드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농업선진국인 뉴질랜드의 농업위험관리 정책 사례는 우리나라 농업 위협관리 정책에 시사하는 있음.
 - 뉴질랜드의 위협관리제도와 경험 등을 벤치마킹하여 농업 위협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뉴질랜드의 농업 위험관리의 큰 특징은 농가 및 시장의 위험관리 수단의 비중이 크며,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 위험 관리 등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도 농업위험관리에서 작물보험, 수직통합, 계약생산, 유통협약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 지향성이 낮은 편으로 지속적인 시장관리수단의 확대 필요
- 뉴질랜드와 같이 아직 농가의 위험관리 대응역량 및 위험관리 시장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위험관리 방안을 지향하되, 단계적인 시장 지향적 관리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위험관리부문에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전까지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지향성 위험관리 수단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뉴질랜드 대표의 감사 발언 이후 사무국은 예정대로 공개를 결정함.

2.2.11.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 스페인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스페인의 농업위험관리제도, 특히 농업보험은 우리나라 농업 위험관리제도에 시사 하는바가 큼.
 - 우리나라도 지수보험, 수입보험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농업환경 및 시장 위험관리시스템 수준이 다르므로, 새로운 유형의 보험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 무사고 계속가입 농가 등에 대해 정부의 보험료 추가지원, 환급금 제도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토 필요

-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스페인의 농업보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시사점과 보험보조금이 비효율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상호 모순될 수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

나. 논의 결과

- 스페인 보고서에 대해 프랑스, EC, 덴마크가 발언함. 프랑스는 잘된 연구내용에 비해 정책제안 부분이 너무 일반적이라고 발언. 덴마크는 가축다중위험보험(multi-risk insurance)에 대해 과대보상의 가능성은 없는지 밝혀줄 것을 주문함(내용에 따르면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험금뿐만 아니라 정부와 EU가 함께 재정지원하는 보상지급이 이루어짐, para49). 이에 대해 사무국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상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지만 항상 과대보상의 위험은 존재한다고 답변.

2.2.12.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 캐나다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캐나다의 위험관리정책의 현황, 이슈,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음. 캐나다의 사례는 농업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농가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됨.
- 캐나다는 농업 위험 관리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오랜기간 동안 시행해옴.
 - 농가의 자체적인 위험 관리 약화 및 시장을 통한 위험 관리 수단 미비라는 비판도 존재하나 농가 소득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순소득 안정 계좌(Net Income Stabilisation Account, NISA)와 같이 농가의 저축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선급금 프로그램(Advance Payment Program) 및

농업신용공사(Farm Credit Corporation, FCC) 설립 및 운영과 같은 금융 정책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위험관리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책을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도 세금정책과 위험관리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캐나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제안(검토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공식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에 따라 공개를 연기함(2011년 1월까지 서면의견 수렴후 공개여부 결정 통보).

2.2.13.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별 검토: 네덜란드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네덜란드의 위험관리정책의 현황, 이슈, 정책적 시사점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음. 네덜란드의 사례는 농업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농가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됨.
- 네덜란드는 집약 농업과 수출 지향 농업 특성으로 인해 작물 질병 위험 관리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농업과 같이 매우 집약적임. 또한 동아시아라는 거대 시장에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작물 질병 그룹에 따라 차별화된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춘 네덜란드의 위험 관리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는 EU의 회원국으로서 질병 관리에 있어 EU 및 다른 회원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EU와 같이 동식물 질병 위험 관리에 있어 공통의 규칙과 제도

를 마련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논의 결과

- 네덜란드 보고서도 EC가 제기한 내용(para 55, 57, 84)에 대해 충분한 서면 의견 교환을 갖기 위해 공개를 연기함.

2.2.14. 외생적 위험과 가격 변동성의 총계모형 분석: 중간보고서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중간보고서인 이 연구는 가격변동성의 요인을 Aglink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고자 시도함.
- 우리나라 차원에서 농식품 가격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모형 이용가능

나. 논의 결과

- 일본과 프랑스는 이 연구가 농산물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변동성을 고려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설명적인(descriptive) 연구이고 결과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 일본은 Aglink는 균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가격 변동성을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다는 점을 프랑스는 동태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정태적이고 내생적(endogenous) 위험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함.
- 사무국은 11월 29일까지 서면의견을 받아 내년 3월 APM 회의에서 수정본을 제출하기로 함.

2.2.15 농업전망 Update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농업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OECD의 다양한 노력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임. OECD는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망에 사용되는 (특히 중국관련) 데이터의 신뢰성제고, 전망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Aglink-Cosimo모델의 지속적인 개선, 전망결과에 대한 보다 투명한 공개과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먼저 농업전망의 full report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찬성함. 보고서 전문공개는 농업전망치의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Outlook in Brief, Overview, Special Feature Chapter 등 Highlight Document를 생략(drop)한다는 계획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Full report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Highlight Document를 향후에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의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거시경제와 정책에 대한 가정들을 별도의 장(chapter)보다는 Overview에서 간략히 언급할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거시경제와 정책에 대한 가정들은 농업전망활동에 있어서 외생적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은 농업전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최근의 농산물가격의 급등 현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농업부문은 에너지부문 및 거시경제 등의 환경 변화에 보다 밀접히 연계되고 있음. 따라서 거시경제와 정책에 대해 사용되어진 가정들에 대한 정보는 보다 상세히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전망에 사용되어지는 Aglink-Cosimo모델의 구조(structure), parameters, policy representation에 대한 개선작업과 함께 수행 중인 Model documentation system과 관련된 두 가지 작업에 대한 기대가 큼. DEFRA(UK) 모델 documentation system의 사용을 통해, 모델의 equations, coefficients,

variable descriptions 등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농업전망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Aglink-Cosim Model Interface(AIM)의 개발을 통해, 다른 버전의 Aglink-Cosim Model의 비교분석, multiple scenarios 분석, user-friendly graphical interface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OECD-FAO 농업전망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 중국의 outlook profile, baseline projections에 대한 보다 나은 정보(contacts/input)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특히 여러 기관에서 생산된 중국의 생산, 소비, 무역관련 데이터들 간의 차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중국관련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나. 논의 결과

- 회원국들은 2011년 농업전망보고서의 구성과 중점방향 등을 지지함.
- 전반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2011년 OECD-FAO 농업전망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향후 활동계획에 동의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시장 불안정성(market volatility)에 초점을 맞춘 2011년 농업전망보고서의 구성을 지지하며, 수산부문이 별도의 장으로 포함되는 것(FAO 초안작성, OECD 수산위원회 검토)과 관련하여 보완적인 의견을 제시함.
 - 미국은 가격변동을 시장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과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고, 수산부문 모형과 Aglink-Cosimo 간의 상호연계, 피드백 설정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견을 피력함(각 부문간 수요 공급의 적절한 고려 필요).
 - 스위스는 거시경제에 대한 가정과 추가되는 수산모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농업전망보고서 작업 및 모형개발에 자국 정부연구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의지를 피력함. 사무국은 이와 관련하여 해

당국에 감사를 표시하고, 연계강화전략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협조(통계 및 모형의 대표성 개선)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사무국은 2011년 5월 16~18일에 Braunschweig에서 개최될 예정인 농업전망 전문가회의에서 시장변동성 이슈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독일에 제안함. 독일은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2.2.16. 농산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격 변동성 변화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본 연구는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지난 50년 사이에 더 커졌는지를 알아본 결과 특별히 그러한 부분을 찾지 못함. 중요한 농업생산 투입재인 원유, 비료가격과 농산물가격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부품목(쇠고기, 설탕, 버터)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나타났으나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성이 커지는데 원유, 비료가격이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임.
- 한국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이 옹호하는 ‘투기자본 등과 관련하여 국제 농산물시장의 부정적인 시각’과 ‘가격 급변동에 대비하여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등에 본 연구결과가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움. 다만 연구요약과 결론에 있는 ‘정책관심을 가격변동성 완화나 가격변동이 생산자,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에 두어야 한다’라는 문구는 그래서 국내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별로 자국 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는 논리에 도움을 줌.

나. 논의 결과

- 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와 관련한 4개의 연구제안서(컨설턴트 보고서)가 검토되었으며, 서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APM 회의에서 초안이 제출되거나 TAD Working paper로 발간될 예정임.
- ‘농산품 가격변동성의 변화’ 컨설턴트 보고서는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

- 2006~2008년 기간 중의 국제농산물 가격변동성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로서, 가격변동성이 1990년대보다 크지만 1970년대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내용. 많은 국가들이 분석기간과 기간의 길이에 따라 보고서의 결론(2006-2010년 가격변동성은 1990년대보다는 크지만 1970년대보다는 크지 않음)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품목별 상이한 Causality test 결과에 대해 의문 제기.
- 분석방법론 및 결과해석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분석기간의 설정문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연계문제, 투입재 가격간의 상관관계, 시장개방 등 시장상황의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페인: 투입재(에너지) 가격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Multiple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프랑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domestic, local price)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연계를 감안할 경우 분석결과가 상당히 바뀔 수 있음. 선행연구에 사용된 다른 지표를 이용한 분석 요구. 명목가격보다는 실질가격을 사용한 분석 제안
- 미국: 가격변동성 분석에서 가격의 변화와 마켓 펀더멘탈의 변화를 구분해야 함. 두 분석기간의 비교에서는 최근기간이 이전기간보다 시장개방이 더욱 진전되었음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시장개방의 진전이 가격변동성의 증가(또는 감소)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함. 공산품의 가격변동성이 농산품의 가격변동성보다 더 클 수 있음.
- EC: 마켓 펀더멘탈과 정책효과 고려해야함.
- 영국: 최근 비슷한 주제의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음. 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농산물의 경우 70년대의 가격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곡물, 특히 쌀의 가격변동이 가장 컸으며, 이는 제한된 국제시장의 통합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2.17. 밀 가격 변동성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3개 시나리오(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증가, 재고변화, 국제협약에 따른 공동 재고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밀의 가격변동성을 분석하려는 연구제안서임. 우리나라 차원에서 농식품 가격변동에 따른 거시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모형 이용가능
- 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밀 가격 변동성의 원인을 잘 파악하여, 가격 급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나. 논의 결과

- 시나리오 2(재고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 재고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데 중국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를(스위스, 미국 등), 시나리오 3(국제협약에 의한 공동재고관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됨(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 제시된 의견 및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조정한 후, 차기 회의에 보고서 초안을 보고할 예정임.

2.2.18. 농업의 민간 금융 부문 투자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5월에 제출되었던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류는 유럽, 북미 등을 중심으로 하여 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다는 점, 세계적 식량 사정 등을 보아 농지 및 농업 인프라에 대한 사적 자본 투자는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의 안정성, 지속가능성은 보장되

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그런데 이 보고서는 보고서 작성자인 HighQuest Partners의 제한된 자료와 인식의 한계가 드러남. 일부 자료 제공적 의의는 있으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 걸프지역(중동지역)국가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녔음. 또한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 위주로 정리되어 있어 최근 신식민주주의의 재현 논란 등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인 측면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논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번 보고서는 5월 APM 보고서를 보완하는 성격임. 9개 심층사례조사를 통해 외국 자본투자가 투자지역사회,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 다만 자료를 구하는 소스가 펀드메니저에 국한되어 있어 원래 계획하고 있는 연구내용들이 최종보고서에 담아질 수 있을지 의문임.

나. 논의 결과

- 보완 후 차기회의에 발표
- 지난 5월 APM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사무국과 컨설턴트는 사례 연구를하기로 정함. 이번에는 9개 투자사례를 분석한 연구경과와 예측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한국은 동남아시아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9개 투자사례가 선정된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중국과 중동자본이 활동하는 동남아시아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함. 또한 분석방법으로 펀드메니저의 설문에만 의지하는 것에 대한 자료의 제한성을 제기함.
-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소농과 농촌에 대한 민간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는 선택왜곡 문제를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드메니저 설문항목에 대해 제기(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물어봄).
- 사무국은 민간투자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애로사항을 언급

하면서, 동남아시아 사례를 포함하는 의견 및 회원국의 지적사항들을 컨설팅 기관에 전달하겠으며, 차기 회의에서 결과물을 토론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2.2.19. 상품가격안정을 위한 국제상품협약들의 평가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가격변동성에 대한 정책대응은 재고관리를 통한 가격안정방식과 선물/옵션 시장을 이용한 헷지전략 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며, 실제 정책대응은 가능한 대안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보고서의 재고운영과 헷지전략의 비교는 가격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모색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보다 실질적인 정책모색을 위해서는 곡물재고수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제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짐.
 - 공공부문재고에는 그 목적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며, 이들 형태와 운영방식에 따라 재고운영에 따른 가격안정화 효과와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컨대 공공재고의 종류에 따라 생산자들의 증산 유인과 민간부문의 재고증대 유인을 저해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재고운영방식에서도 재고판매가격에 대한 사전적 약속을 피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정책운영 비용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헷지전략의 실행가능성을 포함하여, 헷지전략을 통한 가격안정화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선물/옵션시장을 이용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느 거래소에서 어떤 선물/옵션 상품을 통해 헷지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선택이 필요함. 이는 거래소별로 선물/옵션 상품가격(exchange price)과 가격안

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격간의 상관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임.
 두 가격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basis risk가 높을수록) 헷지전략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 따라서 재고운영과 헷지전략간의 선택을 통해서 보다는 두 수단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가격변동성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재고와 가격간의 관계분석과 국제상품협정(ICA)의 가격 수준과 변동성의 효과분석시, 실증분석의 정밀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 특히 재고-가격의 실증모형에서 추세변화이외에 가격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제상품협정의 효과분석에서도 ICA의 소멸전후에 가격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모형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
- 국가별 또는 국제적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적정재고를 관리하는 방식 (buffer stock management)이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시장수단(선물·옵션거래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분석보고서임.
-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연구결과(call-option을 포함한 시장을 통한 가격안정 추구)를 지지하였으나,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은 “식량안보가 선진국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표현, 금융시장의 리스크 등 시장수단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구체적으로, 일본은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비상시기에 call-option이 실제로 행사되는 것(필요시 농산물이 실제로 조달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 컨설턴트(이탈리아 Trent○대학 Mr. Christopher Gilbert)는 식량안보에 대한 표현을 아시아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겠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문안을 수정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일본과 한국이 제기한 식량안보

와 call-option 방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이 국가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함.

- 연구결과에 대한 국가별 반응을 보면, 수출국들은 전통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 적정 공공재고 특히 주곡 부분을 중시하는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공공재고관리가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민간 부문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연구에서 부각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Call-option은 식량안보를 위한 보완적인 정책이지 재고관리에 대한 대체적인 수단은 아님.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적이 아닌 범국가적인 식량부족과 가격급등이 있는 경우 설사 자금이 있고 call-option 등으로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실제 요구되는 물량을 공급받는 것이 항상 쉬울 것인지 의문임. 민간저장도 공공저장만큼은 아니라도 저장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민간은 비용을 고려할 때 공공보다 덜 중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유인이 있다는 생각임.

2.2.20. 식품 체인 분석을 위한 제안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식품 체인상의 주요 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하는 네트워크 구성과 활동은 매우 의미있는 일임.
 - 논의 주제로 택한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운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네트워크 설립 준비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아 네트워크의 설립 및 향후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번 APM 회의에서 각국의 논의를 지켜보고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향후 참여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OECD 네트워크에의 적극적 참여 여부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도 국내 식품 체인 이슈 분석을 통한 적절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수행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식품체인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었음.
- APM 회의에서 각국의 논의를 지켜보고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후 참여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를 위한 한국 정부 대표자와 연락처를 알림.

나. 논의 결과

- 1차 네트워크 설계회의(2010.12.13.) 이후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내년 3월 APM 회의에서 제시될 예정
- 사무국은 농식품 유통 전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소비자 요구 등을 분석하는 “식품체인 분석 네트워크”의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제1차 회의를 12월 13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함.
- 호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EC, 미국 등이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생물다양성, 소비자 관심사, 정책수단, 인증제, 투명성 등 다양한 관심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1차 회의를 거쳐 작업계획이 차기 회의에 보고될 예정임.
 - 이들 국가들은 선정된 두 의제(1.식품체인의 효율성과 투명성, 2. 식품체인과 소비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먼저 두 의제에서 보다 생산적이며 참여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연구범위를 좁혀서 연구를 시작하고, 향후 이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를 넓혀가는 방식을 제안함.
 - 독일과 미국 등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적(유럽)으로나 조직의 성격 측면에서 다소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함. 개도국, NGO, 생산자조직, 협동조합 등 식품체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사무

국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 아르헨티나는 1주제의 경우 식품시장 외에도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financial speculation)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2주제에서는 소비자의 식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교역에서의 문제(WTO의 SPS 규정과 같은 NTM)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 제시.
- 네덜란드의 경우 품목별로 1주제에서는 낙농과 육류(돼지고기)를 중심으로 2주제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안을 제안함.

2.2.21.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OECD 네트워크 6차모임 보고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농가를 통합한 상태에서의 정책분석과 농가단위로 분석할 경우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농가 단위의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때 농가 단위분석을 통해 어떤 특성을 가진 농가가 정책효과가 큰지 파악하는 것과, 농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생산성 제고,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소득이나 가격지지정책을 위주로 하여왔기 때문에 위험관리나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6차모임 경과보고 이후 향후 7차모임(2011년 4월) 예고, 별도 논의 없음.

2.2.23. OECD 국가들의 보조금과 소득 분포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이 보고서는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2007년에 착수한 시범과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으며, 13개 회원국과 4개 EU 통합의 농가단위 통계를 기초로 작성됨. 이 보고서를 통해 1) 농가별 특성에 따른 보조금의 분포와 2) 보조금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나. 논의 결과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하기로 함
- 회원국들은 일부 데이터에 대한 수정요구를 요구하였으며, 국가간 통계 비교가능성문제, 비영농소득 반영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EC는 이 보고서가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기를 주문함.
 - 덴마크는 국가별 통계의 차이(출처, 조사 방법/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기를 요구하였으며, 보고서에 자료를 제공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통계의 오류나 자국관련 표현의 수정을 요구함(주로 서면질의를 통합).
 - 특별한 이견 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의 공표에 동의함.

2.2.23. 지속개발 및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연구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1997년 아시아 재정위기이후 인도네시아 농업성장과 빈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서 향후 빈곤감축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농업개발정책

추진 및 역할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시아 재정위기 이후 농업분야의 저성장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부 정책방향 및 역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 같음. 보고서에는 농업성장율의 둔화의 한 요인으로 농업 R&D 공공 투자 부족을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고 문제가 이것 하나 뿐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요약 및 결론부분의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본문내용이 적절히 요약되어 있지 않고 결론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이 보고서의 연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보고서가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최종 보완되어 마무리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문안수정 후, 글로벌 농업포럼(2010.11.29~30)에서 주제발표 예정, 차기 회의에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출.
- 인도네시아, 가나에 대한 사례연구내용이 발표되었으며, 많은 회원국들은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면의견을 제출함.
 - 프랑스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의 결론도출 및 모델링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으며(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점들은 서면의견으로 제출), 가나사례 연구에서는 빈곤경감의 중요한 요인인 이전수입(주로 remittances)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음을 지적함.
 - 네덜란드와 호주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와 내년에 작성되는 농정평가 보고서 작업에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함.
 - EC는 보고서의 제목과 달리, 전체 내용에 환경이나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함.
 - 사무국은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문안을 수정한 후, Global Forum on Agriculture(2010.11.29~30 예정)에서 발표하고 차기 회의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2.2.25. 개발도상국의 농업정책 선택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한국도 개도국은 아니지만 생산규모가 작은 농가비중이 높고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서 상대적으로 시장왜곡이 적다고 주장되어 지는 직불제, 소득안전망, 사회적보장제도만 가지고 농업, 농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일부 국내에서 보조금개편(유류보조, 농업용전기, 투입재보조 등의 일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국가곡물가격 급등과 같은 일시적인 외부충격 또는 예상치 못한 국내문제 발생 시 가격지 지나 생산비보조 등은 단기적으로 여전히 유용한 정책수단임.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시장왜곡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일시적이나 아니면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에 비추어 OECD회원국인 입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연구결과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케냐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보조의 유통비용연동제(indexation, 물류비용이 줄어감에 따라 보조를 줄임)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보조가치가 줄어들게 하면서 민간시장이 정부역할을 대체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 → 한국 정부에서 투입재보조를 개편하는 경우 보조율을 다른 관련 비용, 가격지수와 연계해 보는 것도 대안의 하나임. 투입재보조사업의 목적이 농업경쟁력 제고냐 아니면 소농의 소득제고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후자에 비중을 둔다면 투입재보조에 면적한계나 수량한계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논의 결과

- 글로벌 농업포럼(2010.11.29~30)에서 주제발표 이후, 차기 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임.

- 토론용(Discussion) 목적으로 제출된 종합보고서와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시된 4가지의 배경보고서들은 글로벌 농업포럼(2010.11.29~30)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개발도상국 대상의 정책평가모델(DEVPPEM)을 통해 초기 분석한 결과로서, 농업의 GDP 및 고용인구 변화패턴을 6개 국가별로 분석하였으며, 생산가격지지(MPS)보다는 투입재보조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시사점임.
- 프랑스는 보고서가 소득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생산증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국의 발전단계나 상황에 따라 구조적 변화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네덜란드로 개도국의 경우에 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정책평가모델(DECPEM) 자체의 적합성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2.2.26. 2007-2008 식량위기와 개도국들의 국내농산물시장 안정화정책

- 저자(Philip Abbot)는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유무역이 적절하지만 비상시국에는 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함. 정책수단으로 적절한 재고관리와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에서 격리하는 무역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기구 육성과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선결과제로 말하고 있음.
- 저자는 수입국의 안정화 정책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 쌀재고관리의 역할, 규모,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상시국에 대비한 적정 공공재고관리는 가격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2.2.27. 녹색성장과 농업

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농업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분야별로 잘 개관한 것으로 판단됨.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자연자원관리, 온실가스 저감 및 흡수 등 완화정책, 기후변화 대응 적응방안 등을 다루기 때문에 그동안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JWP)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OECD 사무국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된 의제와 내용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략보고서에서는 이상기상에 대비한 미래 식량수급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무역과 시장개방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실제로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은 생산과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농산물 무역 측면에서도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유기농산물, 저탄소 물류 등 녹색무역(green trade)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APM회의는 주로 무역에 관한 의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동조발언과 함께 녹색무역의 개념과 이론이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녹색성장전략 보고서에는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언급함.
-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에 대한 진단을 위한 일련의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미 농업환경정책위원회의 합동작업반(JWP)에서 십여년동안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였고, 업데이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생태효율성 지표와 녹색생산성지표 등 실증적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된 농업환경지표를 녹색성장과 연계시켜 새로운 분석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으로 사무국에서

높게 평가할 것으로 사료됨. 실증지표 선정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및 향후 지속적인 농업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접근방식으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추진해온 방식임. 농업분야 녹색정책은 농업정책 가운데 환경정책과 기후정책, 에너지정책, 기술정책 등의 비중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다루느냐가 관건임. 전략보고서에서 시장지향적 정책과 규제정책의 혼합(policy mixture)을 다루고 있으나 환경관리 측면에 한정하여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농업분야 녹색성장 정책은 농업정책과 관련분야의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과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과제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 회원국 발언시 강조할 필요가 있음.

나. 논의 결과

- 정보제공(소관 작업반 :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사무국은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에 포함될 "농업과 녹색성장" 부분에 대한 회원국들의 서면 의견을 수렴한 후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 전달.
- 사무국은 내년도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에 에너지 부문과 함께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 보고서 작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정보제공차원에서 보고함.
- 토지·물 등 자원의 희소성, 기후변화 등이 주된 이슈임. 정책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기술발전, 농업관리방식 개선 등이 포함되며, 측정지표도 검토되고 있음.
- 녹색성장의 농업분야 개념설정 문제, 측정지표 설정문제 등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이 제시됨.
 - 프랑스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장간의 개념상 구분문제가 불명확하며, PSE가 적절한 측정수단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일본도 녹색성장의 진전에 대한 측정문제에 관심을 제기하면서 종합보고

서 부록에 지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노르웨이도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르헨티나는 OECD 외에 세계적으로 합의된 “녹색성장” 개념이 없으며 견고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브라질은 농업 녹색 성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중요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므로 시장자유화 측면에서 동 사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반면, EC는 농산품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녹색 성장이 농업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호주는 이 노베이션이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제시
- 사무국은 소관 작업반인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부록에 포함되므로 지표측면에서 종합보고서 본문보다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부록에 포함될 보고서의 초점, 범위, 구조에 대한 서면의견을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농업부문 측정지표 반영 등의 쟁점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쟁점별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논리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2.2.28. 기타

- 2011년도 의장단 선출
 - 의장(덴마크)이 유임되고, 부의장국은 5개국으로 결정됨(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일본).
- 수입국 공조모임 개최(11월 15일 13:00~15:00)
 - 스위스가 주최하고 스위스, 한국, 일본, 노르웨이, EC, EU 참석
 - 오는 12월 Global Forum 이후에 일본의 주최로, 내년 3월 APM회의 기간 동안 한국의 주최로 공조모임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 스위스의 발제로 Item3(2011년 OECD 농업정책점검 보고서), Item7(정책 수행의 장기추세), Item9(실질 농업지지 변화), Item17(개도국 농정선택),

Item18(녹색성장) 등을 논의함.

- 의제별로 Item3은 보고서에서 제안된 PSE 3가지 분류방식 대신 기존의 7가지 PSE 분류방식을 지지하기로 결정; Item7은 공개(declassification)를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모임을 별도로 가질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 Item9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보제공용인 Item17에 대해 개도국에 정책제안을 하기에는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견해임. 또한 개도국에 대해 농업이 가진 다양성(multifunctionality)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정당성을 선진국처럼 부여하는 것은 FAO에서도 반대하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개도국이 가진 제한적인 재원을 가지고 산업발전(농업)만 우선시 할지 아니면 Coherence(산업, 농촌, 환경을 모두 함께 고민)를 강조할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Item18과 관련 해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장’간의 개념상 구분 문제와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에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 부분에 제시될 측정지표 설정 문제 등을 주로 토의하였음. (오후 전체회의의 속개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르지 않는 못함)

2.3. 회의 결과 시사점

- 국가별 농업지지정책의 측정와 평가 시사점, 정책적 개입과 시장수단간의 효율성 문제 들 근본적인 쟁점을 두고 농산품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 많은 회의였음.
 - 수입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금번의 경우에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보고서 대응방향에 대해 사전에 “수입국 공조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이 회의대응에 도움이 되었음. 예상쟁점을 충실하게 사전에 준비하여 수입국 공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 농업지지 변화” 보고서에 대한 “농업위 대표단 코너”를 통한 수입공조국 등 의견제출내용, 공개여부 동의형성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 필요한 경우에 수입공조국 모임국가와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 금번 회의에서 녹색성장의 농업분야 개념설정 문제, 측정지표 설정문제 등이 이슈로 거론되었음. 농업부문 측정지표 반영 등의 쟁점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쟁점별 아국 입장 및 대응논리를 명확하게 정립한 후, 차기 농업환경 공동작업반회의(2010.12.6~8)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제 6 장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 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1. 제 63차 회의

1.1. 회의 개요

- 일자: 5월 21일(금)
-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조재호 과장, 박경희 사무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박사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의제명	관련 문서 번호
63차 무역위 의제 채택	[TAD/TC/CA/WP/A(2010)1]
62차 무역위 요약본 채택	[TAD/TC/CA/WP/M(2009)2]
비관세조치	[TAD/TC/CA/WP(2009)2/REV2] [TAD/TC/CA/WP(2010)1]
무역과 관련된 미래 예측 양상	[TAD/TC/CA/WP(2010)2]
가공품 무역 양식의 변화	[TAD/CA/TC/WP(2010)3]

1.2. 의제별 내용, 검토의견 및 논의 내용

1.2.1. 비관세조치의 비용/효과 분석 사례연구: 치즈, 새우, 절화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치즈, 새우, 화훼 3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판매승인 등 비관세조치가 수출국 생산농가와 수입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용-편익의 틀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음. 지난 작업반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함
- NTM의 경제적 효과를 이미 공표된 비용/효과분석 틀을 적용하여 3가지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외국의 NTM 조치에 대한 분석이므로 특별히 대응할 만한 내용은 없음. 다만 결론에서 제시하듯이 이러한 분석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NTM이 점차 빈번해 진다는 점에서 NTM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시도는 매우 유용하며 우리도 NTM 조치를 도입할 때 이런 방식의 경제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논의내역

- 캐나다는 생우유로 가공한 치즈 소비 소비자후생계산에서 함수 선정이 임의적이고,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분석 가정 등에 문제점이 있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함. 수정보고서에 제시된 민감도 분석은 분석대상자 샘플선정 등 파라미터에 문제가 있고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누구

- 에게 물어보는 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짐을 지적함
- 미국은 매우 제한적인 분석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민감도 분석에서도 데이터와 파라미터 제한 등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사무국은 다수 회원국이 제기한 데이터와 파라미터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원국들이 지적한 시나리오 민감도 분석이나 데이터 문제 해결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차기 작업반회의에 제출기로 함.

1.2.2. 비관세조치의 비용/효과: 추가 분석 사례에 대한 설계서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비관세의 조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하여 2008년에 승인된 비용/효과 분석들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2가지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계획서임
 - 첫째는 미국의 COOL(원산지 표시)제도가 우루과이의 쇠고기 생산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둘째는 EU의 이력추적제가 베트남의 상어메기(광가시우스: shark-catfish)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할 것임. ○비관세조치에 대한 경제적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조사를 그동안 3건(치즈, 새우, 절화)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2건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하자는 데 대해 별 이견 없음.
 - 특히 이번에 분석하고자 하는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COOL)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슈로서 원산지 표시제가 개도국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 점이 실증데이터로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상어메기에 대한 분석은 수산물에 대한 분석으로서 사실 농업위원회 소속 작업반에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음.
 - 다만, 그 경우 대안으로 다른 사례를 추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면 회의장에서 다른 나라의 의견을 참작하여 우리 입장을 표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나. 주요 논의내역

- EU,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은 COOL 제도가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무역왜곡 가능성이 논쟁 중이라며 깊은 관심과 기대 표명
- 멕시코, 브라질은 COOL 제도를 무역왜곡으로 WTO에 제소한 상황임
- 독일은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연구진행이 힘들 것임을 언급하고, 캐나다는 생우유치즈 분석사례처럼 데이터 확보 가능여부와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경우도 레이블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만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사무국은 이력추적제(상어메기)분석은 계획된 대로 추진하고 미국 COOL제도 분석은 추가논의를 거쳐 연구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 소고기 수출 건이 제안되기도 함.

1.2.3. 무역관련 미래 시나리오분석: 연구계획서 (Trade-Related Aspects Of Future Scenarios: Scoping Paper)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세계 농-식품 부문의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장기전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된 향후 연구일정을 밝히고 있음
 - 2010년 10월초에 다양한 연구기관을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중장기 전망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접근방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 2010년 11월에 열릴 농업과 무역에 관한 공동 작업반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이 계획됨. 이 보고서에는 미래에 대한 개략적 전망(storylines)들이 정리가 되고, 미래의 농-식품 부문에서의 주요 분석과제들이 논의

될 예정임

- 2010년 11월에 농업에 관한 Global Forum에서 식량안보, 빈곤퇴치 및 개발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회의(session)를 개최할 계획임
- 농업 및 식품 부문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중요 결정 요인들의 미래변화에 대한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장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조건부 시나리오 (conditional scenario)로서 농-식품 부문의 추세분석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전망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이 필요함. 첫째,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농-식품 부문의 어떠한 점들을 전망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제들을 도출하여야 함. 둘째, 농-식품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미래변화에 대한 기본가정들이 설정되어야 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가정들이 전망과제들에 주는 함의들 (implications)을 이론 및 실증 측면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도출할 모형이 필요함.
- 중장기 전망과제의 도출과 관련하여, 농-식품의 수입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06년도 중반부터 2008년도 중반에 발생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현상 이후 제기된 이슈 중 하나인 세계 농업시장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짐.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증가하는 식량 및 식품 수요증가에 세계 농업 및 식품 생산이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지의 생산능력의 문제와 세계 식량 수급문제를 국제무역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결하느냐의 지역 및 국가 간 수급조절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수급조절을 얼마나 안정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국제가격의 안정성 문제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행해지기를 바람.
- 중요요인들에 대한 기본가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환경과 에너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세계 농-식품 부문의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반응에 대한 낙관 및 비관적 전망을 포함한 상반된 다양한 견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람. 2006년도 중반부터 2008년도 중반에 발생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현상과 2008년 이후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세계경기의 급격한 변동현상은 세계 농업부문이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전통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많은 새로운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또한 장기전망에 특히 필요한 기후변화, 인구변화 및 토지와 물자원의 부족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농업 및 식품 부문에 대한 전망에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람.

- 동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연구진들이 이론 및 실증적으로 보다 일관된 전망 모형을 개발하기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예컨대 중장기 전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들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전망 관련 연구 성과들과 다양한 접근방식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하려는 계획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됨. 아울러 동 연구계획서는 경제학을 넘어서는 다학제간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의 노력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에서의 연구 성과들에 대한 기대가 큼.

나. 주요 논의내역

- 프랑스는 기후변화, 환경, 식품안전, 시장규제, 영양, 생물학적 다양성 등 농업부문이 당면한 많은 도전에 대한 분석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독일은 식품 시장의 중장기 전망이 필요성을 강조함
- 캐나다는 환경, 녹색성장 등은 무역작업반의 의제 범위를 벗어남을 지적하고, 미국과 스웨덴은 향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시나리오 분석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함
- 사무국은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시나리오가 고려해야할 요소인 기후변화, 환경, 녹색성장 등은 상호관련성이 크고 생산, 소비, 무역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무역환경변화에 대한 단순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어렵다고 언급함
- 10월 예정된 시나리오분석 전문가 워크샵까지 관련 이슈를 계속 논의하기로 함

1.2.4. 가공상품 무역의 변화패턴 (Changing Patterns Of Trade In Processed Products)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가공농산물을 둘러싼 여러 측면의 변화패턴을 정리하고, 가공농산물 무역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나라들의 특징들을 밝혀냄으로써, 가공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가공농산물 수출은 소수의 부유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거래 상품은 고기, 채소, 달걀 등 상위 20개 상품이 총수출의 48%를 차지함
 - 가공농산물 비교우위국가 역시 소수의 부유국가이며 다품목 소량 수출보다는 소품목 대량 수출을 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기본인식은 농산물 교역 증대 측면에서 가공 농산물 교역 증대가 중요하다는 것에 있음. 첫째, 가공 농산물 수출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며 또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수출 증대를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가공 농산물 수출을 얼마나 증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있음. 둘째, 가공 농산물 수출은 농가수준(farm gate)을 넘어서서 고용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님. 이러한 기본인식하에서, 가공 농산물 교역에 시장점유율이 높고 비교우위가 높은 high income countries들의 특징을 밝혀냄으로써, 다른 여타나라들에게 가공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모색에 함의를 주려는 것이 동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농산물 교역의 증대를 위해 어떠한 가공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동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농산물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의미함.
- 먼저 가공 농산물 수출에 있어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이 내연적 또는 외연적 확대 유형을 갖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수출물량 증대를 통한 내연적 확대 유형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수출

량증대가 가격하락을 수반할 수 있으며, 외부충격에 따른 수출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에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시장에 판매하는 외연적 확대 유형은 내연적 확대 유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나, 정보나 학습비용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동 보고서는 더 나아가 내연적 확대 유형이 고소득국가의 수출확대 유형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출물량증대가 고품질에 따른 가격프리미엄을 수반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만약 그것이 외연적 확대 유형인 경우, 다양한 상품의 도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시장 개척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임.

○ 적절한 문제의식과 심도 있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추가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동 보고서는 무역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시기를 1995-97년과 2006-08년도의 두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특정년도의 개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3년 평균 수출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1995-2008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두 시기 구분은 자료의 처음과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시기구분을 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명시적 설명이 요구되어짐. 예컨대 전체 기간 (1995-2008) 동안 어떤 추세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평균계산의 기간을 왜 3년으로 설정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동 보고서에서는 Balassa's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를 이용하여 가공농산물 교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나라들의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음. 하지만 계산된 RCA값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분석에는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 될 수 있음. 첫째, 계산되어진 RCA지수의 절대값은 경제적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둘째, 소득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상관계수의 값이 낮게 나타났음. 셋째, proxy endowment 또는 무역 원활화 변수들과 RCA값들이 갖는 음(negative)의 상관관계는 경제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넷째, 상관관계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음. 다섯째, 동 보고서에서 보여주었듯이 개별 가

공 농산물에서의 비교우위는 집계된 전체 가공 농산물의 비교우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님. 예컨대, 독일, 중국, 그리고 태국은 가공 농산물의 주요수출국이지만 집계된 전체 가공 농산물의 교역에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동 보고서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예컨대 내연적 확대는 전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수출량증대가 가격하락을 수반할 수 있으며, 외부충격에 따른 수출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가격프리미엄을 위한 고품질의 상품개발은 수출증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한편 다양한 상품과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와 학습비용은 증가하나, 외연적 확대는 외부충격에 따른 수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아울러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유발할 수 있음. 그러나 각각의 전략은 항상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의 최적 조합이 보다 이상적일 수 있음. 또한 전체와 개별 가공 농산물에서 최선의 수출확대전략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음. 개별 가공 농산물에서의 비교우위는 집계된 전체 가공 농산물의 비교우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런 점에서 중요함.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상품차원에서의 분석이 추가로 수행된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주요 논의내역

- 한국은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를 이용한 분석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함. 첫째, RCA 지수 절대값의 경제적 의미가 불명확함. 둘째, 소득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상관계수의 값이 낮게 나타남. 셋째, 유사 부존자원(proxy endowment) 변수들과 RCA 값이 가진 음(negative)의 상관관계 경제적 해석이 어려움. 넷째, 독일, 중국, 태국은 가공 농산물의 주요수출국이지만 RCA 분석에 의하면 비교우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분석상 오류와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페인은 자국이 수출국에서 빠진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함
- 호주는 DDA 등 무역조치를 고려하고 분석대상 국가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은 분석대상을 축소하고 운송비, 관세 등도 고려할 것을 요구함
- 미국은 연구범위와 목표가 광범위하여 분석목적이 명확하지 못함을, 프랑스는 수정된 HS코드를 참조할 것을 강조함
- 사무국은 본 연구는 무역정책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으며 상관관계 분석은 인과성 분석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키로 함,

1.2.5. 기타 (구두보고)

- 지역무역협정에서 농업에 대한 검토 (발표내용)
 - 지역무역협정 체결 후 농업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국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3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분석한 결과 농업부분과 비농업부분의 시장개방 추이는 비슷하지만 개방정도는 농업부분이 낮음(협정 후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장개방 증가 이후는 그 수준에 정체, 비농업부분은 100%에 근접, 농업부분은 70-80% 정도에 머뭄)
 - 농업 지역무역협정에서 수출보조(67%), SG(36%), 국내보조(36%)가 포함됨.
 - 관세보다 원산지표시(rules of origin)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많음.
- 회원국발언
 - 캐나다는 칠레와의 지역무역협정을 언급하고 덤핑으로 인한 문제점을 연구에 포함해 줄 것을 희망함
 -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에는 경제적, 정치적 고려가 모두 이루어짐을 지적함. 분석에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측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또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에 기존 농업경제학자 뿐만 아니라 경제

학자들도 포함하여 분석이 필요함

- EU는 경제전체를 포함한 분석도 필요하나, 본 의제의 주요안건은 농업 부문에 대한 분석임을 강조
- 사무국 :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키로 함

1.3. 회의 결과 시사점

- 이번 작업반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비관세 조치의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연구(치즈, 새우, 화훼)수정보고서, 비관세 조치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추가 연구계획서, 농식품분야 미래 시나리오 분석(연구계획서), 가공농산물 무역변화 양상 등 4개 의제를 논의하였음.
- 비관세조치의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품목은 아니지만 농산물 무역에서 수입금지, 판매승인, 엄격한 수입검사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비관세조치의 비용 편익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추가 연구로서 거론된 미국의 COOL(원산지 표시제)제도에 대해서 수출국들은 무역왜곡 가능성과 관련하여 연구를 적극 지지하는 등 회원국들간에 상반된 입장차이가 있었음
 - EU의 이력추적제가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국내정책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 세계농식품부문 중장기 전망은 미래상황에 대한 조건부 시나리오로서 장단기 정책과제 도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내 농정에 활용도가 클 것이므로 관련 심포지엄, 포럼 등에 관련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성이 큼
- 가공농산물 무역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공농산물 무역의 패턴과 주요 상품, 비교우위국가, 수출확대 유형 등에 대한 분석은 국내 가공 농산물의 수출확대 정책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제 64차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 회의

2.1. 회의 개요

- 일자: 2010년 11월 18일(목)~19일(금)
-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최수아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박사, 문한필 박사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의제명	관련 문서 번호
향후 비관세조치(NTM) 작업을 위한 제안	[TAD/TC/CA/WP(2010)4]
NTM 작업결과 발간을 위한 제안	[TAD/TC/CA/WP(2010)5]
가공농산물 무역의 변화양상 보고서	[TAD/TC/CA/WP(2010)3/REV1]
농식품 분야 장기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워크샵 보고서	[TAD/TC/CA/WP/RD(2010)1]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TAD/TC/WP(2010)21]
지역무역협정의 농산품 관련협정 분석보고서	[TAD/TC/CA/WP(2010)7]

2.2. 의제별 내용, 검토의견 및 논의내역

2.2.1. 향후 비관세조치(NTM) 작업을 위한 제안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그 동안 NTM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NTM이 무역에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역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도 함께 제시되어 의미있는 연구였음. 하지만 NTM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해 많은 부분 가정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인 시사점을 유추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음.
- 또한 후속사례를 분석하려고 해도 관련 당사국들이 자료제공을 꺼리는 바람에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현재 제시된 3가지 지역무역협정에서의 SPS 관련된 NTM 조치를 분석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환영할 만 하며 우리로서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음.

나. 주요 논의내역

- 회원국의 서면의견 수렴(3주) 후 사무국은 12월 25일 전까지 연구계획서 수정안을 공개한 다음,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사무국은 기존에 분석된 2개 사례 외에 추가로 3개 지역무역협정(EU 공동시장, NAFTA, TTMRA)을 대상으로 SPS 관련규정, 규제평가절차, 분쟁해결구조 등을 분석하되, 분쟁이 많은 육류제품을 중점대상으로 하겠다고 연구계획을 제안
- 그러나, 사례로 제안된 관계국가에서는 해당사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것

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분석내용에 있어서도 절차나 구조보다는 개별 품목에 대한 사례분석을 선호하는 의견을 제시함.

- EC와 프랑스 등 EU권 회원국들과 호주는 기존의 품목별 사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더 선호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에 제안된 세 가지 RTA(EU 공동시장, NAFTA, TTMRA)에서 SPS 관련 NTM 조치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협정문, 협상절차, 분쟁해결 메카니즘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Item 8에서 이미 비슷한 분석을 행하고 있음을 지적). 즉 시장통합수준이 현저하게 서로 다른 RTA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의미(정책적 함의)있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프랑스는 다이옥신과 관련된 중국의 육류 수입제한, BSE 질병 등과 같은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의 효용성을 주장하였음.
 - 호주 또한 TTMRA는 제조업에 중심을 둔 협정으로 농업관련 SPS 조항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뉴질랜드 또한 자국 농림부의 예산제약으로 TTMRA 관련 연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음.
 - 미국 또한 NAFTA에서 원산지표시제(COOL)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품목인 육류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함.
 - 독일, 브라질 등은 시장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EU 공동시장보다는 EU와 Non-EU간의 지역협정(예: EURO-MED)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에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회원국은 이후 3주 이내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포함한 코멘트를 사무국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 이 연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 1)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분석방법의 승인 또는 새로운 분석방법의 제안.
 - 2) 새로운 분석대상 RTA(NAFTA, EuroMed, Mercosur)에 대한 승인 및 추가(또는 대체) 분석대상 RTA 제안
 - 3) 새롭게 제안된 RTA에서 SPS 관련 조항을 분석할 특정 농산물 품목 제

안 (모든 농산물 품목에 대한 분석보다는 특정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함)

2.2.2. NTM 작업결과 발간을 위한 제안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이 보고서는 기존에 이미 공개 승인된 문서(비관세조치의 이론적 틀, 3가지 사례분석)들을 총 정리하는 것으로서, NTM 조치가 잘 설계되면 경제적으로도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함.

나. 주요 논의내역

- 회원국들은 이 작업결과를 발간하는 것에 동의함. 일부 제출된 서면의견을 검토·반영한 최종보고서(안)을 발간 전에 Delegates' Corner를 통해 제시할 예정임.

2.2.3. 가공농산물 무역의 변화양상 보고서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동 보고서는 농산물 교역증대를 위해서 가공 농산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확대방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가공 농산물 교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들의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농산물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농산물 교역 증대 측면에서 가공 농산물 교역 증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첫째, 가공 농산물 수출이 농산물 수출액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며 또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수출 증대를 얼마

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가공 농산물 수출을 얼마나 증대할 수 있는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둘째, 가공 농산물 수출은 농가수준(farm gate)을 넘어서서 고용과 소득 창출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님.

○ 수출주도형 성장 (export-led growth)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동 보고서는 다양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내연적 확대(intensive margin)는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수출량증대가 가격하락을 수반할 수 있으며, 외부충격에 따른 수출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반면 가격프리미엄 (price premium)을 위한 고품질(high quality)의 상품개발은 수출증대에 따른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
- 한편 다양한 상품과 시장을 개발하기위해 정보와 학습비용은 증가하나, 외연적 확대(extensive margin)는 외부충격에 따른 수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음.

○ 가공 농산물 교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이전 연구에서는 부유국의 상품(merchandise)교역과 농산물 수출이 대부분 외연적 확대(extensive margin: more items to more markets), 즉 상품 구성이나 수출대상국 구성상에 diversified export basket을 이용한 수출증대의 유형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었음. 하지만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 가공 농산물의 경우 부유국의 수출증대의 60%이상이 내연적 확대(intensive margin: higher volumes), 즉 수출량의 증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내연적 확대를 가격과 수량 요소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높은 품질의 상품을 가격 프리미엄과 함께 수출하는 반면, 많은 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은 추가적 수출에 약간의 낮은 가격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연적 확대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기존의 상품을 기존의

교역국에 수출하는 유형과 기존의 상품을 새로운 교역국에 수출하는 유형은 각각 78%, 19% 정도 수출확대에 기여하였음. 이는 외연적 수출확대가 새로운 상품의 수출보다는 주로 기존의 상품의 수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내연적 및 외연적 수출확대전략은 항상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의 최적 조합(optimal mix)이 보다 이상적일 수 있음. 따라서 부유국이 주로 내연적 확대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농산물에 있어서 외연적 수출확대의 중요성을 강조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동 보고서의 발견들은 보다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외연적 수출확대전략이 부유국에 있어서 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contribute a sizeable share), 또한 같은 소득계층의 국가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가 보다 다양한 상품을 보다 다양한 교역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음. 이와 아울러 동 보고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은 상품을 수출품목 (export baskets)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가 보다 높은 소득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동 보고서는 zero-trade data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무역촉진 변수들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gravity모형의 접근법을 확대하였음. 하지만 동 보고서에서 사용된 다양한 gravity모형의 결과간의 차이점들과 예상밖의 결과들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함. 예컨대 부패(corruption) 정도와 수입국의 통관시간의 지연(time delay)이 가공농산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결과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나. 주요 논의내역

- 공개 승인(11월 말까지 서면의견 수렴후 최종보고서(안)을 10일 이내에 Delegates' Corner를 통해 제시할 예정임)
- 사무국은 가공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의 특징, 무역 변화양상 등에 대해 55개 주요 수출국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회원국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관세영향에 대한 검토추가(브라질), 일부 표현의 수정(프랑스, 서면으로 제출)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고 2주간의 서면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

2.2.4. 농식품 분야 장기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워크숍 보고서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농업 및 식품 부문에 대한 장기 시나리오 분석의 개선을 위한 OECD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노력을 치하함. 특히 농업과 환경에 관한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JWPAE)회의를 중심으로 한 생물물리학 및 환경 측면에서 다학제간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위한 노력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연구 성과들에 대한 기대가 큼.
- 더불어 국제 교역 및 국내 정책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대안별로 농식품부문의 장기 시나리오 분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계획되어지기를 바람.
 - 시나리오분석의 목적은 바람직한 정책대안(alternative policy options) 마련을 위해 필요한 향후 전망들(stories of alternative future developments)의 제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09-10년 PWB 아이템 3.2.1.의 첫번째 프로젝트에서 강조되었듯이, 2006년도 중반부터 2008년도 중반에 발생된 농산물 가격의 급등현상이 후 제기된 이슈 중 하나는 지역 및 국가간 생산격차가 증대하는 현 추세에서 세계 식량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대안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임. 세계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예컨대 교역의 보다 높은 자유화를 통한 방법과 (특히 수입개도국을 중심으로) 식량생산 및 재고 능력의 제고를 통한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따라서 농식품 부문의 장기 시나리오 분석의 중요 과제는 세계식량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별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농업과 무역에 관한 공동작업반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JWPAT)회의에서 다루어질 계획인 교역 및 국내 정책과 농업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계획이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랍.

나. 주요 논의내역

- 회원국들은 워크샵 이후 추가연구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인식함.
- 사무국은 장기 시나리오간에 다양성이 많았으며, 각 시나리오별 가정에 대한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의 조화(harmonization) 등이 추후 필요하지만, 시나리오별로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워크샵 결과를 보고함.
- 회원국들은 장기 시나리오분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은 매우 다른 분석 방법 및 가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기 시나리오 분석결과들에 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비교를 위해서, 분석결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많은 회원국들이 사무국이 워크샵에 대한 정보를 Delegates' Corner에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사무국은 추후 비슷한 행사시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하기로 함. 또한 일부 회원국은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설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함.

2.2.5. 지역무역협정의 농산품 관련협정 분석보고서

가. 의제 내용 및 검토의견

- 2008년 후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DDA협상 또한 지연되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또는 권역별 지역무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기존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FTA 때문에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가 약화되고 있으며, FTA의 협정 내용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무역자유화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비록 기초적이고 제한적인 분석이지만 WTO농업협정을 기준으로 다양한 무역자유화 척도를 대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RTA가 보다 진전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있음.
 - 무관세라인으로 분석한 시장접근, 수출보조금지 등에서 뚜렷한 진전이 있었던 반면, 비관세조치인 원산지 규정, SPS, TBT의 경우 WTO에 비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또한 대부분의 RTA에서는 국내농업보조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 다룬 50여개의 RTA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싱가폴 FTA, 한-칠레 FTA만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국가별 분석이 아닌 권역별 분석(아태지역)을 택하여 보고서 내용에 우리나라의 FTA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음.
- 현재 15개국과 FTA를 체결(발효 포함)하고 10여개 이상의 나라와 FTA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R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 연구결과를 적극 지지할 필요성이 있음. 단 비관세조치에 해당하는 원산지 규정, SPS, TBT 등에서 향후 보다 무역확대 방향으로 진전된 규정이 RTA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의 결론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음.

나. 주요 논의내역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IADB가 공동저자이며 TAD Working Paper로 발간 예정)
- 사무국은 약 50여개 지역무역협정의 농산품 관련협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관세분야는 진전이 크나, 비관세조치 분야는 진전이 크지 않은 편이라는 것이 핵심내용임.
- EC는 이 보고서에서 TRQs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점을, 프랑스는 실질적인 국내보조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을 지적함. 무관세라인의 비중을 이용한 시장접근확대 여부만이 강조되어 RTA의 성과를 확대해석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또한 프랑스는 ‘수출보조’의 정의가 보다 분명해야 함을 지적함.
- 스페인은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50여개의 RTA의 대표성(지리적 편향, 개방 정도에 있어서의 편향)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가 실제 무역패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설탕과 담배의 경우 분석결과는 개방정도가 낮은 품목들 중의 하나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 미국 또한 분석대상에 아시아 국가들간에 체결된 RTA(Intra Asian agreement)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들 협정이 농업분야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국내시장에 대한 보호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 분석은 상당히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저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RTA를 분석대상으로 추가하기는 어렵고, 이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RTA가 무역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로 진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많은 회원국들은 이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정치한 통계와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RTA가 무역과 소득(또는 welfare)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통계와 분석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기를 요구함(이러한 분석이 이 보고서에 부분적으로나마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저자는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사무국은 칠레(18개 RTA 체결), 멕시코 등 특정국가들의 RTAs를 사례(대상)로 실제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지리적 대표성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함.
- 이 보고서는 12월 8일까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받고,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개정하여 IADB와 공동저자로 발간될 예정임.

2.2.6. 기타

- 의제 8인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정보제공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환율 수준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수입보다는 수출에, 공산품보다는 농산품 교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2) 환율변동성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음.
 - 사무국은 이 연구는 칠레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분석범위를 확장한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며,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포함될 예정임을 밝힘. 확장·개정된 보고서는 무역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에 제출될 예정임.
- 2011년도 의장단으로 의장 Mr. Jorge Rueda(멕시코) 외에 3인의 부의장(Mr. Darryl Brehm(미국), Mr. Sharief Mohamed(네덜란드), Ms. Katharina Johansson(스웨덴))이 선출됨.

2.3. 회의 결과 시사점

-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 추가사례연구를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하였으나, 분

- 석사례 선정에 이견이 있었음. 대상 사례선정 및 연구범위에 대해 서면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 약 50여개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농산품 관련협정을 분석한 보고서, 가공농산물 무역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보고서가 각각 승인되었으며, 서면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공개하기로 함.
 - 비관세조치 추가사례연구의 분석대상사례 선정에 대해 전기 회의에 이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
 - 3주 이내에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3개 사례(NAFTA, EuroMed, Mercosur)선정에 대한 지지여부, 연구계획서의 분석방법, 대상품목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농업위 대표단 코너” 등을 통해 추후 동향을 파악할 필요 있음.
 -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농산품 관련협정을 분석한 보고서와 비관세조치 분야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논의방향을 향후 지역무역협정 추진시 참고할 필요 있음.

제 7 장

농업과 환경 합동작업반 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

1. 제 30차 농업과 환경 합동작업반 회의

1.1 회의 개요

- 일자: 6월 28일(월) - 30일(수)
-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서은수 서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
-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

의제명	관련 문서 번호
30차 JWP 의제 채택	[COM/TAD/CA/ENV/EPOC/A(2010)12]
29차 JWP 요약본 채택	[COM/TAD/CA/ENV/EPOC/M(2009)61]
최근 농업-환경 정책 개발에 관한 논의	구두 보고됨
업무실적 평가	[COM/TAD/CA/ENV/EPOC/RD(2010)13]

JWPAE와 관련하여 환경과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COM/ENV/EPOC/TAD/CA(2010)14]
수자원과 농업	[ENV/EPOC/GSP(2009)16] [ENV/EPOC/GSP(2010)16] [ENV/EPOC/GSP(2010)17] [ENV/EPOC/GSP(2010)18] [COM/TAD/CA/ENV/EPOC/RD(2010)15] [COM/TAD/CA/ENV/EPOC(2010)16] [COM/TAD/CA/ENV/EPOC(2010)17] [COM/TAD/CA/ENV/EPOC(2010)18] [COM/TAD/CA/ENV/EPOC(2010)19]
기후 변화와 농업	[COM/TAD/CA/ENV/EPOC(2010)20] [COM/TAD/CA/ENV/EPOC(2010)21] [COM/TAD/CA/ENV/EPOC(2010)22] [COM/TAD/CA/ENV/EPOC(2010)23]
녹색 성장과 농업	[COM/TAD/CA/ENV/EPOC(2010)24]
농업-환경 지표	[COM/TAD/CA/ENV/EPOC(2010)25] [COM/TAD/CA/ENV/EPOC(2010)26]
농업-환경 정책	[COM/TAD/CA/ENV/EPOC(2010)27] [COM/TAD/CA/ENV/EPOC/RD(2010)28]
JWP의 중간 점검	[COM/TAD/CA/ENV/EPOC(2010)29]
2010 12월 JWP를 위한 논의 및 계획	파워포인트로 보고됨

1.2. 의제별 검토의견과 회의결과

1.2.1.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및 관련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토의

가. 의제개요

- 최근 회원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등 농업부분 주요이슈에 대하여 헝가리, 스페인, 멕시코, 영국,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의 발표가 있었음.
 - 헝가리는 “2009-2014 친환경농업계획”을 발표함. 목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임.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표개발로서 환경보존, 경제성장, 정보제공 등 분야별 목표를 도입함을 소개함.
 - 스페인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농업보험제도”를 발표함.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부족이 심각한 여건 하에서 농가위험을 분산시키고 특별공적 보조, 재해기금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특히 목초지 가뭄에 대응하여 “인덱스 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정책수행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함.
 - 멕시코는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관리 사례”로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야쿠강 유역중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함. 이 프로젝트 목표는 야쿠강의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정책모델 개발에 있음. 이 작업은 금년 6월에서 시작하여 2011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임을 밝힘.
 - 영국은 금년에 발표된 “2010 신식량전략”을 소개함. 이는 안전한 식품 공급, 수익성 있고 경쟁력을 가진 농업, 지속적인 식량생산 등을 핵심목표로 함을 언급함.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가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농업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시함.

- 뉴질랜드는 물관리와 관련 자국의 “물공급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소개함. 이는 물관리가 환경문제에서 나아가 경제적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물관리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새로운 기회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함. 주요 작업은 “토지와 물 포럼, 정책과제 도출, 민간단체와 토론 등이 포함됨.

나. 회원국 반응

- 헝가리 정책소개에 대하여 미국은 생물다양성 보호정책 추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호주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료 수집방법 등 자료 신뢰에 의문을 제기함.
- 스페인 정책소개에 대하여 호주는 정부와 농가의 비용부담 비율을 질의하고 EU는 일반 보험과 농업보험 상호 연계성, 가입절차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어떤 농가가 참여하는지 관심을 나타냄.
- 영국의 “2010 신식량전략”에 대하여 사무국은 OECD의 기여방안 등 큰 관심을 표명함.

1.2.2.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활용보고(Activity Report)

가. 의제개요

- 농업환경합동작업반 활동에 대해 발간자료 등 활동 보고 내용임.

1) JWPAE 활동 관련 보고서 발간

- 농업에서의 환경 요건 상호 준수(cross-compliance) : 환경 규제, 농업 소득 지원 지불금, 농업환경 지불금, 환경 요건 상호 준수 간의 연관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OECD 국가들의 환경 요건 상호 준수에 관해 기술하고 있음.
- 비용 효과적인 농업 환경 정책 조치를 위한 지침 : 농업 환경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환경 기준, 환경 조세, 농업 환경 지불금, 거래 가능 허가제(tradable permit scheme)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농업 환경 문제를 위한 정책 조치 : 보고서는 지난 10년간(1990년대 중반 이후) OECD 국가들에서 농업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던 다양한 범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농업 용수의 지속가능한 관리 : 보고서는 농업 부문에서의 수자원 관리, 홍수, 가뭄, 배수 등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 측면과 함께 서로 간의 연계를 살펴보고 있음.
- 기후변화와 농업(영향, 대응, 완화) : 보고서는 농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 방안,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된 경제적, 정책적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음.

2) JWPAE 보고서 공개

- “농업정책과 환경효과간 연계분석”, “기후변화평가에 있어 토지이용 변화(도전과 기회)”, 그밖에 JWPAE 이외 기타 보고서로 “2015년까지의 농업 바이오 기술 및 관련 천연자원” “농업 정책 및 농촌 개발” 등의 보고서는 공개함.

나. 주요 논의사항

- 영국은 주요 정책과제 논의에 회원국을 포함한 다수 비회원국 등의 참여를 사무국에 요청함. 사무국은 모든 의제에 개도국 참여는 어렵고 기후변화 등 중요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워크숍, 포럼 등에 개도국 초청 등 참여토록 노력할 것임을 밝힘.

1.2.3. 농업환경합동작업반과 관련된 환경국 소관 프로젝트

가. 보고서 내용

- 사무국은 최근 정보공유를 위해 농업환경합동작업반(JWPAE)과 관련된 환경국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함.
 - 녹색성장 전략 : 녹색성장종합보고서 작성을 금년가을부터 자문 절차를 걸쳐 2011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임. 종합보고서 초안이 2011년 1월말까지, 2차 초안이 3월 중순까지, 최종보고서는 3월말에 배포될 예정임.
 - 차기 “OECD 환경전망(environmental outlook)” 준비 상황: 준비 중인 보고서는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부족, 환경과 건강 등 네 가지 이슈에 초점.
 - 바이오 기술에 대한 위험 및 안전성 평가: 위험/안전성 평가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각 국가의 접근방식을 조화시키고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반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힘.
 - 수평적 물 프로젝트: 주요 작업과제는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물과 기후변화”, “물과 녹색성장” 등임
 - 생물다양성: OECD 차원에서 금년 10월 일본나고야에서 개최 예정인 제 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경제와 생물 다양성정책에 관한 최근 작업”을 발표할 예정임.

나. 주요 논의사항

- 미국과 호주는 정책평가나 전문가보고서 등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물다양성을 중요과제로 다룰 것을 요구함.
- EU는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타겟팅이 너무 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영국은 농업위원회와 환경위원회의 공동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함.

- 사무국은 앞으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과 건강 등 4개 의제를 중점 다룰 계획임을 설명함.

1.2.4. 수자원과 농업: OECD JWP 제2차 프로젝트

가. 머레이달링 유역의 물관리 제도 (Water governance in Murray-Darling Basin, ENV/EPOC/GSP(2010)16)

- 이 보고서는 호주의 머레이달링 유역의 물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한 것임. 호주는 농업용수 사용에 있어서 전액회수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로서 이OECD의 물관련 회의마다 참가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음. GSP 작업반 뿐만 아니라 농업환경합동작업반이나 농업정책무역작업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액회수제의 전도사 역할을 전담하고 있음.
 - 본 보고서도 형식적으로는 WPGSP의 요청에 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호주정부가 OECD에 제안하여 자발적·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결국 농업수출국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논리로 포장하고 있으나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불리한 사례로 이용될 것임.
- 한국은 물사용에 대한 전액회수제가 호주의 경우 최선이지만, 물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은 각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을 언급함.
-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물관리 제도는 매우 복잡하며 특수성을 반영해야함. 머레이 달링지역은 매우 특수한 지역으로서 지역적인 사례로서 회원국 간 사례 공유로서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함.
- 프랑스는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보다 상세하게 명시할 것과 계량적 접근보다 정성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함.

- 사무국은 각국의 정책은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물관리의 이상적인 모델설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회원국들에게 강조. 회원국들의 의견을 외부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수정보고서를 12월 31차 JWP회의에 제출키로 함.

나. 농업과 물정책 사이의 연관성 증가 (Increasing Coherence between Agriculture and Water policy, ENV/EPOC/GSP(2010)17)

- 한국,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은 농업과 물정책 상호관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냄.
 - 한국은 농업용수정책이 몬순기후 등 지역적 특성, 수도작 위주의 작부체계 등으로 물가격 부과 등 경제적 정책도구보다는 기술적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함.
 - 미국은 지리적 여건이나 기후 등 환경조건이 다른 경우 물관리 정책도상이 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서면의견을 7월말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외부전문가에게 전달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설명함.

다. 수자원관리 의사결정관련 OECD 결론과 권고

- 스페인은 OECD 주관 물관련 고위급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고 캐나다는 워크샵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 좋은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함.

라. 농업수질의 지속가능한 관리(진전보고서)

- 한국은 사례연구로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가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필요시 사무국에 자료제출 계획임을 언급함.
- 미국은 보고서 구조와 자국의 사례요청 자료에 대한 재검토 요구. 스페인, 캐나다 등은 회원국 사례보고가 너무 많아 계획 기간내 작업이 어려울 것이

라는 우려사항을 언급함.

- 사무국은 사례연구 자료를 9월 중순까지 제출해 줄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함. 회원국들의 협조를 얻어 보고서 작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언급함.

마. 농업수질의 지속가능한 관리(외부전문가 보고서)

(1) 농업이 양식에 미치는 영향 (Agriculture's Impact on Aquaculture: Hypoxia and Eutrophication in Marine Waters)

- 미국은 농업이 양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 사례 보완을 요구하고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저산소증과 양식간 상관관계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후 문서공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힘.

(2) 농업으로부터 유래된 신생 수질오염물질 (New and Emerging Water Pollutants Arising from Agriculture)

- 한국은 신생오염물질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연구진행을 위해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준설정, 감시기구 설치 등을 제안함.
- 프랑스는 신생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요구하고, 네덜란드는 보고서의 구체적 목적 제시가 미비함을 지적함.
- 스웨덴은 신생오염물질의 목록, 기준, 근거제시가 필요하고 독일은 농약의 경우 어떤 물질이 ECs인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 포르투갈은 기후변화와 ECS간 관련성이 떨어지고, 국가별, 지역별 상호 연계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함.
- 캐나다는 ECs의 전문가 검토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함을 강조하고 영국은 ECs의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함을 언급함.
- 사무국은 국제적 협력, 기준설정 등이 중요하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을 밝힘.

(3) 물 오염자 부담원칙 (Application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PPP) to water pollution from agriculture)

- 한국은 무엇보다 비점오염원 분야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PPP적용의 전단계로서 장기계획 수립과 농업인 환경의식 고취 등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영국은 환경손실평가나 비용산정 등 현실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농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 프랑스는 PPP적용은 지역적 특성 반영이 어려움을 지적함.
- 미국은 비점오염원이 많아 농업에서 현실적 적용이 어렵고 PPP의 농업적용을 위해서는 오염원의 확률적 특성과 처방적 접근이 중요함을 언급함.
- 스페인은 PPP의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여 PPP의 정치적 수용이 곤란함을 강조함.
- 사무국은 PPP의 농업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외부전문가에게 전달하여 수정보고서를 작성키로 함

(4) 농업분야 수질거래 (Water Quality Trading in Agriculture)

- 일본은 수질거래제도가 비점오염원을 다룰 때 효율적인 접근방법이고 프랑스는 수질거래의 이론적 핵심내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성공적인 대기오염 거래제도를 분석하여 수질거래에 반영하고 결론에서 수질오염거래의 합리적 추진방안을 제시를 요구함.
-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수질거래도입에 대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이상적인 측면이 강해 현실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 독일은 현장의 많은 농가나 기업수를 고려할 때 수질거래의 현실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사무국은 덴마크에서 질소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수질거래를 도입하고 있으나 운영성과가 낮으며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 보완을 추진키로 함.

1.2.5. 기후변화와 농업: 기후변화와 농업관련 OECD-FAO 워크숍

- 한국은 워크숍에서 영국이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 아이디어(120가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회원국들이 공유와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측면 등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함.
- 네덜란드는 금번 워크숍 결과는 2011-12 OECD 기후변화 작업과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 미국과 영국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보험과 생물다양성이 중요과제임을 언급함.
- 사무국은 작물보험은 기후변화대응 단기대책으로서 논의되었고 전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 예측을 국가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기후변화 관련 작업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을 제시함.

가. 탄소 회계 - 온실가스 감축에 농업부문의 잠재적 기여분 계측 (Carbon Accounting: Measuring Agriculture's Potential Counting to GHG Reductions)

- 한국은 탄소회계에서 LCA 적용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바이오 에너지에 한정된 연구를 생태효율적 관점에서 유기농업과 관행 농업의 성과평가에 적용 확대를 제안함.
- 미국과 영국은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이나 바이오 에너지만을 다루고 있어 대상 범위 확대와 보고서 제목 변경을 요구함.
- 프랑스는 보고서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고 LCA의 참고문헌 수정, LCA의 장단점 분석, 새로운 동태모형 제시 등을 요구함.
- 사무국은 문서제목을 변경하고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아서 12월 작업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키로 함.

나.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GHGs Emissions in the Livestock Sector)

- 한국은 경제적 측면을 보완하고 계량적 접근책으로서 최근 매켄지 보고서의 한계감축비용을 참조할 것을 제안함.
- 프랑스는 IPCC가 제시한 연구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연구의 차별성이 미흡함을 지적함.
- 미국은 방법론은 적절하나 정책수단의 경제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 영국은 FAO와 공동연구로 정책입안자에게 정책도구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함.
- 사무국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수정보완을 위해 7월말까지 서면의견 제출 요구. 특히 한국이 제시한 한계감축비용은 반영 계획임을 밝힘.

다. 38차 APM(2005. 4. 25- 28)완화와 적응 관련 농민 행태와 관리기법 (Farmer Behavior and Management Practice in Relation to Mitigation and Adaptation)

- 한국은 기존 경제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농업인의 행태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국내에서 연구된 농업인 행태분석에 관한 자료 제공 의사를 표명함.
-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문헌조사는 잘 되었으나 개념적 접근보다는 농업인의 인지도나 행태 등에 대한 정책수단 제시를 요구함.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특히 정보경제학이나 소비자 행태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지기반조치의 비용효과성 데이터베이스 (Database on cost-effectiveness of land-based initiativ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 한국은 농경지의 탄소고정은 논과 밭을 대상으로 적절히 균형 있게 접근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계측, 보고, 확인하는(MRV)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 비용효과적인 방법 검토를 제안함.
- 캐나다는 정보 처리 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시범적 운영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위험성을 낮출 것을 제안. 호주는 정보요구가 많고 활용도가 불확실하여 연구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는 D/B구축은 필요하나 국제기구와 협력이 중요하고 자료의 동질성이 요구되나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과 뉴질랜드는 국제기구와 연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함.
 - OECD 사무국은 시범적 접근, 기회비용 반영, 국제기구와 협력 등 회원국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12월 작업반에 제출기로 함.

1.2.6. 녹색성장과 농업(Green Growth and Agriculture)

- 한국은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채택되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고, 2010년 4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농림수산물 분야에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함.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신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지열, 태양열) 활용, 새로운 녹색기술개발,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등을 제시함. 특히 녹색성장의 개념과 이론정립 및 추진과제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에서 2011년 4월이나 5월 녹색성장 전문가회의 개최 유치를 제안함.
- 독일은 동물복지와 인증제도, 유기농업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 일본은 농촌개발 등 지역경제측면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 프랑스는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함을 언급함.
- 이탈리아는 녹색성장의 개념정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도 한국의 녹색성장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지지함. 호주는 한국이 언급한 녹색기술에 비중을 둘 것을 요구함.
- OECD 사무국은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 등을 위해 컨설턴트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 회원국들의 서면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12월 31차 JWP 회의에서

구체적인 연구방향 등을 제시키로 함.

1.2.7. 농업환경지표 워크숍(Workshop on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 한국은 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회원국의 홍보와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성과 진단 및 정책평가를 위해 지표의 지속적인 갱신의 필요성, 지표의 정확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요구함.
- 프랑스는 농업환경지표의 정책결정에 활용하는 방안과 생물다양성 지표를 비중있게 다룰 것을 요구함.
- OECD 사무국은 금년 하반기에 워크숍 결과를 담은 요약자료집 발간 예정으로 회원국들에게 7월말까지 서면의견 제출을 요구함.

1.2.8. 농업의 환경성과 개관: 2판 준비 진도보고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Agriculture at a Glance, Progress Report on preparing the 2nd edition)

- 한국은 발간된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토양지표가 누락되고 양분수지표 작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보고서 작성을 위한 향후 일정이 너무 촉박함을 지적하였으며, 프랑스는 농약 위험성이 누락되고 지표의 건전성 확보를 요구함.
- 스위스는 수질, 생물다양성, 유기농업 관련 지표를 비중있게 다룰 것을 요구하였고 스페인은 지표의 한계를 보고서에 언급하고 지표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함.
- 미국은 지표갱신을 위한 회원국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OECD 사무국과 Eurostat 역할이 모호하고, 설문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토양지표 누락, 시간부족 등을 지적함.
- 사무국은 OECD와 Eurostat가 공동으로 설문서를 작성중이며 토양지표는

농장관리지표에 포함하였고, 수질지표, 생물다양성, 농약위험성 등은 자료 확보가 어려워 미포함. 설문서 초안을 7월말~8월초까지 회원국에 배포하고 가능한 한 당초일정대로 작업추진 예정임을 밝힘.

1.2.9. 농업환경정책조치 목록(Inventory of Agri-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 한국은 정책 인벤토리목록에 최근 OECD JWP의 농업환경정책 논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라벨링에 탄소라벨링제도를 포함하고, 기후변화 정책에 완화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응정책도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함.
- 프랑스는 정책 인벤토리작성의 활용가치를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스위스와 체코는 정책인벤토리를 종합 분석하여 회원국들에 제공할 것을 요구함.
- OECD 사무국은 인벤토리 작업은 PSE 등 회원국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와 밀접한 중요한 작업으로 회원국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 작업반에 수정보고서를 제시키로 함.

1.2.10. 농업환경정책 평가 워크숍(Workshop on evaluating agri-environmental policies)

- 한국은 2010년 하반기 워크숍에서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정책평가 방법론과 핵심과제 발굴 등을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에 의뢰하여 발표토록 하여 2011년 전문가 회의의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 네덜란드와 프랑스도 농업환경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 틀 제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을 요구함.
- 캐나다와 호주는 금년 12월 워크숍은 불필요하고 회원국 정책평가 사례분석 등 컨설턴트 보고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함.
- 사무국은 12월 워크숍은 내년도 워크숍의 핵심의제 발굴을 위해 컨설턴트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설명할 계획임을 언급함.

1.2.11. 2010년 농업환경 합동작업반 일정

- 제31차 JWP회의 2010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될 것임.
 - 2011년도 의장단 선거, JWP 중간평가(mid-term review),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책요약(Policy Brief) Draft 버전 제시, 농업환경지표 진도보고 내용 발표, 농업환경정책평가 워크숍 준비 관련 Draft 제시, 농업과 녹색성장 논의 Draft 버전 제시
 - 농지변화 관련 pilot study 계획,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작물보험과 농업인 인센티브 연구추진 계획서(scoping paper), 정책 및 실행조치에 관한 연구추진 계획서, FAO와 OECD의 협력 업데이트 등을 다루게 될 것임.

1.3. 평가

- 금번회의 논의 주제 중 “회원국농업환경정책” 및 “지속가능한 농업수질관리”, “기후변화와 농업” 등의 연구는 관련 국내 정책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 농업용수의 효율성의 제고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관련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조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에 대한 대외 논리개발 등 차기 작업반회의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OECD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농업정책 사례 등 논의결과를 국내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9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온실가스 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를 목표로 채택된 ‘녹색성장 선언’ 후속조치로서 앞으로 “녹색성장”이 핵심과

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개발에 관한 OECD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책연구기관(KREI)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2011년에 OECD 녹색성장 전문가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우 KREI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행사이므로 KREI-OECD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OECD는 국제적으로 농업환경 분야의 이슈를 선도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므로 MOU가 체결되면 연구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공동연구수행과 KREI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2. 제 31차 농업과 환경 합동작업반 회의

2.1. 회의 개요

- 회의명칭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제31차 JWP회의
- 회의기간 및 장소
 - 기간: 2010년 12월 6일 ~12월 8일
 - 장소: OECD 본부 대회의실(제12회의실)
- 회의참석 우리나라 대표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박사(부의장)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과 최수아 사무관
 -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
- ※ 제31차 JWP회의에는 OECD 회원국 전체 34개 국가의 에서 최소한 1명 이상의 대표자가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3명, 일본 5명, 미국 4명,

OECD사무국 1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음. 특히 이번 회의에는 아르헨티나가 옵저버로 참석함.

2.2. 주요 회의결과

2.2.1.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및 관련분야 연구동향

가. 의제개요

- 최근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진전사항 또는 농업환경정책 평가 경험에 대해 프랑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슬로바키아, 영국 등 총 8개 국가에서 주제발표가 있었음

나. 회원국별 발표 및 논의

- 스페인: 관개(irrigation) 분야 국가 현대화 계획
 - 관개 현대화 추진 계획을 소개함. 국가 관개계획(2002-2008)은 약 100만 ha이상의 전통적인 관개시설을 현대화 추진을 담고 있음. 관개분야의 정책목표(2015년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관리 개선, 물이용 절약 및 효율성 추구, 물수송 및 배분네트워크 구축, 물 저장능력 제고, 자동화 관개시스템,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이며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함.
 - EU지령(EU Directives)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가 법률, 모범영농기법의 육성(토양질과 물), 부정적 환경영향 진단과 부정적 영향 최소화 대책 추진, 핵심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전문가와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위원회(Monitoring Commission) 설치 등을 담고 있음.
 - 논의사항: 관개의 현대화 국가계획은 매우 야심적으로 보이는데 물 관련

심층적인 분석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함(슬로베니아), 주로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경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네덜란드), 물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물가격,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함(OECD 사무국)

○ 스위스: 직불제 시스템 보완

- 농업분야의 새로운 정책시스템으로 정책조치로 직불제 시스템 보완에 대해 설명함. 직불제는 1990년대 초에 도입되었고, 이 제도는 연방헌법에서 농업의 다원적기능이 인정되어 추진하게 됨. 특히 WTO룰과 조화되는 정책프로그램 추구, 지속가능하고 경쟁적인 농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가격변동이 커지고 자원의 이용과 보호,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 농업에 대한 수요와 정책의 신뢰성이 강조되고 있어 직불제를 다원적 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프로그램으로 전환
- 연방헌법(제104조)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언급(식량공급, 자연자원보전, 경작지 관리, 가축복지, 수익보장)하고 있음. 직불제 정책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적 성과검증(roof of ecological performance)을 도입함. 즉 생물다양성 질, 유기농 육성, 경작지 경관보전, 경관질 등을 평가함.
- 경관보전 기여에 대한 분야별(기본, 조건불리지역, 여름초지)보상책 마련, 경관질의 기여에 대한 보전(특정지역의 경관보전의 다양성과 보전 및 육성)책으로 일시적 직불금을 지급함. 높은 산의 경우는 경사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동물복지 등도 고려함.
- 논의사항: 영국: 높은 산과 경사도에 따른 직불금 지급의 경우 토양침식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지, 중복지급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함(영국), CAP와 연계된 프로그램임에도 농업지원조치가 너무 복잡한 것은 아닌지(헝가리), 어떻게 직불금 수준이 결정되고, 지원방식이 단일직불금, 일회직불금인지, 환경적 직불금은 성과기준인지, 환경편익과 관계에 있는지(한국, 미국) 등을 질문함.
- 답변내용: 스위스 직불제는 연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국민의 요구

가 반영된 국민투표를 통해 지원). 농업정책과 관련법률을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변화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됨.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느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짐. 특정지역의 경우는 영구초지가 환경적으로 기여하는 분야에 대한 생태적 성과를 반영하여 직불금을 책정하게 됨.

○ 영국: 기후변화 대책

-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하여 202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2012년까지 분야별 세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성과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계획도 수립하여 분야별로 실행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적응대책은 CAP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연구개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야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최근의 농업환경정책 조치로 농가환경 캠페인이 수년동안 이루어져 왔고 금년 8월말 캠페인 연차보고서 발표됨. 수질분야는 생태사회모델(bio-society model)로 수질보전과 공공부분의 건강유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하고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 최근 농업분야의 환경영향 보고서가 2010년 9월에 발표되었고, 농가별 경제적 성과와 환경질 관련성 및 구조적 변화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한 농가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농업부문 녹색성장 실행프로그램

-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의 50대 실천과제 가운데 농식품 부문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단수 또는 복수 연계된 매우 다양한 사업이 제시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농산어촌’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3대전략(저투입·고효율 녹색산업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관리, 국민건강

강 증진과 국격 제고)과 9대 추진과제, 50개 실천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음.

-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단계적·전략적 정책 접근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 도모”로 설정하고,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원칙(3-G&S)으로 선제적 자발적 대응(Green Spontaneity), 시스템화된 정책추진(Green System), 녹색성장 성과확산(Green Spread) 등임.
 - 농업분야 녹색성장 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농어업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 농촌 에너지자립형 녹색마을 조성,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임. 또한 저탄소정책 분야에서는 농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도입과 농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국제협력강화 분야는 ‘아시아산림협력 기구’ 설립 추진을 들 수 있음.
- 미국: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완화를 다룬 ERS의 연구결과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역할: CRP와 EQIP의 효과에 대한 분석,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에 대한 분석, CRP의 토지은퇴와 환경적 커버작물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오프셋프로그램과 유사), 수질과 생물다양성질과 연계되어 있음. 카본오프셋마켓, 배출권거래제 검토, 탄소시장에서 CRP프로그램의 역할
 - 경운방식의 패턴과 동향: 온실가스오프셋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 농가단위의 조사, 작물별 무경운 경작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추세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매년 1.4%씩 증가추세임. 특히 대두의 경우 무경운 경작이 가장높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가까운 미래에 농업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에 포함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배출권거래제에서 오프셋마켓에서 농업분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물론 배출권거래제에 농업분야의 참여에 대해 찬반이 있으나 무경운은 온실가스 감축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탄소시장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림부문이 참여하고 있음. 자발적 거래시장으로 시카고 기후변화거래소(CCA)에서 무경운은 중요하게 거래되고 있음. 무경운 농가의 조사와 병행하여 에너지 사용과 단수변화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무경운과 각 분야별 성과간의 그래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네덜란드: 온실가스 저감대책
 - 네덜란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분야가 약 13%를 차지함. 농업분야의 저감대책으로 법적 청정 및 에너지 농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음.
 - 네덜란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에 1990년 대비 30% 감축, 2% 에너지 효율성 개선, 재생에너지 2020년 20%로 야심적 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화훼분야 저감대책으로 정부와 산업부간의 계약, 낮은 에너지세에 대한 거래방식 제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 제시, 지열 활용보험, 지열활용의 경우 위험에 대한 보험제도 적용
 - 축산분야의 정책개입 사례로 반추가축을 대상으로 한 저메탄을 위한 사양의 혁신 프로그램, 뉴질랜드의 GRA와 연계하여 추진, 바이오가스과 그린가스의 통합적 접근 등을 제시함.
- 덴마크: 녹색성장 전략
 -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 발표, 현재는 집행단계에 있음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지역과 자연, 물 프레임워크 지침에 따르고 있음, 녹색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약 200억 유로 투입함.
 - 질소감축을 통한 물 보전, 2015년에 질소와 인산 감축 목표설정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양분관리 조절을 추진함.
 - 농약사용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농약사용 횟수도 크게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음. 무경운 방식을 증가하여 생물다양성 유도하고 있음
 - 녹색에너지 활용 강화(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활용, 독일 사례 참조), 월

- 로우트리(2-3년후 활용가능)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원료로 활용
- 유기농 육성 전체농업에서 6%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유기농 육성을 위한 연구과 기술개발에 강화하고 있음.
- EU위원회의 CAP개혁과 연계하여 Greening CAP을 위한 정책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녹색성장에 대한 단위면적당 직불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음.

2.2.2. 녹색성장, 식품과 농업(보고서 초안)

가. 의제개요

- 자연자원,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을 돌파하기 위해 녹색성장이 제시됨. OECD는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회원국과 비회원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 GGS)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음.
- 이후 OECD 녹색성장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가 2010년 5월 각료회의에서 발표되었고, 2010년 10월 14일 OECD 위원회에서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개요가 호의적으로 논의됨.
- 녹색성장에서 농수산 분야의 역할과 정책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에 대해 관심이 높아 2010년 농업각료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다루어짐.
- 종합보고서와 부록은 차이점은 종합고서는 약 70페이지 정도임. 부록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응용분야(에너지 등, 녹색과 정책의 일치성) 등을 언급하게 될 것임.

나. 논의목적

- 이 문서는 OECD의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의 다음 단계로 녹색성장전략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농업부문에서 다루어지고 포함되어야 할 핵심사항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문서임.

다. 논의경과

- 자연자원, 기후변화, 최근의 경제위기 등의 압박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장의 녹색화 모형인 녹색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 GGS)이 제안됨.
- 2009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 선언’을 채택하였고, 온실가스 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녹색성장을 회원국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활발하게 논의 중임. OECD는 녹색성장 선언의 후속조치로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OECD장관급 위원회(2010. 5. 27~28)에서 발표함.
 - ※ OECD는 2009년 6월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서 30개 OECD 회원국이 녹색성장선언에 서명함. OECD는 경제, 사회, 환경,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개발에 지지를 표명함.
- OECD 녹색성장전략 보고서에 농업분야의 핵심내용을 담기 위한 개괄적인 내용을 APM 회의에 소개하는 내용으로 사무국의 농업환경 담당과에서 작성한 문서임.

라. 주요내용

- 「농식품 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보고서의 개관 초안
 - OECD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농식품 분야의 내용과 관련 수산과 식품공급체인 등을 포함하는 범위를 논의하게 되고 또한 2011-12년도에 다루게 될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됨.
 - 농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모델 근거(rationale)를 다룸. 녹색성장의 개념과 미래 식량안보와 신재생에너지와 여가와 리크레이션 등의 수요에 따른 도전을 다룸)
 -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술적·경영적 해법 제시: 정밀농업, 지속가능한 집약화, 점적 관개(drip irrigation), 작물 윤작, 무경운 및 보전 경운 등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수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의 기술활용

- 맞춤형 농업정책으로 전환: 환경유해 보조금 폐지, 무역왜곡 바이오연료 정책 폐지, 자연자원고갈의 위험, 생산성 제고와 기후변화의 영향에 순응할 수 있는 녹색기술개발(Green R&D) 등의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
- 농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목표달성 진전에 대한 계측: 생산자지지, 금융전환,

○ 보고서 잠정적 요약의 초안

-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악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비지속가능한(unsustainable) 자연자원이용을 예방하는 접근방식임. 녹색성장의 목적은 성장의 청정에너지원 개발의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음.
- 관행적 경제모형(conventional economic model)과 녹색성장 모형의 기본적인 차이는 경제와 환경의 관계에 있어서 경합적으로 보느냐와 아니면 경제성장의 동력(drivers)으로 보는가의 차이임.
- 농업생산성 성장은 OECD국가의 경제성장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농업분야의 총요소 생산성은 다른 분야의 생산성을 능가함. 농업분야의 노동은 여타부분의 경제확대와 고용성장의 중요요소로 작용해옴. 작물 단수와 가축생산성은 실질적으로 증가해왔고 식품가격은 하락하고 있음. 소비자의 식품 지출비는 감소하고 있고, 가처분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만약 세계적 농산물 수요에 부응하여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식품의 실질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다른 부문에 비교해서 농업과 녹색성장의 연계는 복잡함(complex). 국가마다 환경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다양하게 접근될 수 있음. 농업(산림분야 포함)은 부정적 및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외부효과를 발생하며 공공재의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음. 농업분야의 과도한 생산과 집약적 생산은 환경부하를 가중시킬 뿐만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손실을 가져옴. OECD국가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긍정적 측면에서 환경기여를 위해 노력해왔음.

- 농업은 미래 글로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비록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몇몇 지역의 몇가지 작목의 단수는 증가하고, 이상기상의 가능성이 높아져 세계 식량생산과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임. 생산자와 소비자 및 정책결정자는 증가된 변동성을 다루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온실가스를 다루기 위해 도입된 정책은 미래 농업성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농업은 탄소배출 감축으로 가격에 미치게 될 화학비료와 농약 등 구입용 투입재의 의존성이 증가함. 작물과 가축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사용되게 될 것임. 또한 물공급 오염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호 등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타 정책적 조치로 인해 농업활동과 식품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한편 농업분야는 농경지의 탄소고정(carbon sequestration)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물, 야생동물 서식지 등에 압박을 완화하는 생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반적인 환경발자국을 감축하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식품부문은 에너지의 중요한 소비자임. 에너지 이용 증가의 상당한 부분은 OECD 국가 소비자들의 생활양식 변화, 특히 가공식품이나 바로 주문하여 먹을 수 있게 준비된 음식(ready-to-eat) 등에 기인함. 또한 이들 과정으로부터 상당한 폐기물이 발생함.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함. 전반적으로 식품부문이 녹색성장의 요구사항에 순응하려 한다면,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개선, 새로운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적절한 정책환경 변화가 필요함.
- 농업과 식품시스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은 녹색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생산의 집약화(intensification)에 기여하는 정책과 환경질 보전을 방지하는 정책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환경 친화적인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과 가격과 소득보전의 정부 제도는 집약적 생산과 환경문제를 심화시킴.
- 농업부문의 환경적 성과 개선을 지향하는 정책은 시장지향적 정책과 규

제정책의 혼합으로 볼 수 있음. 정책대안(policy options)은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뿐만아니라 분배적 측면도 고려해야 함.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기술의 채택과 자원관리의 개선이 필요함. 농식품부문의 녹색화를 위한 혁신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노력이 요구됨.

-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의 위한 많은 정책요구는 국내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국제적 차원도 중요함. 비녹색화 정책을 없애기 위한 다차원적 노력은 부문별 환경성과 개선에 도움이 됨. 이상기상에 대비한 국가별 미래 식량수급 조절에 국제무역이 기여하게 될 것임. 이런 차원에서 시장개방화와 국제협력이 중요함.
- 녹색성장의 달성은 경제개발의 촉진과 환경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익한 직업기술 등에 달려있음. 저탄소, 자원효율적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실천을 위해서는 단기 또는 중기의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을 요구함. 녹색성장은 경제적, 환경적 및 부문개입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policy coherence)을 요구함.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기업 등의 개별주체의 접근보다는 정부와 유관기관 등 관련주체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함.
- 녹색성장 정책전략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변화는 생산과 소비패턴에서 자원집약적 과정으로부터 생태효율적이고 저탄소 경로로의 전환을 요구함. 현재 OECD의 환경정책은 사후적이고 보다 통합적 과정 및 전과정 관점의 채택 등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음. 그러나 경제성장으로부터 환경악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생태기업과 생태서비스를 확대하기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개발도상국가에서 환경용량을 기초로 과도한 환경부하 없이도 물질적 생활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함.
- 정책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농업분야의 녹색성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지표가 필요함. 우선 적용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수단(Green

Growth Policy Toolkit)에 대한 조사와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표가 필요함. 이들 지표들은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농업분야 경제적 산출을 제고하고 환경부하를 줄이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도를 계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생물물리적(bio-physical) 및 사회경제적 자료의 비교방법은 시간경과에 따른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농업분야의 환경적 이슈는 상당히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녹색성장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농업정책은 규제, 지원과 상호준수 등의 상대적 선호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음.

마. 주요 논의사항

- EU 대표부는 녹색성장전략 보고서와 관련하여 문서의 형식이 매우 조악한 수준이며, 생산성 계측과 관련해서도 축산부문에 문제가 있음. 녹색생산성 분야는 지표분야는 잘 정리되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과 관련하여 기술분야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토지 질의 경우도 온실가스 분야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캐나다는 내용 전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부각되고 있지 않음. 특히 경제적 측면의 제시가 미흡함을 지적함.
- 미국은 잘 갖추어진 문서로 사료됨. 전체적으로 균형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나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초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음. 초점에 맞추어 다시 기술해야 할 것임. 경험적 접근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녹색기술에 대한 컨설턴트 보고서에 관심이 있으나 이들 내용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내년 2월 워크숍에서 얼마나 다루어질지 궁금함. 또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바이오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접근이 필요함.
- 한국은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춘 녹색성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녹색성장을 평가하는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농업환경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함. 녹색성장 평가와 관련하여

KREI에서 수행한 온실가스 배출과 GDP의 관계를 다룬 녹색생산성 분석, 생태효율성 분석 등의 방법론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함.

- 프랑스는 보고서 초안은 APM 보고서에 발표된 잘 내용을 상당히 잘 보완한 것으로 평가함. 개념 설정과 관련하여 정치적 측면을 소홀이 다루고 있음. 식품비용과 관련하여 자연자원의 고갈과 연계되어 언급될 필요가 있음. 정치적 기술적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언급되어야 할 것임. 녹색성장의 우선성과 관련하여 지표개발과 관련해서 좀더 toolkit의 우선순위를 다루어야 할 것임. 녹색성장 계측을 위한 사회적 성과에 대해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기농업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점도 보완해야 함을 지적함.
- 일본은 녹색성장 측정지표와 관련해서 종합보고서와 잘 연계되지 못한점을 지적함. 경제적으로 녹색상장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표 6>에서 제시된 내용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음. 명확한 개념이 설정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지표설정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연계하여 지표가 설정되어야 함. 문서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아르헨티나는 녹색성장의 개념이 불명확함.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차이가 불명확하며, 보다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 호주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유사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강조함. 이산화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좀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성장을 늘 비지속가능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전략보고서에서 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함.
- 뉴질랜드는 생산성 분석과 관련해서 축산분야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편중하여 다루기 보다는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고, 특히 농업분야 녹색성장의 BMP가 무엇인지가 제시되어야 하고, 제도적 측면의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환경적 한계와 식품분야의 탄소성적표지제도오 푸드마일 등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스위스는 레그 과장이 APM에서 발표한 문서보다 크게 보완되었으나, 농업과 식품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나 식품을 너무 빈약하게 다루어짐을 지적함. 너무 회원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녹색성장 계측에 관한 부분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물복지에 대한 이슈도 녹색성장에 포함되어야 하고, 유기농업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 핀란드는 녹색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고, 녹색성장의 계측과 관련하여 좀더 설득력 있고 명확한 지표개발이 제시되어야 함. 녹색성장과 현재 생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ECD 사무국 답변>

- 기술혁신 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컨설턴트 리포트를 종합보고서에 잘 반영할 것임. 녹색성장 계측을 위한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좀더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에서 녹색성장 워크숍에서 녹색성장 계측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어 잘 되었음. 양분수지, 온실가스 배출, 물가격 등 농업환경지표에서 이미 개발되었음.
 - 농업환경지표와 녹색성장 지표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제적 측면(global level), 국가적 측면, 지역적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임.
 - 문서검토 의견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12월 24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해 주면 1월에 반영하여, 1월말에 회원국에 공람하여 2월 10일~11일 워크숍에서 검토되도록 할 것임. 워크숍에서 코멘트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보완본을 작성하고 보완된 부록(annex)을 제시하게 되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할 것임. 에너지 분야(환경국 전문가, 국제에너지기구)는 부록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임.

2.2.3. 농업환경지표 업데이트

가. 주요내용

- OECD와 EUROSTAT을 합동으로 협력하여 농업환경지표 보완 작업을 추진함. EU와 OECD의 농업환경지표와 하부지표(sub-indicator)를 비교하여 지표보완이 이루어지고, 온실가스 분야의 경우 UNFCC 자료와 LULUCF의 자료 요구, EU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치 등을 고려함.
- 농업환경지표의 업데이트 작업과 관련하여 지표보완은 2004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보완작업은 2009년 기준으로 하고 가능하다면 2010년 기준의 지표보완이 이루어질 것임.
 - 보완이 이루어지 지표분야는 양분수지, 물, 토양과 수질 분야에서 토양침식과 수질분야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 설문조사 방식은 OECD 모든 회원국의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일부는 FAO와 협력하여 추진(농경지 분야, EUROSTAT, OECD, FAO 등 세 기관이 협력함). 유럽 EU 27개국의 설문조사는 EUROSTAT에서 추진함.
 - 녹색성장 계측과 관련하여 환경전망 보고서에 활용하는 지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양분수지지표는 내년 2월까지 보완되어야 할 것임. 온실가스는 UNFCCC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임.
 - 부록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주요지표로는 양분수지 지표, 온실가스 지표, 물집약도지표, 경지전환지표, 토양침식지표 등이 다루어지게 될 것임. 이밖에도 물값지표, 물자원지표 등이 포함될 것임. 비용복원방식(cost recovery)에 대해서도 검토될 것임. 농업환경지표 가운데 농업과 환경부문과 관련된 모든 지표를 모두 업데이트하게 될 것임.

- 향후 농업환경지표와 관련하여 국가별 담당자(focal point)를 지정하여 지표관련 보완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 EUROSTAT의 경우도 국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이 추진될 것임.

<사무국 답변>

-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된 농업환경지표로 양분수지, 온실가스 배출, 물 이용, 물 비용복원, 토양 침식 등의 지표가 다루어지게 될 것임.
- 농업환경지표의 업데이트와 관련한 설문서와 조사일정 등에 관해서는 조만간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회원국 대표에게 공지할 것임.

2.2.4. 농업환경정책조치 목록화 - 공공웹사이트 구조와 정보

가. 논의 배경 및 경과

- 농업환경정책조치의 목록화 작업은 2000년 이후 OECD 사무국이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2004년 12월에 OECD 사무국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까지 1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목록화가 이루어져 웹사이트에 올려 있음.
- 농업환경정책 목록화 작업은 농업부문 환경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과 정보 출처를 제공하기 위한 고안된 것임. 2011-2012 예산관련 사업으로 농업환경정책의 모니터링과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2010년 6월 회의시 사무국은 인벤토리 작업은 PSE 등 회원국의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와 연계된 작업으로 문맥문서(contextual document) 등 정책 인벤토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보완된 문서를 제출키로 하여 작성된 문서임.

나. 논의목적

- 최근의 대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목록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

으로 회의국에 대한 협조 문서임.

다. 주요내용

<목록에 포함되는 정보>

1)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문서의 구조에 대한 제안

- 사무국은 세 가지 사항을 담은 문맥문서(contextual document)를 제안함.
 - ① 주요 경제 및 환경적 특성: 주로 거시경제지표(GDP, 고용, 무역 등), 농업이 자원이용(경지이용의 구조, 물과 에너지 이용), 농업생산과 연계된 지리적 위치, 토양과 기후조건, 농업과 연계된 주요 환경 이슈 등
 - ② 농업정책 및 농업지원: 주요 농업정책의 요약 정보, 농업지원(PSE수준과 구조) 등을 포함함. 이 부분은 회원국에 대한 매년 농업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제시됨.
 - ③ 농업환경정책: 농업환경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함.
 - 농업환경정책의 목적과 주요 수단 등 전반적인 특성
 - 사용되는 정책 수단: 농업환경지불제도, 환경적 상호준수제도, 환경부과금 및 세금(배출권거래제 등), 농업분야 환경과 관련된 주요 정책수단별 회원국의 출처

2) 제안된 실행조치

- 사무국은 2011년동안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문맥문서를 준비하고 진행상황을 2011년 7월과 12월의 JWP회의시 발표함.
- 2011년과 2012년 무역농업국 작업은 PSE/CSE의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병행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2012년에 농업환경지불금(agri-environmental payment)에 대한 자료를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제공함.
- 사무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한 회원국 문서를 매년 업데이트함. 주로 문맥상의 기본 정보, 농업정책과 관련된 정책, 농업환경정책 등을 대상

으로 함.

- 환경부과금과 환경세, 배출권거래제 등의 여타 정보는 환경정책 및 자연자원관리에 관한 환경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회원국은 매년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제시된 정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하지만 농업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이 이루어질 것임.
- 인벤토리와 관련한 사무국의 활동은 PSE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에 대한 개선과 농업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서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보다 통찰력을 제공함과 함께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주제설정 작업에 활용될 것임.

3) 구체적인 사례 제시: 부록에 오스트리아의 농업환경정책 사례를 제시함

라. 주요 논의사항

- 미국은 정책의 특성과 관련하여 PSE D/B는 오랫동안 OECD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농업환경정책과 연계하여 PSE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한국은 농업환경정책 조치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조치가 포함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함.
- 캐나다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왜 경제적 수단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는지 궁금함. 다른수단 규제조치(command-and-control)과 정보활용, 자발적 조치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함.
- 뉴질랜드는 인벤토리의 경우 이미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어떤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OECD가 추구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캐나다가 지적한 자발적 조치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할 것

임을 언급함.

- EU는 정책조치는 가능하면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치창조, PSE와 환경과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음. 너무나 많은 것을 담으면 매우 복잡하여 정보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애로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함.

마. 논의결과

- 사무국은 인벤토리는 2005년부터 이미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정책정보를 회원국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관련 정보를 구축하는 것임. 경제적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회원국이 규제 및 여타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인벤토리에 담을수도 있으나 매우 복잡할 것임.
- 정보 업데이트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서보완에 대한 서면의견은 12월 24일까지 제출해줄 것으로 요구함.

2.2.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관련 농민 행태와 관리기법

가. 논의배경 및 경과

- 기후변화 이슈를 농민 행동과 농장관리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 2009년 12월 제29차 JWP 회의시 처음으로 제안되어 30차 JWP 회의시 회원국들이 문서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사무국은 회원국의 지적사항과 정보경제학의 내용을 담은 보완문서를 31차 회의시 제출기로 함.
- 사무국은 이번 31차 회의에서는 보완된 문서의 공개(declassification)에 대한 논의를 요청함.

나. 논의목적

- 기후변화 이슈를 농민 행동과 농장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기후변화 분석 로드맵에서 제안된 바 있음. 기후변화를 다루는 정책조치가 농업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로 작용하

는지를 이해해야 적절한 정책수립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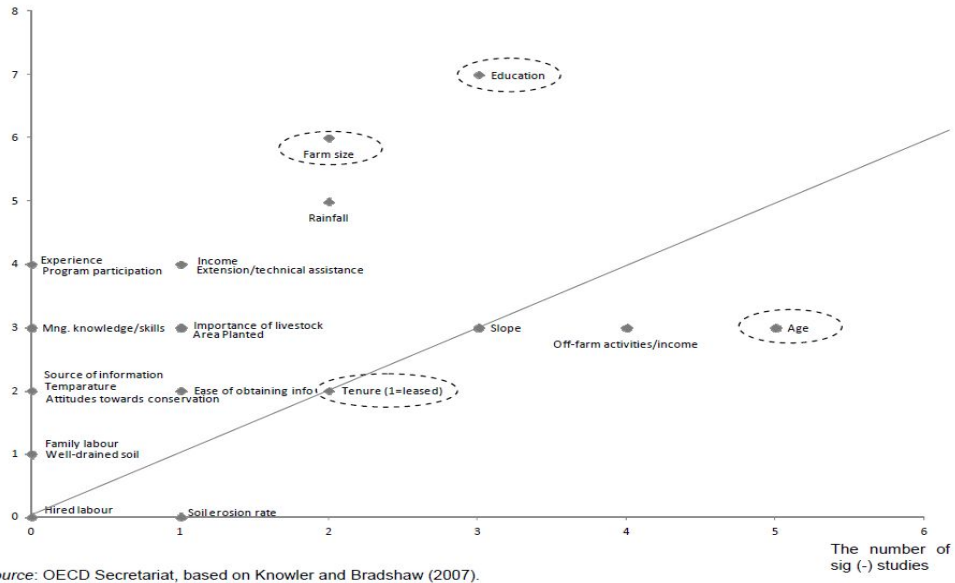
- 이 문서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조치에 농민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의 변칙적인 행동(anomalies)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함임. 특히 이 문서는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선호, 위험선호, 사회적 선호 등과 연계된 행동연구에 대한 검토, 정책의 역할, 결과물의 발간 시기 등을 다루게 됨.

다. 주요내용

1) 보전 관리(Conservation Management)에 대한 농가행동

- 농가들의 보전농업을 하는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Knowler and Bradshaw (2007)는 농가들의 보전농업 적용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합하였는데 <그림 7-1>은 보전농업 채택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줌. 그림에서 수직과 수평축은 각각 보전농업 채택과 연관된 양의 그리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사인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림은 설명변수가 보전농업 채택과의 관계에서 이용된 논문의 수를 나타냄.

그림 7-1. 보전농업² 채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 농가특성변수와 관련하여 농가의 교육수준은 채택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실제 몇몇 연구들이 보존농법의 채택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음. 하지만 몇몇 연구들은 또한 음의 상관관계임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음. 동일하게 농가의 나이도 명확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음. 생물물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보다 규모가 큰 농가가 보존농업을 기꺼이 선택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게다가 자가 토지와 임차지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과거의 분석결과를 볼 때 몇 개의 설명변수만이 보존농업의 채택을 일반적으로 설명함.
 - 보존농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개별적 입지의 특정 조건을 반영하도록 맞추어져야 할 것임(Knowler and Bradshaw,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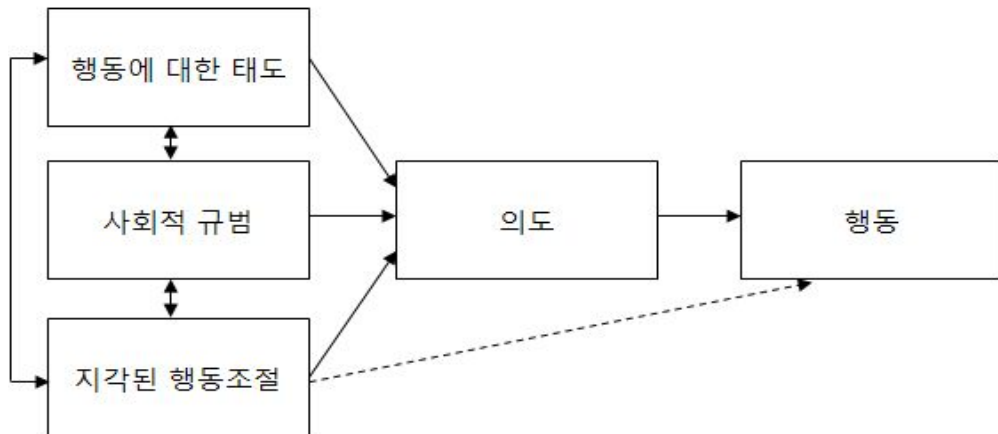
² 보전 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 CA)은 토양을 영구적으로 피복하고, 무경운이나 최소경운을 하며, 작물의 윤작의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하는 방법임.

- 어떤 주어진 사례에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공식도 없음.

□ 비재정적 인센티브

- 최근 농가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회 심리학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음. 한계적 환경민감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지향적인 농가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영국에서 이루어진바 있음. 환경적인 태도가 환경민감지역의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서로 작용함을 경험적인 연구에서 제시되었음.
- 여러 연구자들이 농민들의 태도와 의향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과 이 이론의 확장으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ed Behaviour, TPB)을 제시함.
 - TPB는 적용과 관련한 특정한 행동의 모티베이션과 관련 행동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조절은 의도를 통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임. 특히 지각된 행동조절은 의도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게 됨으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인식과 대처 등에 대한 교육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그림 7-2. 계획된 행동이론



자료: Adopted from Ajzen (1991).

2) 완화관리(Mitigation Management)

□ 핵심적인 연구 결과의 감축관리에의 적용

- 농업은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기여하지만 또한 해법(예를 들어 탄소고정;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작물; 가축 사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효과성은 주로 어떤 잠재적인 경제적 편익 혹은 벌금에 대한 농가 혹은 토지이용자의 반응과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농가 혹은 토지이용자의 동기(motivation)에 달려있음.
- 몇몇 연구들은 1990년 이후 농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괄목할 만한 생물물리학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감축에 있어 진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함. 스텐보고서(Stern, 2007)에 언급된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은 탄소가격책정 및 기술정책 뿐만 아니라 행동변화 장벽의 제거에 토대를 두어야 만 함. 하지만 약간의 연구자들이 전문적으로 감축관리와 관련된 농가들의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한 연구들이 제한적이지만 농가수준 감축관리는 유사하며 위에서 다룬 보존관리 논의와

부분적으로 일치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최선의 실행방법들이 폭넓게 알려져 있고, 선행연구 검토에 의한 이전의 결과들이 이 맥락까지(this context) 확장될 수 있음. 작물재배에 있어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들이 아래의 <표 1>로 요약됨.

표 7-1. 작물재배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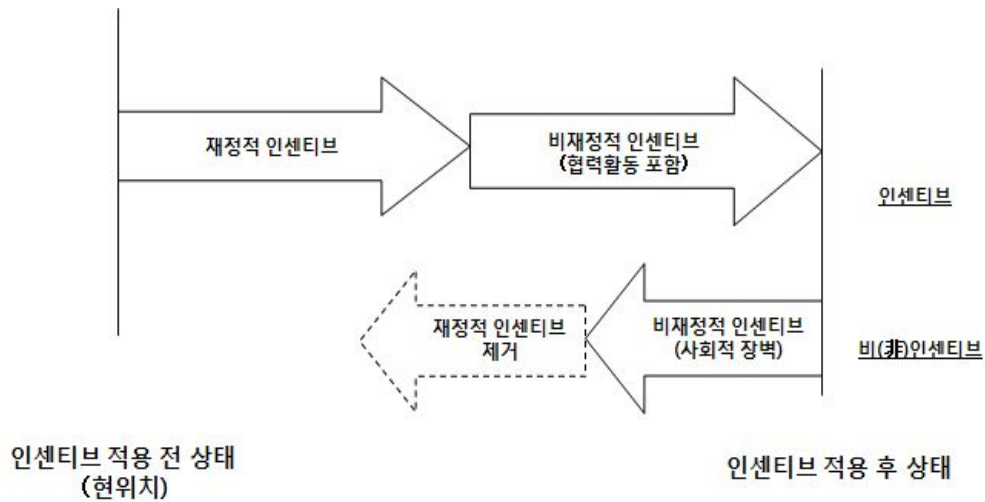
조치	사례
농경지 관리	농지관리
	양분관리
	경작기술/잔사관리
	물관리(관개, 배수)
	벼 관리
	농림업
	휴경농지, 농지-이용변화
유기질 토양관리	습지의 배수 지양
훼손된 토양의 복원	침식 관리, 유기적 개량, 양분 개량
축분/도시폐기물 관리	저장 및 처리 개선
	협기적 소화
	양분원으로 보다 효율적 이용
바이오에너지	에너지 작물, 고형, 액체, 바이오가스, 잔사

자료: Smith et al.(2008)에서 재구성함.

-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로 밝혀짐.
 - 기후변화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소는 적용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구의 특성과 생물리학적 특성 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하게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는 없음. 다만 지역적 특성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음.
 -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모두 농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 동시에 이들은 재정적 인센티브의 효과를 흡수함으로써(crowding out)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동기부여와 관련 이웃농가의 관계는 완화기법의 채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침.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농가반응 뿐만 아니라 공유된 관심사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국부적인 행태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농가의 태도와 신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고안하는데 고려되어야 함.

그림 7-3. 인센티브와 비(非) 인센티브



자료: OECD Secretar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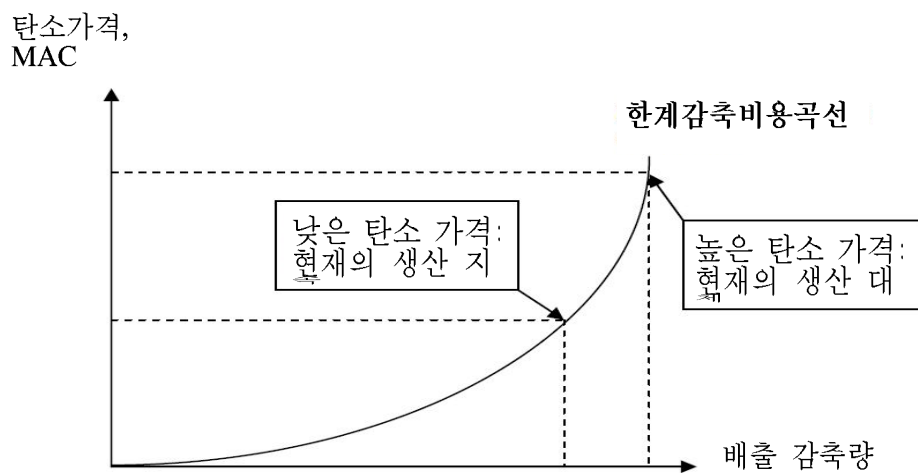
□ 다른 환경적 이슈들과의 차이점

< 탄소가격과 행동변화 >

-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만약 탄소시장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한계감축비용이 탄소가격과 동일한 수준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함.
- 낮은 가격 수준에서 지배적 대응전략은 경작 방법, 비료 적용, 사료배합 그리고 축분 관리에서의 변화와 같이 현재의 생산을 유지하는 것들임. 반면에 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바이오연료(그리고 식림)처럼 현재의 생산을 대체하고 보다 값비싼 가축사료 기반 감축옵션의 이용을 허용하는 토지이용

변화 전략이 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후생이 증가함(Smith et al, 2008). 만약 탄소의 가격이 충분히 높게 상승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획들은 농가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일 것 같음<그림 7-4>.

그림 7-4. 탄소가격과 한계감축비용



자료: OECD 사무국.

< 이중편익(Co-benefits) >

○ 감축 관리를 위한 금융적 인센티브를 강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장관리의 ‘이중편익’과 ‘상충’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어떤 조치의 이중편익과 상충효과는 기후, 토양, 혹은 그 조치가 도입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양함(Smith et al. 2007).

● 잠재적 양의 외부효과(이중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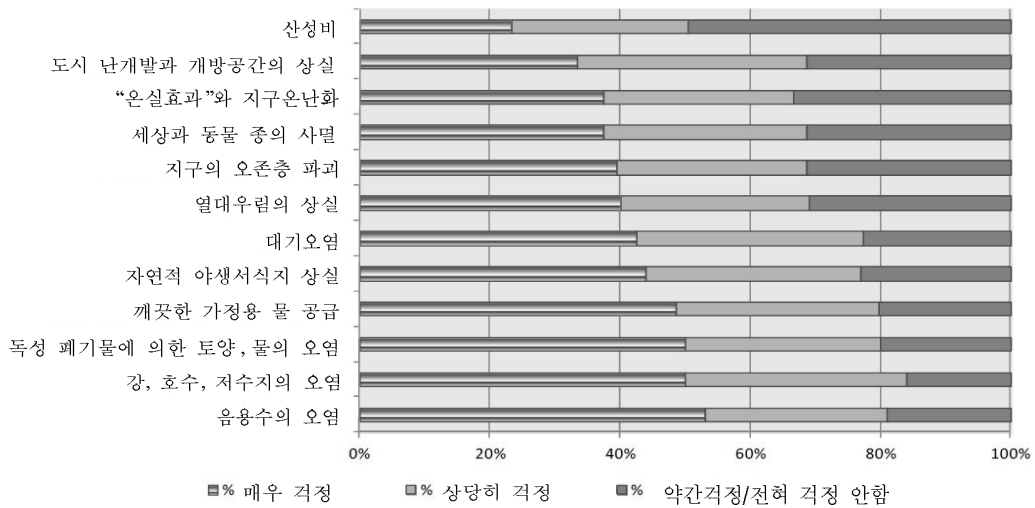
- 경운(tillage)을 줄이면 토양의 보수성(water-holding capacity)을 증가시켜 관개(灌漑)의 필요성을 줄이면서 토양 유기물질을 바꿀 수 있음(이것은 또한 농약사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음의 외부효과임).
- 농경지를 방목지 혹은 숲으로의 전환되는 면적을 확대하면 야생동물 개체수를 늘릴 수 있음(이것은 또한 식량생산의 음의 외부효과이기도 함).

- 농약사용량을 줄이면 수질오염, 수질, 그리고 시냇물, 강, 호수, 대수층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농경지의 유출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농경지를 에너지작물 생산으로 전환시키면 농작물 수확의 기술적 향상을 유도하고 보다 낮은 가격의 전력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함(이것은 또한 식량생산의 음의 외부효과임).
- 잠재적 음의 외부효과
 -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전통적 지역의 산림벌채나 소득 감소를 초래하면서 전통적 산림지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후변화의 우선순위 >

- 환경적 지식과 환경적 태도(attitudes)가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침. 최근 몇몇 조사(예를 들어 갤럽조사, 표)는 개인들이 기후변화를 다른 환경적 이슈들(우림상실, 수질오염과 토양문제)보다 낮은 순으로 평가함을 보여줌. 개인들은 가깝게 인지되는 다른 환경적 이슈들보다 기후변화를 낮은 순으로 평가함.

그림 7-5. 환경적 문제들 사이의 기후변화 우선순위



3) 적응 관리(Adaptation Management)

□ 농가수준 적응 전략

- 농가와 정부단위에서 적응관리에 관한 의사결정들이 계속 이루어져 음(표). 적응에 대한 농가단위 결정들은 소득감소의 위험과 환경인식과 같은 농가에 미치는 내부적 자극(stimuli)과 거시경제정책과 제도적 체계와 같은 대규모 농업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음(Chiotti and Johnston 1995). 추가적으로 농가수준 적응전략은 농장에서의 생산방법과 농가 재무관리(보험과 위험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음.

표 7-2. 농가수준과 사회전체 수준 적응전략

농가수준	사회전체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 및 농가소득 보험 ▪ 생산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개발 투자(예: 내열) ▪ 새로운 기술 및 재배법의 채택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시기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적응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 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예: 농촌지도, 조기 경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도시 혹은 다른 농촌지역으로) ▪ 투입물 사용 강도의 조정(예: 비료 관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장려(예: 시장효율성)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적응환경 지원정책 검토(예: 용수권 환경정책 무역정책국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생산 경운 채택(예: 보존경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공급부족의 충격을 세계시장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농산물 무역 개선

자료: OECD(2008).

□ 실제농가의 가정

- 기후변화 위험이 폭넓은 범위의 다른 영향들 혹은 조건들의 정황속에서 경험되어진다고 가정하면 적응은 농가단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의 인지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명확히 제시될 수 있음.
- 기후변화 적응관련 선행연구들은 심리학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농가들의 전략 채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또 선행연구들은 농가들이 의사결정시 질적, 양적인 면을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해하면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체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보다 잘 알도록 도와줌.

4) 정책적 의미

- 인간행태와 관련한 행동경제학의 의미는 환경경제학과 환경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비록 행동경제학이 농업관리와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민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네 가지 정책적 의미를 가짐.

- 전체론적(포괄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 온실가스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농업부문이 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향적 수단과 여타수단의 결합이 필요함.
 - 행동변화는 국지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함: 농업 및 환경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행동에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침. 이들 요소의 이질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민들에게 다른 수단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함. 예를 들면 현대적인 대규모의 상업화 중심의 농장과 소규모의 가족농과는 행태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수단을 적용해야 함.
 - 뚝뚝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nudging)이 정책 추진에 유익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 시장지향적 정책수단은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서 고아된 것임. 현실적으로 환경적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됨. 기후변화의 맥락과 같은 공공정책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행동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음.
 - 사회적 측면에서 약간의 변화가 강압적인 추진보다도 효과적인 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예를 들면 라벨링(탄소발자국)과 같은 명시화(visualization)를 들 수 있음. 농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소비자들에게는 라벨링을 통해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제시함. 결론적으로 “생태적으로 협조적”인 농업인들에게 라벨링이라는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 지구온난화 대책에 동참하는 경우 보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 넛지란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규제행정(또는 강제)이나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nudge의 단어 의미는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는 의미로 미국 시카고대학의 행동경제학자인 Richard Thaler 교수와 동대학 법률학과 Cass Sunstein교수의 공저인 ‘Nudge’는 국내외 베스트셀러임. 현실 인간은 경제학이 가정

하는 합리적인 인간(Homo Economicus)과 달리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특성으로 부적절한 선택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봄. 즉, 녃지는 행동경제학의 성과를 활용하여 경제와 사회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시 도입.

라. 주요 논의사항

- 한국은 문서공개는 원론적으로 지지함.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행동경제학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녃지’의 적용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에서는 탄소라벨링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면 실제로 정책입안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하길 요청함.
- 네덜란드는 농가와 다른 의사결정자(슈퍼마켓 주인)와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농가라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므로 행태와 정책의 연계가 중요함을 지적함.
- 호주는 전반적으로 문서공개를 지지함. 다만 행동경제학의 접근은 중요성 부각과 실제로 농가들의 의사결정은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적절하게 보완되길 요청하고 또한 영문 문장상의 편집이 필요함을 지적함.
- 프랑스는 현시점에서 문서공개보다는 서면의사 반영을 조건으로 문서공개를 지지함.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세금, 배출권거래제 등도 언급하고 있으나 경매도 필요함. 최적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정책의 공평성(Fairness)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분야 OECD 문서를 참고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문서공개 지지함.
- 뉴질랜드는 문서공개 지지하나, Para#26에서 구축효과(crowding out)를 언급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Para#76에서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적 적용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

함을 언급함.

- 캐나다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 보완이 잘 이루어졌음. 서면의견을 반영 조건으로 문서 공개를 지지함. 경험적 연구에 대한 반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함. 요약에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연구의 통합에 대해서도 생각해 할 것임. 행동경제학과 신고전파경제학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타켓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함. 과연 농민이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과연 효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너무 분석적 논문형태 보다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코슬로바키아는 문서전반에 대한 공개지지하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함. 행동경제학 접근은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여타 농업분야 정책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가별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모호한 점이 있으나 명확한 개념과 적용이 필요함. 체코의 경우 정부와 농가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무국 답변>

- 12월 24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해주면 문서 보완에 반영할 것이며, 2011년 1월말까지 문석보완이 이루어지고, 2011년 2월과 3월에 서면 동의하에 문서공개가 이루어질 것임.

2.2.6.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지기반 이니셔티브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시범 사업: 설문조사

가. 논의배경 및 경과

- 기후변화 협상과정과 토지기반 완화조치간에는 복잡성으로 인해 지구상의 탄소를 다루기 위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상 프레임워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지기반 온실가스 완화조치는 비용효과적

인 접근방법으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OECD는 경지기반 온실가스 완화조치에 대한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분야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함. 우선 관련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서 조사를 기초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나. 논의목적

- 사무국에서 제시한 설문조사의 목적은 국가마다 적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완화조치 가운데 토지기반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임. 설문서에는 조치의 유형, 집행측면, 적용가능한 완화조치, 투입된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다. 주요내용

- 제공된 자료에 대한 기초정보
 - 이니셔티브의 식별: 조치의 명칭, 담당하는 기관(접촉기관), 조치의 유형, 실행된 조치, 자료의 타임프레임
 - 이니셔티브의 목적: 이니셔티브의 당초목적(온실가스 완화), 부수적 목적(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환경적 편익)
 - 라이프사이클의 단계(phase in lifecycle): 조치들이 집행된 것인지, 현재 추진 중인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함. 이니셔티브가 추진된 경우 사후적 비용효과성 검토와 사전적 기대효과를 비교할 수 있음.
 - 행동의 규모: 이니셔티브를 위해 제공된 자료의 타임프레임은 매년 배출량 감축분과 비용효과성을 계산하는데 필요함. 이니셔티브의 행정적인 지리적 단위(국가적, 지역적, 도차원 또는 특정 프로젝트 차원), 또한 특별한 지리적 단위(수변구역 또는 생물군계 등) 등으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짐. 이와 같은 정성적 문맥의 정보는 자료를 통해 나타는 비용효과성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됨.

- 재정적 인센티브: 인센티브의 출처, 인센티브의 유형, 인센티브의 구조, 인센티브 수준과 총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됨.
- 경제적 행위자에 의해 초래된 비용: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대상으로 함.
- 측정, 모니터링, 완화: 정량적 평가를 위해 사용된 탄소기준, 모니터링·보고·확증 절차(MRV procedure), 사전적 완화, 사후적 완화, 조치에 따른 사후적 토지면적 등을 대상으로 함.
- 불확실성 할인율: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의 할인율

라. 주요 논의내용

- 한국은 농업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토이지용, 토지이용변경 및 산림(LULUCF)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가 불명확함. 실제로 농업부문 토지이용의 탄소고정과 관련된 측정과 모니터링의 경우 최근의 과학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탄소흡수량에 대한 측정과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함.
- 이탈리아는 설문서 문항에서 일문 문항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문조사 목적의 핵심문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함.
- 미국은 데이터베이스는 주요 활동인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설문조사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함.
- 프랑스는 지역적 차이, 비용분야, 기술적 이슈, 어떻게 답하고 비교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후 설문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포르투갈은 설문조사가 문제제기 내용에 잘 조화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 토지기반 완화의 비용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면 함. 직간접 비용과 비용효과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불명확한 점을 지적함.

<사무국 답변>

- 문서보완에 대한 서면의견을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문서보완 작

업을 거쳐 2011년 6월 32차 JWP 회의에서 수정문서를 발표하게 될 것임.

2.2.7.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작물보험과 농가인센티브 관련 작업방향 보고서

가. 논의배경 및 경과

- 이 보고서는 2010년 6월 제30차 합동작업반 회의에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정책수단인 보험 분야의 심층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임.
- 지구의 표면온도는 지역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도 시기와 수준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음. 농가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온과 강수량의 패턴변화가 작물의 수량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농가가 직면하는 가격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함. 농가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위험간의 상관관계와 이들이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나. 논의목적

-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작물보험과 인센티브는 매우 실질적인 정책수단으로 회원국의 적응방안 모색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도움이 되는 문서를 준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과 위험과의 관계
 -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작물보험과 같은 시장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즉, 위험의 체계적 특성, 위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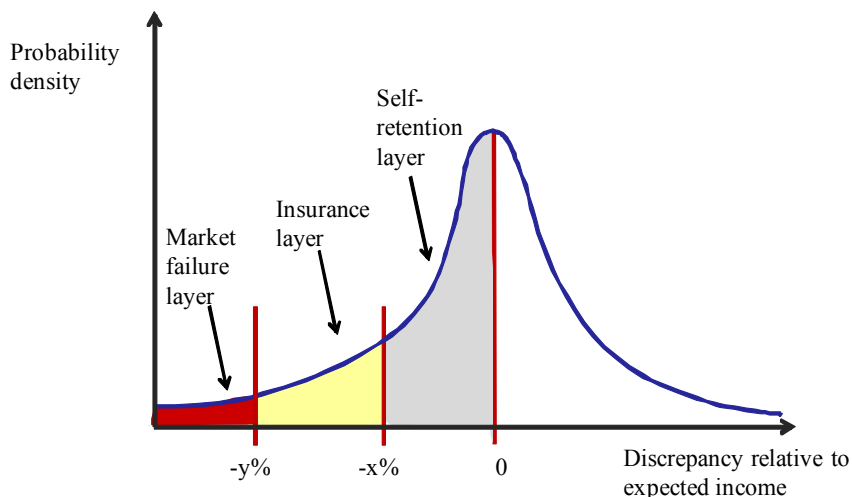
사실 분포(true distribution), 정보분포의 비대칭성, 위험의 잠재적 구매자의 존재 등에 검토가 요구됨.

- 기후변화에 따른 가격과 생산 위험의 결합은 농업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에 있어서 작물보험의 역할을 어떻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함. 생산위험은 기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한편 가격변동성과 연계된 위험은 투입재와 산출물 시장에서 시장의 동태성에 의해 내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위험관리

- 관련 문헌에서 위험은 위험이 재앙으로 변하는 정도, 손실의 크기와 발생 확률에 의해 접근되고 있음.
- 위험의 계층은 경우가 빈번하나 손실이 적은 위험보유계층(risk retention layer), 위험은 상당하나 빈번하지 않은 경우인 시장보험계층(market insurance layer), 낮은 빈도이나 대규모 손실을 가져오는 시장실패계층(market failure layer)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그림 7-6. 기대수입에 따른 상대적인 불일치 확률밀도함수와 위험계층



○ 기후변화 효과에 따른 농업적 위험과 관련된 정책반응의 통합

- 어떤 지역에서는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거나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과 공간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 패턴에 영향을 미침에는 과학적인 합의를 나타내고 있음.
 - 이상 강수량 발생의 위험과 함께 미래 중고위도 지역에서 한발의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구온난화와 대변동 현상은 농업과 가축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농업분야에 위험과 불확실을 증가시키게 됨.
 -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는 농학적, 계량경제학적, 확률적 시뮬레이션 등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동원될 수 있음. 농학적인 연구는 주로 식물생리학을 기초로 단수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상정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계량경제학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와 수량, 기상변수 변동성의 영향 등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작물보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OECD는 기후변화의 적응전략으로 보험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함. 정부는 낮은 확률의 극단적인 위험계층을 보상하는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정책으로 체계적인 위험에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서는 안됨.
 - 개별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험의 비용 - 보험이 커버하는 비용, 행정적 비용, 자본접근 비용 등은 중요한 사항임. 기후변화는 위험요소의 가격설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순수 위험(pure risk), 모호한 부하(ambiguity load), 재난적 부하(catastrophic load) 등임.
 - 농민의 관점에서 가능한 옵션의 포트폴리오를 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적인 농민은 농가소득의 분산을 줄임으로써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작물보험 구입을 결정하게 될 것임. 물론 작물보험 가입만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작물다양화(crop diversification) 방식도 오랜 전통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부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적응에는 농민들에서 비용이 수반되므로 어

려운 일일 수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응전략으로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여건을 반영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임.

-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작물보험 분석을 위한 제안
 - 작업방향 보고서의 의도는 농가의 적응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적응의 결과에 의한 상이한 정책결합(policy mixes)의 건실성(robustness)과 이용가능한 정책대안에 초점을 맞춤.
 -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험이 정책결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함.
 - 향후 작업방향은 두 단계로 이루어짐.

<1단계>

- OECD 농업분야 위험관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시적 모델링 활동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보험의 분석을 수행하고,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짐.
 -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OECD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기후변화가 작물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② 기대에 있어 어떤 부정합의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단수변화가 농업인, 민간 보험업자, 정부 등에 어떻게 간파되고 있는지에 대한 잠재적인 시사점을 제시
 - ③ 혁신적 보험수단을 모형(기상지수보험과 면적단수 보험)에 고려함으로 모형 보완본 도입
 - ④ 작물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패키지 가상실험

<2단계>

- OECD사무국의 현행 작물보험 사례와 APM에서 제안된 캐나다와 스페인 사례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미국 농무성의 작물보험 사례연구 수행
 - USDA 사례연구는 연방작물보험공사에 대한 분석으로 보험정책의 개발 또는 승인, 프리미엄 비율의 도출, 작물보험 회사에 운영 보조금 제공, 회사에 재보험 제공 등을 다루게 될 것임.
- 결과물과 시점
 - 기후변화는 농업부문에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 왜냐하면 기후패턴의 변동성과 나라마다 농업분야의 위험을 다루는 정책적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임.
 - 사무국은 1단계 결과물은 중간보고로 2011년 7월에 제시하고, 2단계 결과물은 지국의 사례연구 정보의 이용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다.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은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험에 대한 연구는 이미 OECD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진바 있음. 이 연구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작물보험에 대한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캐나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작물보험과 연계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프랑스는 결과물 발표시점과 관련하여 1단계의 경우 중간보고의 성과물로 2011년 7월에 제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단계 결과물의 발표시기는 미국의 사례연구 활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가능하면 향후 회원국의 적응대책 모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물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2012년 12월에 발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뉴질랜드는 보험과 관련하여 위험관리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사무국 답변>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보험, 인덱스 보험과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음. 기후변화 대응 위험관리 수단으로 작물보험에 초점을 맞추어 다룰 것임.
- 문서보완에 대한 서면의견을 2011년 1월말까지 제출하며, 2011년 6월 문서에서는 사례검토를 문서에 포함시켜 보완된 문서를 발표하게 될 것임.

2.2.8. 기후변화 적응정책/방식의 컨설턴트 보고서

가. 논의배경 및 경과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경우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도전이 될 수도 있으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적절한 적응대책 모색을 위해서는 영향분석이 필요함.
-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은 2007년 IPCC보고서에 잘 제시되고 있음. 세계 평균기온은 2100년경에 1.5~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래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지구온난화는 불가피하고 적도보다는 북극에서, 여름보다는 겨울에, 대낮보다는 밤에 실제로 기온상승을 경험하고 있음.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분석적인 결과를 기초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예일대학교 멘델존 교수에 의뢰하여 작성한 문서임.

나. 논의목적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의 전문가 컨설턴트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의 적응대책 모색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적응의 의미와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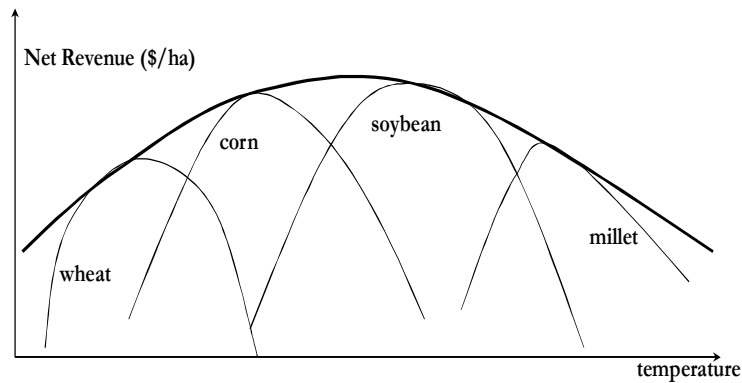
- 적응은 기후자극과 기후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과 인간시스템의 조절작용으로 정의되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 농민들이 새로운 기후에 맞도록 재배방식 등 행동을 바꾸게 된다면 농업부문의 부정적 영향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음.
- 적절한 적응대책 모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199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 주로 작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축산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08년이 이루어짐.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농업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중요하며, 특히 저위도 지방에서 중요함.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순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응은 매우 중요함.

○ 이론

- 농업부문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분석을 위한 이론은 주어진 기후변화 여건 하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모형으로 설정됨. 효율적인 적응은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후변화 적응 대책 모색에 있어서 모든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할 필요는 없음. 농업분야의 영향분석에 있어서 관개, 연구, 농촌도로 등 인프라 구축 정도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들 분야의 투자에 대한 부분도 경제적 비용 산정시 고려되어야 함.
- 어떤 조건 하에서 효과적인 적응이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농민들의 경우 기후 여건이 변하면 새로운 재배기술이나 작목 선택을 모색하게 되며 이 경우 비용과 편익으로 나타나게 됨. 개별 농민들이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을 가정하는 경우 개별 경우를 합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과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음.

- 공공의 적응은 많은 사람들의 비용 또는 편익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는 없음. 의사결정자가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비용과 편익을 늘 반영하여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임.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됨.
 - 경쟁적 시장은 효율적인 개별 적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 시장 행위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초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적응방안을 선택하게 됨. 하지만 이러한 경쟁적 시장이 주어진 자원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부의 행동이 필요함. 정부의 조치에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정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임. 이러한 기후변화 이슈의 불확실성과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가 유용한 수단임.
 -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동태적이기 때문에 적응도 동태적임. 작물의 경우도 관개 등 시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 시간은 효과적인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 농장과 기업의 적응
-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농가와 기업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기업은 어떤 새로운 품목을 생산해야 하는지, 적응은 경관(landscape)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상승 등으로 재배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동안 재배해 온 작목의 수량이 감소하여 순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농민들은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하게 됨.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농민들은 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맥→옥수수→콩→좁쌀 등을 선택하게 됨.

그림 7-7. 기온상승에 따른 작목 전환 체계



○ 정부

-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정부의 주요한 역할은 공공의 적응을 제공하는 것임. 시장실패에 정부개입을 통해 보완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농업부문의 경우 영농행위로 인해 상당한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투입재인 비료의 가격을 높임으로 어느 정도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적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 활동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데 있음. 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미리 적응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과학적인 기술과 정보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고, 가까운 미래를 대상으로 자본투자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함.
- 정부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민간부문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정보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는 기후변화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상 보험(weather insurance)을 제공함. 기상변동은 농가의 소득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농민들은 위험 분산 수단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됨. 민간보험의 경우 상당한 보험료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저렴한 보험제도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정부는 형평성 이슈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함.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수반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모색되어야 함.

○ 결론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분석적인 결과를 기초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함. 적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업부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특히 저위도 국가들의 경우에 보다 심각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가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임.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완화와 적응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 완화는 지구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어짐. 모든 오염자가 완화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편익은 지구 전체로 분산됨. 그러나 적응의 경우 적응조치를 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편익이 발생하므로 농업부문의 경우 지역차원의 접근이 중요함.

라. 주요 논의내용

- 한국은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대응책 모색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평가됨. 기후변화의 적응과 관련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한 검토가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함.
- 호주는 적응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함. 보조금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하며, 기온 1도 증가와 2도 증가의 영향이 큰 차이가 있

으므로 한계효과 언급에서 이점이 언급되어야 함을 지적함.

- 독일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별로되지 않고 있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뉴질랜드는 특별한 비판은 없으나, Para#45에서 민간부문 농민들의 대응책에 대한 언급하고 있으나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Para#54 Para#55 부분이 불명확함. 무역장벽의 문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다 적절한 조치 등을 내로우 다운하여 다루어야 할 것임을 지적함.
- 영국은 농가단계 측면에서 정보와 적응대책에 대해 좀더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컨설턴트인 예일대 멘델존 교수의 답변>

- 영향분석과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 과학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시각, 기후변동성,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시각차가 있음을 인정함.
 - 정부의 역할과 농민의 역할, 농업의 공공재의 특성, 시장실태에 대한 시각, 무역의 역할에 대한 다시 기술할 것임.

<사무국 답변>

- 2011년 1월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하면 문서보완 작업 추진
 - 로마에서 발표할 내용을 여기서 제시한 것임. 컨설턴트 보고서의 경우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여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컨설턴트 문서의 경우는 OECD 공식문서와는 약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음. 보완된 문서를 내년 6월에 검토하게 될 것임.

2.2.9. 농업부문의 복원력 구축 - OECD와 FAO간의 협력

가. 논의배경 및 경과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OECD의 2011-12년 사업예산에서 다루는 과제임. 특히 기후변화 적응은 농업부문의 복원력 향상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이므로 OECD와 FAO간에 정보교류 차원에서 2010년 6월 공동 워크숍을 개최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OECD와 FAO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치키로 합의하였음. 이런 맥락에서 이 문서는 기후변화,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식량안보의 시사점 등 핵심 정책적 관심사를 논의함.
- 2010년 11월 헤이그에서 개최된 ‘농업·기후변화·식량안보 글로벌컨퍼런스’에서 FAO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복원력(적응), 식량안보와 개발 목표 등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함.

나. 논의목적

- 이 문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기초로 한 복원력 구축을 위해 OECD와 FAO간의 정보교류와 협력관계를 다루기 위함임.

다. 주요내용

- 적응과 복원력의 개념
 - 적응과 적응력이 복원력있는 농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안함. 복원력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에 순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됨. 특히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래의 기후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복잡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정한 충격을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함.
 - 식량생산에 있어서 복원력과 적응력 제고는 상업적이고 생존적 농업시

스텝 모두에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 차이가 중요함. 상업농의 경우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환경적 제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개도국의 소규모 영농에 있어서 현대 기술의 영농방식의 채택은 비곤 완화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중요함. 정부는 복원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농업생산성은 미래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하나, 비록 기술변화나 우수한 경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집약적 자원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는 있으나 토지와 물 및 여타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제약이 따름.
 - 완화와 적응 간의 시너지와 상충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생물다양성과 농업생태계의 다양성을 줄일 수 있는 위윈 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Mendelsohn(2010)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음.
 - 좋은 농경지 관리방식 적용에 따른 농경지의 탄소 고정의 역할은 온실가스 완화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임. IPCC 4차 평가보고서에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농업부문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의 경우 흡수능력은 토양형태와 기상,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과학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필요로 함.
- 과정에 대한 개관
- 2010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OECD-INEA-FAO 공동워크숍이 개최된 바 있음. 워크숍에서 영국, 한국, 멕시코 등은 상업농과 소규모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흥미있는 사례를 발표하였음. OECD 회원국은 아니나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흥미 있는 사례를 제시함.
 - OECD/FAO는 2011년 6월 23-24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공동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음. 공동워크숍은 회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개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임. JWP에서 논의되는 보협과 농가행태 등에 관한 문서도 워크숍에서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임.

- OECD와 FAO의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는 경제적 복원성(economic resiliency)과 생물리학적 복원성(biophysical resiliency) 모두를 강화하는 정책 디자인과 결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임.
- 종합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다루게 될 것임.
 - 적응과 기후변화에 관련된 목적을 향해 지향하여 이루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
 - 농업과 비농업정책의 가장 비용효과적인 결합은 무엇인가?
 - 가장 비용효과적인 적응해법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 완화와 적응 간의 시너지와 상충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관심사를 논의하는데 시너지와 상충관계는 무엇인가?
- 시간 일정
 - 2010년 12월 JWP의 논의과정을 반영하여 2011년 봄에 프로젝트 보완
 - 2011년 봄 공식적인 사례대상 관련국가 선정을 위한 교섭 확정
 - 2011년 32차 JWP 회의 직후 OECD/FAO 전문가회의 개최(2011. 6. 23-24)
 - 2011년 12월 대상국가 사례 발표
 - 2012년 6월 종합보고서 초안 발표
 - 2012년 12월 종합보고서 최종본 발표
- 질의사항
 - 분석의 범위와 타임라인은 적절한가?
 - 사례국으로 적절한 국가에 대한 제안과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
 - 특히 개도국 사례에 대한 자발적 기여

라.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은 OECD와 FAO간의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분야의 공동협력에 관해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바 있음. FAO 발제자가 적응의 핵심과제는 육종과 종자 시스템의 기술혁신, 유전자 조작을 통한 품종개량,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확대 등을 제시함. 또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계획, 기술공유, 우선순위를 가지는 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성공정책의 공유, 공동 적응-완화프로그램 시행, 다원화 부문에서 경험의 공유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안함. 또한 개도국의 사례로는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과학원-농업정책연구소(황지쿤 소장, Dr. Jikun Huang, Center for Chinese Agricultural Polic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연구진을 추천함.
- 미국과 영국 등은 OECD와 FAO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져야 함. OECD의 제안은 정책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FAO는 적응과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적절하게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보고서 발간이 가능함을 지적함.
- 프랑스와 EU 등은 타임라인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6월에 개최되는 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종합보고서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전문가회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2.2.10. 농업이 양식에 미치는 영향: 해역의 산소고갈과 부영양화

가. 논의 배경 및 경과

- 최근 20~30년 동안 양식은 인류의 주요 식량자원이자 생계활동이 되었음.

- 전 세계적으로 포획어로 행위로 인한 생산량은 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음.
- 양식에 의한 생산은 해안지역의 인구 증가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위협할 정도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일부 기수역과 연안의 용존산소가 낮은 지역에서 무척추동물과 어류의 대량폐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인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용존산소가 생물체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연안 해역에서 용존산소농도가 급격히 변함. 현재까지 균형을 이룬 생태계에 있어서 그 기능을 이루는 주요 요인들 중 용존산소의 감소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었음.
 - 이러한 연안의 용존산소 감소, 즉 저산소증은 양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그 원인으로 지목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공론화함.

나. 논의 목적

- 최근 인류의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200,000km²에 걸쳐 500여 지역에서 저산소수계가 형성됨. 저산소증에 대한 목표 조정과 그로 인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 및 대처방안 필요.
- 기후변화와 확장된 농업 행위로 인한 영향은 양식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 보고서는 부영양화와 저산소증에 대한 요약 및 평가로 이루어짐.

다. 주요내용(핵심)

- 부영양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질 오염을 야기 시킴. 이는 인간 행위로 인한 질소와 인 등의 영양분이 수중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일어남.
- 영양분 비율의 불균형은 식물 플랑크톤 종조성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불쾌한 영향을 미치고 유독성을 띄는 조류의 대량 발생을 야기하는 환경을 만들어 문제가 됨.
- 유해한 조류 발생(HABS)은 물고기와 갑각류 등에 중독을 일으키고, 결국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저산소지역 형성 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무산소 지역의 낮은 용존 산소

는 물고기를 죽이고, 생태계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최악의 경우에 생태계를 붕괴시키게끔 수중생태계를 압박함.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거나 또는 소비가 과도하게 일어날 때, 산소 농도는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하로 감소하는데, 이 상태를 저산소증이라고 하고, 산소가 없는 상태를 무산소증으로 불림.

- 저산소증과 무산소증이 나타나는 수중은 포화 산소의 양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무산소증은 전형적으로 대형동물상(macrofauna)에 치명적인 황화수소(H₂S)를 일정 농도 포함하고 있음.
- 저산소증은 부영양화의 가장 심각한 증상이며 지난 50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주변 수계에서는 점오염원의 부하로 인해 심각한 저산소증과 무산소증이 나타났었음. 이는 하수처리와 수처리 방법의 향상등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로 개선되었음.
- 지난 30년 동안 발달한 저산소지역 대부분은 농경지의 비점오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영양화는 유독 조류의 번성과 수생 식물군집 및 연안 서식처의 감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 농업용지에서의 비점오염부하 조절이 수질 향상에 가장 중요함.
- 고도화된 어류 양식장은 과도한 먹이와 배설물로 인해 저산소증과 HABs를 야기시켜, 어류 양식과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임. 해양 생태계에서 산소 소모는 군집과 에너지 흐름을 위한 중요한 구축력이 됨.
- 저산소증에 의한 동물군의 제거와 서식지의 축소는 인구 변동뿐만 아니라 생태계 에너지론과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기후 변화와 농업의 확산이란 결합은 양식에 있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상승한 수온은 저산소증을 야기시키고 많은 생물체의 산소요구량도 증가시킴. 또한 상승한 수온은 산소 용해도를 감소시키고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미생물의 호흡도 증가시킴.
- 기후 변화는 직접적으로 성층효과, 산소용해도, 물질 대사 및 무기화 전환을 통해 저산소증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온난화에 의한 수온상승은 산소 용해도 감소, 유기체의 물질 대사 및 채무

기화 비율 증가, 그리고 성층화의 강화를 초래함.

라.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은 연구 계획과 평가 과정에서 개념적인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관리 차원의 문제는 검증이 가능한 가설로 공식화해야 함을 강조함. 관리 활동은 질의에 응답이 가능하고 미래 관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가설을 실험하는 시험과 동일하게 다루며,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지식의 정확도와 정확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함을 지적함.

2.2.11. 농업으로부터 유래된 신생 수질오염물질

가. 논의 배경 및 경과

- 본 의제 『농업으로부터 유래된 신생 수질오염물질』은 영국 요크대학의 환경학부의 컨설턴트인 Alistair Boxall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2010년 12월 6 ~ 8일에 이루어지는 Draft Agenda Item 10c of the JWP meeting에서 논의되기 위해 작성된 것임.
- 이 의제는 2010년 6월 JWP meeting에서 논의된 이 의제의 첫 draft의 후속으로 6월 meeting의 논의 결과와 대표들로부터 받은 코멘트를 반영하여 작성함
- 이 의제는 동일시기 Draft Agenda Item 6(c)에서 논의될 주 보고서인 『농업에서 수질의 지속가능한 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Quality in Agriculture: Progress Report [COM/TAD/CA/ENV/EPOC/RD(2010)42]』에 조언 등을 지원해줄 것임.
- 지금까지는 영양염류, 중금속, 살충제, 유기오염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신생오염물질(emerging contaminants, ECs)로 알려진 환경적 위험을 포함하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ECs는 인간의 조제약, 수의학, 농약, 나노물질, 건강보조제, 페인트 및 코팅

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 유형으로부터 기인함. 자연독소, 인공적 화학물의 분해산물과 같은 일부 ECs는 자연 환경 내에서 동물과 식물, 미생물 등에 의해 생성될 수 있음.

- ECs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의 증가는 지난 10년간 ECs의 환경적 영향을 발표한 과학적 논문 발간수 및 기고문의 급속한 증가로 알 수 있음. ECs 모니터링결과 지표수, 지하수, 음용수, 물고기, 곤충 등에서 검출되어 지고 있음.
- 유기체의 생화학, 세포구조와 생존측면에서 또한 지표수와 토양시스템에서 군집과 집단에 미치는 ECs 노출효과 범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많은 자료들이 생태계와 인간건강에 약간의 위험을 보이는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부 선별된 ECs는 인간과 환경의 건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확보함
- 이 의제는 수질과 관련될 수 있는 농업유래의 ECs 전반에 대한 것으로 먼저 ECs의 정의, 잠재적 유입, 이동, 농업생태계에의 영향과 위해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ECs를 위해 제공된 기존 조절시스템과 ECs의 규명을 위한 중점 접근에 대해 총평한 후 마지막으로 미래연구의 중점들에 대한 추천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논의 목적

-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오던 영양염류, 중금속, 살충제, 유기오염물질 등의 환경 오염물질에서 벗어나 인간활동과 생물작용에서 기인하는 신생오염물질(emerging contaminants, ECs)의 환경적 위험을 인식하고, 특히,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ECs에 적절한 대처방안 수립이 주요 목적임.
- 특히, 수질과 관련될 수 있는 농업유래 ECs의 정의, 잠재적 유입, 이동경로, 농업생태계에의 영향과 위해성, 조절시스템과 검출 규명을 위한 중점접근 방법과 향후 추진 방안에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함.
- 추가된 사항으로 인간조제약 등에서 기인한 가공된 나노물질들(ENPs)에 부각하고, 기존 ECs와 다른 오염물질간의 혼합물에 의한 상호작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다. 주요내용

- 최근 신생오염물질(emerging contaminants, ECs)의 환경적 위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ECs는 인간의 조제약, 수의학, 농약, 개인 배려 제품, 페인트 및 코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 유형으로부터 기인함.
- 인간조제약과 개인 건강상품은 하수슬러지(생고형물)의 형태로 땅에 배출되거나, 하수 유출수를 이용한 관개용수로부터 유출 될 수 있으며, 다른 ECs는 환경에서 스스로 형성될 수 있음
- 조제약과 개인 건강상품들이 농업용수에 산발적으로 노출되기 쉬우나, 농업 토양에서 지표수로 전이된 이들 산물의 실제 농도는 하수 유출수에서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임
- 어떤 ECs 의 자연독소는 동물, 식물 및 세균에 의해 환경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지역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계획이 존재함. ECs는 많은 경로를 통해 농업 환경에 노출되어 질 것으로 농약살포, 또는 방목지의 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방출되거나 두엄의 토양살포, 고형생물제제 또는 다른 고형 폐기물질의 적용으로 간접적으로 환경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
- 일단 토양환경에서 ECs는 추출, 유출 및 배수과정을 통해 수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능력은 ECs의 지속성과 흡수성의 특성에 의존함
- 농업토양에서 가공된 나노물질들(engineered nanomaterials, ENPs)의 지속성에 관해 거의 알지못함. ENPs는 전형적인 화학물질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소멸되는 과정에서 일부 ENPs와 일부 입자들의 성질이 변하여 입자들이 응집 또는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음. 많은 ENPs 들이 유기 분자에 덮혀 있다면, 이런 피막들은 미생물이나 무생물적 과정에 의해 분해 될 수 있음, 농업시스템에서 ENPs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이한 소멸경로 전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많은 ECs는 농약, 유기 오염물질 같은 통상의 농업오염물질과 농업 체계에서 다르게 행동할 것으로 보이며, 치명적 특성을 예측하는 모델적 접근의

개발로 다른 오염물질의 노출에 ECs가 항상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알게 됨.

- 환경 기질에서 ECs의 검출이 시도되고 있으며, 탁월한 방법들이 지금 선택적 약제들, 인간 조제약, 건강보조제, 전이산물 등을 포함한 많은 ECs에 대해 적용가능함. 토양과 자연수중에 가공된 나노입자를 검출하고, 특성화하는 방법들은 아직 빈약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
- 탁월한 방법들이 지금 물, 토양, 퇴적물속의 많은 ECs 들을 검출에 사용가능 하며, 반면, 이들 방법 중 대부분이 ‘관례적rotune’이라 여겨질 수는 없지만, 전세계의 수많은 실험실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환경샘플에서 나노물질들의 분석은 이미 많은 자연적 나노물질들(어떻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을 구분할지에 대한 주요숙제가 있음)을 포함하는 물과 토양에서 이미 좀더 복잡화 되어 갔음.
- ECs의 광범위한 출현을 조사한 많은 수의 연구에서 단지 몇몇의 연구만이 특별히, 농업시스템에서 ECs의 출현을 연구하였으며, 농업 체계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수의(獸醫) 약제들, 인간 조제약, 건강보조제, 호르몬 및 농약 전이제품을 포함한 ECs의 범위를 검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보고된 농도는 매우 낮음.
- 대부분의 ECs는 고농도에서 급성 독성을 유발하지만 이 농도는 ECs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유기체에 급성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환경농도 보다 매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부 ECs에서 비표준(non-standard) 효과가 보고됨. 이 효과는 환경에서 측정된 농도와 가까운 수준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으나 생태계 기능적 측면에서 이들 효과의 결과는 아직 정립되지 않음.
- 1996년 4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국가들이 수의(獸醫)산물 등록을 위한 기술적 요구에 화합하기 위해 VICH(The Veterin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armonisation) 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여 생태독성, 안전, 효과, 약물경계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입안권고를 하는 작업그룹을 가짐.
- 환경은 ECs와 다른 오염물질의 혼합물로 노출될 것임. 이들 혼합물의 영향

은 단일물질 자체가 가지는 영향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우리는 위험측면에서 이들 혼합물간의 작용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숙고하기 시작함. 이것은 또한 농약, 지속적인 유기오염물질 및 중금속과 같은 비ECs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함.

- 새로운 ECs는 인구 통계, 사회, 토지 이용과 기후 등의 변화에 기인하여 미래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는 이 변화를 예측하고 접근법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연구에서는 농업시스템에서 위해성이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환경에서 화학물질들의 분산에 작용할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고, 농업에 사용되어진 화학물의 양과 형태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미래의 유해성은 오늘날과는 매우 상이할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경과 인간의 변화에 대한 영향과 가깝거나 먼 미래의 연쇄적 영향에 대한 영향성 평가는 매우 중요함.
- 또한, 기후변화는 농업시스템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온도의 증가와 수분함량의 증가는 화학물의 지속성을 감소시키고, 그로인한 수문학적 특성변화는 오염물질이 수원으로 이동될 잠재성을 증가시킴.
- 하지만, 연구들은 보다 나은 조절체계와 모니터링, 장기간 연구프로그램개발로 이들 많은 유해성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내림.
- 향후 자원에 더 큰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관심사인 ECs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함. 다수의 중점접근(prioritization approaches)으로 일부 ECs에 대한 분석이 이미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어 좀 더 심화된 기술개발과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개선점이 필요함. 중점접근은 단일 화합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ECs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자원협력을 위해 ECs에 대한 국제적 관찰기구의 설립 또는 더 중대한 국제협력을 증진이 적합함.

라. 검토의견(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또는 대응할 사항)

- ECs는 국내 농업환경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 특

히, 농업분야의 항생제 오남용, 살충제 및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 비료 및 농약의 과잉 사용 등이 ECs의 위험성을 증가 시킬 수 있음.

- 물부족 국가로서 저수지, 댐 등 수자원의 저장량이 많고, 하계, 즉, 영농기에 집중되는 장마, 집중강우 등은 ECs가 농업환경에서 수질의 문제로 부각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그러나, ECs와 관련한 국내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국내 분포현황 등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며, 위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 등의 정립을 위한 여건이 형성 되지 못한 실정임.

- ECs에 대한 위험성과 중요성을 인지는 하나, 다양한 종류의 약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자연발생되고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검출기법도 고비용과 첨단기술을 요하며, 자연상태에서 검출될 수 있는 농도도 너무 작고, 지금까지 광범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 또한 미흡한 열악한 상태임

- 특히 인공적으로 생산된 약제성 나노화학물질(특히, 항생제, 환경호르몬 계열 등)은 물, 토양 등에서 유기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들이 다른 오염물질과 혼합물로 존재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정부차원에서 관리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태보전을 위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바로 적용할 만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법률적 문제, 과학기술의 발달 등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ECs의 목록을 구성하고, 국가적인 중장기 관리대책 추진하에 관련 규제기준도 만들어야 할 것이며, 검출기술 개발 등의 과학기술의 지원과 장기적으로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필요함.

<국내여건과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

-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전과정을 관리하는 일원화된 정부부처가 없어 정책 추진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면 축산(퇴비, 액비, 가축분뇨처리장, 항생제 등의 의약품) 담당

과 식품안전 담당의 이원관리가 필요함.

- ECs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은 우선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ECs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구역 내 인간이 사용하는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personal care product)이 포함된 하수에 대한 처리방법의 우선 강구해야 함.
 - ※ 규제기준을 정하는 환경부에서는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에 포함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항목확대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지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물벼룩 등을 이용한 생태독성배출관리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키로 함. 그러나 포괄적인 광범위한 물질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인물질을 규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축산활동에서의 의약품 사용 억제를 위해 친환경유기농업의 적극 장려
 - ※ 일반적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음
- 먹거리(Food)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적인 지침(guideline) 우선 설정 후 공급원(Source) 생산기준 설정이 필요함. ECs가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와 생물 및 식물 농축 경향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영향조사가 수반되어야 함. 또한 ECs에 대한 사후처리 외에도 과도한 항생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홍보가 필요함.

<국내 농업환경에서 잠재되는 ECs의 분포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정립 필요>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스위스, 캐나다, 덴마크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농업 지역의 토양, 관개수, 지표수, 지하수 등에서의 ECs 모니터링 실시 필요함. 특히, 일부 ECs는 나노입자의 물질로 미량물질 분석방법 및 검량한계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분석기관의 등록 및 정도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생태계와 인간에 대한 영향과 위해성>

- 국내 농업환경에 분포하는 ECs가 생태계 및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가적 대책수립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와 연계한 유해물질 관리체계 수립 등의 활동이 필요함.

<혼합물>

- 환경에서 ECs는 결코 단일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오염물질과 혼합물로 노출됨. 유사한 방식의 작용을 하는 화합물이 독특하게 적용된 혼합물의 각 성분에 기인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협력을 하는 것이 문헌상 밝혀짐. 상이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화합물의 생태독성에 대한 가용한 자료는 없지만, 이들 혼합물이 단일 물질에서 관찰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자료는 있음. 이것이 미래에 숙고 되어야할 ECs와, ECs와 다른 오염물질의 복합효과로서 중요함.
- 모델링(Concentration Addition model and the Independent Action model) 접근은 복합된 화학물질들의 효과를 추정하는데 유용함. 실험실적 연구를 통해 이들 모델은 복합효과의 근거있는 추정을 제공해 줌. ECs의 위해성 평가에 이들 모델을 사용가능함. ECs는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기체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면, 나노입자들은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수중유기체들로의 이동체로서의 작용을 함. 이런 상호작용적 효과는 공모양의 나노입자(fullerene)과 다환적 방향족 탄화수소들을 이용한 복합연구에서 관찰됨. 이들연구에서 fullerene의 존재는 물벼룩인 다프니아에서 페난트렌의 흡수율을 증가시킴. 많은 연구들에서 환경에서 항생물질들의 존재는 다른 오염물질들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함.

2.2.12. 물 오염자 부담원칙

가. 논의 배경 및 경과

- 1972년 OECD 협의에서 환경 정책의 일반적 원칙인 PPP(Polluter Pays

Principle, 물오염자원칙) 가 채택되었고, 재확인 후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기 시작함. PPP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와 농부 간의 강제 시행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나. 논의 목적

- 이 의제는 OECD 회원 국가들 중 몇몇의 PPP 시행 경험을 참고하여 PPP 시행의 장벽에 대해 극복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음.
- PPP를 시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들과 성공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확립하고 모색해야 할 것들에 대해 확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OECD 국가들의 농업 수질 오염 정도로 제한되어져 왔으며, 이 의제는 회원 국가들 몇몇의 경험을 인용하고 PPP 시행의 장벽에 대해 극복 가능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함.
- PPP의 수행은 “수용 가능한 상태”(쾌활은 상태) 가 무엇인지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자들이 얼마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의제는 OECD 국가들의 물 오염에 대한 PPP 시행에 대해서는 자세한 리뷰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PPP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적용된 곳에서도 강요하기엔 문제가 많음.
- 몇몇 이유들로 인해 PPP를 비점오염원 (nonpoint pollution source, NPS) 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상황임. 분산된 비점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요구되는 비용과 어려움, 이와 관련된 기술적 이슈와 빈곤한 재산권, 구조적 복잡성, 다른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인센티브, 그리고, 수집활동과 농업이 현대사회에 제공하는 도덕성과 경제적 기반 등에 대한 신념 등과 연관된 정치적 저항성 등을 포함함
- OECD 가입국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들이 농업의 NPS 오염에

대한 수질 배출 기준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 정책이 PPP와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PPP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될 수 있음.

- 성공적인 PPP 시행의 예는 NPS 오염을 견제하기 위한 배출 규제 같은 위임과 컴퓨터 모델이 기술적인 장애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해주며, 또한, 정치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의 기본적 문제점을 1차원적 원인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네덜란드의 대책할당제와 뉴질랜드의 질소 배출허용제 등과 같은 정치적 권한이 명확해져야 하며, 가능한 새로운 권한들이 만들어 져야 함.
- 농업에서 PPP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
 - OECD는 농부의 지불과 맞아야하는 수용가능단계(acceptable state)로 규정된 PPP에 해당하는 환경의 ‘수용가능단계’ 보다 높은 ‘희망단계(desired state)’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농민에게 지불하는 PPP를 한결같이 유지하는데 명백히 해야함.
 - 회원국은 국가적, 지역적, 농가규모 등에 대한 수준을 지정해야함
 - 회원국들은 연관된 법적 관할에 대해 농경배수, 누수, 도랑 유실, 사면유실과 같은 표토 유출 등의 농업 NPS 오염에 대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하고, “모범농업활동(good agricultural practice)”으로 여겨지는 합의안을 개발해야 함.
 - 회원국은 비점오염의 직접 측정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기위한 위임의 규정 또는 개인적인 지주에게 과도한 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영향에 대한 공동책임을 위한 정책 기구 개발 등을 할 수 있음
- 농업에서 NPS 오염에 PPP의 적용이 특별한 도전들로 제기되는 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PPP는 그자체로 끝이 아니고, PPP 또는 PPP에 근거한 특정 정책의 1차적 목적이 효율 또는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유용함. NPS 오염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정보의 취득에 있어 목적과 비용에 의존한다면 상이한 정책의 옵션들이 상이한 상황

으로 책정될 수 있음. 현재 PPP의 의미는 회원국들이 참조수준이나 표준이 비특이적인 원칙과 PPP의 적용을 통해 가능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임

라. 검토의견(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또는 대응할 사항)

- PPP는 한국에서도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자 사업비용 부담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오늘날 환경오염 방지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user pay principle)이 거론되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 PPP(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은 현 실정에서 너무나 시기상조인 듯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정부와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PPP의 선결과제를 해결하면서 농업분야 비점오염 물질관리에 농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한 뒤 법적 구속력을 동반한 농업분야의 PPP 정책시행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점진적인 정책의 성공의지와 농업분야 환경의식의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몇몇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농업분야, 특히 비점오염원(NPS) 분야의 오염자부담원칙은 국내 농업환경 및 여건상 아직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 PPP를 목표로 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1단계로 농업인의 환경의식고취와 환경오염배출량의 최소화를 위한 최적영농기술 보급 등의 프로그램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2.13. 농업분야 수질거래(WQT)

가. 논의 배경 및 경과

- 농업분야의 수질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방안으로 미국 Penn State University의 James Shortle이 작성한 보고서임. 초안 보고서는 2010년 6월 JWP 회의에서 논의를 하였으며, 개정보고서는 회원국에서 제시한 코멘트를 반영한 보고서로 2010년 12월 6일~8일 JWP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고자 함.

나. 논의 목적

-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이 농업분야의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WQT)을 소개하고, 몇몇 나라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분야 오염물질 배출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보고서 구성>

- 배출권 거래, 수질거래(WQT)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 OECD 국가 간 수질거래(WQT)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설명, WQT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기준, 농업분야에서 프로그램 설계 시 예상되는 Key issue 등을 설명함.

<수질거래(WQT) 기본 개념>

- 배출권 거래는 전통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 규제에서 일정 기간(ex 연간) 발생원에서 최대 배출 가능한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임.

- 대표적으로 ERCs(emission reduction credits, 배출저감 크레딧)의 거래와 CAT 프로그램에서 배출허용권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음.
- 두 방법은 비슷하면서도 실행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배출허용권 거래는 모든 배출원(소스)에 대한 총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방법임.
 - 거래 조직 : 주식과 같이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모여 가격 및 거래를 결정함.
- 시장기반의 거래와 일반거래 방법이 있는데, 일반 거래는 시장거래와 같이 BMP를 적용한 농부와 ERC 구매자간의 가격 협상이나 경쟁이 없고, 대신 BMP적용에 대해 전통적인 비용 공유 프로그램과 유사함.
- 비점오염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가 문제가 됨. (1) 비점오염의 정확한 정량화, (2)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제어(관리) 여부, (3) 배출되는 지점이 시장이 형성된 곳과 일치 여부

<미국에서의 수질거래>

- 미국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많은 실패를 함. 그로 인해 1990년 중반에 오염총량제를 도입됨. 오염총량제의 일환으로 1990년대 중반 수질거래(WQT)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장 됨.
- 오염총량제에서 새로운 공장설립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이 형성됨. 대부분 영양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기도 함. 몇몇 주는 해당 주 내의 일반 거래정책처계를 개발 중에 있으며, 몇몇 주는 여러 주에 걸쳐 있는 큰 구역에서의 거래정책을 개발 중에 있음.
- 캘리포니아 초지 지역은 토양에 많은 셀레늄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수질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하류의 저수지 보호를 위해 저수지로 유입되는 셀레늄의 총량을 규제하였고, 셀레늄 배출권을 거래하였고, 그 결과 시행 2년 만에 목표수질을 달성함.

- 마이애미 지역은 농지와 도시의 강우 유출수에 포함된 많은 영양물질과 토사에 의해 수질문제가 야기되어, 오염총량제를 도입함. 또한 오염물질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짐
- 펜실베이니아에서는 Chesapeake만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고, 2006년도에 WQT 프로그램이 시작됨. 농부들은 만으로 유입되는 영양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BMPs(최적관리기법)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질소와 인에 대한 ERCs(배출감소 크레딧)를 생성 함. 2010년 3월까지 총 8번의 거래가 있었음.
- 미국에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작단계라 거래가 많지 않아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함. 하지만 전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USEPA와 다른 기관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침서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함.

<OECD소속 다른나라 사례>

- 오스트레일리아는 2곳에서 WQT 프로그램이 실시 중에 있으며, 한곳은 석탄광산과 전력생산 공장 간의 염분 거래 프로그램이고, 다른 한곳은 3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오염원 거래에 적용됨
- 캐나다는 총인에 대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간의 수질거래(WQT)가 시행됨. 개발을 위해 점오염원의 총인 부하를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점오염원을 삭감시켜야 하며, 그 비율은 점오염원을 1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을 4 감소시켜야 함.
-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호수인 타우포(Taupo)에 대해 20%의 질소부하 감소를 목표로 최근 수질거래(WQT)프로그램이 도입됨
- 네덜란드는 1960년대 과도한 축산분뇨로 큰 수질문제를 겪었으며, 1980년대 축산분뇨 과잉지역과 부족지역간의 거래가 시작 됨.

<시장 기반의 수질거래(WQT) 프로그램 설계>

- 수질거래(WQT)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효과, 경제적 효율, 공공분야 비용 및 능력, 부수적인 이득 및 비용, 공정성과 정치적 승인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구조 및 운영틀을 포함되도록 프로그램 설계를 해야 함.
 - 시장이 적절하게 형성되기 위해 거래될 오염물질, 시장의 지리적 범위, 오염유발자의 참여의 적절성 여부
 - 시장에서 거래될 상품(실배출량, 예상배출량, 또는 다른 환경 인자; 배출허가권 또는 배출감소권)
 -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상품과 참여자들 사이의 거래 틀
 - 환경적 목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권의 적절한 시장 할당
 - 측정, 모니터링, 강제에 관한 메커니즘, 시장 개발, 정책 조정
- 수질거래(WQT)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서는 미국 환경보호청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졌으며, 수질거래는 대기분야 및 자원분야의 거래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결론>

- 수질거래(WQT)는 도입된지 40년이나 되는 개념으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제어에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임. 농업분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제어를 위해 몇 개 나라에서 수질거래(WQT)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실시하고 있음
- WQT는 아직 도입단계라 성공한 나라가 아직은 적음.

라. 검토의견(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또는 대응할 사항)

○ 총평

- 탄소배출권 거래와 유사한 수질거래(WQT)는 오염물질배출권(농업분야 포함)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일부 유역에서 실시 중인 오염총량제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현재 오염총량제를 주관하는 환경부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한 다음, 농업분야 비점오염원 제어를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개선한 수질거래(WQT)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질거래(WQT) 프로그램의 도입이 환경부의 업무 소관에 더욱 근접하므로 부처 간 업무분장 및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14. 수질에 미치는 농업의 금전적 비용과 이윤: OECD 국가간 평가

가. 논의 배경 및 경과

- 농업활동은 생산형태나 기본조건에 따라 수질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수질 변화는 인간 및 생태계의 건강, 농업과 어업의 생산성 그리고, 레크리에이션과 어메니티 사용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옴.
- 이와 같은 경제적 영향은 금전적으로 정량화하기에는 시장이외의 평가 기술이 수반되어짐. 영향에 대한 자원배당과 관련하여 원칙을 확립하여 명확하게 정책에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함

나. 논의 목적

- 수질에 미치는 농업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규명하여 농업을 유지하고 더 넓게는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수질에 대한 농업의 영향을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하고 규명하는 일이 시급함.
- 특히, OECD 국가 간의 이들 영향에 대한 평가를 비교·대조하여, 정책적인 세부 논의를 거쳐 명확하게 정의 할 필요가 있음

다. 주요내용(핵심)

- 농업활동은 수질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그런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반영은 재산권리가 어떻게 배분되어지는지와 “오염자 지불”이나 “공급자 이익”이란 원칙에 따라 의존하게됨.
- 수질 변화는 인간 및 생태계의 건강, 농업과 어업의 생산성 그리고, 레크리에이션과 어메니티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오며, 이들 영향 중 일부는 실체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것들의 금전적인 정량화는 시장이외의 평가기술을 수반함
- 평가는 일부 앞선 토대가 된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복합적인 생리학적인 관계의 이해를 요구함. 모든 경우에서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ECD 국가들 간의 정보 검색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 경우에 보고된 영향은 부정적인데, 이것은 유리한 경감조치활동과 생산 경향을 위한 잠재력을 부인하지 않고, 관리 행위는 자연스럽게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다행히, 수질 개선에 공헌하는 자연습지가 로서의 논은 중요한 예외가 되고 있음.
- 생리학적인 보고 보다 평가 연구가 거의 없으며, 그것도 농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경제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고, 더욱이 국가수준보다는 지역적 단위로 수행되어옴. 그럼에도 평가액은 대부분 OECD 회원국을 위해 확인시키고, 국가적인 총액을 분명히 제공함. 이들 총액은 신중하게 해석되고 비교될 필요가 있지만 외형적 존재를 확인하고 농업용수 사용 및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

음.

- 불완전한 평가총액은 향후 연구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제공하는데, 수질 시장 이외 평가기술의 토대가 되는 과학의 증진 및 환경계정에 있는 일상적인 개선을 포함함. 더욱이 이에 영향을 주는 모든 카테고리는 동등하지 않고,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인 수준에서 채워 나가야 할 간격을 가지고 있음.
- 경제적인 행위로 농업은 곡물, 우유, 고기와 같은 상품을 발생시키지만, 농업생산의 과정은 오염으로 인해 사회에 비용을 요구함. 어떤 경우든 비시장성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 못하는 것은 농업의 자원 분배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최선이라는 것을 의미함. 이 짧은 보고서는 농업의 행위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OECD 국가 간의 이들 영향에 대해 평가를 대조하기 위함.
- 세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담수 사용이 지배적이며, 물의 일부가 최종 작물과 축산물에 남아 있더라도, 대부분은 강, 호수 및 지하수로 돌려보내지고, 지표수나 토양을 통해서 경작지의 다수 오염물질을 포함하게 됨.
- 경감조치 행위는 보상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인용 수준과 적절한 권리를 인지할것인지에 대한 환경적 실행으로써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오염수준이 어떤 농업행위 없이 초기 환경 또는 농업적 생산 형태와 관리 실태를 비교할 것인지, “오염자 지불 원칙” 아래 의무와 자발적인 행위 또는 “공급자 이익 원칙”아래의 의무를 비교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함.
- 오염의 영향은 또한 오염물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물을 어떤 다른 용도에 따라 쓰는가에 따라 변화함. 예를 들면, 음용수에 있는 오염의 감도는 산업적 냉각을 위해 이용되는 물에서보다 더 높고, 강 또는 호수를 구경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이는 오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오염보다 좀 더 중요할지도 모르며, 일부 이와 같은 효력의 비용은 방어적인 측정의 비용을 통해 나타나거나, 나머지는 추정된 분실 산출을 통해서 추정될지도 모름. 후자는 시장 이외 평가 기술이 요구되는 레크리에이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 만이 아니라, 낮은 작물 수확량이나 어획량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 포함함.
-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농업 기술이 어떻게 수질을 좌우하는지 또한 왜 수질이 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요구하며, 다음 두개 단원은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종류를 확인하고 그 후 그것들의 양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축함.
 -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음용수로 사용되는 식수의 오염으로 인한 “인간 건강에의 영향”, 오염물질로 인한 생태계, 서식지, 생물의 종조성 변화, 구체적으로 농약등의 화학물질이 하천내 동식물 직접 사멸 등의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건강에의 영향”,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오염된 물 등은 가축과 작물의 생산력을 낮출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농업에의 영향”, “뉘시에의 영향”, 수영과 카누 등의 방해는 물론 악취, 시각적 장애 등의 “여가활동에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산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수질에 대한 농업의 영향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의 정량적 평가는 물질규모와 가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됨.
 - 오염수준에서 농업활동을 연결하는 생리학적 기작은 복잡하고 불완전하게 이해된 것으로 오염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오염유발을 명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 상황특이적이며, 활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조건, 기상조건, 인근 땅의 관리, 과거의 관리실태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남.
 - 비농업적 원인으로 개인주거 및 산업적인 도시 하수 등이 포함되어 확인이 어려운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한 수질 변화에 대한 할당이 필요함.
 - 총 경제가치와 비시장 가치로서 관개와 같은 명백한 “직접적인 사용”에 대비해서 “간접적인 사용”은 쾌적하고 휴양적인 활동이지만 덜 실제적이지만, 이타적이고 “비사용”가치이므로 의지(recourse)는 쾌락 가격, 우발적 가치평가와 수질의 다른 수준을 위해 시민이 기꺼이 지출

(willingness to pay, WTP)하는 것을 확인하는 분석을 결합하는 것과 같은 비시장(non-market) 평가기술이 요구됨.

- 시장가격의 부재와 외적인 농산물 산출, 농산물 시장가격은 다양한 국가 보조금 및 우선적인 과제체계에 의해 왜곡되며, 이는 오염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의 조정의 명백한 기회비용으로 과장할 수 있음. 그 외, 온실가스와 같은 외적인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음.
- 향후 심화연구에 대한 요구와 일부 조사 결론을 보면, 농업수질의 영향에 대한 모든 OECD 회원국의 보고 중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영향보고가 일부 있었으나, 통화적 측면이 대부분임. 많은 연구들이 생태계가치를 추정된 비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처리비용은 비가용적이고, 건강의 가치비용도 희박한 상황임.
- 일부국가에서의 농업강화, 조절 기준의 증가에 따른 비용의 현실적 상승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 자원분배와 기술 조정에 따른 실패도 있는 등 오랜시간의 비교들을 보면 어려움이 많음. 국가간 비교는 오류를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측정치는 한계비용보다 전형화 된 합계로 보고되어야 하며, 단기간의 조사활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다양한 수질의 증거 기반이 존재함을 보여 주었고, 많은 국가에서 수행해온 광대한 양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들 결과들은 국가적 수준과 개별 연구들간의 초점과 교양측면에서 매우 대양하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부합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임. 여기 심화작업이 요구되는 몇가지 테마들을 제시함.
 - 기반과학: 경제적 가치는 생리적 영향에 대한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이 시도될 수 없으며, 농업활동과 연계된 수질외형적 타입이 비교적 쉽게 정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이해와 생리적 연관성 하에서의 측정은 종종 불완전함. 이와같은 불완전한 이해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부족과 생리학적 연관성이 고도로 복잡함을 반영해줌. 한국가를 뛰어넘는 강의 유역, 해양권을 가진 수질 오염이 국경을 넘는 전형적 특성과 복잡한 수문학적 시스템에서 원인과 결과 둘다에 걸리는 시차 등에 의해 더욱 복잡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장시간 정책의 반응과 결부한 보다 나은 정

보를 위해 합동 모니터링과 모델링 작업과 같은 국제적 노력을 필요로 함

- 비시장가치: 수질 가치변화와 개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존재하지 않음. 기술적 디자인에 관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치연구의 기반구축과 이해, 제한된 연구들로부터 넓은 범위의 추론을 이끌어내어 “편익전달”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
 - 환경 계정: 요약된 영향은 좀더 전통적인 경제통계의 측면에서 수질 외형적 특성을 보고하는 편리한 수단으로서 제공된 환경계정을 통해 국가적 수준을 추정하는데, 몇 개국가에서 이미 환경계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많이는 아니며, 사용국도 모두가 통화관점에서 수질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따라서, 환경계정에 대한 심화작업이 요구됨.
 - 비교와 집단화: 국가수준평가에 대한 정리는 수질 영향의 작은 조합 또는 국가하부 수준에 초점을 맞춘 가치연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치는 않음. 이와 같은 집단화의 어려움은 환경계정의 목적에 대한 특별한 방법 또는 보다 반복적으로 시도되는 임무에 따라 무관심하게 나타남. 하지만, 환경계정에 대한 훈련과 반복은 장시간 비교와 세분화를 통해 일부분 표준화되는 집단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임. 따라서, 가치의 갭에 대한 위임연구와 어떻게 집단화를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심화연구가 이루어져야함.
 - 한계수확체감: 개선된 모니터링 데이터, 과학적 이해, 평가의 정밀도는 바람직하나 모두가 비용을 요구함. 중요한 것은 정확도에 대한 요구는 국가간 전략결정과 지역수준의 이행결정의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
- 몇가지 결론적 관찰: 저하된 수질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함. 산업폐수와 같은 점오염원은 눈에 매우 잘 띄고, 그들의 부정적 효과를 저감하는데 정책의 간섭도 초기에 발생되어 왔으나, 대조적으로 농업분야에서와 같이 분산된 오염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관찰이 어렵고, 관련정책의 간섭이 비교적 없음. 이러한 차이점은 복잡하고 분산된 과정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확실성을 반영함. 아직 처리의 차이점은 물사용 관점에서 호의적인 농토 관리자들에게 적절한 권리에 대한 역사적 경향을 더하여 농업 생산과 영농 수익과 관련된 정책 우선점을 반영할 수 있음. “제공자가 얻는 원칙”에 의해 포상되어지거나 또는 “오염자가 내는 원칙”하에서 단순 기대되는 오염 감소에 대응하여 기초라인 또는 참고 포인트를 설정하기 때문에 후자의 논점이 중요함.

라. 검토의견(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또는 대응할 사항)

○ 총평

-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종류를 확인하고 각각의 정량화를 위한 정보 구축이 필요함.
-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대상범위의 지정,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농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의 영향에 관련한 연구자료의 검색과 통합된 데이터의 분석과 구축이 필요함.
- 농업활동에 따른 수질영향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농업활동의 전과정에 대한 조사와 분석 평가가 필요하며, 농업인의 계도와 최적활동을 위해 수립되어 왔던 다양한 실천 지침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무엇보다 농업의 수질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환경의식고취가 가장 중요하므로 환경교육과정과 이를 실천하는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환경비용보다 경제적이 될 수 있음.
- 농업활동의 위축을 피하기 위해 농업인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국의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고, 국내여건과 유사한 국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마. 논의내용 종합

- 한국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국한된 농업의 영향분석은 농업의 부정적 영향만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고서 전반

에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함을 지적함.

- 독일은 시장지향적 정책만 강조된 점, 보고서에 나타난 편향된 관점이 농업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전반에 관한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기술이 필요함을 지적함.
- 미국은 전기 회의시에 제기된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 각 국가별 사례와 데이터는 재검증이 필요할 것임. 비용효과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는 숫자로 농업의 비용효과 분석한 결과가 공개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OECD 사무국은 다수 회원국들이 개별 컨설팅 보고서에 나타난 각 회원국별 사례의 재검증 필요성, 전체 환경차원이 아닌 협소한 관점에 따른 한계점 등을 지적함에 따라 서면절차를 거쳐 수정한 보고서에 대해 2011년 6월에 개최되는 제32차 JWP 회의시 공개승인을 요청기로 함.

2.2.15. 농업환경정책 평가 - 워크숍 준비

가. 논의배경 및 경과

- OECD 회원국의 농업정책 개혁은 전통적인 시장가격지지 및 산출물관련 조치로부터 품목생산으로부터 소득지지와 분리된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
- 최근의 정책개혁은 환경피해와 자원고갈을 줄이거나 환경편익 강화를 통해 농업부문의 환경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부문의 환경성과에 관한 자료는 오랫동안 연구가 이루어진 농업환경지표와 농업환경정책 목록, PSE 데이터베이스 등을 들 수 있음. SAPIM은 몇몇 국가에서 농업환경지표와 정책의 계량적 연계를 분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발간된 농업환경정책의 비용효과적인 지침에 관한 보고서는 농업환경 이슈를 다루는 정책수단의 범위에 대한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2004년 OECD는 농업환경정책을 검토하는 워크숍을 통

해 「농업환경정책 평가: 계획, 실천과 결과」 보고서를 발간함.

-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 범위, 평가를 통한 교훈, 농업환경정책의 환경성과에 대한 기여도, 이들 정책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지, 정책 디자인을 변경시키는 근거, 시간경과와 국가에 따라 농업환경정책의 환경효과에 대한 검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효성 있는 지침 모색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나. 논의목적

- 농업환경정책에 대한 심층적이고 설득력 있는 평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환경정책 평가에 관한 워크숍 개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문서임.

다. 주요내용

- 워크숍 어젠다
 - 세션구성: 1세션에서 환경영향의 평가, 2세션에서 환경영향의 회원국 사례, 3세션에서 라운드테이블 논의 등 세 가지세션을 제시함.
 - 장소: 독일에서 워크숍 개최를 제안함. 독일 브라운스바이크에 위치한 튜넨연구소로 100명 정도 참석할 있는 장소가 결정됨.
 - 개최시기: 2일 절반 정도의 일정으로 2011년 JWP회의가 끝난 직후 6월 23일(목요일)과 6월 24일(금요일)에 발표세션이 있고, 6월 25일 오전세션에 현장견학이 계획됨.
 - 참석자: 회원국과 비회원국, OECD 회원국 가입 추진국가 등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농가와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대표, 국제기구 등의 관계자임. OECD사무국은 비정부기구(NGO)와 비회원국 관계자의 참여를 권장함.
 - 웹사이트: 패스워드을 이용한 워크숍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국 대표와 사무국간의 정보교류처로 활용함.
- 논의사항
 -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논의

- 비회원국과 NGO의 발제자와 참여 단체의 추천
- 의장, 토론자, 패널리스트, 발표자 등에 대한 추천
- 사례연구 제시
- 사무국 여행 경비와 발표자와 토론자 여행비용 등에 대한 자발적 재정적 지원

2.2.16. 「OECD-KREI 공동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회의」 개최 계획

가. 개최 목적

- 2009년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녹색성장 선언’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Green Growth Strategy)보고서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10년 2월 OECD 농업각료선언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심층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주관의 녹색성장 전문가 회의 개최
- 한국이 2008년 8월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미래발전 전략의 핵심과제 추진하고 있어, 녹색성장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통한 국격 향상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는 2012년 12월 6일~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합동작업반 회의에서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회의’를 OECD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2011년 4월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

나. 전문가 회의 논의 주제

- 농업분야 녹색성장의 분석 모형
 - 녹색성장 분석지표를 활용한 회의국의 녹색성장 진단과 평가
 - 녹색생산성(탄소생산성) 분석
 - 생태효율성 분석
 - 한계감축비용 분석

- 녹색성장 기술과 정책
 - 농업부문의 녹색기술의 유형과 특성
 - 녹색성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수단
- OECD 회원국의 녹색성장 경험
 - 회원국의 녹색성장 관련 연구추진 동향
 - 회원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전략

다. 전문가 회의 개최장소와 운영 개요

- 장소: 서울 시내호텔(프라자호텔 또는 롯데호텔)
- 일시: 2011년 4월 6일~ 8일(1안), 4월 13일~15일(2안), 4월 20일~22일(3안)
 - 1일차: 등록, 의제개관, 모형, 방법론, 녹색기술
 - 2일차: 정책수단, 전략, 회원국 사례
 - 3일차: 현장견학(녹색성장 및 생태계 등 관련 현장)
- 참석자: OECD 회원국(32개국)의 농업 및 환경분야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국제기구(OECD, EU, World Bank, FAO, UN ESCAP 등)의 관계자 등
 -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현장견학지로 생태계의 보고인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로 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됨.

2.2.17. 기타 논의사항

- OECD-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녹색성장” 합동워크숍 개최 : 동의
 - 한국 대표인 김창길 박사는 OECD와 농촌경제연구원간의 합동워크숍 일시장소를 4월/서울로 제안하고, 의제와 논의할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함. 일부 재원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함.
 - 의제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의제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농업부문 녹색성장 워크숍은 OECD사무국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회의이긴 하나 OECD 녹색성장전략보고서 작성에 맞추어 농업분야의 녹색성장 분석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요한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함.

- OECD사무국에서 주관하에 2011.2.10~11일 OECD본부에서 개최예정인 “OECD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워크숍(농업부문 포함)”과의 의제 차별화를 충실하게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 OECD 사무국(레그 과장)은 녹색성장 워크숍 개최시기를 2011년 4월 6~8일까지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개최일자를 확정함.
- 농업환경정책평가 워크숍 개최결정: ‘11.6.23~25. 독일 Braunschweig
 - 농업위 2011-201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워크숍으로서 환경영향의 주요과제, 국가별 경험, 향후 방향을 토론하는 의제로 구성됨.
- 농업환경지표분야 논의내용
 - 농업의 환경성과 개관 : 제2차 보고서 진행사항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OECD, FAO, EC” 등이 협력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있으며, 물 가격부와 자료는 어려우므로 물 비용회수비율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 국가별 자료 확인을 위한 담당자(focal point) 지정이 필요함.
 - 농업환경수단 목록(inventory)의 대외 웹사이트 공개 : 자료범위 및 설명 방식, 발행주기에 대해 토론함. 한 논의가 있었음. 점검 차원에서 매년 발간하되, 자료수집 목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사례연구 추가를 검토하기로 함.
- 2011년 농업환경합동작업반 의장단 선출
 - 현 의장(Frode Lyssandra, 노르웨이)이 연임됨. 부의장에 이태리, 한국, 캐나다, 미국이 선출됨(한국 김창길 박사 연임). 의장단 선출절차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2.3. 관찰 및 평가

- 회원국의 최근 농업환경정책 동향을 발표하는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덴마

크의 경우 농업분야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질소감축, 농약사용 엄격 관리,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유기농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녹색성장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 녹색성장전략 보고서” 초안이 당면한 핵심사안임. ‘11년 2월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 워크숍”에 대비하여 쟁점별 검토자료와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농업분야 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정책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표명에 있어 우리와 정책적 맥락이 유사한 농산물 수입국과 공조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 회의문서 검토시에 우리나라 정책적 관점과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OECD 농업환경지표 업데이트 작업(2009년 또는 2010년 기준)이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사무국에서 설문조사표를 발송될 예정인 바, 양분수지 지표와 농장관리 지표 등은 미리 지표 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과제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 작성(2011년 6월 발간 계획)에 맞추어 농업분야의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개념 설정, 녹색성장 계측 방법론과 측정 지표, 핵심정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재 KREI 녹색성장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OECD 전략보고서에 연구결과가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국제적인 논의에 활용되고 참고자료로 인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 영문화 작업이 선결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영문보고서 발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 OECD의 녹색성장전략보고서 발간을 위해 현재 중간보고서가 발간되고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문서가 발표되고 있으나, 한국의 녹색성장을 다룬 문헌이 인용되는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한국이 녹색성장 분야 이니셔티브를 가진 것으로 국내에서는 강하게 주장되고 있으나, 국

제사회에서는 관련분야의 영문보고서와 논문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거의 인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국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진 2008년 하반기 이후 녹색성장 분야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영문화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녹색성장 분야 보고서의 영문화작업은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농업분야 녹색성장,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OECD에서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논의결과를 우리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녹색성장(식품과 농업), 기후변화 완화·적응 관련 농민행태와 관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작물보험과 농가 인센티브 등이 제시됨.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과 KREI가 공동으로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회의(워크숍)를 2011년 4월 6일~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OECD 사무국 주관 하에 2011년 2월 10일~11일 양일간 OECD본부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종합보고서 관련 워크숍’과의 의제 차별화 등 의제선정에 있어서 사무국 및 의장단과의 협의가 필요함. 특히 OECD전문가 회의는 회원국 대표와 사무국 관계자 및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 약 20~30명 정도가 참석하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행사로 OECD사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 8 장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 및 대응³

1. 수산위원회 논의 동향 [제101차('08.4) - 106차('10.10)]

- OECD 수산위원회는 1961년 OECD 설립과 동시에 분과위원회로 설립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시 동시 가입함.
- 주요기능(연 2회 개최)은 회원국간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3년마다 새로운 사업안을 선정 및 연구하여 그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 함.

1.1. 어업구조조정의 효과적 이행(제101차('08.4)-103차('09.4) 회의 의제)

1.1.1. 논의 배경

- 어업구조조정은 어업능력을 감축하여 자원지속성 유지와 어업수익을 증가

³ 이 장은 현재 OECD 수산위원회 부의장이신 부경대 이상고 교수께서 집필하였음.

시켜 자원과 경영의 '윈-윈'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2003년도 OECD국가들이 어업구조조정에 사용한 금액은 430백만 USD에 이르며, 이는 2006년도 기준 총 정부재정이전(GFT: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 정부 보조금)의 7%에 해당됨.

- 그러나 어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종종 실패를 겪는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구조조정이 수산정책 입안자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어업구조조정이 정책 입안자와 어업인 모두에게 수혜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 이 프로그램은 매우 적극적이며 가시적인 정책적 중재안을 낼 수 있어서 어업의 과잉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어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이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업계도 어업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남아있는 어업인의 이익을 개선하고 어업에서 극히 미미한 수익을 거두거나 수입이 없는 어업인이 원만한 어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그리 복잡하지 않음. 최근의 연구 분석과 경험에서 볼 때, 정책의 시행에 따라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론적 실질적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개발 과정과 시행에서 조심스러운 계획이 요구됨. 이 프로그램의 원래 의도와 실질적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어업정책 개혁을 해야 하는 정책위원회의 주 관심사가 됨.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분석과 실제 시행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개발, 시행,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데 있음. 그리고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업계의 도움에 부응하도록 하는데 있음.
- 본 논의의 주안점은 첫째, 어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에 나타나는 경제 문제들을 분석하여 정책 목적의 특정 부분, 즉, 가격 형성, 전체 관리 틀의 역할, 재정, 기대역할 등을 다루게 됨. 둘째, 어업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미국, 호주, 중국, 대만, 프랑스, 한국 등

의 다양한 최근 사례들을 검토함. 셋째, 어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허용성과 궁극적인 성공에 영향을 주게 될 관련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정책 입안과 시행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함.

1.1.2. 논의 주요 내용

- 어업구조조정은 과잉어업세력을 줄여 자원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어업 이익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수산정책으로 2003년도에 OECD 회원국들은 USD 430백만을 어업구조조정에 투입하였는데 이는 총 GFT(정부재정지원,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 정부보조금)의 7%에 해당됨. 한편 어업구조조정이 투입된 자원 대비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음.
- 어업구조조정은 어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도한 어업세력의 해결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이며 가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적 중재안을 낼 수 있다는 점과 고질적 어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어업구조조정은 정부의 다양한 수산정책에 연계되어 영향을 미치게 됨. 그리고 업계는 어업구조조정의 지대효과를 통하여 경영수익의 개선과 산업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입안자 못지않게 어업구조조정을 선호함.
- 이같은 어업구조조정도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최근의 연구와 정책적 경험에서 어업구조조정 정책의 이용에 대하여 많은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어업구조조정 정책의 개발과 실행은 항상 주의 깊은 연구가 동반되어야 함.
- OECD 국가들의 경험에서 체득한 이론적·현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① 어업구조조정의 장기적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관리체계의 문제, ② 어업구조조정 비용지불 주체의 문제, ③ 어

- 업구조조정 어업보상가 책정의 문제, ④ 어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기대의 문제 등임.
- 이 같은 문제점들에서 어업구조조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경제적 정책적 문제와 어업구조조정의 시행과 결과에 대하여 고찰하였음.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의 경제에서 최근에 운용된 다음과 같은 어업구조조정의 사례를 통하여 어업구조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를 검토 분석하였음.
 - ① 미국 베링해와 알류산 열도의 King and Tanner Crab 어업의 자발적 어업구조조정;
 - ② 미국 태평양 저서(Groundfish)어업의 민간차원의 어업구조조정;
 - ③ 호주 정부 주도의 미래지향적 안전어업을 위한 폐업구조조정;
 - ④ 대만의 의무적인 정부주도의 참치 연승어업 어업구조조정;
 - ⑤ EU와 프랑스 정부 주도의 어업구조조정;
 - ⑥ 한국의 연근해 어업 어선에 취해진 일련의 어업구조조정.
 - 어업구조조정 정책의 정치경제적 측면이 어업구조조정의 제안과 실행, 그리고 관련 정책의 성공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어업구조조정의 경제적 환경적 조건의 역할; ② 업계간의 이익배분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이익배분; ③ 업계의 지원을 받거나 어업과 타 산업의 폭넓은 어업구조조정의 반대를 줄이기 위한 보상차원의 어업구조조정; ④ 정부와 업계가 어업구조조정을 통하여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신인도의 중요성 등임.
 - 이러한 검토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 어업구조조정은 유용한 정책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일부 특정한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임. 그러므로 보다 강력한 어업구조조정과 어업노력 감축의 결과를 토대로 한 어업참여에 대한 관리권한 강화와 건강한 생태계 유지 등이 수반되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어업구조조정의 중간과정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어업인간의 협조적 참여를 유도하여 어업구조조정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어업구조조정은 어업참여가 제한되는 경쟁적 조업(race to fish)을 제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으로는 다소 미흡함. 어업구조조정은 효과적인 어업관리가 보조적 수단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단기적 어업구조조정 이익은 잔존 어업인의 어업노력 확대나 새로운 어업노력 진입으로 인하여 소멸됨. 즉 어업노력의 추가적 발생이 결국 어업구조조정의 이익 자체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임. 더구나 계속되거나 진행 중인 어업구조조정 채원이 결과적으로 어선의 가격과 어업면허 가격을 상승시켜서 예상되는 미래자원 임대가 자산으로 자본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함. 이는 결국 미래의 어업구조조정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자본이 투입되거나 기술변화로 인한 어업노력 효과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어업구조조정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 본 논의는 어업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수산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신경 써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을 분석한 최상의 어업구조조정 원칙 및 지침을 담고 있음. 다음의 어업구조조정 원칙과 지침은 정책 입안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고해야 할 것들을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Box 1> 어업구조조정 원칙과 지침

1. 원칙

- * 어업구조조정은 남획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업능력을 줄이기 위한 유용한 정책을 제공한다.
- * 어업능력을 조절하기 위한 어업구조조정에는 과잉능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연계된 어업관리는 과잉능력과 남획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어야 하며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어업능력과 노력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 * 어업능력을 줄이거나 의무적 제한을 위한 합의된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능력 평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은 결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 * 어업구조조정은 국가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가격대비 최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시간적 제약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 * 어업구조조정은 과잉능력과 남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루지 않는다. 어업구조조정은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정책조정의 일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어업구조조정 이후 어업인 지원과 어촌 정보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 어업구조조정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지침

A. 설계

- * 어업구조조정의 대상 목표는 명확하게 선정하고, 달성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자원 지속성 유지와 경제적 이익의 향유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 *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어업관리 정책들은 일관성이 있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 * 정부는 어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관리제도가 대상어업과 타 어업으로(또는 타 어업의) 재진입 능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업구조조정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소멸된다.
- * 정부는 미래에 업계 자율적 어업구조조정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어업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획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실패를 밝혀낼 수 있도록 자원 및 어업능력 관계의 특수성과 어업참여의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 * 어업구조조정은 예상 분야의 불협화음과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투자적 동기와 계획의 왜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어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계획되어야 한다.
- * 어업구조조정 기대이익과 계획 및 운용비용은 프로그램 설계단계에서 평가하여 어업구조조정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 * 어업구조조정에는 업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구조조정 시행이 용이하도록 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업계의 참여는 어업구조조정 사후 관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B. 이행

- * 어업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할 때, 정부는 어업구조조정 수혜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투명해야 한다.
- * 어선 감축, 입어, 허가 등에 지불되는 가격 산정체계는 수용력이나 수익성 면에서 국가 재원이 최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실용적인 면에서 정부는 어업구조조정 지원액과 수혜자의 결정에 경매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방법은 가격 결정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가장 경제적인 자원할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어업구조조정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정비율 정액제(fixed rate payments)가 보다 덜 복잡하고 시행하기가 비용 효과적임을 정부에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대상선정이 엄격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서 거래비용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 정부는 어업능력에 있어 잠재능력과 실질능력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어업능력이 효과적으로 감축되어서 사후 다시 재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자원의 지속성 유지와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추가적인 어업구조조정에서 잠재능력과 실질능력의 잠재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 * 정부는 수혜자 지불 원칙하에 어업구조조정의 수혜자들이 지원액의 부담을 통하여 어업구조조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업계 자율적 재원과 국가 재원은 어업관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아있는 어업인이 미래 어업에서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업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 * 어업구조조정 사후평가는 어업구조조정 대상과 더불어 개발된 목표의 달성을 가

능케하는 이행 지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책임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전 프로그램의 이행 경험을 참고하는 것도 어업구조조정 계획의 입안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1.2. 수산정책 개혁 동향(제101차('08.4)-103('09.4)차 회의 의제)

1.2.1. 논의 기본방향

- 본 논의의 기본방향은 정치경제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수산정책 개혁(fisheries policy reform)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종합 분석하는 것이며, OECD의 “수산정책 개혁” 프로젝트의 확장된 부분, 그리고 주요 과제인 어업조정의 사회적 효과와, 조정능력, 지역 수산관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 조직의 개혁에 초점을 두었음. 그리고 수산정책 개혁의 페이스(pace)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통찰도 중요하게 다루었음.
- 과거 10년동안 OECD 회원국 내에서 수산정책의 연구에서 특성화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과 어업의 책임감은 특징적인 요소로 발전되었으며, 잘 정의 내려진 접근법과 사용권리들, 어획의 결정을 위한 풍부한 과학적 기초와 노력수준, 효과적인 시행, 결정을 하게 형성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는 효과적인 어업 관리 제도를 형성하는 핵심이 되었음.
- 특히 수산정책의 연구는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국제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과 기술지침의 활용과 지속적 어업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OECD의 리포트, 책임감 있는 어업을 위한 수산정책의 변화와 어업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사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수산정책의 개혁은 충분히 합의되어진 것으로 수산 관련 요소의 많은 부분

내에서 지속되어진 남획 문제, 과잉어업세력과 열악한 경제적인 수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한 것이며, 합의사항은 많은 OECD국가들에서 어업요소를 위한 국내의 개혁사항(EU의 Common Fisheries Policy처럼 진행 중인 개혁사항)과 국제적인 수준 (예를 들어, 2015년에 어업자원량 복구를 위한 위원회와 WSSD의 실천계획 아래의 어업보조금의 질서와 도하 선언 등)을 반영하였음.

- 반면에 OECD 회원국의 교류, 범위, 깊이와 지속적인 어업을 향한 개혁의 시기에 많은 부분이 행하여 지지 않은 것은 회원국간의 교류가 활발한 것과는 다른 것이며,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 간의 차이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뚜렷한 개선점을 반영하였음.
 - 첫째 개선점은 다른 나라의 시작점과 국제적인 우선권을 반영하여 착수 되었으며,
 - 둘째 개선점들은 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합의점을 창출하는 내에서 다른 정치적인 경제학적 논점을 반영하고, 요소 내에서 별개의 그룹에 의한 개혁의 반대를 극복 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음.
- 노르웨이, 멕시코,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어업요소들의 개혁에 관한 연구의 경우, 이들 연구들의 목적은 각국의 어업 요소 내에서 국내의 개혁(reform) 경험의 개요를 제공하는 것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OECD 회원국간의 수산정책 개혁적인 경험들은 국제적인 자원이 주어진 범위, 정치시스템, 경제, 사회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어업정책의 목적을 반영하는 연구 안에서 재검토 되었으며, 국가들의 경험 안에서 다른 접근과 도전이 있으며, 개혁 상 부족했던 노력들로부터 얻게되는 정보와 성공적인 개혁 아래에서 일반적인 요소들이 잘 설명된 것을 말함.
 - ① 개혁된 정책적인 문건(the policy context)
 - ② 개혁을 위한 조정자(발전중인 것과 개혁의 이행하는 것에서 다른 그룹의 역할을 포함)
 - ③ 정치적인 개혁의 특징과 분야별 영향

- ④ 개혁의 지속화를 유지
- ⑤ 경험적 교훈과 함의
-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진 연구에서의 동기부여는 어업관리의 실패와 성공을 비교하는 것에서 가능하며, 최근의 성공적인 어업관리에 대한 재검토에 따르면 “무수한 연구들이 재해, 실패와 인간적 실수에 관한 안 좋은 소식에 대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진 다는 점임.” 이는 아마도 어업관리의 성향이 성공보다 실패로 인해 특징되어 진다는 것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어업에서 성공적인 개혁의 많은 예들은 정책실패의 문제들로부터 단지 정책적인 접근을 위한 통찰력으로서 제공 될 수 있음. 성공적인 개혁은 정책적인 논쟁에서나 또한 일반적인 대중들에 의해 주어지는 경향이 있음.
- 동 논 의 보고서 는 OECD 회원국 수산업 분야의 많은 개혁부분 연구에서 선택된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는 것임. 수산업 분야에서의 개혁을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은 아니나 성공적인 개혁의 바람직한 예와 고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1.2.2. “성공적인” 개혁의 정의

- 동 논 의 보고서 에서 수산정책 개혁(reform)은 전체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인한 정책의 변화로서 정의됨. 정책의 변화로부터 이익의 크기와 손실의 크기에 대한 요구들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 사람들의 손실분에 대해 충분히 보상 할 수 있고, 보상을 하고 난 후에도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과 같은 것임.
- 수산정책 개혁(reform)의 개념은 일률적이지만 “성공적인” 개혁의 정의는 보다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성공은 목적에 대해서 결과의 조향이 측정되어 질 수 있어야 함. 어업관리의 문제는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제약에 두는 반면에 사회정책과 경제적인 관계에서 정부의 목적의 범위를 수용하는 것에 있음.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해결할 수 없

는 어업 시스템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고 한 가지 특징에서 정책의 변화는 다른 시스템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생태학과 경제학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일률적이며,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업 자원량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 그리고 어업분야의 경제적인 잠재성을 극대화해야한다는 것에 있음. 어업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목적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정책적으로 분배의 어려운 문제 등을 고려하면 쉽게 접근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성공적인 수산정책 개혁은 성공적인 관리에서의 결과이며 이를 성공적인 어업관리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음. 성공적인 어업관리의 원칙은 FAO(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국제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와 OECD(지속가능한 어업)를 통해 잘 알려진 많은 연구기관들의 국제적인 포럼 등에서 확실하게 정의되었음.
- 수산정책 개혁의 중요한 원칙은 어업자원의 사용과 접근의 권리들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 어업관리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인 능력, 과학적 조사와 강제성,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자원의 세대간 지대균등, 그리고 어업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을 포함함.
- 그러나 실제로서 목표를 잘못 기술했고(예를 들어, 부적절한 정보의 결과,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해 집단에 의해 정책의 진행이 이뤄지는 것 등), 실행된 각각의 개혁들로 향후의 사회후생과 어업관리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닐 것임. 만약 특정한 개혁들이 사회 복지를 향상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그때 그 개혁은 성공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음.
- 수산정책 개혁의 범위에 있어서 잘못 기술된 목표는 낮은 어업관리 이행의 결과로 이어지고 정책 이행 스스로의 시스템적 오류를 나타낼 수 있음. 주어진 개혁 범위에서 한정적인 효과는 반드시 목표의 설정과 성공을 위한 조건에 의존하게 됨. 개혁의 목적은 사업들간에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며, 한 사업의 성공은 다른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음. 또한 성공의 측정 방법에 따라 좌우되고(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결과물보다 생태적이거나 경제적

- 인 결과물로 측정하는 것) 만약 개혁이 성공적이라면 오랜 기간 지속가능할 것이어야 함.
- 결론적으로, 수산정책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조건은 확실한 개혁 목적의 설정과 사회후생의 향상(환경과 사회 그리고 환경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을 반드시 수반해야 함.

1.2.3. 수산정책 개혁 : 국제어업 할당량 분배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국제어업에서 회원국간 어업권 할당량 분배계획을 전개하는 것은 국제어업자원을 개발 및 이용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이나 합의에 주요 장애요소 중 하나임. 이론적이고 적합한 수준의 분배 문제에 대한 영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런 노력의 대부분은 협력적인 해결책을 토대로 한 주요 요인을 증명하기 위해 게임이론의 지식에 집중하고 있음.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개별적 행위보다 협력적 행위가 더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임.
- 국제어업의 경우, 어업국간 합의 시행을 보증하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나 협정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이 중요함. 최초 분배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의 견해, 신규 협력회원, 무임승차자들, 다변적 환경의 최적자원관리, 자금지원(또는 “협상 전문가들”)과 같은 논쟁들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동 논 의 보고서는 지역어업관리기구(RFMO)의 참여 및 할당량 배분과정 개혁을 위한 방향을 논하며, 국제법적 체제를 적용한 국제어업, 분배문제를 기초한 경제적 논쟁, RFMO의 분배제도 시행의 현 상태를 검토함. 현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들 사이에 참여권을 할당하는 것은 국제어업이 직면한 것과 비슷한 정책 대립들의 문제에 격론을 벌였던 타 자원 분야(수자원과 온실효과가스)의 사건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분배 논점에 대한 견해를 넓혔음.

- RFMO내의 어업권 할당에 대해 현존하는 정책과 문제점의 검토, 그리고 타 자원 분야들의 선행 분배의 사례 검토는 RFMO의 분배과정을 개혁할 시행 과정에 유용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제공함. RFMO의 변화된 환경 때문에 훌륭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충분한 공통의 요소들이 RFMO의 전역에 존재한다. RFMO는 제안되고 논의된 광범위한 정책 선택권들을 수용하고 있음.
- RFMO의 선택권에 기초하는 것은 할당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된 과정과 분배라는 RFMO의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유연한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필요함. 또한 국제어업에 있어서 모든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근본적으로 잠재수익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함. 참여자들이 직면한 인센티브와 잘 부합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의 증대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한 정책 방향에 유용하게 적용됨.
- 동 논의 보고서는 RFMO의 어업권 할당에 대한 절차를 개혁 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선택사항을 제시하며 이들은 다음과 같음.
 - ① 분배를 위한 역사적 근거의 사용에 대해 원초적 한계를 해결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질적인 기준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가중치시스템의 사용을 포함)
 - ② 다른 결점들에서 보존에 대한 분배결정을 분리 및 관리측정(총 어획량과 어획노력)
 - ③ 회원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더 큰 신뢰를 가지고 RFMO과정에 뜻있는 참여를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기 위한 배분결정과 논쟁을 독자적으로 검토
 - ④ 제한되고, 대부분이 현존회원들의 어획기회에 대해 장·단기간의 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신규 협력회원을 위한 선택권
 - ⑤ 협력으로 인한 잠재수익과 현존 회원과 신규 회원에 대한 잠재적 몫을 넓히기 위해 RFMO의 경제적 효율성 개혁을 위한 우선순위 구축
 - ⑥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시키고, 어선대의 유연성을 개혁하고, 회원국 시

행의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권리교환성의 도입과 혁신적 권리 구조

- ⑦ 배분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력한 모니터링과 권리의 감독과 시행을 보증할 필요성

1.2.4. 수산정책 개혁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사례

가. 요약

- 지역어업관리기구(RFMO)는 지난 10년 동안 유엔해양법협약(UNLOS)를 포함한 국제경성법이나 연성법의 발전과 영향력의 발생과 더불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 유엔공해어족자원협정(UNFSA)임. RFMO는 이들 국제법체계의 통제 하에 더 나은 어업자원관리를 위하여 조업 및 관리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많은 국가들이 UNFSA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ited Nation)이나 산하 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처럼 국제포럼 개혁을 위한 요구사항이 고려되는 RFMO의 성과에 대해 일반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많은 RFMO는 최근 몇 년 동안 안정된 국제어업 협력협약과 수산자원관리의 개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공적인 중대한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동 논의를 보고서는 4개 RFMO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NEAFC), 북대서양수산기구(NAFO)에 대한 어업관리 개혁 경험을 검토하며, 타 RFMO에게 개혁 노력을 알려주기 위해 이들 각각의 RFMO 최근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개혁의 교훈들을 알아내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였음. 어업관리 개혁의 과정을 기초로 '정치경제의 논점, 어떻게 개혁의 여세를 몰아서 효과를 얻을 것인가? 오랜 시간동안 어떻게 개혁이 유지될 것인가?' 등에 연구 논의 주안점을 두었음.

나. 주요 논의 내용

- 동 논의 보고서는 개별 RFMO의 특성에 의존하는 변화의 속도와 함께 RFMO의 개혁은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함. 또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태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강조함. 그리고 기초적인 인프라(th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구축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혁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세력을 형성·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경제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변화양상은 회원국의 관심에 더 잘 부합될 수 있고 전회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위해 협동할 것을 강조하였음.
- RFMO 개혁을 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추구하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기 위한 변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개혁에 대한 지연활동의 비용은 어군에 대한 역효과와 수익저하와 관련하여 중요할 수 있음. 사례연구의 점진적인 과정은 RFMO 내의 더 중요한 개혁을 위한 사례구축에 아주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 더욱이 사례연구는 심지어 개혁에 대한 어떤 중요 논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실행될 수 있음을 설명함.
- RFMO개혁은 또한 규칙, 구조, 실행의 변화들을 서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전환되는 많은 부분을 패키지처럼 검토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항만국 측정의 사용, 기국통제, 선박명부의 상호인정,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모든 활동은 RFMO의 유효성을 개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음.
- RFMO의 변화를 위한 단편적 방법은 국가들이 특정 논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이점이 있으며, 더 많은 개혁을 촉진할 것임. 또한 특별개혁의 기간을 따라야 하는 더 많은 변화들의 준비행위를 제공함. 즉, 변화의 아이디어에 익숙하게 된 나라들에게서 얻으며,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음. 또한 개혁의 잠재편익과 실편익을 설명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변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개혁상의 어려움과 전략 방향의 부족 때문에, 각각의 접근에는 위험이 존재하였음.
- RFMO의 개혁방향을 위한 전략비전이 요구됨. 각 비전은 UNFSA 원리로

부터 정의 내려지며, RFMO모델과 최선의 조업지침들에 대한 광범위한 활동으로 면밀히 검토되었음. 개혁의 목표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개혁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였음.

다. 사례연구

- 사례연구 대상 지역수산물관리기구(CCSBT, ICCAT, NAFO, NEAFC)는 RFMO가 수행한 개혁에서 직면하는 도전과제들을 강조함. 각각의 RFMO는 실행가능성, 안정성, 개혁의 성공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환경들에 상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 정치적 의지 부족, 다른 국가적 안전, 다른 경제적 우선권, 이시점(?), 과학의 불확실성과 같은 논점들은 변화를 수행하고 개발하기 위해 개혁을 위한 협력에 영향을 주는 결합이 요구됨.
- 동 논문의 보고서에서 조사된 사례연구들은 두 개의 북대서양 RFMO에 대한 두개의 참치 RFMO가 개혁에 직면한 다른 도전과제들의 변화를 분명히 나타냄. 근본적 차이는 RFMO의 회원에 있음. 북대서양 RFMO는 연안의 선진국들로부터 지배된 반면 참치 RFMO는 개발도상내에서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 중 많은 원양어업국으로 특성화되었음. 이러한 구별되는 중요 특징은 RFMO에 걸쳐진 개혁의 접근법과 성공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음.
- 두 개의 참치 RFMO인 CCSBT와 ICCAT는 그들의 통제 하에 참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개혁 결과와 함께 다른 변화들을 꾀하였음. CCSBT의 사례연구는 새로운 국가와 협력하고 있는 비회원을 포함한 전회원의 확대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음. 이러한 확대는 성공적으로 성취되었지만, TAC의 개혁과 할당 메커니즘과 같은 근본적 논점들의 해결책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그러므로 장기 속성과 협력협정서의 효력에 대한 개혁노력은 장래에 각 도전에 제기되는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제거 할 수 있게 되었음.

- ICCAT에서는 특정 논점을 해결하는 권고사안들이 많으나, 현 문제에 대응하기엔 임시방편에 불과함. 비록 권고사안들은 일부 연구분야(황새치와 청새치에 대한 갱신계획)에서 ICCAT의 수행과 결과의 개혁은 성공적이지만, 더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할당에 대한 압력은 개혁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방해하기 때문에 ICCAT 전회원의 다양한 관심사는 중요한 과제임. 반대절차에서의 합의 부족과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또한 ICCAT 회원내에서 개혁을 이루어내기 어렵게 만들었음.
- 반면에, 두 개의 북대서양 RFMO인 NEAFC와 NAFO로 조사된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개혁을 수행했음. 개혁의 과정은 대규모 어업국들의 순조로운 경험지식의 수평적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종 회원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히 쉽게 이루어졌음. NEAFC 개혁은 개혁을 위해 회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행되었음.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제도적 구조는 조직의 불안정 없이 더욱 더 쉽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었음.
- NAFO개혁을 기초로 한 협약의 재작성은 최근의 모든 RFMO개혁 경험들의 가장 근본을 나타냄. NAFO의 개혁은 아직 완벽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NAFO개혁의 자원과 수익성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정의 지속성에 관한 결과를 너무 단순하게 평가했음. 그러나 많은 최상의 실행 메커니즘을 통합한 협약의 전면적 변화는 개혁된 자원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 NAFO의 긴 개혁과정과 개혁을 위해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을 가져올 회원들로부터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던 NAFO개혁의 장애물, 특히 IUU(비보고, 비규제, 불법어업)어업을 제거와 강력한 리더십 공급, 그리고 회원국들 사이의 신뢰와 신용 구축에 관하여 극복해야하는 노력이 가중되고 있음.
- 사례연구들은 RFMO를 걸쳐 개혁과정의 범위를 강조함과 동시에 개혁경험들을 통해 반복되는 테마운영을 나타냄. 이는 개혁을 건의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는 개혁을 위한 선도자와 RFMO가 개혁에 더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을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었던 방법과 관련이 있음. 이것들은 개혁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번창하기 쉽게 만드는 RFMO제도적 협정의 어떤 기본적 특징이 존재하고, RFMO의 구성과 어종의 적용범위와 상관없이 전 RFMO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라. RFMO개혁을 위한 선도자

- 정치적 압력을 발생할 외부 선도자의 힘과 어려운 개혁 도전과제를 이겨내기 위한 의지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됨. RFMO개혁을 위한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하는 동안, UNFSA의 승인은 RFMO개혁, 특히 NAFO를 위한 압력에 중추적 역할을 함. 환경분야의 NGO의 압력 캠페인은 RFMO개혁을 위한 필요의 정치적, 대중적 이해력을 제기하는데 효율적임이 알려졌다.
- 자원위기 보다 어업선단의 경제적 위기가 개혁을 이끄는 것은 분명함. 지원 활동비용의 강력한 협정은 활발하지 못한 개혁을 극복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를 도울 수 있음. 지금 경우보다 RFMO의 경제적 결과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초점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음.
- 성공적인 개혁은 국가들, 개인 그리고 국가연합의 부분에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함. RFMO의 역사적으로 지배적인 국가들은 비효율적인 다국 간 관리하에 경제적으로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사실에서 개혁노력의 리더십을 위한 결정적 동기유도와 그 후의 강력한 관리가 발생함. 도전과제는 개혁과정에서의 새로운 회원을 통합하는 것에 더하여 RFMO회원의 이익분배에 대한 그들의 염원을 해결하는 것에 있음.
- 평가보고서의 사용은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을 규정하는 것과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를 위한 강력한 외적 도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신빙성을 위해 평가보고서는 주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전문가들이 작성해야 함. 정기보고서는 또한 RFMO활동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배경의 동적자원을 알아볼 수 있음.
- 개혁에 대한 강력한 외부의 영향은 전시효과임. 다른 RFMO의 경험으로부터

터 습득은 개혁과정을 걸친 최상의 수행들을 통합한 잠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오직 19개국 또는 4 개국 또는 그 이상의 RFMO에 속하는 경제국들이 다양한 RFMO에서 오직 제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국가들(모든 RFMO회원의 80%이상)이 있음을 나타냄. 그러므로 최상의 수행 아이디어를 보급하는 일은 다양한 RFMO사이의 리더십 역할을 하는 소수의 국가들이며, 이는 대부분 OECD 회원국들임.

마. 개혁을 위한 최적 조건의 조성

- UNFAS와 FAO의 준수협정을 포함한 모든 RFMO회원의 공해어업을 다스리는 법적수단의 승인은 개혁을 위한 공동의 출발점이 됨. RFMO전 회원의 기본 규칙과 목표에 대한 협정은 성공적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RFMO개혁을 위한 참가는 회원국 사이의 높은 수준의 신뢰와 신용이 필요함. 이것이 부족한 국가, 리더십 또는 법적명령이 적은 국가는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신뢰와 신용을 성취하는 것은 RFMO상호 간 근본적 관계 구축을 제기하거나 요청할 수 있음.
- 신뢰와 신용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RFMO수행의 모든 분야를 위한 명백하고 체계화된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협정임. 문제점과 논점을 통해서 연구하고 있는 합의된 과정과 규칙으로 개혁의 협상은 결과 없이 연구부분을 조금 또는 가지지 않고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과학적 권고에 대한 협정은 개혁을 위한 정치적·경제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중요함. 일부 RFMO에서 과학 평가서의 독립적 검토의 기여는 국가적 변론과 과학적 신용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음. 권장사항의 출처는 더 이상 믿을 수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변화를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훼손하게 됨.
- IUU어업을 축소함으로써 자원 보유량과 경제적 실행가능성에 대한 외부적 압력들을 제거하는 것은 계약한 관계자들이 내부적 개혁 요구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허락함. 항만국 측정의 사용, 기국통제, 어획량 문서 제

도는 일부 RFMO에서 IUU어업을 제거하데 아주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개혁비용의 단기비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있는 수산업의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개혁하는 것에 집중하는 국가들을 위한 여지를 제공하고 그들 선단을 위한 장기의 경제적 결과를 개혁해야 함.

- 어업국들이 선단에 대한 자국설비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면, 개혁노력을 방해하는 많은 국가적 지위의 침해는 변경될 수 있음. 보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RFMO개혁 협상가 또는 자원과 경제적 실행가능성에 대한 장기의 주안점을 대한 단기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각국의 지위에서 추진하는 경제적 명령들의 성격을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음. 더 이상 단기의 수행비용을 보상하는 요구로써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 선단들의 협정 불이행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킴. 명시적 또는 함축적으로 RFMO해양 어업활동을 지지하는 보조금의 폐지는 이들 관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
- RFMO를 바꾸기 위해 장애요소를 극복하려면 유연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UNFSA의 광범위한 요소들과 타 포럼에서 만들어진 최선의 수행원리에서 회원들은 개혁노력을 위한 “구매”를 위해 개별국들의 정책여지를 창조하는 메커니즘을 조사해야 함. 견본은 혁신적 회원 협정들을 통한 비회원의 대우, 쿼터에 기반을 둔 양보다 TAC의 비례 할당의 사용, 권리양도와 같은 시장에 기반을 둔 해결책의 가능성을 포함함.

바. RFMO개혁을 위한 방향

- 내·외적 원인으로 개혁에 대한 압력은 차츰 높아질 것이며 개혁을 위해 잠재적이고 강력한 선도자가 이끄는 것은 정부가 개혁노력을 가속화하도록 도울 수 있음. RFMO개혁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을 것이지만,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우선권들이 개혁과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음. RFMO개혁 내에 생성된 조건들은 RFMO회원들이 직면한 인센티브에 재 부합하는 것에 위태롭게 의존하며 번성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정책 입안자가 RFMO를 수행할 수 있는 개혁 안에서 정책적 경

제한경을 창조하는 우선권과 같은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많은 분야를 증명함. 이들 사이의 중요요소는 강력한 리더십과 법적도구(특히 UNFSA)의 승인을 통하여 RFMO를 위한 동의된 규정과 절차를 두는 것, 그리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설립하는 것임. 이들 기본적 요소는 신뢰와 신용 그리고 RFMO개혁에 대한 협상과 활동이 요구되는 지속성 구축의 중심에 있음.

- RFMO개혁에 대해 나아가는 것은 또한 정부들의 “고정관념 탈피”가 필요할 것임. 정부는 통합 RFMO모델과 할당권 거래와 같은 더 혁신적인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함. 진보적인 정책분석과 계획은 정책선택원의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보다 확대된 RFMO체제 내에서의 인센티브 구조로써 재결합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음. 궁극적으로, 만약 RFMO개혁의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을 다하고, 근해어업을 지속하려 한다면 정부는 리더십과 유연성 그리고 개혁을 실제로 해보일 필요가 있음.

1.3. 수산업의 세계화(제101차-103차 회의 의제)

1.3.1. 수산업의 세계화

-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세계 시장은 상당히 변화하여 왔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이는 수산업의 가치사슬(어업자, 수산양식업자, 무역업자, 가공업자, 소매상인)을 따르는 경영자들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사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생산 비용을 줄이고, 수익이 남는 투자를 하는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
- 새로운 생산품과 생산 방법들, 파생(fragmentation)과 생산 공정의 아웃소싱과 변화하는 가치사슬은 세계 수산업 시장에서 항상 진화하는 본질의 특성임. 수산업의 특성은 광범위한 공유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며 이는 자원량이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 지역적 대등관계와 국제협력의 증가를 필요로 하였음.
- 수산업에 있어서 점점 증가하는 시장 상호작용에 대하여 그 과정은 정부에 대한 많은 정책 변화를 나타냄. 이익을 양보하지 않고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 시키고,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수산업 세계화 과정에서 생기는 압력을 수용할 수 있게 발전하고 효력이 있는 어업의 생산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임.
 - 수산업의 세계화 과정은 국가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부의 중요한 공급원임. 수산업 부문은 이 과정에 공헌할 수 있고, 동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용으로 여전히 더 나은 부의 창출이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음.
 - COFI가 주요 사업으로 수산업의 세계화 연구에 착수되었을 때, 가치사슬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 합의를 보았음. 가치사슬은 조직화된 구조를 제공하는데, 이는 구성요소 (어획, 수산 양식, 가공, 소매상) 사이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한편, 수산업의 세계화는 수산업의 가치사슬의 각각의 요소에서 다양한 방안으로의 접근이 규명되었음.

1.3.2. 수산업의 가치사슬

가. 어업의 세계화

- 어업에서의 세계화는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하고 어선에 투자한 자본수익을 확실히 하기위한 필요로 이루어짐. 어업의 세계화는 국내 어업의 생산관리의 구조가 자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국내 잉여 노력량의 해결책으로나 입어협정, 공동어업, 외국회사경영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권을 통하여 어업자원의 잉여량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어업진출 방법임.
- 어업의 세계화는 국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넓게 확장하기 위한 결정

또한 공해(high sea) 어업을 조장하며, 국내외 조업 환경과 자국의 관리 환경이 조업활동의 수익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선 소유자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됨. 조업의 기회를 세계적으로 확대할 때 주요한 관심사는 보다 일반적으로 경영 구조의 안정성 정도와 자원에 대한 재산권적 안전성, 그리고 어업관리의 상태 등이 될 수 있음.

- 정책적 도전(policy challenges)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과 국내 어업 관리 환경, 특히 초과 노력량과 원양어업의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인 수준에서 해외 입어 요청의 증가는 세계 어업이 공유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원인이 됨.
- 세계화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거두고 세계화의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어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개발도상국이나 개발국은 어업관리에 관련된 국제기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의 어업관리와 개발에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과잉 투입된 어선 규모와 운영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일 필요가 있음.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개발 원조와 인프라 구축 능력을 제공하고, 입어협정시 다른 정책의 간섭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나. 수산양식의 세계화

- 수산양식은 세계 수산물시장에서 계속해서 그 중요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음. 수산물 수요는 인구와 소득의 증가를 바탕으로 하여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수산양식에 대한 시장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수산양식의 세계화는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양식생산의 아웃 소싱을 통해서 일어남. 수산양식에서 세계화의 핵심 요소는 이익과 현대의 수산양식은 지식과 자본집약적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규모라고 할 수 있음. 생산비용과 수송비용의 차이 또한 투자자가 생산품의 지리학적인 위치에 관해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 수산양식의 세계화에 대한 정책 입안자의 주요 도전은 수산양식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동안 수산양식이 세계화가 가져오는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환경, 공간 이용, 산업 지배력, 식품 안정성, 동물의 건강과 탐색 등을 포함하는 수산양식 생산의 외부적 성질들을 다루기 위해 많은 지역에 규제와 기준이 되는 기반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임.

- 수산양식 전략적 이행계획의 영향력 있는 기여는 지속적인 생산, 거래 유지와 무역에 진입하기 위한 생산능력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두는 것임. 그러나 수산양식에 집중하는 일부 국가들만 발전된 수산양식의 전략적 이행계획을 수립함.
- 수산양식은 대개 이전에 소규모 가족단위 소유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개발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차이점을 가짐.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수산양식자들은 수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과 생산의 인프라 구축 능력, 그리고 기술이 당장 필요하게 되는 안정되지 못한 양식생산 구조를 지님.

다. 수산물 가공의 세계화

- 수산물 가공의 세계화는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발생하는데. 첫째, 외부 회사에 생산을 아웃소싱 하는 것, 둘째, 가공회사 생산기반의 확장(회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정보나 상품을 취득하는 것 등), 셋째, 수산물 가공 원자재의 글로벌 소싱임.
- 수산물 가공의 세계화는 다른 식료품을 포함하여 경쟁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는 산업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회를 찾는 동안 원자재 공급과 질에 대해 안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가공업자의 탐색 노력의 결과임.
- 수산물 가공에서 규제 환경은 주로 무역 조치, 해산 식품의 안전 규정과 추적 능력에 관심을 가짐.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이 규제들은 전문지식 결여와 비용 때문에 표준을 지키는데 종종 상당히 이의제기를 받음. 마찬가지로, OECD 시장에 많은 상품을 나오게 하는 관세의 단계적 확대로 개발도상국은 가공부문에서 보다 더 나은 발전을 통한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

이는 개발도상국은 세계화로부터 최적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할 것임.

- 수산물 가공분야 세계화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전은 규제 환경을 통한 정부 간섭은 시장 접근과 식품 안정성과 질을 확보하는 규제의 엄중함과 수량 증가에 부딪히는 개발도상국의 능력은 충격을 받을 것임.
-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둘 다 관세의 단계적 확대에 영향을 받음. 표준 확산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감소와 비관세 장벽, 기술적인 원조 확보, 능력구축에 대한 상당한 발전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획득을 통한 기업의 확장과 증가하는 기업매수는 광범위한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보다 명백하고 철폐된 투자 정세는 세계화에 의해 이끌어지는 기회들이 달성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라. 수산물 소매분야의 세계화

- 수산물 소매분야의 세계화는 현재 시장의 소매상에 의한 우월성과 수산물에 대한 주요한 배분점을 이끄는 변화하는 소매 경향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됨. 수산물의 소싱에 대한 공급 구조는 일관성과 공급자의 용적에 대한 소매상의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변화하고 있음.
- 수산물 소매분야는 확장과 합병을 경험하고 있음. 소매상들은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상품 판매활동에 비난받기 쉬움. 이는 그들의 명성에 흠집을 낼지도 모르므로, 상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함. 소매상들은 점점 더 전체의 가치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책임, 환경적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과 같은 지역과 세계의 요구와 관심에 대한 책임을 짐.
- 강력한 힘을 가진 소매상들은 식품 안정성, 질, 환경 분야에 자신들만의 사사로운 단계와 내부 표준의 사용을 통해 산업 표준의 방법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들은 산업 전체의 사실상의 표준이 될 수 있음.
- 수산물 소매분야의 세계화에 연관된 중요한 정책적 도전은 개인적인 표준의 역할 증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맞게 받아들이는 것임. 그 수와 표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복잡성을 고려하여, 정책 선택은 표준들의

조화 또는 최소화된 표준의 조항을 포함함. 이러한 점에서, 공공 정책의 역할은 표준 집합(meeting standard)에서 세계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 대한 원조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1.3.3. 수산업 세계화의 이익과 정책적 도전

- 수 세기 동안 원양어업국의 어업 선단은 전 세계 오대양 어장을 무대로 조업을 했었고, 어획물의 냉동 기술의 발달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빈약한 국가간의 무역은 물론 수산물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보면 수산업의 세계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수산업 정책입안자들이 수산업 세계화 과정에서 많은 정책적 제안을 제기하였음.
- OECD에서는 개발경제를 통하여 물질적 풍요로운 생활수준을 달성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수산업의 세계화는 이러한 인식에 공헌함. 소비자들은 다양한 메뉴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수산물들이 공평하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며 기업들은 상대적인 이점과 규모의 효과를 통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사용하게 됨.
- 수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얻는 이익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임. 즉, 후생의 측면에서 소비자, 가공업자, 유통업자들을 포함한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무작위로 이익을 얻게 됨.
- 수산업 세계화의 이익들은 무역 증가와 투자, 더 많은 경쟁과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하지만, 그 이익들은 세계화 과정과 관련된 위험이 제기되고 포함되어 조건부적으로 됨. 그러므로 동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9가지 정책적 도전 또는 세계화의 “위험”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 ① 어업자원의 관리
 - ② 어촌사회의 문제
 - ③ 어선의 안정성과 어업노동의 표준화
 - ④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 ⑤ 수산물의 식품위생과 위생표준
- ⑥ 시장자유화: 부담의 조정방법과 경쟁의 위협
- ⑦ 개발도상국: 영세 어업자
- ⑧ 개발도상국들: 식품/단백질 공급
- ⑨ 국제어업의 관리체계

1.3.4. 주요 시사점

- 세계화는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수산업의 경쟁을 가중시킴. 주요한 정책적 도전은 어업자들에게 적응성과 어업에 종사하는 공동체의 회복력을 제공하는 어업관리 모델을 실행하는 동안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유지 확보하는데 있음.
- 국내 수산업에 새로운 시장의 현실성을 적용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수산업보다는 보다 넓은 정책수단의 범위에서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구조적인 조정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어업자들이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데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재훈련 등을 포함함.
- 세계화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업과 수산양식 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구조는 도전을 받고 있음. 새롭게 나타나는 현재의 지배구조 즉 어업관리체계는 이미 존재하는 각국 규정의 이행속도와 결합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특히 공해(high sea)의 관리와 IUU 어업에서 고려되어야 함.
- 개발도상국들은 수산물 시장의 국제화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OECD 시장이 주로 외부의 수급으로부터 수산물과 수산식품의 공급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 이전과 개발 원조(특히 관리 노하우)가 일어나는 것은 “경제자립을 돕는 것”임을 강조함.
- 국제적으로 정해진 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수산물과 수산 식품의 자유로운 흐름과 결합된 시장통합의 증가는 새로운 병원균과 질병을 퍼트릴지도 모름. HACCP와 추적가능성 시스템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최상의 보호방안을 제공함. 수산물 식품의 안전에 대한 민간 표준은 사실상 시장 진

입 장벽이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공 권한의 수준에서 더 많은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수산업의 세계화가 조업선단과 수산물 가공시설을 보다 쉽게 재비치하거나 다른 국가들에게 가공업을 아웃 소싱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수산물 질서 결여를 포함하여 환경적 사회적 규제관리가 없는 무분별한 국가들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잠재적 행위를 제압하게 됨.
- 수산업의 세계화가 빈약한 국제적 표준이 원인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기대되는 목표와 능력과 이러한 표준들을 강력히 주장하려는 개별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존중받는 국제적인 노동계급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표준 내에서 몇몇 국가를 강요하기 위해서 보다 협조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임.
- 수산업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무역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머무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 됨. 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국제협력을 설정하는 중심부에서는 지속적 성장과 함께 세계화가 제공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보다 탄력적인 어업관리, 무역, 투자와 서비스 정책. 공공의 건강에 대한 국제적 관리체계를 지님. 그리고 제한된 자원의 이용가능성에 대응하여, 정책 활동이 필요할 때, 우선순위 결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1.4. 어선 입항과 항구 서비스(제101차('08.4)-103차('09.4) 회의 의제)

1.4.1. 논의 배경

- 본 논의 보고서는 OECD 회원국과 일부 선택된 비회원국에 대한 항구 이용에 대한 국가정책을 정리한 것임. 국가의 항구와 항구 서비스 이용제한의 문제점은 최근에 국제적인 수산정책에서 관심이 매우 높았음. 항만국의 어

항 정책은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됨. 그리고 항만국 통제를 위한 국제협정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항구를 이용하는데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구에 정박하려면 외국 선박에 등급 통보 변경과 제공되는 필요한 정보 양식과 더불어 목적 공시를 요구함. 양륙 허가는 특히 만약 선박이 IUU 어업에 종사한 적이 있으면 이하의 공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6개 국가에서는,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이전에 반드시 허가, 면허권 또는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신청과 논쟁 중인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활발한 재검토가 필요하였음.
- 일국의 항구이용 정책의 규정된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주요 목표는 종종 RFMO필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상과 관리조치 수락을 확실히 하는 것임. 일부 경우에는, 이들은 체약 당사국들 사이에서 합의된 항만국 조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NEAFC 와 NAFO와 같은 구체적인 RFMO가 인증되었음. 유럽연합과 일본 또한 국내 시장의 작용을 규칙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외국 어선들로부터의 어획물의 양륙을 규제함으로써 모두 자국 어업과 가공 산업들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규정된 목표를 가지고 있음. 멕시코의 국의 수산업의 개혁은 1980년대 이후 연근해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어업비용의 상승에 따라 어업소득의 감소와 자원고갈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이행되었음.
- 1980년 이래 허가제도가 다양한 어업에 따라 수정·보완되었고, 금어기, 금어구, 체장 및 어망코 제한의 기술적 수단뿐만 아니라 연근해 주요 어종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도 도입되었음. 그리고 최근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이 도입 적용 확대되고 있으며, 동 제도가 전 연안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수산업의 개혁은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정책 변화에 기인되는 어업손실의 보상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되었음. 그리고 개혁에 대

한 어업인의 이해증진과 홍보강화 등의 정책이 다양한 업종들로 하여금 개혁에 동참토록 하여 동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거양하였음.

1.4.2. 주요 논의 내용

- 일부 OECD 회원국의 수산개혁을 분석한 결과 국가마다 개혁은 다소 달리 하였지만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의 수산개혁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 시사점도 많음. 주된 시사점은 개혁의 지속, 개혁의 지원, 개혁주체, 개혁의 필요성에서 나타남.
- 먼저 개혁의 필요성 제기임.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변화에 주된 관련자들의 동의나 협조가 어렵게 됨. 국가 사례연구에서 개혁 필요성 인지가 불안하면 결국 정부의 개혁 의지의 노력이 집중되기 어려움. 그리고 사례연구에서 개혁이 완성되는 주된 요소는 환경위기보다는 경제위기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
- 주요한 사례연구 결과의 일례를 보면 환경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업의 경제적 비용은 개혁을 보다 일찍 실행한 경우보다는 동 비용은 크게 됨. 따라서 어업관리를 제정비하거나 정책변화를 위한 시스템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나 경제를 예측하는 조기 경고 시스템이 가능한 어업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됨. 대체로 어업관리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은 요인보다는 정책 및 관리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됨. 어업이 생물적 상황에 연계한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결국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그널 역할을 하게 됨.
- 정치적 관점에서 개혁의 시작과 이행에는 개혁동력이 큰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음. 개혁의 주된 원동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발생하며, 사례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을 이끌어 가는 내외적 동력은 다수 존재함.
 - 첫째, 어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변화에서 정책적 개혁이 자주 일어나며, 이러한 정책적 개혁은 기존 개혁의 동력을 강화하게 됨.

- 둘째, 개혁의 압박은 국제경제질서의 흐름(WTO의 수입자유화 등)과 같은 외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보다 강화됨.
 - 셋째, 개혁의 압박은 어업 내부의 조직에 의해서 강화됨. 이는 마치 지대 창출과 같이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수익증대가 가능한 집단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결과임.
 - 마지막으로 개혁의 원동력은 정치적 의지이며 강력한 리더십이 개혁의 출발과 효과적 이행 및 성과의 기본이 됨. 개혁의 주체로서 민간 또는 정부 분야에서 리더십이 지니는 성향과 능력에 따라서 개혁의 결과가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강화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원인이 됨.
- 사례연구에서 보면 정책적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이 곧 성공적 개혁의 주된 실마리가 됨. 이를 달성하는 주된 요인은 시간과 그룹사이의 개혁의 비용편익 관계를 파악하는 일임. 개혁의 편익은 일부 집단에 제공되는 반면에 개혁 비용은 모두에게 부과되어 지며 개혁의 편익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발생하며, 이로 말미암아 개혁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개혁의 잠재적 편익 수혜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나 수단의 적용뿐만 아니라 개혁의 지원책을 강화하게 됨.
 - 정책적 개혁의 배분 관계를 고려한 보상전략은 이해당사자간 개혁의 지지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사례연구에서 어업이 보다 높은 수익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다 강한 어업권 중심 관리체계, 구조조정 등이 개혁에서 주로 활용하는 수단들임.
 - 이해집단 어업인 조직이나 대표집단은 개혁의 주된 수혜자 지지자들임. 개혁은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그리고 개혁의 점차적 지지세력의 확보를 통한 효과적 이행에는 홍보전략이 중요한 요소가 됨.
 - 모든 정책적 개혁에서 주된 관건은 바로 개혁의 지속성 유지임. 개혁에서 특정 이행집단의 미래 정책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저항세력을 지니고,

이로 인하여 개혁이 후퇴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요인이 됨. 이러한 저항 세력은 심각한 정치적 약속을 요구하고 반대 세력을 지원하는 수단화에 이용됨.

- 사례연구에서 성공적 개혁은 일회성 정책보다는 외부적 환경과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변화속에 지속적 시행착오의 결과에서 일어난다. 개혁은 경제나 자연환경의 변화속에 끊임없이 조절을 위한 정책을 확신하는 지속성에서 이루어진다.
- 마지막으로 사례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OECD 수산업에 적합한 하나의 개혁 모델이란 없음. 개혁은 수산정책 목적을 포함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정치체계, 그리고 주어진 자연자원에 연계되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강력한 정치적 지원, 건전한 경제분석, 적절한 배분 보상전략, 그리고 개혁의 주된 제도적 체계에서의 강력한 이행당사자의 참여 등에 의해서 그 이행 효과가 입증됨.

1.5. 어업과 양식업 인증제(제104차('09.10)-106차('10.10) 회의 의제)

1.5.1. 논의 배경

- 어업과 양식업 인증제의 목적은 동 라운드 테이블의 수산물 인증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산물 인증제를 둘러싼 제반 여건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다양한 수산물에 적용되는 총합 이력추적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의 제시에 둠.
- 이에 대한 기대치 및 효과로서 수산물 인증제와 관련된 공공부분의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니는 원칙을 개발하는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수산물 인증제를 포함한 이력추적제, 라벨링 등에 대한 종합 토론회와 구체적인 요약 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있음.

1.5.2. 주요 논의 내용 및 시사점

- 사무국은 지난 4월 개최된 수산양식 인증제 라운드 테이블('09.4.22~23, 네덜란드)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동 워크숍은 인증제와 관련된 정부, 민간, NGO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석해 의미가 있었으며 워크숍에서 부각된 향후 주요 이슈를 설명하였음. 또한 사무국은 동 연구사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 인증제 관련 회원국 정책 현황 조사 서식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표단은 인증제의 장단점이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인증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조사가 필요함으로, 인증제 주체 위주의 조사로 이루어진 질문서에 추가적으로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어업과 양식 인증제 보고서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수산 (어업·양식) 인증제의 경제(TAD/FI(2010)14) 보고서는 제105차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 2011.10.에 완성될 보고서의 일부이며,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두 번째로 어업 인증제 확신의 비용편익(TAD/FI(2010)15)에서는 어업 인증제의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하고, 주로 비용편익 정석분석과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잡는 어업 인증제의 비용편익 평가하였음. 이런 보고서들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및 대응방안은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추진 중인 인증제 통합 운영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 및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에 있어 보고서 결과를 적용한다는 것임.
- 수산위원회(제101차-105차) 회의의 주요 의제별 대응 내용은, 어업 및 양식업 인증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 및 대응방향으로 실시한 양식관련 워크숍에서 우리나라 양식업 및 양식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발표하였고('10. 4.) 회원국 양식운용 실태에서 얻은 주요내용과 문제점 등은 우리나라 양식발전 정책개발에 활용할 가치가 있음.
- 또한 어업과 양식 인증제 보고서 검토에 대한 우리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전체 인증제 보고서의 일부인 민간중심 인증제 에코라벨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 내용의 보완하고 어업관리와 민간중심 인증제 에코라벨의 연계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여 향후 연구에서 정부중심 인증제와 민간중심 인증제의 관계정립과 소비자의 신뢰성 차별화 문제 등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1.6. 수산자원회복 경제(제104차('09.10)-106('10.10)차 회의 의제

1.6.1. 논의 배경

- 자원회복의 경제학 연구는 OECD COFI의 3년(2009-2011) 연구 과제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3단계 연구추진 계획을 통하여 회원국의 사례연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 ① 1단계(2009): 회원국의 자원회복 이행상태 파악
 - ② 2단계(2009-10): 회원국의 자원회복 종합 검토
 - ③ 3단계(2010-11): 자원회복의 최적 가이드라인 개발
-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 연구의 1단계 추진과정으로 자원회복의 경제적 관점에서 계획과 이행에 대한 회원국 사례연구에 대한 분석체계를 구체화하고, 특히 회복과정, 회복수단과 정책, 집행과 참여 동기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기준값에 따른 어업 사망계수의 측정방법, 다양한 회복수단과 정책들의 비용편익의 경제적 관점(회복수단과 정책의 생물적 변화에 따른 경제적 결과), 회복수단과 정책에 의한 어획사망계수의 저감방법, 어업 노력량과 어획량 저감을 확신하는 감시감독체계, 자원회복의 결과가 가져오는 실제적·잠재적·경제적 편익 등임.
- 워크샵의 목적은 향후 3년 동안 추진되는 동 연구에 필요한 합당한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사례연구 검토, 분석정보와 요소, 관리요소, 경제 및 정책적 요소 등을 고려한 연구 방법론의 구체화에 두며 그에 따른 기대치 및 효과

는 자원의 회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경제적·정책적 접근 방안을 강구하고, 자원의 회복의 적절한 지표, 정보, 연구의 한계 등을 포함한 기술적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통찰력의 강화하는데 있음.

1.6.2. 주요 논의 내용 및 시사점

- OECD수산위원회의 수산자원의 회복 정책의 경제적 분석(Economics of Rebuilding Fisheries)에 대해 회원국들은 자원의 회복의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과 최적지침개발을 위해 많은 사례연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음. 또한 이슈 보고서에 대해 미국, 캐나다 등은 사후 자원관리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어 줄 것과 자원의 회복의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사무국은 제104차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위해 보고서를 수정하기로 하였음.
- 회원국들은 국별 자원의 회복 현황 제출기한('09.7.31 한)의 촉박함을 지적하자 사무국은 일정상 연기가 어려우며 취합된 내용은 제104차 수산위원회에서 검토예정임을 밝혔음. 사무국은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자원의 회복의 워크숍('09.5.21~22, 미국)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 우리 대표단은 연근해 및 국제 수산자원의 남획상태를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연구 과제이며 오는 5월 자원의 회복 워크숍에 자국의 수산 자원의 회복 정책을 사례발표로 준비 중임을 표명하였음.
- 수산회복 경제 보고서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원의 회복 경제의 문제와 도전 (TAD/FI(2010)10)에서 105차 회의 검토 이후 수정 보완된 보고서의 재검토, 자원의 회복의 경제적·제도적 문제 중심으로 회복방법에 대한 정부의 당면 문제와 도전에 관한 기초연구에 대한 내용임.
- 두 번째 자원의 회복 경제의 국별 및 지역적 접근(TAD/FI(2010)11)은 회원국들 제출 자료 중심으로 자원의 회복 경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로, 제105차 수산위원회에서 검토 후 보완(우리 자원의 회복사례 포함)되었음.
- 세 번째 자원의 회복 경제의 사례연구(TAD/FI(2010)12, Part 1&2)에서는 105

차 회의에서 검토된 19개 어종에 대해 PART 1과 PART 2로 구분하였는데 PART 1 - 한국, 일본, 지역수산기구(RFMO), 개발도상국, PART 2 -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멕시코, 프랑스로 구성되어 있음. 그 주요 내용은 자원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19개 어종별 자원회복에 대한 개략적 소개, 자원회복 경제 연구에 대한 목적, 범위, 방법, 사회경제적 요인 및 기대효과와 정책적 함의로 구성되어 있음.

- 수산자원회복경제의 논의 내용에 대한 우리입장 및 대응방안으로는 효과적인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와 보유 지식의 활용이 필요하며, 효과적 수단개발도 중요하나 자원고갈 원인에 대 체계적 규명(casual chain analysis)도 중요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례연구 3개 어종(도루묵, 참조기, 꽃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 우리의 경험 공유하고 향후 자원회복 전문가 회의('11.4.)와 관련된 의제 초안, 회의 설명 보고서가 회람시 검토에 참여해 논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임.
- 우리나라 자원회복 어종들의 자원회복사업 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정부, 과학자, 어업인간 총합적인 협조체계 하에서 효과적으로 잘 이행중에 있음. 다른 나라의 사례연구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회복사업의 효과적인 이행 유용한 정보 및 필요한 대안 발굴하도록 노력중에 있음. 또한 대부분의 자원회복사업은 어업중단이 기본인 반면, 우리나라는 어업을 그대로 유지·확대하며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자원회복경제에 대한 방안임.

1.7. 기후변화와 수산업(제105차('10.4)-106차('10.10) 회의 의제)

1.7.1. 논의 배경

- OECD 수산위원회 사무국에서 2010년 기후변화 워크샵(2010년 6월 10~11일, 한국)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에 있어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 워크숍이라 할 수 있음.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이유는 캐나다, 미국 등은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EAF,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와 기후변화에 불확실성과 위험성 관련 의제는 기후변화의 기본 전제로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의제에서 제외를 요청하며, 많은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에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을 강조하여 왔고 그에 따라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종합 수정하여 제104차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종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적응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합의 도출함에 있음.

1.7.2. 주요 논의 내용 및 시사점

- 제105차 회의(10.4.) 결과로 주요 향후 사업으로 1) 녹색성장, 2) 식량안보, 3) 기후변화, 4) 정책 공조(일관), 5) 정치경제가 논의되었음. 수산양식 인증제, 양식업, 수산자원회복 정책의 경제적 측면 및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에 있어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 하는 2011~12사업계획 논의에서 1) 자원회복의 경제학, 2) 어업·양식 인증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후 친화적” 수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저감정책)등이 논의 되었음.
- 수산의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경제적 측면을 다룬 OECD 기후변화와 수산 워크숍(10.6., 부산) 개최 결과에 대한 워크숍 의장보고서 구두 보고가 이루어 졌는데 그 주요결과로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정책적·정치경제적 문제, 수산관리수단, 양식의 중요성, 개도국의 취약성 등 발견되었음.
- 이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 및 대응방안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에 더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위기 극복과 연계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수산업(Climatic Change and Green Growth Fisheries)’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이 언급되었고 그 예로 우리나라의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유류절

감장비 개발·보급 지원 및 현대화 계획 등이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원과 능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성과가 달성 가능한 사업,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녹색성장, 거버넌스와 수산의 정치경제'로 삼되, 우리가 제안('10.7.)한 '기후변화와 양식(Aquaculture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과제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수산물관리자 매뉴얼' 사업은 정책적 활용도가 높으므로 지지 가능하며, '통합해양 관리' 사업도 해양·수산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정책적 합의 도출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지지하여야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제안하는 사업 '기후변화와 양식(Aquaculture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은 양식업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잡는 어업에 비해 장점을 보유, 탄소를 흡수하며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므로 기후변화에 있어 양식의 중요성과 도전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음.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식량안보에 있어 양식의 역할 연구, 녹색성장 전략 하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도전과제 발굴하고 양식/ 기후변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지속적인 논의 등임. 이러한 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는 브라질, 중국 등 가입 대상국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관계 강화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임.

1.8. 기타 논의 의제(제106차 회의)

1.8.1. 수산업 동향 보고서(Review of Fisheries, '06~'08)

- 수산업 동향 보고서 중 OECD 회원국의 주요 정책 변화와 통계자료를 수록한 General Survey 내용을 소개하고 회원국의 자국 관련 사항 수정 요청을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며, 동 보고서의 special chapter인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보고서 결론이 OECD 입장과 상반된 결과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문구 제안하였음.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저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승인하였음.

- OECD 수산위원회(COFI)의 수산 리뷰(Review of Fisheries) 일반 서베이 초안 (Draft General Survey) 검토, 2년마다 발간되는 동향 보고서(2011년 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데 크게 주요 지표(생산량, 무역, 고용, 정부 재정 이전 등) 동향, 주요 정책 발전사항, OECD 수산위원회 및 사무국 활동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 관련 언급사항으로는 1) OECD 4대 잡는 어업국, 2) OECD 양식생산 1위국, 3) OECD 기후변화 워크숍 개최 및 우리 사례를 발표하였음.
- 또한 특별 챗터 신설 및 국별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에코라벨링 및 인증에 관한 Round Table 의장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였음.

1.8.2. 노르웨이 수산분야 개도국 지원 사업

- 노르웨이는 난센(Nansen) 프로젝트, 나미비아 지원 사업, 베트남 지원 사업 등 수산분야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음, 노르웨이는 자원 및 어업관리, 자원조사 지원 등의 20~30년간의 장기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 및 수혜 개도국의 의견에 따른 지원 사업 우선순위 결정이 개도국 지원의 성공 요인임을 강조 하였음. 대다수 회원국들은 노르웨이 성공적인 결과가 개도국 지원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OECD 수산위원회에서 수산분야 개도국 지원의 의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1.8.3. OECD 수산장관회의 개최여부 논의

- 수산장관회의 개최여부 논의의 주요내용으로 제105차 수산위원회는 '12년 장관회의 개최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사무국에 정당성을 보장할 것 요청,

- 차관회의로 대체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사무국은 장관회의를 통한 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 강화를 강조하며, 기후변화·녹색성장·식량안보를 주제로 삼았음. 보다 세부적으로 1) 과잉어획능력 감축, 2) CO2 배출 감소, 3) 지속가능한 무역 및 녹색성장 증진 예시하였음.
- 수산장관회의 개최여부에 대해 한국과 캐나다는 개최를 지지했으나, EC 스페인은 개최 자체에 반대는 아니나, 내용, 의제, 사무국 resource 여건, 장단점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뉴질랜드, 덴마크는 premature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에 Ken Ash 국장은 장관회의 개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고위급 회담형식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수산장관회의 개최여부에 대한 우리입장은 장관급(또는 차관급)회의 개최여부에 대해 원칙적 찬성임. 그 이유는 최근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향후 수산위원회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여수 EXPO와 연계하는 경우 고위급 인사의 참여 명분이 강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의제에 관해서는 녹색성장 수산업, 자원회복 등을 지지, 유치에 대한 내부입장이 미결정된 사안으로 논의 동향을 관찰하였음.
 - 제3차 APEC 해양장관회의('10.10.11~12, 페루)에서도 OECD 회원국(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은 대사 또는 실·국장급이 참석하였음. 이와 같이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나 현 논의동향을 볼 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현실임. 제106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주제 및 각국의 입장을 파악한 후 추후 유치의사 표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1.8.4. 2011-2012년도 사업계획 논의

- 수산 리뷰(정책 및 통계) : 최우선 순위 과제
- 수산관리자 매뉴얼 개발(자원관리, 인적측면, 자원회복 등)

- 녹색성장, 거버넌스와 수산의 정치경제
 - 1)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산 거버넌스(적응정책)
 - 2) “기후 친화적” 수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저감정책)
- 통합 해양 관리(향후 이해관계자간 갈등 통합적 관리)
- 기타 : 정부 재정 이전, 가입대상국과의 관계 강화

가. 2012년 수산장관회의 개최

- 2010년 수산장관회의 개최 관련 배경은 OECD 농업위원회가 농업장관회의(‘10. 2.)를 개최하였지만 OECD 수산위원회(COFI)는 현재까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바 없기 때문임. 수산장관회의 개최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WSSD)에서 요청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과 이행의지를 재확인하며, OECD 수산위원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합의를 위함임. 수산장관회의 개최와 관련한 논의사항은 회의 개최 여부, 시기, 주제 등 포괄적인 사항이 검토되었음.
- 우선 수산장관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수산위원회의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각국이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장관급 회의 개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10주년, 교토의정서 만료 등을 논하며 2012년 개최의 타당성과 필요시 2012 여수 엑스포가 해양·수산 주제임을 상기하며 OECD와 EXPO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나. 수산 거버넌스의 정치경제

- 수산 거버넌스의 목적은 어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 및 거버넌스 구조의 효과성 분석에 기초하여 각국에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데 있음.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각국의 수산관리/어업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방향 연구할 수가 있음.
- 수산 거버넌스는 우리나라의 자율관리어업 등을 고려하여 어업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나아가 선진 시스템에 대한

공유와 시사점 도출을 통해 우리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다. 기후변화와 수산업

- 기후변화와 수산의 논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적응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합의 도출하는데 있음. 현재 '09~'11년 연구 사업으로 진행, 기후변화와 수산 워크숍('10. 6. 10~11, 한국)이 예정임.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대응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음. 기후변화와 수산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에 더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위기 극복과 연계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수산업(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Fisheries)'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유류절감장비 개발·보급 지원 및 현대화 계획 등에 중요한 정보가 제공됨.

라.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환경의 통합관리

-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환경의 통합 관리의 목적은 회원국의 통합 해양 관리 수단과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성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해양공간관리 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경제적 평가를 도출하고 수산관리를 위한 통합 해양관리 수단의 목록 작성하는데 있음. 해양 공간 계획 및 해양환경의 통합관리는 해양공간관리 수단에 대한 경제적 평가와 각국의 수산 관리를 위한 통합 해양관리 수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호수면 관리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마. 관리자 실행 매뉴얼

- 관리자 실행 매뉴얼의 목적 및 기대효과로서 수산 관리자들이 수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측면의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음.

바. 비효율적 유류보조금 철폐의 경제적 효과

- 비효율적 유류 보조금 철폐에 대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의 일환으로 수산업 분야에서의 배출 감축과 관련한 결정을 촉진하기 위함에 있음.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유류보조금 철폐의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 철폐 전후의 경제적 효과 분석(자원량, 이익률, 고용 등) 등을 할 수 있음. 비효율적 유류보조금 철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유류보조금 정의 부재, 국별 상이한 세제, 다양한 정책적 목적, 사회경제적 효과의 계량화 문제 등 선결과제가 많은 복잡한 사안임. 따라서 보조금의 비효율성이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에 문제점이 많아 좋은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1.8.5. 수산업의 화석연료 보조금 국제적 대응 논의

- 수산업의 화석연료 보조금 국제적 대응 논의의 배경 및 논의사항은 G20 정상회담('09년)의 요구에 따라 OECD 수산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화석연료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기한 '10. 1. 15)하였으며, 이번 보고서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OECD 통합 보고서(4. 15일자)에 반영되어 G20 재무장관에 보고되고, 6월에 G20 정상들에게 보고될 예정이었다. 또한 각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3. 30자)가 나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제106차 수산위원회에서 동 내용에 대해 토론 예정이 진행되었음.
- 동 보고서에 대한 제출사항 및 제출 현황을 보면 보조금액(기름 1ℓ 당 보조금 비율 또는 과세되지 않은 총액), 연료 사용량(선단에서 소비되는 유류의 총량), 국내 시장가격 수준(선택사항)이 제출 사항에 해당되고 현재까지 총 24개국(회원국 18, 가입대상국 4, 기타 2)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우리나라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제출을 지연하고 있음.
-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 자료제출 여부 및 사유로서 OECD에서의 보조금 정의와 WTO, G20 논의에서의 정의가 다르고 그 목적이 상이하냐, 제출된 자

료가 향후 WTO보조금 협상, WTO분쟁, FTA협상, G-20정상회의 등에 현황 자료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G20에서의 보조금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정의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 G20에 제출할 보고서에 금번 제출된 자료총계가 포함될 예정임. 일본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가 자료의 정확성 및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다른 국제기구와의 수평적 협력보고서 작성, 수산분야 보조금이 에너지 보조금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하였음. 일본은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자국은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에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밝혔음.

2. 수산위원회 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대응

2.1. 수산자원회복 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제공

- 수산자원회복 경제의 문제와 도전에 대하여 103차 회의 검토 이후 수정 보완된 사업으로 자원회복의 경제적 제도적 문제 중심으로 회복방법에 대한 정부의 당면 문제와 도전에 관한 기초연구임. 이는 자원회복 경제의 국별 및 지역적 접근으로 회원국들 제출 자료 중심으로 자원회복 경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 형식의 사업임.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자원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19개 어종별 자원회복에 대한 개략적 소개, 자원회복 경제 연구에 대한 목적, 범위, 방법, 사회경제적 요인 및 기대효과와 정책적 함의로 구성되었음.
-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와 보유 지식의 활용이 필요하며, 자원고갈 원인에 대한 체계적 규명(casual chain analysis)도 중요함을 인식하여 사례연구 3개 어종(도루묵, 참조기, 꽃게)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 OECD 전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의 수산자원회복 경험을 공유하였음.

2.2. 각종 수산위원회 워크숍 참여

2.2.1. 자원회복계획 워크숍 참여

2.2.2. 양식업 워크숍 참여

- FAO와 공동으로 '10년 개최하는 양식업 워크숍('10.4.15~16, 프랑스 파리)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양식업의 사례연구를 제공하였음. 캐나다 등 회원국들과 개발도상국과의 양식 분야 정책 일관성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범지구적 양식업 문제를 토의하였음.
- 동 양식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양식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사례제출과 워크숍 발표 등을 통하여 회원국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양식업의 이해에 중요한 기회가 되었음.

2.3. 기후변화와 수산에 대한 워크숍 유치

-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에 있어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의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동 워크숍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10.6.10~11, 부산)하였음. 특히 녹색성장 정책 및 2012 여수 엑스포와 관련하여 동 기후변화 워크숍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캐나다, 미국 등은 생태계 기반 어업관리(EAF, Ecosystem Approach to Fisheries Management)와 기후변화에 불확실성과 위험성 관련 의제는 기

후변화의 기본 전제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많은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에 경제학적 측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동 워크샵의 주요결과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려해야할 정책적·정치경제적 문제, 수산관리수단, 양식의 중요성, 개도국의 취약성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동 워크샵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되었음.
- 우리나라는 동 워크샵 유치는 물론 국가 사례 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양식 행위제한의 어려움, 연안환경 오염가속, 자연재해 피해 급증, 질병 발생 및 안정성 담보의 어려움, 시장개방 등을 설명하였음.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도 첫째, 수급불균형 조정, 불법 시설물에 대한 단속 강화, 둘째, 내만어장 위주의 양식에서 외해어장 개발, 고부가가치 어종 개발 박차, 마지막으로 질병예방, 친환경 양식기술 추진, 유통구조 개선 등을 설명하였음.

2.4. 러시아 OECD COFI 가입에 대한 논의 주도국 역할 수행

- OECD 수산위원회는 제101차 회의('08)부터 러시아의 가입절차를 시작했고, 사무국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105차 회의에서부터 공식 의견 채택에 들어갔음. 수산위원회의 가입 검토는 OECD 수산위원회 회원국과 러시아의 정책의 일관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논의 주도국으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선정되었음. 우리나라는 캐나다측과 협의해 통계부문, 정책개혁 부문 질문을 담당하고 캐나다측은 IUU 어업과, 어선감척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OECD 수산위원회 사무국은 러시아의 정책을 제도적 구조, 법적 체계, 수산관리, 규정준수, 정부재정이전, 국제협력으로 나누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의견은 OECD 국가들과 러시아의 정책이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음. 다만, 감척에 관한 Council 권고 이행, 수산과 양식 행정의 이원화, IUU어업과 과다한 TAC 설정, 모니터링 및

정확한 통계 미흡 등이 지적되었음.

- 우리나라는 캐나다측 및 사무국과 사전회의를 통해 질문 및 방식 조율 (10.24)을 거쳐 통계 및 정책, 거버넌스 부분을 질문해 러시아측의 설명을 요청하되,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가입에 대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 러시아의 수산정책을 검토한 결과 OECD 회원국과의 정책일관성이 상당하며, 주요 수산국이자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가입을 통한 호혜적인 결과가 예상됨을 밝히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사항(캐나다측과 질문지 교환 후 확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멸종위기에 처한 종, 남획되고 있는 종에 대한 어획관리 계획
 - 러시아의 자원회복 계획, 양식추진 계획
 - 한국 등 주변국과의 IUU 방지를 위한 노력
 - 수산과 양식 행정의 이원화 문제 해결 방안
 - 접근가능한 정확한 통계(자원변동, 종별·지역별 어획변동 등) 부족
 - 고용감소, 어민의 고령화, 교육문제 해결 방안

2.5. OECD COFI 사업계획 제안

- 제105차 회의("10.4.)에서 주요 향후 사업으로 1) 녹색성장, 2) 식량안보, 3) 기후변화, 4) 정책 공조(일관), 5) 정치경제가 논의되었고, 2011년 주요 사업으로는 1) 자원회복의 경제학, 2) 어업·양식 인증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2012년 사업 계획이 다수 제안되었음
 - 수산 리뷰(정책 및 통계) : 최우선 순위 과제
 - 수산관리자 매뉴얼 개발(자원관리, 인적측면, 자원회복 등)
 - 녹색성장, 거버넌스와 수산의 정치경제
 -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산 거버넌스(적응정책)
 - “기후 친화적” 수산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저감정책)

- 통합 해양 관리(향후 이해관계자간 갈등 통합적 관리)
- 기타 : 정부 재정 이전, 가입대상국과의 관계 강화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성과가 가능한 사업, 기존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하면서 사업최우선 과제로 '녹색성장, 거버넌스와 수산의 정치경제'로 삼되, '기후 변화와 양식(Aquaculture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과제를 제안하여 2011년 이후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제안 배경으로 양식업은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잡는 어업에 비해 장점을 보유, 탄소를 흡수하며 식량안보에도 기여하므로 기후변화에 있어 양식의 중요성과 도전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식량안보에 있어 양식의 역할 연구
 - 녹색성장 전략하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도전과제 발굴
 - 양식/기후변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 논의
- 추가적인 기대효과는 브라질, 중국 등 가입 대상국의 주요 관심 사항으로 관계 강화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임

2.6. OECD COFI 의장단 참여

- OECD 수산위원회의 제102차('08) 회의부터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 의장단에 직접 참여하면서 동 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제102차 회의부터 수행해 온 부의장국의 역할은 매년 선거를 통해 재선되면서 제 108차('11) 회의까지 유지하게 됨.

2.7.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자료 제공

- 우리나라의 수산업동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수산 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함.
- 한국의 수산 정책의 주요 목표는 수산자원 회복을 통하여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향상하는 것임. 정부는 어업인을 위하여 ① 어선감척사업의 촉진, ② 기르는 어업 육성과 수산자원 육성 노력의 장려, ③ TAC 어종과 자원회복대상 어종의 확대, ④ 자율관리어업 체계에 적합하도록 어업제도의 정비, 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수산물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HACCP 적용 확대와 같은 수산물위생에 관련한 규칙 및 규정을 강화하고 수산물 시장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 어항, 수산자원을 연계한 어촌관광사업을 활성화할 것임.
- 이와 아울러 한국은 변화되는 수산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수산자원에 대한 최적의 관리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임.

제 9 장

요약 및 대응방안

□ 연구의 배경

-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2년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미래 농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의 농업각료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위와 산하 3개 작업반회의에서는 식량안보, 위험관리, 가격불안정성, 식품체인 분석, 비관세조치, 지역무역협정, 물관리, 기후변화 등 현안 문제들이 핵심적인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농업정책 개혁의 바탕이 되고 있고 무역협상에서도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의 농업정책과 OECD의 논의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그러나 OECD 농업위원회의 논의내용이 국내 농업정책에 반영되거나 논의내용이 충분히 전파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정

책에 반영하고 논의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 나아가서 OECD 농업위원회의 주요 논의가 적극적인 주장을 펴는 호주, 미국 등 수출국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선하고 OECD의 작업 결과물에 다양한 농업여건을 가진 국가들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도록 일본, EU 등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OECD 농업위 논의 내용을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철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의제에 대해 충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연구와 대응을 통해 우리 농업정책의 품질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가장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농업위원회와 산하 3개 작업반에서의 2010년도 논의 의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2010 OECD 농업각료회의 (2010. 2. 25(목) ~ 26(금))

- 2010. 2. 25(목) ~ 26(금)간 OECD 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을 주제로 한 2010 OECD 농업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되었음.
- 향후 20년간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의 합치가 있었으며,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각료들은 식량 불안(food insecurity)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합치하였으며 생산·생산성 제고,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교육훈련, 시장발전 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각료들은 무역이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며, 규칙에 기반하는 다자 무역 시스템이 그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였음.

- 각료들은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음.
- 금번 각료회의는 1998년 합의된 정책원칙을 식량안보, 기후변화적응, 녹색성장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게 보완하여 농식품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새로이 작성된 각료선언문은 향후 OECD의 정책분석활동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각료선언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업분야 OECD 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위원회 회의(154차, 155차)

1) 154차 농업위원회(2010년 6월 1~2일)

- 농업위원회 제 154차 회의에서는 2011~2012년 사업과 예산계획(PWB: Program of Work and Budget)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 졌음.
- 2011~2012년 사업계획안은 사무국 제안내용을 기초로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 조정, 일부사업 삭제 및 추가를 통해 승인됨.
 - 사업안 중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인 녹색성장과 농업, 기후변화와 농업, 수출제한조치 등은 포함되었으나, 리스크관리(가축분야)는 제외됨.
 - 위원회의 대외관계강화차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농업정책리뷰사업이 추가됨.
- 금번 위원회는 2011~2012년 사업계획안을 결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었으며, 사무국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2차례 조정을 거쳐 결정되었음.

- 사무국은 핵심사업(core) 예산비중을 88%로 하고, 기타 선택사업(choice) 예산비중을 32%로 하여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사무국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일부 사업을 소폭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 특징임.

2) 155차 농업위원회 (2010년 12월 1~2일)

- 농업위원회 제 155차 회의에 앞서 OECD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식량안보정책포럼을 개최함.
 - 세계 식량안보는 모든 국가들이 연계되어 있고 농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 빈곤경감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문제임. 따라서 생산성 증가를 통한 식량증산, 무역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기술개발 및 혁신, 자원의 재생가능한 관리방식, 농촌 개발을 통한 빈곤해소 등의 다양한 정책의 혼합적인 실행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구매력을 키우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생산량 증대와, 농산물 교역의 역할이 중요함. 참고로 올해(2010)의 생산량 감소로 내년(2011)에도 2008년도와 같은 농산물가격급등 양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한편, 프랑스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향후 G20의 주요이슈로 소개하였음.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농산물 가격변동성 및 식량안보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OECD 모든 위원회의 수평적 협력사업으로 진행중인 ‘식량안보, 녹색성장, 물 관리, 무역과 고용, 여성(gender) 등에 대한 경과보고 및 농업위 차원에서의 수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식량안보’가 농업위원회의 핵심이슈로 논의되는 가운데, 차기 G20의 주요 의제인 ‘농산물 가격변동성’과도 밀접한 관련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임.

- 앞으로 진행될 국제식량안보 논의를 수입국으로서 잘 활용하는 동시에 수출국의 시장개방(무역자유화)의 근거로 역이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0년도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1년에 2008년도의 농산물 가격급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국내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위원회의 대외관계 강화전략과 관련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의 경우 산하작업반의 다양한 활동에 공식(또는 비공식) 읍저버 형태이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반면, 인도의 참여의지 부족, 중국의 관심사항 위주의 선별적 참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부족 등은 향후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2011~2012 사업예산계획 보고, 산하작업반 활동결과 보고, OECD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농업지식정보시스템(AKS) 회의 준비 등이 논의 됨.
- 작업반간 업무 재조정(농정시장작업반과 농업과무역합동작업반), 2011년도 회의일정 등의 논의에서는 이전대상 의제의 선정에 있어 이견이 존재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의제 분량 감축, 의제검토과정의 효율화, 회의일정에 있어 참여국 편의반영과 같은 실용적인 요구사항들이 제기되었음.
 - 차기 농업위 회의에 사무국은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사무국에 전달하여 반영할 필요 있음.

□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APM) 회의 (제 51차, 52차)

1) 제 51차 APM (2010. 5월 17~20일)

- 이번 농업정책작업반 회의에서는 OECD-FAO농업전망(2009-2018), 2010 회원국 농업정책 모니터 및 평가, 회원국과 신흥국 농정에 관한 2011 보고서 제안, 미국, EU, 터키의 농정개혁 평가, 농업상품시장의 구조적 변화, 농가위험관리, 정책평가모형(PEM, Policy Evaluation Model),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OECD 5차 네트워크, 농업혁신과 경쟁력, 농업과 개발, 개도국 농정 설계 등 13개 의제가 논의되었음.
 - 특히 2008년 세계 농산물가격의 상승 및 급격한 변동을 바탕으로 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를 야기하는 원인과 영향의 정도, 가격변동이 계층별로 후생에 미치는 영향, 가격급변에 대한 개도국들의 정책 대안의 효과분석 등 8건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음.
 - 각 국은 2010 회원국 농정평가(At a glance)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연구보고서에 대한 토론 시 유럽과 미국의 직접지불금 정책차이에 기인한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함. 한국 대표단은 한국농정평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제기하였으며 사무국은 이를 수용한 문안을 제시함.
 - 2008년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문제와 관련한 외부전문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입국가 간 의견이 충돌하였는데, 특히 투기자본(선물시장)이 농산물 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국제 농산물 가격변동에 대한 신흥 경제국의 정책대응, 미래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한 신흥경제국 정책대안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책임하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 OECD 사무국이 신규 개발 중인 정책평가지표(유사관세상당치 등)에 대해서는 지표개발의 실효성 등에 대해 많은 국가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임

- 금번회의 논의 주제 중 “각국의 위험관리 정책” 및 “외국 민간자본의 개도국 농지에 대한 투자”, “R&D의 농업경쟁력 제고” 등의 관련 연구는 관련 국내 정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방역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냉해피해,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농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농업보험제도, 호주의 바이오 안전성 파트너십 배분(Bio-security partnership arrangement), 뉴질랜드의 차단방역정책 등은 정책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에 대한 해외농업투자 원칙 수립 움직임에 대해서는 FAO, WFP 등 식량기구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OECD 투자위원회에서 작성중인 “책임있는 농업투자” 보고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제 52차 APM (2010. 11월 15~17일)

- “OECD국가와 신흥개도국의 실질 농업지지 변화”,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미국 농업정책개혁평가”, “캐나다 PSE(생산자 지지 추정치) 대상품목 확대”, “농업분야 민간자본 투자” 등의 보고서를 논의하여 대부분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실질 농업지지 변화” 보고서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석결과(생산증가가 크고 지지는 제한적으로 감소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 “2011년도 농업정책점검” 및 “2011년 농업전망” 보고서 구성안 제안사항을 검토한 결과, 서면절차를 거쳐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사무국은 농식품 유통 전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소비자 요구 등을 분석하는 “식품체인 분석 네트워크”의 구성운영을 제안하였고, 1차 회의를 12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임.

- 내년도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에 에너지 부분과 함께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보고서 작성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소관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구체적 논의 예정).
 - 일부 회원국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개념의 불명확성, 적절한 측정지표 선정 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수입국 공조모임 개최(11월 15일 13:00~15:00)
 - 스위스가 주최하고 스위스, 한국, 일본, 노르웨이, EC, EU 참석. 오는 12월 Global Forum 이후에는 일본의 주최로, 내년 3월 APM회의 동안에는 한국의 주최로 공조모임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 스위스의 발제로 Item3(2011년 OECD 농업정책점검 보고서), Item7(정책수행의 장기추세), Item9(실질 농업지지 변화), Item17(개도국 농정선택), Item18(녹색성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음.
- 국가별 농업지지정책의 측정와 평가 시사점, 정책적 개입과 시장수단간의 효율성 문제 등 근본적인 쟁점을 두고 농산품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 많은 회의였음.
 - 수입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번의 경우에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보고서 대응방향에 대해 사전에 “수입국 공조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이 회의대응에 도움이 되었음. 예상쟁점을 충실하게 사전에 준비하여 수입국 공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 농업지지 변화” 보고서에 대한 “농업위 대표단 코너”를 통한 수입공조국 등 의견제출내용, 공개여부 동의형성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금번 회의에서 녹색성장의 농업분야 개념설정 문제, 측정지표 설정문제 등이 이슈로 거론되었음. 농업부문 측정지표 반영 등의 쟁점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쟁점별 아국 입장 및 대응논리를 명확하게 정립한 후, 12월의 농업환

경공동작업반회의(2010.12.6~8)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농업-무역 합동작업반 회의 (제 63차, 64차)

1) 제 63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2010. 5. 21)

- 제 63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비관세 조치의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연구(치즈, 새우, 화훼)수정보고서, 비관세 조치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추가 연구계획서, 농식품분야 미래 시나리오 분석(연구계획서), 가공농산물 무역변화 양상 등 4개 의제를 논의하였음
- 비관세조치의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품목은 아니지만 농산물 무역에서 수입금지, 판매승인, 엄격한 수입검사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비관세조치의 비용 편익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추가 연구로서 거론된 미국의 COOL(원산지 표시제)제도에 대해서 수출국들은 무역왜곡 가능성과 관련하여 연구를 적극 지지하는 등 회원국들간에 상반된 입장차이가 있었음. EU의 이력추적제가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국내정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 세계농식품부문 중장기 전망은 미래상황에 대한 조건부 시나리오로서 장단기 정책과제 도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내 농정에 활용도가 클 것이므로 관련 심포지엄, 포럼 등에 관련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성이 큼
- 가공농산물 무역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공농산물 무역의 패턴과 주요 상품, 비교우위국가, 수출확대 유형 등에 대한 분석은 국내 가공 농산물의 수출확대 정책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제 64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2010. 11월 18일)

- 제 64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서는 가공농산물 무역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보고서와 지역무역협정에서 농산물 관련 협정을 분석한 보고서가 각각 승인되었으며, 향후 비관세조치(NTM) 작업을 위한 제안, 농식품 분야 장기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워크샵 보고서,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5개의 주된 의제를 논의하였음.
-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 추가사례연구를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하였으나, 분석사례 선정에 이견이 존재하여 전기 회의에 이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 분석대상 사례선정 및 연구범위에 대해 서면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 3주 이내에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3개 사례(NAFTA, EuroMed, Mercosur)선정에 대한 지지여부, 연구계획서의 분석방법, 대상품목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농업위 대표단 코너” 등을 통해 추후 동향을 파악할 필요 있음.
- 약 50여개 지역무역협정(RTA)을 대상으로 농산품 관련 협정을 분석한 보고서의 공개가 승인됨. 이번 보고서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치한 통계와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RTA가 무역과 소득(또는 welfare)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는 단계로 진전될 예정임.
-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농산품 관련 협정에 대한 분석보고서의 진행방향과 비관세조치 분야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향후 지역무역협정(FTA 포함) 추진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농업-환경정책 합동작업반 회의 (제 30차, 31차)

1) 제 30차 농업-환경정책 합동작업반 회의 (2010. 6. 28 ~ 30)

- 최근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및 관련분야 연구동향에 관해 헝가리, 스페인, 멕시코, 영국, 뉴질랜드 등 5개 국가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헝가리는 “2009-2014 친환경농업계획”을 발표하였고, 스페인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농업보험제도”, 멕시코는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관리 사례”로 야쿠강 유역중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함. 영국은 금년에 발표된 “2010 신식량전략”, 뉴질랜드는 “물공급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발표함.
- 합동작업반의 핵심이슈로 2008년부터 심층적으로 다루어온 수자원과 농업 분야에서는 호주의 머레이달링 유역의 물관리제도, 농업과 물정책간의 일관성, 수자원관리 의사결정 등의 문서가 발표되고 논의됨.
 - 머레이달링 유역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물관리 제도의 개혁안과 정부의 역할과 책임, 향후 과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함.
 - 농업과 물정책간의 일관성에서는 농업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관련 정책간의 일관성이 중요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책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상호간 윈-윈 결과 도출이 바람직함.
 - 수자원관리 의사결정관련 OECD 결론과 권고는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개최된 물관리 정보 개선을 위한 워크숍 결과 보고서로 물정책의 우선순위 및 장래 계획, 물 정보시스템, 지역의 수문시스템(지표 및 지하 포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농업용수의 수질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관리시스템, 농업이 양식에 미치는 영향, 물 오염자부담원칙, 수질거래권 등을 다룬 문서가 발표됨.
 - 농업수질의 지속가능한 관리(진도보고서)에서는 최근 각국에서 농업용수의 오염을 저감시킨 성공적 정책 및 시장 중심적 접근 경험(사례)을 취

- 합하여 지속적인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성공적 정책사례를 제시함.
- 기후변화와 농업활동에 따른 부영양화가 양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농업용수 수질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함. 부영양화에 대한 대책마련은 단기간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물 오염자 부담원칙을 제시함. 이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자들이 얼마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함. 농업분야의 비점오염원의 현실에서 이 원칙의 적용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됨.
 - 농업용수의 관리를 위한 시장지향적 수단으로 수질거래 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효과, 경제적 효율, 공공분야 비용 및 능력, 부수적인 이득 및 비용, 공정성과 정치적 승인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기후변화와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회계,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농업과 녹색성장의 이슈를 다룬 문서가 발표되고 논의됨.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탄소 계측이 필요함.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축산과 관련된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 토양과 관련된 배출로 구분됨.
 - 자연자원, 기후변화, 최근의 경제위기 등의 압박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장의 녹색화 모형인 녹색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 GGS)이 제안됨.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분야의 완화와 적응방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 PEM, SAPIM 모형화, 바이오연료, 비용효과적인 농업환경정책 지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시사점으로는 농업용수의 효율성의 제고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자원관리”와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련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조 우리나라 농업용수 정책에 대한 대외 논리개발 등 차기 작업반회의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농업분야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OECD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관련 농업정책 사례 등 논의결과를 국내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9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온실가스 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 추구를 목표로 채택된 ‘녹색성장 선언’ 후속조치로서 앞으로 “녹색성장” 이 핵심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제 31차 회의(2010. 12. 6 ~12. 8)

- 최근 회원국의 농업환경정책 동향에 관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등의 발표가 있었음.
 - 스페인은 100만ha 이상의 재래 관개시설의 현대화 추진 계획, 스위스는 다원적 기능과 생태적 성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금제도, 영국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 미국은 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흡수기능, 네덜란드는 기후변화에 있어 농업과 산림분야의 역할과 화해와 축산분야 사례, 한국은 농업분야 녹색성장 관련 핵심정책을 소개함.
- 2011년 6월 발표할 예정인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인 식품과 농업 분야 녹색성장(초안보고서)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 많은 회원국이 녹색성장 지표 개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EU, 프랑스, 일본, 핀란드, 덴마크, 한국 등), 보고서의 초점이 부각되지 않고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념이 모호한 점 등을 지적함(미국, 캐나다).
- 기후변화 및 농업 세션에서 기후변화 완화·적응 관련 농민 행태와 관리기법 보고서 승인 논의
 - 사무국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조치에 농민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

- 어지는지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의 변칙적 행동을 다룬 사무국 보고서 공개 승인을 요청함
- 2010년 12.24까지 서면의견을 취합하여 2011.1.31까지 사무국이 수정하여, 2011년 2월~3월말까지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 승인 예정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작물보험과 농가 인센티브관련 작업계획서 논의
 -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실질적 정책수단인 보험분야의 심층검토를 위한 사무국의 작업계획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복원력 구축-OECD와 FAO간 협력 구축 논의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식량생산에 있어 복원력과 적응력 제고를 위한 OECD와 FAO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기후변화 적응정책 컨설턴트 보고서 승인 논의
 - 농업부문에 있어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모색을 위한 보고서(작성자 : 예일대 멘델존 교수)의 승인을 위한 논의가 있었음. 회원국의 이견이 많아, 서면의견을 받아 내년 6월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함
 - 물과 농업
 - 물과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에 있어 수질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컨설턴트 보고서) 등을 논의함. 또한 물과 농업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농업이 양식에 미치는 영향, 농업으로부터 유래된 신생 수질오염물질, 물 오염자 부담원칙, 농업분야 수질거래, 수질에 미치는 농업의 금전적 비용과 이윤 등 5 가지 컨설턴트 보고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국한된 농업의 영향분석은 농업의 부정적 영향만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고서 전반에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함을 지적함
 - 많은 회원국이 개별 컨설팅 보고서에 나타난 각 회원국별 사례의 재검증 필요성, 전체 환경 차원이 아닌 협소한 관점에 따른 한계 등을 지적함.
 - 시사점으로는 회원국의 최근 농업환경정책 동향을 발표하는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덴마크의 경우 농업분야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추

- 진하고 있음. 특히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 질소감축,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유기농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녹색성장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OECD 농업환경지표 업데이트 작업(2009년 또는 2010년 기준)이 2011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사무국에서 설문조사표를 발송될 예정인바, 양분수지표와 농장관리지표 등은 미리 지표업데이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분야 연구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 작성(2011년 6월 발간 계획)에 맞추어 농업분야의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개념 설정, 녹색성장 계측 방법론과 측정 지표, 핵심정책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재 KREI 녹색성장 과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OECD 전략보고서에 연구결과가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비하여 보고서 영문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임.
 -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과 KREI가 공동으로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회의(워크숍)를 2011년 4월 6일~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OECD 회원국 대표와 사무국 및 국제기구 등에서 약 20명 정도가 참석하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행사로 OECD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수산위원회 회의

- OECD 수산위원회는 1961년 OECD 설립과 동시에 분과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연 2회 개최되고 주요 기능은 회원국간 수산정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3년마다 새로운 사업안을 선정 및 연구하여 그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함
- 2008년 이후 최근 수산위원회에서는 어업구조조정의 효과적 이행, 수산정

책 개혁동향, 수산업의 세계화, 어선입항과 항구서비스, 어업과 양식업 인 증제, 수산자원회복의 경제, 기후변화와 수산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고, 그 밖에 수산업동향보고서, 노르웨이의 개도국 지원사업, 수산업에 대한 화석연료보조의 국제적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한편, 2012년에 수산장 관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도 논의되었는데 사무국과 우리나라는 찬성한 반면 많은 나라가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는 OECD 수산위원회의 제102차(2008) 회의부터 부의장국으로 의 장단에 직접 참여하면서 동 위원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제102차 회의부터 수행해 온 부의장국의 역할은 매년 선거를 통해 재선되면서 제 108차('11) 회의까지 유지하게 됨.
- 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회복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 사례연구 3개 어종(도루묵, 참조기, 꽃게)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 OECD 전 회원국 들에게 우리나라의 수산자원회복 경험을 공유하였고, 자원회복계획 워크샵, 양식업 워크샵에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와 수산에 관한 워크샵을 유치하 여 성공적으로 개최(2010. 6. 10 ~ 11, 부산)하였음. 또한 러시아의 수산위 원회 가입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국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제안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향후 대응전략

- 최근의 OECD 논의는 점차 글로벌화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내용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어 적극적 참여 필요.
 - 종전에는 OECD가 무역자유화를 옹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많이 발간 하여 수입국과 수출국들 간의 심한 대립구도를 조장한 바 있음. 이에 대 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들(식품산 업, 농촌개발, 위험관리 연구, 비관세조치 등)에 대해 적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

- OECD의 주요 활동은 각국이 세계경제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와 공존하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각종 정책 권고를 하는 것임. 하지만 수도작 위주의 작부체계를 갖고 있으며 소농 위주의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미국이나 EU, 오세아니아 국가들의 정책과 같을 수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OECD에서의 논의가 단지 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농정 개혁이 실질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무역왜곡이 많은 시장가격 지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OECD에서 권장하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 형태, 목표지향적인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OECD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OECD 농업분야 논의에 대응하는 방식은 구체적 계획이나 종합적인 전략이 없이 단편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OECD 담당자가 4번이나 바뀌고 OECD 농무관 자리도 없어지는 등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도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의제별로 2-3년 동안 논의가 진행되는 데 하나의 의제를 처음부터 종료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담당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임.
 -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OECD과제를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어느 정도 OECD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내년 이후에는 장기적 계획이 없음.
- OECD 수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이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OECD 농업위원회에서도 부의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부의장국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OECD논의에의 참여도는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으로 OECD 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나라에도 OECD에서의 논의사항을 전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 정부와 연구원의 OECD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매년 계속과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가 필요함.

참고 문헌

- 권오상, 김기철 2000. 『농업의 다원적기능 관련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연구』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2000.1 2
- 김창길, 김태영, 정은미. 2006. 『OECD 농업환경지표개발 논의에 대응한 농업환경지표개발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 2006-48.
- 농림수산식품부 1999.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OECD 논의 자료집』 .
2003. 『OECD 논의동향』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통권 제 4호
- 성명환, 승준호 2006.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31/2006. 11
- 안병일 외, 2008. OECD PSE의 효과적 측정을 위한 방안.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송수, 김상현 2002.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 정책수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65-2/2002. 7
- 윤호섭, 1998. OECD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D131/1998. 6
- 송양훈, 임정빈 2005. “OECD PSE비율추정방식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 PSE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제 46권 제 4호(2005. 12) pp. 167-193
- 송주호, 정호근, 윤형현, 2008. “OECD 농업분야 논의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05/2008.12
- 송주호, 성명환, 이용연 2007. “OECD 정책평가모형 운영체계 구축과 한국농정평가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50/2007.12
- Jung-Hwan Lee, Song-So○Lim 2003. 『The Road Ahead for Korean Agriculture: Soft Landing on a new Plateau in the WTO』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OECD. 2001 a. Multifunctionality: Towards an Analytical Framework.
_____ 2000. Market Access, Domestic Support and Export Subsidy Aspects of Uruguay Round Agreement of Agriculture: Implications in OECD Countries. 2000. 12
_____ 2003. Farm Household Income: Issues and Policy Response
_____ 2004. 『OECD 한국경제보고서』 Volume 2004/10
_____ 2007.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
_____ 2008. An Assessment of Risk Exposure in Agriculture: A Literature Review
_____ 2008. AN Overview of Policy Measure for Risk Management

- _____ 2008. Coverage and Measurement of Transfer for Water in the PSE and GSSE Calculation
- _____ 2008. Draft Report on Economic Assessment of Bionfuel Support Policies.
- _____ 2008. Draft Summary Records of the 150th Session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 _____ 2008.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Korea
- _____ 2008.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In-Depth Evaluation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Draft Action Plan
- _____ 2008. Meeting Plans for 2009
- _____ 2008. New Avenues of Value Creation in the Agro-food Sector
- _____ 2008. OECD Agricultural Policies 2008: At a glance
- _____ 2008. Policy Initiative Concerning Diet, Health and Nutrition.
- _____ 2008. Policy Initiative in Diet, Health and Nutrition: Initial Survey Results.
- _____ 2008. Preparations for the 2010 Ministerial
- _____ 2008. Progress Report on Methods to Monitor and Evaluate the Impacts of Agricultural Policies on Rural Development
- _____ 2008. Review of Coverage, Consistency Method in the PSE Calculations: Status Report
- _____ 2008. Review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s Substructure.
- _____ 2008.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A Holistic Conceptual Framework
- _____ 2008. Role, Usage, Motivation for Contracting in Agriculture
- _____ 2008. Scoping Paper: Optimal Risk Management Polici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 _____ 2008. Summary Record from the 6th Meeting of the PSE Expert Group
- _____ 2008. Synthesis Repor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 _____ 2008. The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Japan.
- _____ 2008. The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8-2017
- _____ 2008. The Role of Farm Households and the Agro-food Sector in the Economies of Rural Areas.
- _____ 2008. The Role of Farm Households and the Agro-food Sector in the Economy of Rural Areas: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 _____ 2008. Update on Part II Programmes
- _____ 2008.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Draft Summary

Record: 44th Session.

_____ 2008.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Draft Summary

Record: 45th Session.

_____ 2008.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Draft Summary

Record: 46th Session.

_____ 1996. "The Impacts of BSE on European and World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AGR/CA/APM/MD(96)8, Oct.

_____ 2001 b.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3: Methods and Results. Paris. France.

_____ 2008. Report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6th meeting of the PSE Expert Group, 13-14 March, 2008 for Next steps

C2010-51

OECD 농업분야 논의동향분석 및 대응전략수립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2.

발 행 2010. 12.

발행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